

신규발효 FTA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활용실태 정보수집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5. 10.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사업』에 관한
용역 중 「신규 발효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품목별 FTA 활용실태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0.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구진

〈연구 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송 경 은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자〉

권 민 경 연구원

윤 호 성 연구원

배 철 한 연구보조원

김 설 룡 연구보조원

목 차

I.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2

[한-캐나다 FTA]

II. 한-캐나다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3

1.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3

- 제 1 류 살아있는 동물 3
-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7
-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0
-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6
-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21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25

- 제 6 류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25
-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와 괴경(塊莖) 29
-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33
- 제 9 류 커피·차·마테와 향신료 37
- 제 10 류 곡물 43
-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46
-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품 50
- 제 13 류 락(lac), 검·수지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55
-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造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58

제 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 15 류)	60
제 15 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 15 류)	60
제 4 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66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66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71
제 18 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75
제 19 류 곡물·고운가루·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79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84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89
제 22 류 음료·주류와 식초	94
제 23 류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99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102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105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	105
제 26 류 광·슬래그와 회	111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15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122
제 28 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123
제 29 류 유기화합품	130
제 30 류 의약품	137
제 31 류 비료	142
제 32 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145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이나 화장용품	150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155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160
제 36 류 화학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164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167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72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179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9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185
제 8 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요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190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190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196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200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과 지조세공물	203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3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208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210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지와 판지와 이들의 제품	212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12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	215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와 도면	220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223
제 50 류 견	224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229
제 52 류 면	234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239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244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248
제 56 류 워딩·펠트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254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259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262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266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7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75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80
제 63 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넘마	284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제품	290
제 64 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290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295
제 66 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299
제 67 류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造花),인모(人毛)제품	302

**제 13 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306**

제 68 류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306

제 69 류 도자제품 311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315

**제 14 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320**

제 71 류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320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325

제 72 류 철강 325

제 73 류 철강의 제품 331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338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344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347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352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355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358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s), 이들의 제품 361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365

제 83 류 비(卑)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372

**제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78**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이들의 부분품 378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01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 86 류~제 89 류) 418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418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422
제 88 류 항공기·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429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433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37**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37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450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55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59

제 93 류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59

제 20 부 잡품(제 94 류~제 96 류) 463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463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와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69
제 96 류 잡품	473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 97 류) 480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480

Ⅲ. 비교우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482

Ⅳ. 수출유망품목 한-캐나다 FTA 활용가이드 497

[한-뉴질랜드 FTA]

II. 한-캐나다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511

1.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511

제 1 류 살아있는 동물 511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514

제 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517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524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528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533

제 6 류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533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와 괴경(塊莖) 536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539

제 9 류 커피·차·마테와 향신료 543

제 10 류 곡물 549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552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품 556

제 13 류 락(lac), 검·수지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560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造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562

제 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품,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 15 류) 564

제 15 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품,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 15 류) 564

제 4 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569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569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573
제 18 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577
제 19 류 곡물·고운가루·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581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586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591
제 22 류 음료·주류와 식초	596
제 23 류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601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604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607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	607
제 26 류 광·슬래그와 회	611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614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620
제 28 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621
제 29 류 유기화합품	629
제 30 류 의약품	636
제 31 류 비료	640
제 32 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643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이나 화장용품	649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654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659
제 36 류 화학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663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665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668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675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675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681
제 8 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요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685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685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689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693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트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과 지조세공물	696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696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700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702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지와 판지와 이들의 제품	704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04
제 48 류 종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	707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와 도면	713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716
제 50 류 견	717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721
제 52 류 면	726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731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734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738
제 56 류	워딩·펠트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744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래	748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751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754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759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763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767
제 63 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771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제품 777

제 64 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777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781
제 66 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785
제 67 류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造花),인모(人毛)제품	787

제 13 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790

제 68 류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790
제 69 류	도자제품	795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99

제 14 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803

제 71 류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803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807

제 72 류 철강	807
제 73 류 철강의 제품	813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819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824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827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832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835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37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s), 이들의 제품	839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42
제 83 류 비(卑)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848

**제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4**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이들의 부분품	854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77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 86 류~제 89 류) 892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892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896
제 88 류 항공기·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902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906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0**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0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21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4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28
제 93 류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28
제 20 부 잡품(제 94 류~제 96 류)	932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32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와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7
제 96 류 잡품	941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 97 류)	947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47
Ⅲ. 비교우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949
IV. 수출유망품목 한-뉴질랜드 FTA 활용가이드	958
부록 1. 한-캐나다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별 HS code	969
부록 2. 한-뉴질랜드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별 HS code ..	1015
부록 3. 영연방 4개국 류별 PSR 비교현황	1034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중 FTA가 6월 1일 정식서명 되고 4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5년 연내에 발효를 예정하고 있어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FTA 허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다.

캐나다는 G8회원국이자 세계11위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가 맺은 12번째 FTA 체결국이다. 아시아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여 캐나다 시장진출의 경쟁력이 기대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계, 철강제품 등의 수출확대가 가능하고 주요 에너지 수입원으로 안정적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 전략적 FTA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질랜드는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FTA 특혜관세를 향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들에게 FTA를 통한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2014년 캐나다와 뉴질랜드와의 FTA가 정식서명 및 가서명이 완료됨으로써 2015년 두 협정의 발효가 예상되고 기업들의 FTA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신규협정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역품목의 원산지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간의 교역특성과 주력산업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고 수출하더라도 협정별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개별협정 및 품목별로 서로 다른 복잡난해 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미,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 발효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가 '12년~'14년 진행된 바 있다. '12년 연구는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으로 류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 수출자의 한-미 FTA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13년 연구는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으로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과 유럽권 3개 협정(EU, EFTA, 터키)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을 하였다. '14년 연구는 중남미 3대시장 중 하나인 콜롬비아와 신규발효된 호주와의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이어 2015년은 신규발효가 예상되는 캐나다 및 뉴질랜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해설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영연방 4개국(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류별로 대

표적인 수출품목을 선정하여 구체적 원산지판단 사례를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의 원산지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더불어 캐나다 및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품목 중 다른 국가와의 비교우위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도 분석토록 한다. 특히 캐나다 및 뉴질랜드가 체결한 FTA 중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공통되는 국가¹⁾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비교 함으로써 협상 후 이행단계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한-캐나다 FTA와 한-뉴질랜드 FTA 전체품목(제1류~제97류)을 류별로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을 분석하고 해설을 수록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과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힌다.

제2장은 한-캐나다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을 수록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류별 품목분류 체계, 류별 영연방 4개국 교역동향,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류별 대표교역품목 원산지 판정 사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류별 대표교역품목의 경우 HS 10단위 품목의 연간 총수출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중요성이 미미하여 사례를 생략하였다.

제3장은 한-캐나다 비교우위 품목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주요 내용은 對캐나다 주력 수출품목 현황, 주요 비교우위품목의 FTA 체결 공통국(미국, 칠레, EFTA, 페루, 콜롬비아)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동일 물품에대한 국가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정도와 지위를 알고자 한다.

제4장은 수출유망품목에 대해 한-캐나다 FTA 활용 종합가이드를 제시한다. 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의 FTA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대 수출유망 품목 선정, 원산지증명 가이드, 원산지검증가이드, 캐나다 통상환경 특징 등을 수록하여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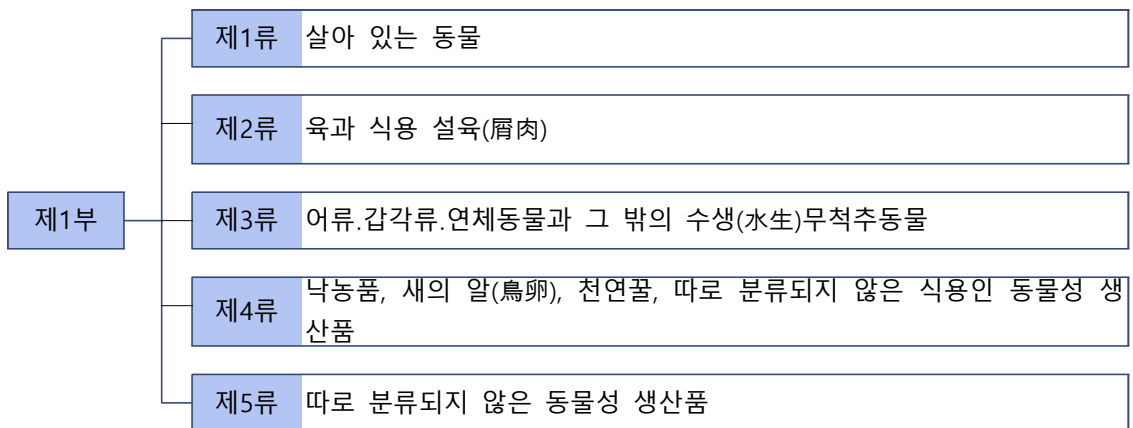
한-뉴질랜드 FTA 역시 위와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하여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로 각각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다.

1) 캐나다의 경우 미국, 칠레, EFTA, 페루, 콜롬비아 5개국이 공통된 국가이고, 뉴질랜드의 경우 호주, 싱가포르, 중국 3개국이 공통된 국가이다.

표. 한-캐나다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제1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되며,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제1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제1류에는 ‘살아 있는 동물’을 분류하며,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물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0.006 %이며, 그 중에서 수입이 93 %이다.

품목번호	품 명
0101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0102	소
0103	돼지
0104	면양과 산양
0105	가금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으로 한정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와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2. 제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01류는 전반적으로 '13년, '14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4년 기준 對캐나다로의 수출은 84천불, 수입은 3,241천불로 3,157천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HS 제0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638	57,834	-56,197	1,820	71,761	-69,941
對싱가포르	2	1	-2	3	7	-4
對호 주	12	1,557	-1,545	9	2,460	-2,451
對캐 나 다	141	1,717	-1,579	84	3,241	-3,157
對뉴질랜드	3	2	0	4	255	-251

나. 주요 수출물품

제01류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0106191000과 0106199000이며, 0106191000의 '14년 수출실적은 82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0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0106191000	2	0106191000	5	0106191000	82	0106191000	2
2	0106199000	1	0106199000	4	0106199000	2	0106199000	2

3. 제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01.01~0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1	CC	WO	CC	WO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한-캐나다 FTA 제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1류의 전품목에 대하여 2단위 세번변경의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한-캐나다 협정상 제3.2조의 다호 및 라호의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기준에 따르면 제1류에 분류되는 산동물은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일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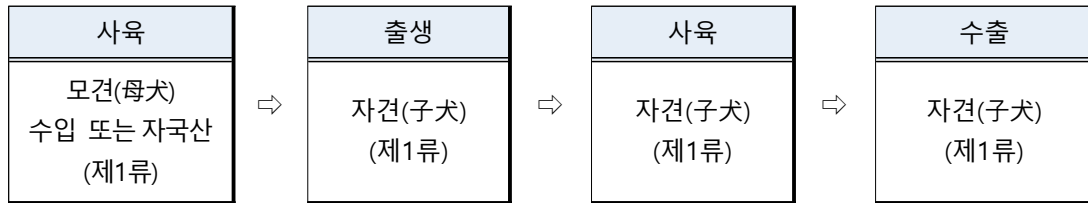
영연방 4개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4개 협정 모두 제1류의 전품목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제1류의 품목에 대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1류에 '산동물'이 분류되므로 결국 다른 류로부터의 생산과정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제1류에 속하는 물품중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제0106.19.1000호로 살아있는 개다.

품명	개(Dog)
세번	0106.19.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예시	

개의 생산과정은 모견(수입산 또는 국내산 불문)으로부터 자견이 출생하면 이를 사육한 수 수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간단히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비록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 제1류에 속하므로 류변경은 사실상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제1류의 2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의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캐나다 FTA 제3.2조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산동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출생(Born)’하고 ‘사육(Raised)’되고 수출 당시 살아있는 상태의 개만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비원산지 산 동물인 모견(母犬)을 수입하여 그로부터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개가 살아있는 상태로 수출된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1. 품목분류 체계

제2류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을 분류하며,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0201	쇠고기(신선하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소 · 돼지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설육(屑肉)(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2. 제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02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3년, ’14년 연이어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존재하지 않고 수입만 96,745천달러 존재한다.

HS 제0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5,499	2,690,536	-2,645,038	47,573	3,373,277	-3,325,704
對싱가포르	2	0	1	0	0	0
對호 주	0	861,624	-861,638	0	983,874	-983,874
對개 나 다	0	90,716	-90,724	0	96,745	-96,745
對뉴질랜드	0	116,987	-116,995	0	122,435	-122,435

나. 주요 수출물품

제02류의 對개나 다 수출실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제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0201~0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207.11 ~02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207.24 ~0207.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2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2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210.11 ~0210.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210.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닭의 것: 다른 류(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201~0206.90 0207.24~0209.10 0210.11~0210.93	CC(ex.01)	CC(ex.01)	CC	CC(ex.01)
0207.11~0207.14 0209.90	CC(ex.01)	CC(ex.01)	CC(ex.0105)	CC(ex.01)
0210.99	CC(ex.01)	CC(ex.01)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닭의것:CC(ex.0105) -기타:CC	CC(ex.01)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한-캐나다 FTA에서 제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2가지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둘째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 호 완전생산기준이 그것이다. 세번별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제0105호의 닭으로부터 생산되는 육이나 설육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2류에 속하는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기본해설) 제0207.11호~제0207.14호에 속하는 닭으로부터 생산되는 육이나 설육은 ‘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재료인 닭은 완전생산되어야 한다. 결국 캐나다나 한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닭으로부터 생산된 육이나 설육의 경우만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다.

닭을 원재료로 하는 육이나 설육을 제외한 소, 돼지, 양, 말 등의 육과 설육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비원산지 산동물(제1류)을 수입하여 육과 설육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2류의 품목에 대하여 모두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특히 제1류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하는 제한 규정을 대체로 택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 이를 다소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닭을 제외한 동물로부터 획득되는 육과 설육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제1류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제1류의 동물을 수입하여 육과 설육을 수입하는 경우에 캐나다를 제외한 영연방국가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캐나다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차이가 있다.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 품목분류 체계

제3류는 제0301호부터 제0308호 까지 총 8개의 호로 구성된다. 8개의 호를 크게 분류하는 기준은 척추의 유무에 따라 수생척추동물인 어류는 제0301호에서 제0305호까지, 수생무척추동물은 다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것으로 구분하여 제0306호~제0308호가 이에 속한다.

품목번호	품 명
0301	활어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필레(fillets)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건조한 어류·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수생(水生)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s)(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2. 제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3류의 수출입 실적은 '14년 기준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對개나다로의 수출실적은 11,170천불이고, 수입실적은 50,371천불로 기록되었다.

HS 제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538,267	3,136,336	-1,598,069	1,433,451	3,636,037	-2,202,586
對싱가포르	6,466	2,097	4,319	6,645	1,757	4,888
對호 주	4,911	3,664	1,201	4,036	3,277	759
對개 나 다	5,314	71,081	-65,828	11,170	50,371	-39,201
對뉴질랜드	46,631	5,823	40,770	52,969	7,338	45,631

나. 주요 수출물품

제3류의 對개나다 주요 물품은 0306241090(신선한 게)이며, 수출실적은 4,413
천달러이며, 두 번째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0307491020(냉동오징어)로 3,495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개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0306241090	1,361	0307491020	1,153	0306241090	4,413	0307491020	14,578
2	0303830000	1,175	0303510000	858	0307491020	3,495	0303691000	13,638
3	0303570000	986	0305592000	536	0301998000	866	0303893090	9,025
4	0303540000	656	0307493000	195	0307191000	577	0303899099	6,447
5	0304840000	512	0303899099	160	0305592000	366	0303660000	6,069
6	0306149090	317	0303896000	135	0301999099	198	0303897000	1,208
7	0306142090	253	0305699000	130	0303540000	125	0303699000	526
8	0301998000	252	0303540000	119	0306273000	120	0307191000	324
9	0303810000	217	0305593000	92	0303892000	106	0303810000	313
10	0305712000	112	0303899091	79	0307810000	95	0303899060	274

3.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3류 주	당사국의 영역에서 알, 치어, 핑거링스(fingerlings) 또는 유생과 같은 비원산지 종자로부터 성장한 제3류의 양식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0301~0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306~0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훈제한 것: 제0306.11호부터 제0308.90호까지의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훈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301.11~0301.19	CC or 양식+초기사 료를 먹인것	WO	CC	WO
0301.91~0303	CC	WO	CC	WO
0304~0305	CC	CC	CC	CC
0306.11~0306.17 0306.21~0306.24 0306.26~0306.27 0307.19 0307.29 0307.39 0307.49 0307.59~0307.60	CC	WO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훈제한 것: From 0306.11~0308.90 -기타:CC	WO / CC
306.19 0306.25	CC	CC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훈제한 것 : From 0306.11 ~ 0308.90 -기타:CC	WO / CC
0306.29 0307.79 0307.99 0308.19 0308.29	CC	CC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훈제한 것: From 0306.11~0308.90 -기타:CC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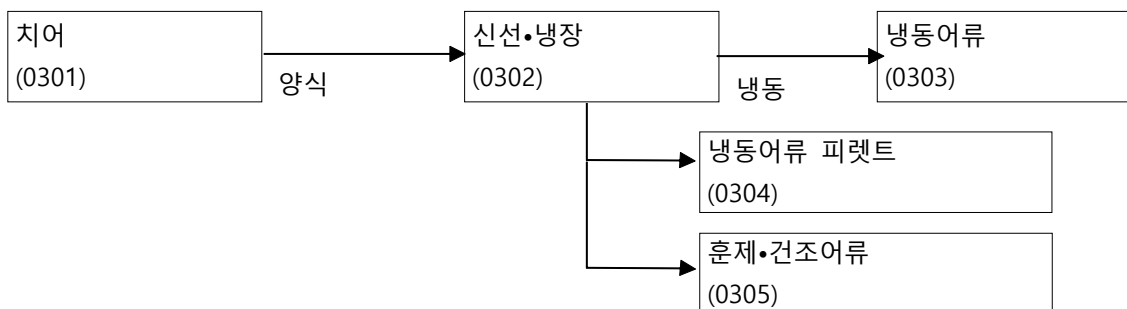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307.11 0307.21 0307.31 0307.41 0307.51	CC	WO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혼제한 것: From0306.11~0308.90 -기타:CC	WO
0307.71 0307.91 0308.30~0308.90	CC	WO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혼제한 것: From0306.11~0308.90 -기타:CC	CC
0307.81 0308.11 0308.21	CC	WO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한-캐나다 FTA의 제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수생척추동물인 어류가 분류된 제0301호~0305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3류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 역시 모두 제3류에 속하므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제3류에 속하는 물품을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 어류의 세번 변경 흐름도 >



다음으로 수생무척추 동물이 분류된 제0306~0308호는 혼제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으로 나누어 원산지를 판단한다. 혼제한 물품의 경우 '혼제하지 않은 제 0306.11호부터 제030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혼제한 물품을 생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제물품의 재료에 속하는 제0304.11호부터 제0308.90호는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를 역내에서 혼제하여 생산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다. 혼제하지 않은 기타 물품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역시 완전생산기준과 같은 의미이다.

결국 한-캐나다 FTA의 제3류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상 그 의미는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한-캐나다 FTA의 제3류에는 양식물품과 관련한 주(Note)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양식물품의 경우 비원산지 종자를 이용하여 당사국 영역에서 양식과정을 거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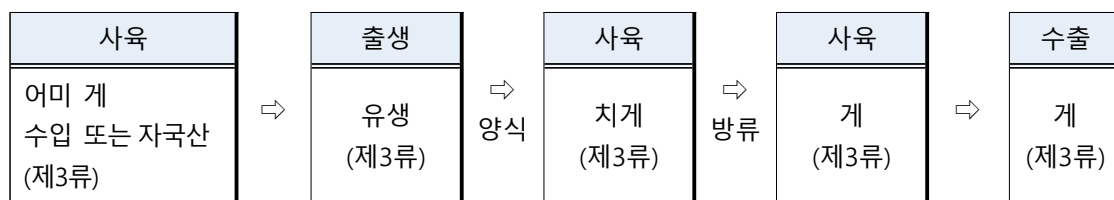
(4국비교분석) 제3류의 품목에 대해 영연방 국가들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이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품목의 특성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제3류에 속하는 물품중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제0306.24.1090호(신선한 게)와 제0307.49.1020호(냉동오징어)이다.

품명	게(Crab)
세번	0306.24.109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예시	

게의 생산과정은 어미 게가 유생을 산란하면 이 유생을 사육수조에서 일정기간 사육한 후 치게가 되면 이를 방류하여 성장하면 수확한다. 따라서 게는 양식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수산물의 획득은 특성상 ‘양식을 통한 생산’과 ‘선박에 의한 획득(어로)’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중 선박에 의한 획득의 경우는 영역의 범위 면에서는 영해내 어로에 의한 획득과 영해 밖 어로에 의한 획득으로 구분되며, 선박의 종류에 따라 협정에 따른 자국선박에 의한 어로와 자국선박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① 양식을 통한 생산

양식을 통한 생산의 경우 한-캐나다 FTA에서는 제3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주에서 ‘당사국의 영역에서 알, 치어, 핑거링스(fingerlings) 또는 유생과 같은 비원산지 종자로부터 성장한 제3류의 양식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고 별도로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산 유생을 양식하여 성체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있고 이러한 계로부터 다시 산란을 통해 성장한 계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② 선박에 의한 획득 (완전생산기준)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때 어로행위가 영해 내에서 수행된 경우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나 영해 밖에서 수행된 어로행위에 의해 획득된 수산물의 경우 어로행위에 사용된 선박의 국적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캐나다 FTA의 경우 영해 밖에서 어로행위가 수행될 때 사용된 선박이 ‘국기계양+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선박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 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생산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fats)과 기름(oils)(밀크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스프레드(dairy spreads)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저장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저장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2. 제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4류의 '14년 대세계 무역수지는 800,359천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캐나다로의 수출 실적 역시 '13년, '14년 각각 17,483천달러, 11,302천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0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3,744	721,166	-677,423	53,338	853,697	-800,359
對싱가포르	398	311	68	477	884	-407
對호 주	2,503	62,479	-59,993	3,090	60,793	-57,703
對캐 나 다	1,064	18,534	-17,483	986	12,288	-11,302
對뉴질랜드	277	130,829	-130,566	721	75,022	-74,301

나. 주요 수출물품

제04류의 對캐나다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0403102000(냉동 요구르트)로 506천불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0402999000(연유)가 427천달러로 2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으로 파악되었다.

HS 제0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0402999000	433	0403101000	2,670	0403102000	506	0406101010	464
2	0403109000	40	0403102000	253	0402999000	427	0403102000	139
3	0406200000	3	0402999000	61	0403101000	53	0402999000	109
4	0409000000	1	0403109000	56	0402101010	0	0403109000	6
5	0406909000	0	0406901000	50	0402109000	0	0403101000	3

3. 제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0401~0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407~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401	CC (ex.1806.90, 1901, 2106.90)	WO	CC (ex.1901.90, 2106.90)	CC
0402~0406	CC (ex.1806.90, 1901, 2106.90)	CC (ex.1901.90)	CC (ex.1901.90, 2106.90)	CC
0407~0408	CC	WO	CC	CC
0409	CC	CC (ex.1901.90)	CC	CC
0410	CC	CC	CC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한-캐나다 FTA는 제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기본을 하되 일부 소호에 대해 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낙농품에 해당하는 제0401호부터 제0406호 까지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일부소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의 물품인 제0407호부터 제0410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0401호~제0403호에는 우유 및 크림이 분류되는데 한-캐나다 FTA는 2단위 세번변경을 요하고 있다. 우유는 살아있는 젖소(01류)로부터 생산되므로 비원산지 소로부터 우유를 생산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크림이나 요구르트는 우유(04류)로부터 생산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물품인 우유를 이용하여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수 있다.

제0404호~0406호는 우유로부터 생산되는 유장, 버터, 치즈 등이 분류되므로 크림이나 요거트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우유를 사용하여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901.90호나 제2106.90호의 제품으로 제0401호~제0406호의 물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 원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한다.

제0407호~0410호는 낙농품 외의 물품들로 조란과 천연꿀 등이 이에 속하는데 주로 제01류의 재료로부터 생산되므로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취득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산 닭(제0105호)를 수입하여 이로부터 조란(제0407호)를 생산하는 경우 제01류에서 제04류로 2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원산지상품이라 할 수 있다.

(4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4류의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제4류의 전품목에 대하여 2단

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규정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밀크와 크림(제0401호), 조란(제0407호~제0408호)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을 택하여 가장 엄격한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제4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제1901호, 제2106.90호의 재료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이를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제4류에 속하는 물품중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제0403.10.2000호(냉동 요구르트)와 제0402.99.9000호(연유)이다.

품명	냉동 요구르트(Frozen Yogurt)
세번	0403.10.2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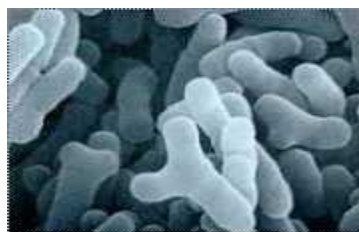
냉동요구르트는 발효유의 하나로 우유나 양젖 등을 살균하여 반쯤 농축하여 유산균을 번식시켜 만든 음료이다.

< 요구르트의 생산과정 및 세번변경 흐름도 >



우유(04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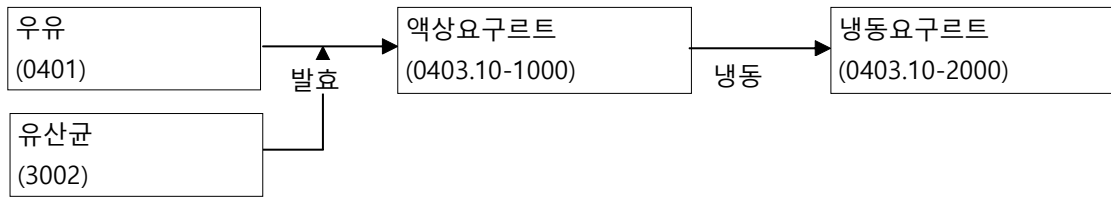


유산균(3002)

=



요구르트(0403)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택하고 있으므로 원산지물품인 우유에 유산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요구르트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나, 수입 우유의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그리고 요구르트의 제조과정에서 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에 속하는 낙농품을 첨가하는 경우 이러한 재료는 원산지상품이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501	인모(人毛)(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인모(人毛)의 웨이스트(waste)
0502	돼지(pigs'·hogs'.boars')의 뿔뿔한 털(bristles)과 헤어(hair), 오소리 털(hair)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hair),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해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소독이나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s)[가공하지 않은 것.탈지(脫脂)한 것.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산(酸) 처리를 하거나 젤라틴을 제거(degelatinised)한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과 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재료(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나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 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1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musk),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 여부를 불문한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2007년도에 제0503호와 제0509호는 삭제²⁾

2) 1988년 HS 협약의 품목분류표 제정당시에 제0503호와 제0509호에는 특정한 생산품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역거래량이 감소됨에 따라 해당 호를 삭제함으로 빈 번호가 되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제0511호로 분류한다.

2. 제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05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실적 역시 '13년,'14년 걸쳐 각각 2,951천달러, 5,114천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HS 제0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75,247	383,353	-108,107	213,671	366,897	-153,226
對싱가포르	0	0	0	0	0	0
對호 주	1,296	21,019	-19,735	488	20,582	-20,094
對캐 나 다	1,766	4,712	-2,951	25	5,139	-5,114
對뉴질랜드	393	34,664	-34,277	200	30,911	-30,711

나. 주요 수출물품

제05류의 대표품목은 0511919000이며,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25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품목의 캐나다에서의 수출실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HS 제0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0510001000	0	0511999090	488	0511919000	25	0511999090	200

3. 제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0501~05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5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505~05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및 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508~0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501~0502 0508	CC (ex.01, 03)	WO	CC	WO
0504	CC (ex.01, 03)	CC (ex.01, 02)	CC (ex.01)	CC (ex.01, 02)
0505 0510~0511.91	CC (ex.01, 03)	CC	CC	CC
0506 0511.66	CC (ex.01, 03)	CC (ex.01, 02)	CC	CC (ex.01, 02)
0507	CC (ex.01, 03)	WO	CC (ex.01, 03)	WO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류는 전체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다만 일부 호에 대해서만 원재료의 완전생산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0501호~제0502호는 인모와 수모로 모두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인모의 경우 원재료와 세번이 동일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약당사국 사람으로부터 채집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2호에 속하는 수모의 경우 주로 산동물(제01류)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므로 비원산지 산동물로부터 제0502호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4호는 동물의 내장이 분류되는데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제1류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장을 적출할 수 있는 원재료인 제1류는 체약국에서 완전생산 되어야 한다. 한-캐나다 FTA는 산동물의 완전생산기준으로 출생+사육을 요하므로 캐나다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동물로부터 적출한 내장(제0504호)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5호~제0506호는 동물의 깃털이나 뼈 등이 분류되는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동물(제01류)로부터 깃털이나 뼈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7호는 동호에서 분류하는 특정한 동물이나 어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뿔, 털, 발톱 등이 분류되는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제1류와 제3류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하고 있다. 결국 동 호의 원재료인 제1류와 제3류를 완전생산하여 이로부터 제0507호에 속하는 물품을 만들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참고로 한-캐나다 FTA는 산동물의 경우 출생 및 사육을, 어류의 경우 영해에서 어로에 의해 획득 되거나 영해 밖에서 체약당사국 선박(등록과 국기계양)에 의해 획득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508호~제0511호는 산호, 패각, 동물의 분비물, 기타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들이 분류되고 이들 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산호의 경우 원재료와 상품이 동일한 호에 속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재료로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패각이나 동물성 향료, 기타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들은 제1류 또는 제3류로부터 생산되므로 비원산지 동물이나 어류로부터 동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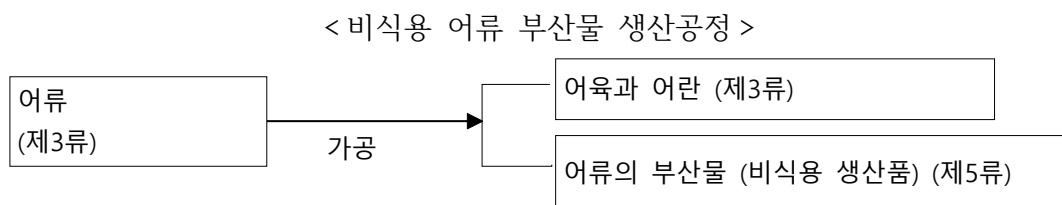
(4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5류의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5류 전품목에 대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되 원재료인 제1류와 제3류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완전생산기준과 의미가 동일하게 풀이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명	어류 등의 비식용 생산품(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dead animals of chapter 1 or 3, unfit for human consumption)
세번	0511.91.9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동 물품은 어로 행위에 의해 채취된 어류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다른 류로부터 생산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므로 수입한 어류(제3류)로 어류의 부산물을 만들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내산 어류로 어류부산물을 만들 경우에도 당연히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제 2 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와 괴경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차.마테와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lac), 검.수지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s)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과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것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cuttings)와 접붙임용 가지(slips), 버섯의 종균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한 것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풀·이끼와 지의(地衣)(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표백한 것·침투한 것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06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42,565 천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14년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141천불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14년의 수입실적은 1천불로 나타났다.

HS 제0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62,543	70,346	-7,804	42,764	85,329	-42,565
對싱가포르	17	31	-16	16	21	-5
對호 주	119	276	-164	193	308	-115
對캐 나 다	128	0	126	142	1	141
對뉴질랜드	0	304	-313	0	338	-338

나. 주요 수출물품

제06류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0602901060(선인장)이며, 수출실적은 141천달러이다. 그 외에0604909000가 1천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HS 제0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0602901060	16	0602901060	193	0602901060	141	0601102000	0
2	0602400000	0	0604909000	0	0604909000	1	0601209090	0

3.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0601~06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601~0602	CC	WO	CC	WO
0603	CC(ex.1211, 1212, 1214)	WO	CC(ex.1211.20)	WO
0604	CC(ex.1211, 1212, 1214)	WO	CC	WO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제0603호와 같은 일부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원재료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6류에 속하는 살아있는 식물은 대체로 모두 제6류에 분류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상품의 2단위 세번이 동일하다. 따라서 제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캐나다 FTA에서 살아있는 식물은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6류의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제6류 전체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였다.

다만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에도 주요 원재료의 경우 원산지재료를 제한하고 있고 제6류의 생산구조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 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영연방 국가 모두 완전생산기준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명	접목선인장(Chin Cactus)
세번	0602.90.106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접목선인장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선인장의 일부를 절단하여 뿌리가 나도록 건조한 후 이를 다시 땅에 심는 방식으로 재배하는데, 절단된 선인장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건조시키고 이때 저장되어 있던 수분을 모두 소비한 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므로 뿌리가 나올 시기에 다시 땅에 심어주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재배된 모수에 자구를 접목하여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재배한 후 상품으로 출하하게 된다.

< 접목선인장 생산과정 >



HS 제0602.90호에 속하는 선인장의 기본 원재료가 되는 것은 모체 선인장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물품인 모체 선인장으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배 및 수확’의 조건만 충족되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원산지 재료인 씨앗이나 종자를 국내로 반입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크기 및 형태로 재배하여 수확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미 발아한 선인장 모종 자체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한 후 수확된 선인장도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와 괴경(塊莖)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kale)과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와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celeriac)·무와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1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이나 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찌꺼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참뿌리·샬렙·돼지감자·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른 것인지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의 심(sago pith)

2. 제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제07류의 對캐나다 수출실적은 4,867천불이며, 수입은 6,224천불을 기록하였다. 1,357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대세계 무역수지 역시 523,017천불의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0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62,067	723,125	-561,058	167,738	690,755	-523,017
對싱가포르	1,833	325	1,495	1,486	77	1,409
對호 주	4,115	8,903	-4,810	4,646	13,111	-8,465
對캐 나 다	5,015	3,557	1,440	4,867	6,224	-1,357
對뉴질랜드	34	14,927	-14,903	45	13,258	-13,213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07류의 對캐나다 주요품목은 0709594010(느타리버섯)이며, 수출실적은 1,922천불로 나타났다. 0709595000(팽이버섯)은 1,255천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 0709599000(기타 버섯), 0704902000(배추) 역시 제07류 중 對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파악되었다.

HS 제07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0709595000	1,008	0709595000	2,135	0709594010	1,922	0710809000	21
2	0704902000	110	0709594010	1,747	0709595000	1,255	0712902050	15
3	0709594010	99	0709594090	226	0709599000	707	0712902010	3
4	0712391020	65	0709592000	173	0704902000	477	0712902020	1
5	0709930000	56	0709599000	133	0709999000	278	0712902070	1
6	0702000000	49	0710809000	55	0712902020	69	0712902080	1
7	0701900000	30	0712902020	52	0709609000	31	0712902096	1
8	0709599000	21	0712902099	47	0712902099	28	0712902099	1
9	0703101000	21	0706904000	15	0710809000	26	0713200000	1
10	0709999000	13	0709999000	15	0706901000	15	0703201000	0

3. 제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701~0709 0713	CC(ex.1105, 1106, 2001~2006)	WO	CC	WO
0710~0712	CC(ex.1105, 1106, 2001~2006)	CC	CC	CC
0714	CC(ex.2008)	WO	CC	WO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한-캐나다 FTA는 제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7류에 속하는 식용의 채소 및 뿌리들은 대체로 품목분류상 상품과 재료의 세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캐나다 FTA상 식물성 물품의 완전생산기준은 계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재료와 상품이 세번이 동일 류에 속하지 않는 버섯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비원산지 모체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재배하여 버섯을 수확하면 류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7류의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이나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냉동, 건조, 저장처리등이 포함되는 품목(제0710호~제0712호)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일 류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므로 그 의미는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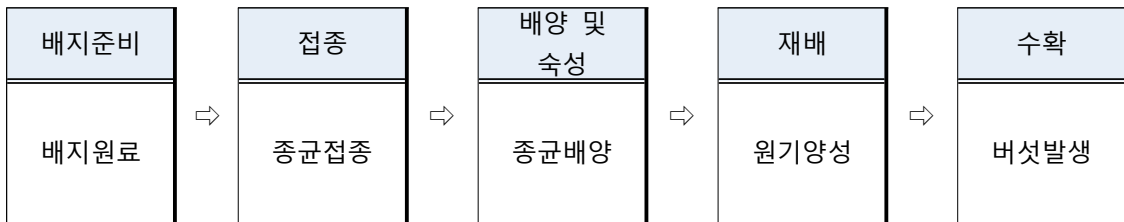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명	느타리버섯(King oyster mushrooms)
세번	0709.59.401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버섯은 대부분 톱밥 등의 배지를 이용한 인공재배방법³⁾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배지의 생산에는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배지센터에서 분양을 받아 버섯생산만 하는 분업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 버섯 생산공정 >



HS 제0709.59호에 속하는 느타리버섯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이다. 모체가 되는 버섯종균(제0602.90-9040호)이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수확된 버섯종균을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한 경우 완전획득 물품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비원산지 버섯종균(제06류)를 수입하여 이를 배양하여 버섯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경우에도 류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3) '배지'란 조식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물질의 혼합체로 배지를 이용한 인공재배방법은 온도 및 습도 조건을 적절하게 조절한 환경에서 배지원료에 종균을 배양하여 재배하는 방법이다.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나 멜론의 껍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Brazil nuts)와 캐슈너트(cashew nuts)(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s)을 포함하며,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와 망고스틴(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s)[파파야(papaya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배와 마르멜로(quince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와 슬로(sloes)(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건조하거나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8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4년 기준 1,488,584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3,594천불이며 수입은 3,234로 360천불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0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48,596	1,396,514	-1,247,919	151,112	1,639,696	-1,488,584
對싱가포르	13,493	1	13,479	15,346	0	15,346
對호 주	121	4,202	-4,102	432	6,067	-5,635
對캐 나 다	2,947	6,028	-3,107	3,594	3,234	360
對뉴질랜드	298	34,629	-34,347	384	48,469	-48,085

나. 주요 수출물품

제08류의 對캐나다 수출 주요 품목은 0810701000(단감)이며, '14년 기준 對캐나다 수출실적은 1,653천불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0808300000(배)이며, 對캐나다 수출실적은 979천불을 기록하였다.

HS 제0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0810100000	11,076	0808300000	301	0810701000	1,653	0808300000	237
2	0810701000	1,675	0806100000	107	0808300000	979	0806100000	146
3	0808100000	913	0809300000	12	0805201000	772	0811909000	1
4	0806100000	440	0813409000	8	0802410000	117	0813409000	0
5	0808300000	412	0805900000	4	0813401000	32	0813500000	0
6	0807190000	324	0806200000	0	0806100000	25	0801110000	0
7	0805201000	166	0808100000	0	0811909000	12	0802120000	0
8	0813401000	88	0809290000	0	0802902020	2	0802320000	0
9	0813200000	83	0810400000	0	0802420000	1	0802520000	0
10	0810500000	49	0810909000	0	0807110000	1	0802901020	0

3. 제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801~0810 0813.10~0813.40	CC	WO	CC	WO
0811~0812	CC	CC	CC	CC
0813.50~0814	CC (ex.1106.30, 2001,2006, 2008)	CC	CC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한-캐나다 FTA는 제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8류에 속하는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들은 제6류에 해당하는 해당 식용수목으로부터 수확되는 것이다. 비원산지 과실수(제6류)로부터 해당 과실을 수확할 경우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그러나 과실의 생산과정(묘목 식립- 재배-수확) 과 품목분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물의 특성상 과실을 포함한 과실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수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캐나다 FTA상 식물성 물품의 완전생산기준은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원산지 묘목(제6류)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재배하고 과실(제8류)을 수확 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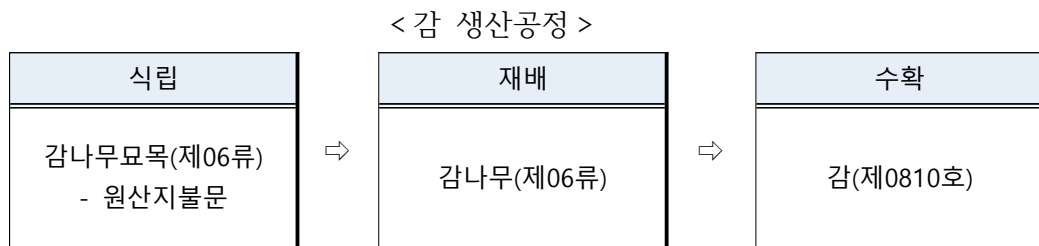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7류의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이나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냉동, 건조, 저장처리 등이 포함되는 품목(제07100811호~제0812호)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일 류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므로 그 의미는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다 하겠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품명	단감(Sweet persimmons)
세번	0810.7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HS 제0810호의 단감은 HS 제06류의 감나무 묘목을 재배하여 생산된다.



식물성 생산품의 완전생산기준 충족요건은 ‘재배 및 수확’이므로 감의 경우 원재료인 감나무가 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배의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감나무 묘목을 얻기 위한 씨앗이나 묘목 자체는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과실이 맺힐 정도로 성장(재배)시켜 배를 수확하더라도 수확된 배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9류 커피 · 차 · 마테와 향신료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 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향(flavoured)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0903	마테(mate)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파쇄하거나 분쇄한 고추류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5	바닐라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 · 꽃과 꽃대로 한정한다]
0908	육두구(nutmeg) · 메이스(mace)와 소두구(cardamoms)
0909	아니스(anise) · 대회향(badian) · 회향(fennel) · 코리앤더(coriander) · 커민(cumin)이나 캐러웨이(caraway)의 씨, 주니퍼의 열매(juniper berries)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thyme) · 월계수 잎 · 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2. 제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9류의 對개나 다 수출실적은 776천불이며, 수입은 1,078천불로 302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대세계 수출 실적 역시 600,163천불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54천불, 120천불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시현하고 있다.

HS 제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7,449	492,639	-465,190	21,165	621,328	-600,163
對싱가포르	2,033	928	1,094	525	669	-144
對호 주	802	533	254	481	427	54
對개 나 다	678	499	165	776	1,078	-302
對뉴질랜드	91	17	71	127	7	120

나. 주요 수출물품

제09류의 對캐나다 대표품목은 0904220000(고추가루)이며, '14년 수출실적은 735천불이며, 0902400000(발효차)가 19천불로 두 번째로 높은 품목으로 파악되었다.

HS 제0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0902100000	133	0904220000	436	0904220000	735	0904220000	123
2	0902200000	119	0902200000	17	0902400000	19	0904120000	4
3	0904220000	119	0901210000	12	0904120000	6	0901110000	0
4	0901210000	102	0902400000	5	0902100000	6	0901210000	0
5	0902300000	42	0904120000	5	0901220000	4	0901220000	0
6	0902400000	7	0902100000	3	0902200000	3	0902100000	0
7	0903000000	2	0902300000	1	0903000000	1	0902200000	0
8	0901110000	1	0910119000	1	0906110000	1	0902300000	0
9	0901220000	0	0910999000	1	0910129000	1	0902400000	0

3. 제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0901.11 ~09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1.21 ~0901.22	제0901.21호 및 제0901.22호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2~0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4.11 ~0904.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904.21 ~09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0.80호 및 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6.11 ~0906.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7~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901	CC	WO	CC	CC
0901.12 0901.90~0903 0905~0906.19	CC	CC	CC	CC
0901.21~0901.22	RVC 55	CTSH	CTSH(ex. 0901.21, 0901.22)	CTSH
0904.11~0904.12	CC(ex.2103.90)	CC	CTSH (ex.2103.90)	CC
0904.21~0904.22	CC(ex.0710.80, 2103.90)	CC(ex.0709.60, 0710.80)	CC(ex.0710.80, 2103.90)	CC(ex.0709.60, 0710.80)
0906.20	CC	CC	CTSH	CC
0907~0910.30	CC	WO	CC	CC
0910.91~0910.99	CC	CC	CC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일부 원재료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0901호는 커피로 볶지 않은 커피와 볶은 커피, 그리고 기타의 대용물 3가지로 분류된다. 제0901.11호~제0901.12호는 볶지 않은 커피, 즉 생두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생두(제9류)와 커피나무(제6류)는 2단위 세번이 서로 다르지만 생산과정상 재배와 수확이 분리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완전생산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원산지 커피나무 묘목을 계약당사국에서 재배하여 이로부터 커피열매를 수확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901.21호~제0901.22호는 볶은 커피로 ‘제0901.21호 및 제0901.22호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0901.21호 및 제0901.22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볶은 커피를 수입하여 다시 볶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원산지 생두(제0901.11 또는 제0901.12호)를 수입하여 볶은 커피를 생산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상품이 된다.

제0901.90호는 원두커피나 볶은 커피에서 커피의 각과 피 혹은 커피 대용물을 만들게 되는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원산지재료인 원두커피(제9류)나 볶은커피(제9류)에서 생산하여야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다.

차(제0902호)나 마태(제0903호)는 차나무(제6류)로부터 생산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의 의미는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를 수입하여 건조시키고 소포장을 하는 것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0904호는 후추 및 고추류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후추나 고추 모두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열매로 특히 고추의 경우 건조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가 분류된다. 제0904.11호~제0901.12호는 후추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원산지의 부수지 않은 후추(제0901.11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파쇄나 분쇄를 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러나 비원산지의 부수거나 잘게 부순 후추(제0901.12호)를 수입하여 이를 역내에서 분말로 만드는 경우에는 6단위 세번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산지 상품이라 할 수 없다.

제0904.21호~제0904.22호는 고추류로 신선한 고추(제0709호)를 건조하거나 잘게 부순 것이 분류된다. 동 호의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0.80호 및 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신선한 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역내에서 건조하는 경우 2단위 세번변경(제07류→제09류)이 이뤄지므로 원산지상품으로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무역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건조한 고추(제0904.21호)를 수입하여 이를 잘게 부순 경우(제0904.22호)에는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냉동고추(제0710.80호)나 고추조제품(제2103.90호)로부터 동호에 속하는 고추류를 생산한다면 이들 재료는 모두 원산지재료이어야 한다.

제0905호는 바닐라열매와 바닐라 가루가 분류된다. 동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바닐라 식물(제6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재매 및 수확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바닐라열매(제0905.10호)를 수입하여 이를 잘게 부순 경우(제0905.20호) 2단위 세번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바닐라 열매의 경우 역내에서 완전생산이 이뤄져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0906호는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으로 제0906.11~19호는 부수지 않은 계피가 분류되고, 제0906.20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계피가 분류된다. 부수지 않은 계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동 호의 계피는 계피나무의 어린 가지의 내피를 벗겨 생산하므로 결국 완전생산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0906.20호의 부순 계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부수지 않은 계피(제0906.11~19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분쇄하거나 분말을 내는 경우 6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0907~제0910호에는 정향, 육두구, 아니스 등의 기타향신료가 분류되는데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이 호의 향신료들 역시 해당 식물로부터 채취되는 것이므로 결국 완전생산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향신 식물을 역내에서 재배하고 이로부터 수확한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제9류의 품목에 대하여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볶은 커피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부가가치기준(RVC 55), 호주와 뉴질랜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캐나다는 특정소호를 제외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볶은 커피(제0901.21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다시 로스팅하여 볶은 커피(제0901.22호)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만, 캐나다의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비중에 따라 원산지지위가 달라질 것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고춧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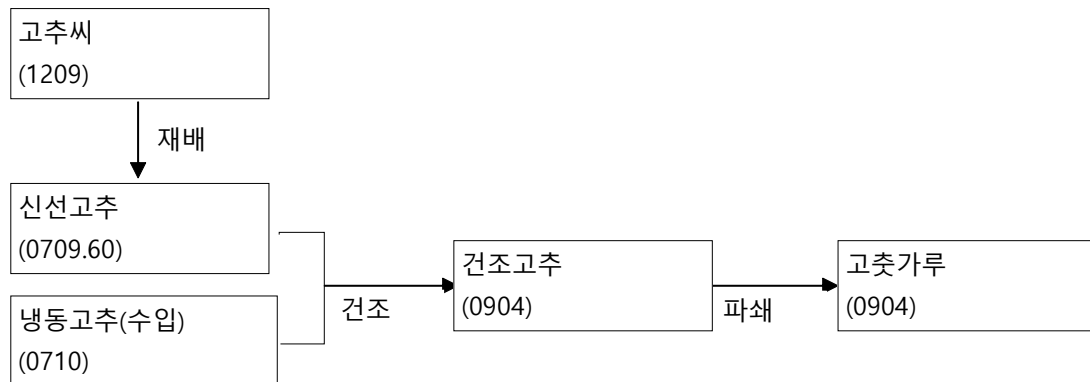
품명	고춧가루(Red pepper powder)
세번	0904.22.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0.80호 및 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캐나다로 수출되는 대표적인 제9류의 물품은 고춧가루로 김치 등을 만들 때 들어가는 주요 재료로 한국의 여러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된다.

고춧가루의 주요 원재료는 신선 또는 냉장한 고추(HS 제0709.60호)로 고추를 선별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꼭지를 딴 후 씨를 제거하고 세척기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수분이 남은 경우에는 수분을 제거한 후 열풍건조기로 건조시켜 분쇄하는데 분쇄과정에서 금속가루 등은 자석으로 제거한다. 분쇄된 고춧가루는 다시 한 번 곱게 분쇄한 후 자동진동체로 덩어리를 제거하여 균일한 가루를 얻으며 마지막으로 적외선 살균기로 살균하는 과정을 거친다.

< 고춧가루 생산공정 >



HS 제0904호에 분류되는 고춧가루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호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신선고추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건조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경우 류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나, 건조고추(제9류)를 수입하여 이를 파쇄하여 고춧가루(제9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냉동고추(제07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건조한 후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경우 류변경은 발생하나 특정호(제0710.80호) 완전생산요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10류 곡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밀리트(millet)이나 카나리시드(canary seeds), 그 밖의 곡물

2. 제1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0류의 對캐나다 수출실적은 '14년 기준 55천불이며, 수입은 169,610천불로 169,555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동일연도에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14년 전세계 교역은 4,199,674천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1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3,800	4,832,224	-4,828,425	4,316	4,203,990	-4,199,674
對싱가포르	101	0	98	152	0	152
對호 주	1,475	433,004	-431,541	1,570	418,252	-416,682
對캐 나 다	17	89,434	-89,432	55	169,610	-169,555
對뉴질랜드	46	0	44	185	0	185

나. 주요 수출물품

제10류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1006301000(맵쌀)으로 45천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로 높은 품목은 1003909000(보리)로 캐나다로 3천불 수출되었다.

HS 제1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006301000	152	1006301000	1,294	1006301000	45	1006301000	109
2	1001991090	0	1006302000	162	1003909000	3	1006201000	70
3	1001999090	0	1003903000	68	1005909000	3	1006202000	6
4	1002900000	0	1006201000	12	1006201000	3	1003909000	0
5	1005901000	0	1008291000	11	1006202000	1	1004100000	0
6	1005902000	0	1005909000	9	1001991090	0	1004900000	0
7	1005909000	0	1007900000	8	1001992090	0	1005909000	0
8	1006400000	0	1008900000	3	1001999090	0	1008500000	0
9	1008299000	0	1006202000	2	1002100000	0	1008900000	0
10	1008900000	0	1008299000	1	1002900000	0	-	-

3.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10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0	CC	WO	CC	WO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0류에 분류되는 곡물은 일반적으로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 상관없이 낱알형태 이고 껍질을 벗기지 않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만 쌀의 경우에는 현미나 정미된 것도 제10류에 분류된다. 그러므로 제10류에 분류되는 곡물들은 종자와 재배 후 수확되는 것이 동일 류에 속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의 의미는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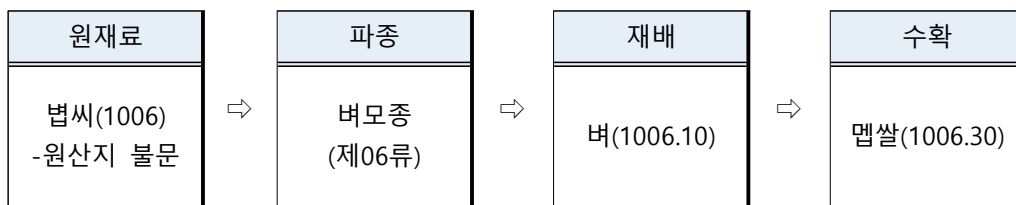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국가들은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이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의 품목분류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의미가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므로 영연방국가 모두 제1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명	멥쌀(Nonglutinous)
세번	1006.3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제10류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쌀이다. 쌀은 벼씨를 파종하여 벼 모종이 성장하면 벼로부터 수확한다.

< 쌀 생산과정 >



쌀은 원산지결정기준은 류변경이나 쌀의 수확은 같은류에 속하는 벼(제10류)로부터 이뤄지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식물성생산품의 경우 완전생산의 충족요건이 ‘재배 및 수확’이므로 멥쌀이 수확되는 벼가 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되면 되므로 벼씨 또는 벼모종은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더라도 멥쌀을 수확하기 위한 벼가 국내에서 재배·수확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의 고운가루(flour)
1102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의 고운가루(flour)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groats) · 거친 가루(meal)와 펠릿(pellets)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d)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이나 거칠게 뿔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germ)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d) 모양인 것이나 잘게 부순 것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d) · 알갱이와 펠릿(pellets)
1106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제0714호의 사고(sago) · 뿌리.괴경이나 제8류 생산품의 고운가루(flour) · 거친 가루(meal)와 가루(powder)
1107	맥아(볶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1류의 '14년 기준 대세계 무역은 235,769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로의 무역수지 역시 349천불,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133천불, 수입은 28,057천불을 나타내었다.

HS 제1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59,197	254,627	-195,430	61,339	297,108	-235,769
對싱가포르	2,691	2,524	163	2,644	2,295	349
對호 주	499	79,331	-78,843	321	94,010	-93,689
對캐 나 다	183	19,970	-19,799	133	28,057	-27,924
對뉴질랜드	87	0	83	97	23	74

나. 주요 수출물품

제11류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1102909000이며, '14년 기준 27천불을 수출하였다. 이외에 1104299000와 1108191000가 각각 1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HS 제1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101001000	1,644	1101001000	247	1102909000	27	1101001000	82
2	1108121000	940	1104199000	20	1104299000	17	1102909000	4
3	1108129000	32	1108130000	16	1108191000	17	1104191000	4
4	1103199000	23	1105100000	9	1103199000	12	1103199000	2
5	1102909000	3	1103199000	7	1101001000	11	1107100000	2
6	1106300000	2	1107100000	5	1106300000	10	1108130000	2
7	1102200000	0	1102909000	5	1102200000	10	1104192000	1
8	1104199000	0	1108129000	4	1104292000	6	1102200000	0
9	1104299000	0	1104120000	3	1105200000	5	1102903000	0
10	1104309000	0	1104192000	2	1107100000	4	1103193000	0

3. 제1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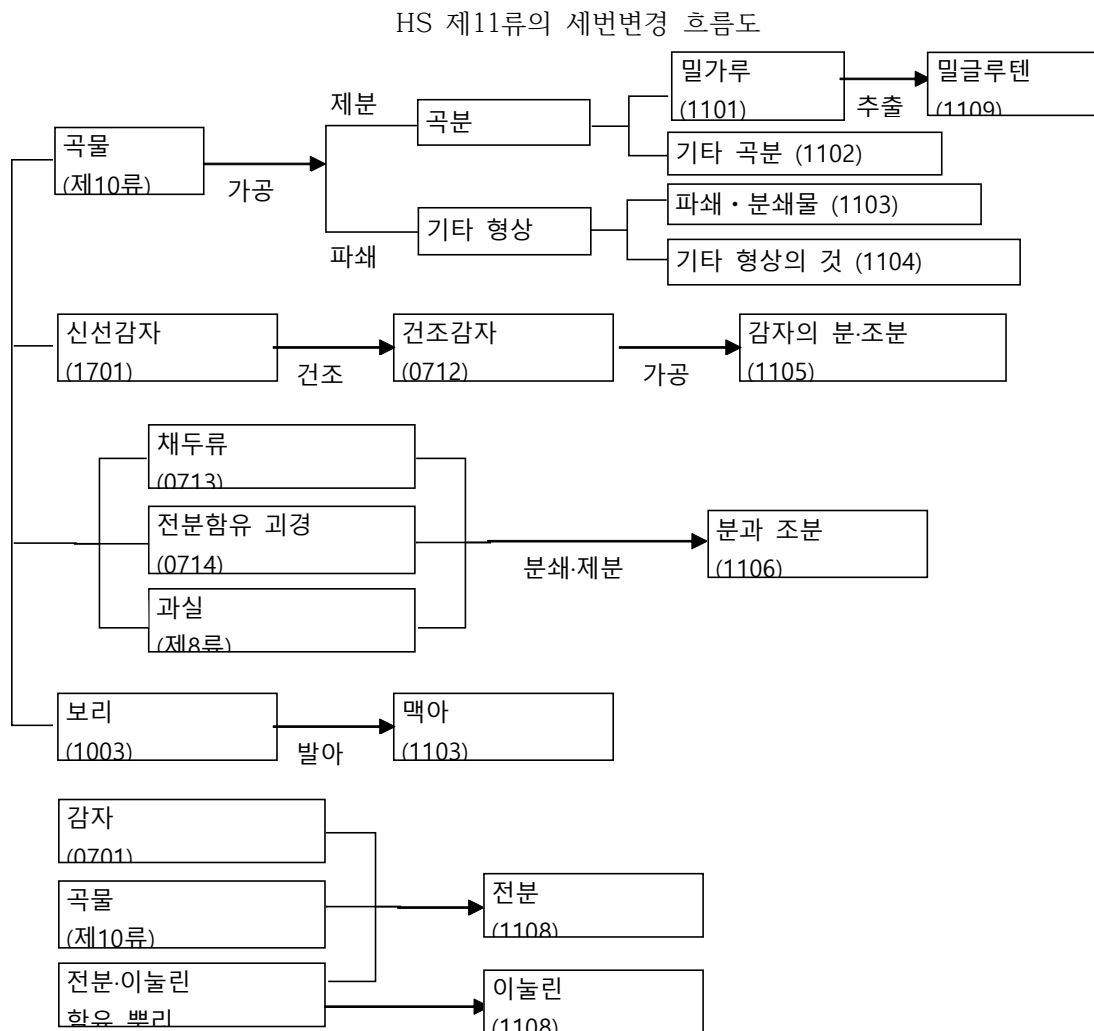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1101~1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105~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101~1104	CC (ex.10)	CC (ex.10)	CC (ex.1006)	CC (ex.10)
1105	CC (ex.0701)	CC (ex.07)	CC	CC (ex.07)
1106	CC (ex.0713, 0714, 08)	CC (ex.07, 08)	CC	CC (ex.07, 08)
1107	CC+RVC 45	CC (ex.10)	CC	CC (ex.10)
1108~1109	CC+RVC 45	CC (ex.07, 10)	CC	CC (ex.07, 1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다만 제1006호의 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1006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이 요구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11류는 제분공업의 생산품으로 주로 제10류의 곡물들을 제분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비원산지 곡물(제10류)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분과정을 거쳐 11류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쌀(제1006호)을 수입하여 제11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쌀(제1006호)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개국 비교분석) 제11류에 대해 영연방국가들은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 원재료의 원산지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일한 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주로 제7류, 8류, 10

류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특정호 및 특정류의 원산지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107호~제1109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더불어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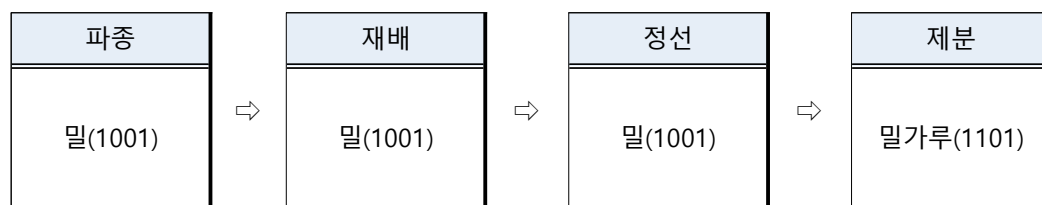
캐나다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제11류의 물품 전반에 걸쳐 제7류, 제8류, 제10류의 재료에 사용에 대하여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폭넓게 제한하는 것과 달리 제1101호~제1104호의 물품에만 이를 적요하고 그 외의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 단일 기준을 택한 특징을 보인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품명	밀가루(Wheat flour)
세번	1101.0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제10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수출품 중 하나인 밀가루는 HS 제10류에 분류되는 밀의 배유부분을 제분해 가루로 만든 것이다. 밀가루는 먼저 정선공정을 거쳐 원료(밀) 중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는 분쇄가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정선된 밀은 크기별로 분류한 후 여러 차례 분쇄과정을 거쳐 밀가루가 생산된다.

< 밀가루 생산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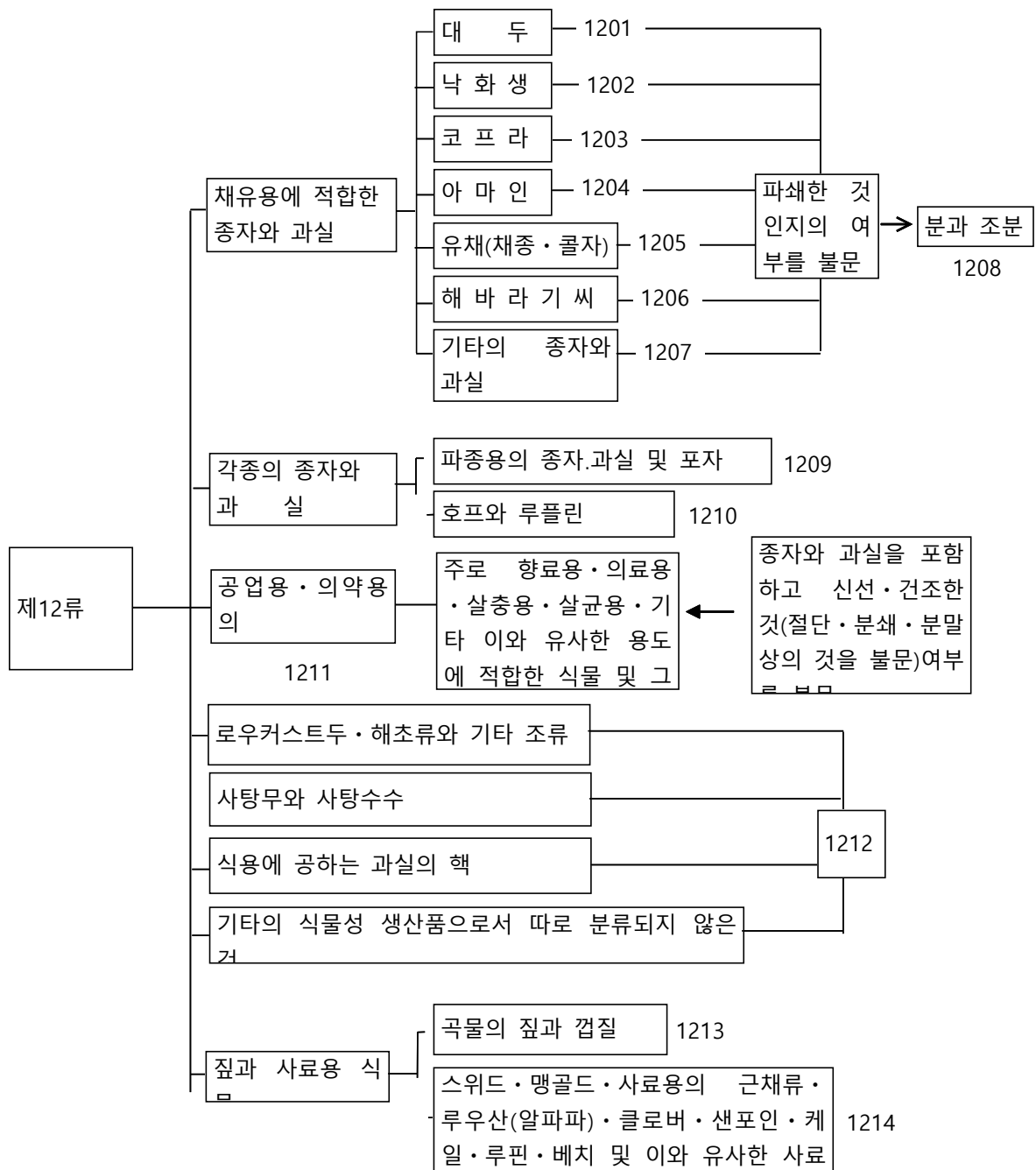
밀가루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HS 제11류가 아닌 물품이 HS 제11류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나, 원료인 밀(HS 제1001호)은 계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이나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201	대두(파쇄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거나 파쇄 여부를 불문한다)
1203	코프라(copra)
1204	아마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rape)나 콜자(colza)]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 씨(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9	파종용 종자·과실과 포자
1210	홉 콘(hop cones)(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하거나 가루로 하거나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루플린(lupulin)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분쇄나 가루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s).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 여부를 불문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분쇄·압착하거나 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14	스위드(swedes)·맹골드(mangolds)·사료용 뿌리채소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s)·베치(vetches)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생산품(펠릿 모양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2류의 품목분류 체계도]



2. 제1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2류의 對개나나 수출실적은 4,235천달러이며, 수입은 17,908천달러이다. 무역수지는 13,673천달러 적자로 파악되었다.

HS 제1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世 계	291,959	1,756,400	-1,464,442	293,805	1,863,100	-1,569,295
對싱가포르	2,462	8	2,439	2,705	0	2,705
對호 주	1,670	142,138	-140,497	1,570	178,154	-176,584
對캐 나 다	3,456	64,706	-61,281	4,235	17,908	-13,673
對뉴질랜드	538	8,818	-8,297	615	9,615	-9,000

나. 주요 수출물품

제12류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1211201391(홍삼)은 2,891천 달러이며, 1212212040(냉동미역)가 371천 달러로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게 파악되었다.

HS 제1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212211010	1,369	1212212040	389	1211201391	2,891	1212212040	190
2	1211201391	836	1212212010	368	1212212040	371	1212211010	111
3	1211201319	162	1209919000	289	1212211010	254	1209914000	79
4	1209919000	118	1212211010	140	1212212010	225	1212212010	76
5	1212212040	55	1211201391	123	1211201311	133	1209919000	71
6	1211202220	46	1209915000	55	1212212020	123	1212211090	30
7	1211202210	32	1212215090	46	1212215090	59	1212212020	23
8	1211201399	29	1209913000	25	1211201399	31	1209911010	14
9	1211202120	16	1212212020	21	1209912000	25	1209912000	12
10	1212212010	15	1212291090	19	1211202210	17	1212215090	4

3. 제1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1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201~1202.41 1203~1207 1209 1212~1213	CC	WO	CC	WO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202.42	CC	CC	CC	WO
1208 1210 1214	CC	CC	CC	CC
1211	CC (ex.2106.90)	WO	CC	WO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2류에는 대두, 땅콩 등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 제12류 역시 제1류와 마찬가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류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완전생산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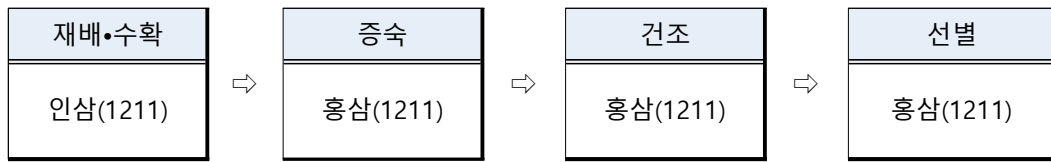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제1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모든 품목에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품목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거나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껍데기를 벗긴 땅콩(제1202.42)의 경우 뉴질랜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국가들은 모두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땅콩은 12류에 분류되므로 결국 2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의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되어 국가간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홍삼)

품명	홍삼(Red ginseng))
세번	1211.20.1391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홍삼 제조과정>



홍삼은 인삼의 재배 적지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6년근 수삼을 엄선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증기로 찌서 건조시킨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을 띠는 인삼이다. 즉 밭에서 캔 수삼은 우선 크기와 모양 등을 따져 1~5등급으로 분류하여 씻기, 찌기, 건조를 거쳐 홍삼으로 변한다.

홍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홍삼의 재료인 인삼과 동일한 류에 속한다. 따라서 류변경은 발생할 수 없고 완전생산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인삼을 이용하여 홍삼으로 제조한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엄격한 원산지기준으로 풀이된다.

제13류 락(lac), 검·수지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301	락(lac), 천연검·수지·검수지와 올레오레진(oleoresins)[예: 발삼(balsams)]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s)과 펙틴산염(pectates),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s) (변성 가공 여부를 불문한다)

2. 제1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3류의 대세계 교역은 '14년 기준 82,737천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14년 기준 對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은 854천달러이며, 수입은 903천달러로 49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1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81,655	169,189	-87,535	83,579	166,316	-82,737
對싱가포르	1,175	273	900	1,538	383	1,155
對호 주	155	1,560	-1,410	198	1,512	-1,314
對캐 나 다	860	1,278	-424	854	903	-49
對뉴질랜드	13	537	-529	11	293	-282

나. 주요 수출물품

제13류의 주요 수출품목은 1302191210로 '14년기준 355천달러이며, 1302390000가 두 번째로 對캐나다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으로 293천달러의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HS 제1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302390000	1,225	1302191210	163	1302191210	355	1302191210	6
2	1302191210	260	1302199099	19	1302390000	293	1302199099	5
3	1302199099	23	1302199039	10	1302199099	179	1302191900	0
4	1302191290	13	1302200000	3	1302191290	19	1302199091	0
5	1302191110	11	1302191110	2	1302120000	7	1302390000	0
6	1302191120	3	1302191190	1	1302319000	1	1301200000	0
7	1302191190	1	1302390000	0	1301902090	0	1301901000	0
8	1302191220	1	1301902010	0	1302191110	0	1302191120	0
9	1302320000	1	1301902090	0	1302191120	0	1302191220	0

3. 제1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13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301~1302.13	CC	CC	CC	CC
1302.20~1302.39				
1302.19	CC	CC (ex.1211.20)	CC	CC (ex.1211.2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 단일의 기준이다.

(기본해설) 제13류에는 주로 식물성의수액과 엑스가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인삼(제1211호)를 수입하여 인삼(홍삼이나 백삼 모두 포함한다)의 수액이나 엑스등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이 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모두 제1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만 제1211.20호의 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제한을 두고 그 외 모든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어 국가간 원산지판단의 차이가 없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홍삼 엑기스)

품명	홍삼엑스(Red ginseng extract)
세번	1302.19.121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홍삼엑스는 홍삼의 원료인 수삼이나 백삼을 98~100℃에서 수 시간 쪄 후 60℃ 전후에서 약 24시간 건조시켜 만들어진 홍삼으로부터 추출한 제품이다.

홍삼의 제조과정은 수삼을 세척한 후 용기에 넣어 가열된 수증기를 이용하여 크기에 따라 일정시간 쪄 후 1차적으로 열풍건조하고, 이후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함량이 12.5~13.5% 정도 될 때까지 건조하고 잔뿌리 제거 등 모양을 가다듬는 작업을 거쳐 개체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등급별로 진공포장한다.

홍삼엑스는 증탕기를 이용하여 제조하는데 물을 가열하여 발생된 증기로 2~5시간 정도 증삼하며, 이후 가열원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30분 정도 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친다.

< 홍삼엑스 생산공정 >



홍삼엑스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홍삼의 재료인 인삼과 동일한 류에 속한다. 따라서 류변경은 발생할 수 없고 완전생산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체약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된 인삼을 이용하여 홍삼을 제조하고 이 홍삼으로부터 엑스를 추출한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造物)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등나무·갈대·골풀·버드나무가지·라피아.청정·표백이나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껍질]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2007년도에 제1402호와 제1403호는 삭제⁴⁾

2. 제1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4류의 대세계 교역은 '14년 기준 51,877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對개나다 교역실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HS 제1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58	43,868	-43,711	190	52,067	-51,877
對싱가포르	0	0	0	0	0	0
對호 주	0	0	-1	0	0	0
對개 나 다	0	0	0	0	0	0
對뉴질랜드	0	42	-42	0	29	-29

3. 제1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14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 제1402호와 제1403호는 무역거래량이 미미하여 2007년도 HS 제4차 개정에서 삭제하여 제1404호로 분류토록 하였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4	CC	CC	CC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 단일 기준이다.

(기본해설) 제14류는 주로 바구니와 같은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인 대나무, 등나무, 갈대,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것이 분류된다. 이 류도 다른 식물성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2단위 세번변경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이다. 따라서 대나무 등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쪼개거나 인발하는 공정을 거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 모두 제1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단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14류의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연방 국가간 차이가 없다.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15류)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이나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3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라드유(lard oil)·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올레오유(oleo-oil)·탈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4	어류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5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506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나 목화씨유(棉實油)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	야자[코프라(copra)유·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유채유[레이프유(rape oil)나 콜자유(colza oil)나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버유(jojoba oil)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 인터에스테라화한 것 · 리에스테라화한 것이나 엘라딘화한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7	마가린, 이 류의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8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 · 진공처리하거나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20	글리세롤[가공하지 않은 것(crude)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와 글리세롤 페액(lyes)
1521	식물성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는 제외한다) · 밀납(beeswax).그 밖의 곤충 납(waxes)과 경납(spermaceti)(정제하거나 착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이나 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2. 제1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5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4년 기준 1,158,846천불로 기록되었고, 對캐나다 무역수지 역시 70,936천불 적자로 나타났다.

HS 제1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86,434	1,125,637	-1,039,204	73,751	1,232,597	-1,158,846
對싱가포르	15,202	12,254	2,921	6,245	16,503	-10,258
對호 주	3,032	51,947	-48,934	3,120	53,263	-50,143
對캐 나 다	363	53,445	-53,102	204	71,140	-70,936
對뉴질랜드	151	2,303	-2,169	147	3,226	-3,079

나. 주요 수출물품

제15류의 對캐나다 대표품목은 1515500000(참기름)로 수출실적은 153천불이며, 1515909090(기타 식물성 기름)가 두 번째 품목으로 30천불을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1515290000(옥수수유)가 4,672천불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HS 제1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515290000	4,672	1517909000	1,680	1515500000	153	1507901010	49
2	1518002000	682	1507901010	1,153	1515909090	30	1518009090	46
3	1517909000	592	1515500000	152	1509900000	8	1515500000	24
4	1515500000	171	1507909000	38	1507909000	6	1509100000	8
5	1515909090	81	1515909090	34	1507901090	3	1507101000	7
6	1507101000	23	1507101000	28	1515901000	2	1515901000	5
7	1516202090	13	1509100000	15	1509100000	1	1515290000	3
8	1504200000	5	1515290000	14	1515290000	1	1514110000	2
9	1515901000	4	1514110000	3	1502101010	0	1515909090	2
10	1509100000	2	1516202050	2	1502101090	0	1509900000	1

3.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1501~15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15.11 ~1515.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15.21 ~1515.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51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물개 및 물개 제품으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17~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501~1510 1512~1515.19 1515.90 1516.20 1521~1522	CC+RVC 45	CC	CC	CTH
1511	RVC 55	CC	CC	CTH
1515.21~1515.50	CC+RVC 45	CC	CC (ex.12)	CTH
1516.10	CC(ex.01,02, 03, 05)	CC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1517~1520	CC+RVC 45	CTH	CC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원산지재료 사용 조합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1501호부터 제1514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동 호에는 동물성이나 식물성의 유지가 분류되므로 역외에서 다른 류에 속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유지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돼지비계(제0209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돈지(제1501호)를 생산하는 경우 돈지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515호에는 제1501호부터 제1514호를 제외한 비휘발성의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 제1515.21호~제1515.50호에 속하는 옥수수유, 피마자유, 참기름을 제외한 제1515호의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다른 류의 식물을 수입하여 1515.11호나 제1515.90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제1515.21호~1515.50호의 경우에는 제12류의 경우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하고 있으므로 제12류를 수입하여 유지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옥수수유, 피마자유, 참기름의 경우 유지를 생산하는 원재료인 종자가 모두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

제1516호에는 동식물성 유지에 특정한 화학적 변형을 가한 유지가 분류된다. 동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다만 물개로 생산한 동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물개를 제외한 제1516호의 물품은 다른 류에 속하는 동식물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유지를

생산하고 화학적 변형을 진행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러나 제15류에 속하는 다른 유지들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화학적 변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류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물개로 생산하는 제1516호의 상품의 경우에는 역외국으로부터 제15류에 속하는 물개유지나 분획물(제1504호)을 수입하여 체약국 내에서 화학적 변형을 거치는 경우 4단위 변경이 이뤄지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517호에서부터 제1520호의 물품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역외에서 다른 류에 속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유지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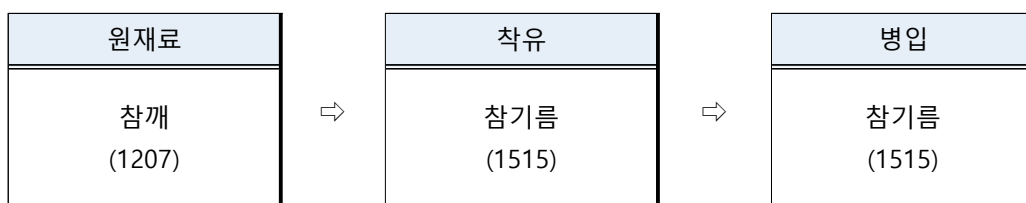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제1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하였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한 반면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참기름은 주원료인 참깨를 착유하여 얻어진 식용의 식물성 유지이다.

품명	참기름(Sesame oil)
세번	1515.5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 참기름 생산과정 >



한-캐나다 FTA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만 제12류의 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제12류)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약상대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된 참깨를 사용하여 참기름을 추출한 경우에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와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24류)

제4부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가루·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와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1601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생산품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식료품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s)과 즙(juices)
1604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어류, 캐비아와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2. 제1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6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4년 기준 458,618천불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연도에 對캐나다로의 수출은 2,808천달러, 수입은 989천불로 1,819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1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30,904	583,278	-352,375	234,226	692,844	-458,618
對싱가포르	496	937	-462	2,397	1,353	1,044
對호 주	4,157	4,957	-824	4,900	4,587	313
對캐 나 다	3,291	2,916	352	2,808	989	1,819
對뉴질랜드	680	15,254	-14,597	767	17,281	-16,514

나. 주요 수출물품

제16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1604204090(어묵)로 989천불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1604199090가 231천불, 1604141011(참치캔)가 207천불이 수출되었다. 특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1604204090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각각 1,421천불, 228천불로 동일하게 수출실적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HS 제1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605519000	1,684	1604204090	1,421	1604204090	949	1604204090	228
2	1602321010	288	1604141011	909	1604199090	231	1604141012	103
3	1604204090	109	1605591010	431	1604141011	207	1604141011	72
4	1605542091	76	1605511000	291	1605519000	205	1605542091	64
5	1604141011	41	1602491000	267	1605101091	188	1602491000	63
6	1603009000	40	1602321010	171	1605542091	166	1605591010	53
7	1602411000	18	1605542091	149	1605591010	136	1604191010	33
8	1605591010	14	1604191010	122	1605511000	131	1604204010	22
9	1604191010	13	1602499000	122	1604320000	101	1602411000	16
10	1605219000	13	1604204010	119	1605542099	75	1604151000	16

3.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1601~1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306호부터 제0308호까지에 해당하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601~1602	CC	CC (ex.01, 02)	CC	CC
1603	CC+RVC 45	CC (ex.01, 02)	CC	CC
1604	CC+RVC 45	CC	CC	CC
1605	CC+RVC 45	CC	CC(ex.0306~0308)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제1605호에 속하는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과 특정 호 원산지재료 사용 결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6류에는 소시지, 햄버거, 밀폐용기에 넣은 수산식품 등 조제식품이 분류된다. 이 류의 원산지 판단은 육류(제2류)나 어류(제3류)로부터 이 류의 조제식품을 생산하면 2단위 세번의 변경으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훈제한 갑각류(제0306호), 훈제한 연체동물(제0307호), 훈제한 수생무척추동물(제0308호)로부터 제1605호의 조제식료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나열된 훈제한 원재료는 모두 원산지 재료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훈제 오징어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조제식품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개국 비교분석) 제1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영연방국가들은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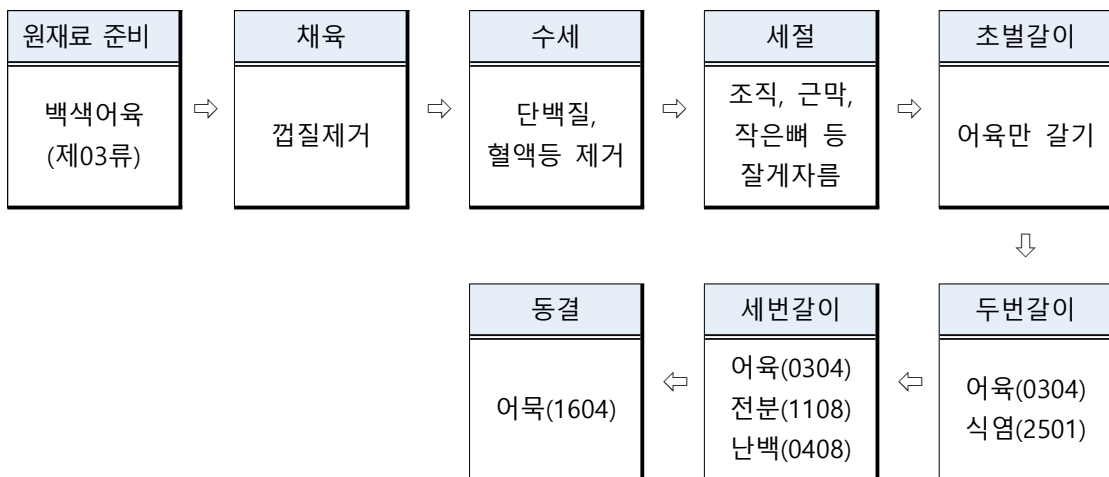
우선 싱가포르는 제1601호~제1602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외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을 규정한다. 호주와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재료 사용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모든 물품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훈제한 갑각류(제0306호), 훈제한 연체동물(제0307호), 훈제한 수생무척추동물(제0308호)로부터 제1605호의 조제식품을 만드는 경우 캐나다는 나열된 훈제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하므로 수입하여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들 훈제한 재료를 수입하여 제1605호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어묵)

품명	생선묵(Fish cake)
세번	1604.20.409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어묵의 제조과정도>



캐나다로 대표적으로 수출되는 제16류의 물품은 생선묵(어묵)으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로의 수출규모도 크게 나타난다. 생선묵의 제조는 백색어육을 식염, 전분, 난백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갈아서 응고시켜 만든다.

어묵은 제1604호에 속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그러므로 어묵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재료인 어육(제3류), 전분(제11류), 난백(제4류)를 수

입하여 역내에서 제조과정을 거치더라도 류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제1605호에 속하는 게맛살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2단위 세번 변경기준과 원재료 완전생산기준으로 어묵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게맛살은 원재료인 게살(제0306호)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701	사탕수수 당이나 사탕무당과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 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 당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 할 때에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2. 제1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17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808,315천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캐나다로의 무역수지 역시 7,877천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HS 제1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23,182	1,295,848	-872,667	438,260	1,246,575	-808,315
對싱가포르	1,306	845	446	957	1,021	-64
對호 주	2,694	398,154	-395,473	3,010	381,777	-378,767
對캐 나 다	488	10,084	-9,609	523	8,400	-7,877
對뉴질랜드	269	1,237	-974	660	1,492	-832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對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1704902090(캔디류)로 247천불을 수출하였으며, 두 번째 수출실적인 높은 품목은 1702909000로 218천불을 캐나다로 수출하였다.

HS 제17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702909000	259	1704902090	2,330	1704902090	247	1702909000	515
2	1701990000	249	1702909000	320	1702909000	218	1704902090	87
3	1704902090	133	1702301000	115	1704100000	20	1704100000	28
4	1702402000	125	1704100000	89	1701990000	13	1701990000	12
5	1704909000	77	1701990000	72	1702903000	12	1702903000	10
6	1702301000	64	1704909000	66	1704909000	8	1704902010	7
7	1702602000	43	1701910000	8	1703901000	2	1704909000	1
8	1702601000	5	1704902010	8	1704902020	2	1702191000	0
9	1702903000	1	1702903000	1	1702602000	1	1702199000	0
10	1704100000	1	1704902020	1	1701121000	0	1702202000	0

3.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1701~1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701.12~1701.14	CC	CC	CC	CTH
1701.91~1701.99	CC	CC	CC	CC
1702.11~1702.60 1703	CC	CTH	CC	CTH
1702.90	CC	CTH (ex.0409)	CC	CTH
1704	CTH+RVC 45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701호부터 제1703호에 속하는 사탕수수당, 당류 등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사탕수수(제12류)를 수입하여 이로부터 사탕수수수당(제1701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704호는 껌이나 캔디와 같은 설탕제품이 분류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이류에 해당하는 당류(1702호)를 수입하여 캔디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제1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대체로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1704호의 설탕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을 규정하고 그 외의 품목들은 2단위 세번변경으로 원산지를 판단한다.

호주는 제1701호의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의해서, 그 외의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한다.

캐나다는 제1704호의 설탕제품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 반면 뉴질랜드는 제1701.91호~제1701.99호에만 2단위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모든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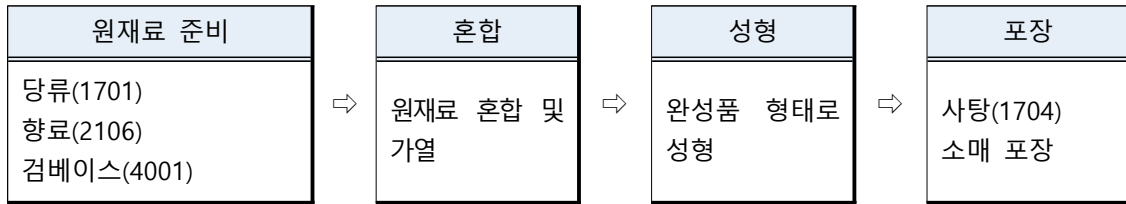
제1702호의 당류를 수입하여 제1704호의 사탕을 생산하는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만,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외에 부가가치기준도 규정하고 있어 수입한 당류의 비중이 협정에서 규정한 이내인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차이가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사탕)

품명	사탕(Candy)
세번	1704.90.209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사탕의 제조과정은 기본적으로 설탕에 원하는 색과 맛을 내는 향료들을 첨가하여 이를 혼합한뒤 가열하여 굳히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사탕 생산공정 >



사탕생산에 가장중요한 원재료는 설탕(1701)으로 설탕을 녹인뒤 여저가지 부가 재료를 첨가하여 고형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한-캐나다 FTA는 사탕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탕과 향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이를 제조하는 경우 호 변경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러나 사탕이나 캔디류(1704)를 수입하여 이로부터 당류를 추출하여 사탕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사탕을 녹여 재가공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8류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whole)인 것이나 파쇄한 것으로서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껍질과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fat)와 유(oil)]
1805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2. 제1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8류의 교역동향은 '14년 기준 캐나다로부터 수출은 13천불이며, 수입은 2,666천불로 파악되었다. '14년 기준 무역수지는 2,653천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HS 제1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51,147	354,592	-303,446	55,104	399,383	-344,279
對싱가포르	206	40,727	-40,536	152	43,241	-43,089
對호 주	2,138	612	1,517	1,446	463	983
對캐 나 다	15	1,637	-1,632	13	2,666	-2,653
對뉴질랜드	91	693	-610	23	922	-899

나. 주요 수출물품

제18류의 對캐나다 대표품목은 1806201000(초콜릿과 초콜릿과자)로 10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 1806100000(코코아 가루)은 '14년 1,203천불을 호주로 수출하였다.

HS 제1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805000000	45	1806100000	1,203	1806201000	10	1806201000	11
2	1806901000	34	1806311000	101	1806321000	3	1806901000	6
3	1806201000	29	1806901000	56	1805000000	0	1806100000	2
4	1806909090	18	1806903091	45	1806100000	0	1806311000	2
5	1806311000	16	1806201000	30	1806209010	0	1806321000	2
6	1806903091	7	1806903010	8	1806209090	0	1804000000	0
7	1806321000	3	1806321000	3	1806311000	0	1805000000	0
8	1801001000	0	1805000000	0	1806319000	0	1806209090	0
9	1803100000	0	1806209010	0	1806329000	0	1806319000	0
10	1804000000	0	1806209090	0	1806901000	0	1806329000	0

3. 제1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1801~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803~1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80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801~1802	CC	CTH	CC	CC
1803~1805	CTH	CTH	CTH	CTH
1806.10~1806.20	CTH+RVC 45	CTH	CTSH	CTH
1806.31 1806.90	CTH+RVC 45	CTSH	CTSH	CTSH
1806.32	CTH+RVC 45	CTSH	CTS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 3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18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및 코코아 조제품이 분류된다. 제1801호~제180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동 호는 코코아

콩과 코코아의 껍데기나 껍질로 완전획득 되거나 다른 류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이 류로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803호~제1805호는 코코아 페이스트, 버터, 분말 등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코코아 콩(제1801호)를 수입하여 코코아 분말을 만들면 호변경이 발생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806호는 초콜렛과 코코아 조제품이 분류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코코아 가루(제1806.10호)를 수입하여 초콜릿(제1806.32호)을 만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18류의 영연방 국가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만 유일하게 부가가치기준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국가들은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초콜릿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 호주와 캐나다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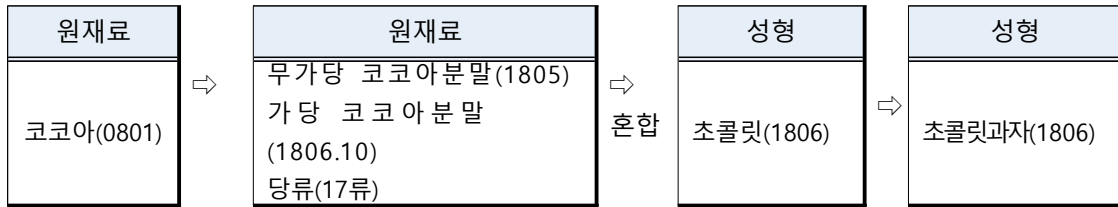
만약 설탕이 가미된 코코아 가루(제1806.10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초콜릿(제1806.32호)를 만들면 호주와 캐나다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만,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역시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품명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Chocolate and chocolate confectionary)
세번	1806.2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코코아(HS 제0801호)를 수확하여 씨를 빼낸 뒤 며칠 동안 발효한 후 말리기·씻기·볶기·갈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초콜릿 리큐어라고 하는 페이스트를 얻으며, 이 페이스트를 압착시켜 코코아분말(HS 제1805호)을 얻고 이를 혼합 및 성형하여 초콜릿 과자(HS 제1806호)를 만든다.

< 초콜릿과자 생산공정 >



한-캐나다 FTA는 초콜릿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코코아 가루(제1805호)와 당류(제17류)를 수입하여 초콜릿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이 된다. 또한 설탕이 첨가된 코코아 가루(제1806.10호)를 수입하여 초콜릿(제1806.32호)을 만들어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9류 곡물 · 고운가루 · 전분이나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1901	맥아추출물, 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 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질로 속을 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 마카로니 · 누들 · 라자니아 · 뇨키 · 레비오리 · 카넬로니와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스쿠스(조제 여부를 불문한다)
1903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s) 모양 · 낱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siftings)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4	곡물이나 곡물 생산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wafers)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s)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

2. 제1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19류의 교역동향은 '14년 기준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의 경우 20,776천불이며, 수입은 3,506천불로 무역수지는 17,270을 기록하였다.

HS 제1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761,064	531,541	229,522	842,432	612,677	229,755
對싱가포르	10,638	1,226	9,395	14,438	1,343	13,095
對호 주	28,850	15,017	13,810	31,200	8,287	22,913
對개 나 다	19,425	3,489	15,911	20,776	3,506	17,270
對뉴질랜드	7,957	14,268	-6,335	8,271	20,125	-11,854

나. 주요 수출물품

제19류의 캐나다로의 대표품목은 1902301010(라면)이며 '14년 기준 수출실적은 6,360천불이며 두 번째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1902301090(인스턴트 면류-라면 제외)이며 3,208천불로 파악되었다.

HS 제1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1905901040	5,470	1902301010	10,705	1902301010	6,360	1902301010	3,207
2	1902301010	3,324	1905901090	5,158	1902301090	3,208	1905901090	1,783
3	1902191000	851	1905901040	4,373	1905901040	2,461	1905901040	835
4	1902200000	694	1904109000	1,491	1905901090	1,987	1904109000	349
5	1902301090	692	1902191000	1,344	1902191000	1,560	1902191000	324
6	1901909091	605	1905901030	1,171	1902200000	1,112	1902200000	310
7	1901209000	603	1902200000	1,030	1904109000	1,012	1902301090	264
8	1905901090	485	1904101000	967	1901909091	528	1905901030	223
9	1902193000	395	1902301090	872	1902199000	528	1902309000	166
10	1905901030	370	1905909090	855	1901909099	479	1904101000	156

3. 제1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19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 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9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버터지방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혼합물과 가루반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 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9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 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902~1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904~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901.10	CC (ex.0401~0404, 10, 11)	CTH (ex.04)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우유고형분포함: CC(ex.0401~0406, 1006,1102~1104) -기타: CC(ex.1006,1102 ~1104)	CTH
1901.20	CC (ex.0401~0404, 10, 11)	CC (ex.04,1006, 1102~1104)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버터지방포함:CC (ex.0401~0406,10 06,1102~1104) -기타: CC(ex.1006,1102 ~1104)	CTH (ex.1106, 1102~1104)
1901.90	CC (ex.0401~0404, 10, 11)	CC (ex.04,1106, 1102~1104)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우유고형분포함: CC(ex.0401~0406, 1006,1102~1104) -기타: CC(ex.1006,1102 ~1104)	CTH (ex.1106, 1102~1104)
1902.11~1902.19	CTH+RVC 45	CTH	CTH	CTH
1902.20~1902.40	CTH+RVC 45	CTSH	CTH	CTH
1903	CTH+RVC 45	CTH	CTH	CC
1904.10~1904.30	CTH+RVC 45	CTH	CC	CC
1904.90	CTH+RVC 45	CC (ex.1006)	CC	CTH (ex.1006)
1905	CTH+RVC 45	CTH	CC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19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쌀로 제조하는 식품의 경우 쌀제품은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구한다.

(기본해설) 제1901.10호는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으로 곡분을 주요 재료로 하여 제조된다. 이 호는 우유가 함유되는 제품과 그렇지 않는 제품으로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우유가 함유되는 제품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제4류의 낙농품과 제10류 및 제11류의 쌀제품은 원산지상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원산지 곡분을(쌀은 제외) 수입하여 원산지 낙농품을 조합하여 유아용 조제식품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제10류 및 11류의 쌀제품은 원산지상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901.20호는 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반죽으로 버터함유량이 25%이상인 물품과 그 외의 물품으로 구분된다. 버터함유량이 25%이상인 물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되 제4류의 낙농품과 제10류 및 제11류의 쌀제품은 원산지상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901.10호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버터함유량이 25%이하인 물품도 제1901.10호의 기타물품과 동일하게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901.90호 역시 제1901.10호와 마찬가지로 우유함유량에 따라 구분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라면, 국수 등이 포함되는 제1902호와 제1903호의 타피오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밀, 밀가루 등을 역외에서 수입하여 역내에서 파스타나 국수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이 된다. 또한 제1901호의 전분으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만드는 경우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904호 및 제1905호는 콘플레이크와 베이커리 제품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0류 또는 제11류의 곡물이나 곡분을 수입하여 상품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19류의 품목에 대하여 영연방 4개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인 캐나다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동일세번(제1901호)이라도 ‘우유 고형분’이 포함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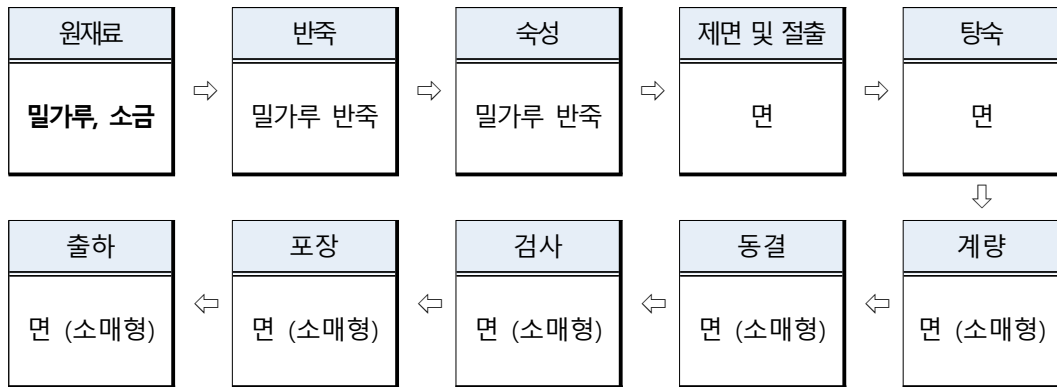
또한 제1901호의 경우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4류의 원재료는 원산지 지위일 것을 요하나 뉴질랜드는 제4류의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인스턴트 면류, 라면)

품명	인스턴트 면류, 라면(Instant noodles, Ramen)
세번	1902.30.101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라면 제품은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면류의 형태로 판매되며 소맥분으로 1차 가공된 라면과 기타 소스류가 가미된 스프가 동봉되어 있다. 라면은 일반적으로 밀가루와 전분, 비타민 등 면의 재료를 배합하여 가늘고 긴 형태로 압연한 후 기름에 튀기는 공정을 거쳐 제조한다.

< 인스턴트라면 생산공정 >



< 인스턴트라면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밀가루	1101.00	밀가루가 주성분인 라면이 전체 완제품 배합비율의 70% 이상을 차지
설 탕	1701	정백당으로 스프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첨가
소 금	2501.00	천일염의 정제한 정제염으로 라면과 스프의 조미를 위해 완제품의 7% 정도 함유
멸치분	0305.10	건조상태의 멸치육으로 건더기 스프에 분말형태로 첨가
스 프	2103.90	라면과 동봉된 스프

한-캐나다 FTA의 인스턴트라면(HS 제1902.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위의 표에서 제시된 원재료의 세번이 4단위 기준으로 최종재인 라면의 세번과 다르므로 모든 원재료가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4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2006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실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 것(drainage).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s)·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와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s)(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주정의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2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0류의 교역은 수출은 2,814천불이며, 수입은 6,310천불로 '14년 무역수지는 3,496천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외에 동일연도에 싱가포르와 호주의 경우 각각 '14년 1,616천불, 1,482천불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2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世 계	186,021	884,048	-698,027	195,286	918,910	-723,624
對싱가포르	2,171	1,529	622	2,322	706	1,616
對호 주	3,312	3,137	134	4,101	2,619	1,482
對개 나 다	2,795	3,422	-665	2,814	6,310	-3,496
對뉴질랜드	1,012	3,179	-2,200	1,077	5,376	-4,299

나. 주요 수출물품

제20류의 '14년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상위 품목은 2005991000(김치)로 1,457천 불이며, 2008301000(유자)이 427천불로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2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005991000	1,211	2005991000	2,051	2005991000	1,457	2005991000	847
2	2008301000	484	2005999000	278	2008301000	427	2005999000	44
3	2008999000	226	2009909000	261	2005999000	259	2004909000	40
4	2009891090	126	2008999000	252	2008999000	179	2008999000	26
5	2009399000	68	2008301000	227	2001909090	97	2001909090	23
6	2009901090	56	2009892000	202	2005512000	66	2008199000	12
7	2005999000	24	2001909090	173	2005519000	51	2001100000	10
8	2008993000	16	2004909000	96	2009909000	46	2008301000	10
9	2009290000	12	2008701000	60	2008199000	36	2005512000	9
10	2008200000	11	2008191000	53	2009891090	33	2009319000	8

3. 제2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2001~2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09.11 ~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009.41 ~2009.8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크랜베리 혼합주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001~2007	CTH+RVC 45	CTH	CTH	CC
2008	CTH+RVC 45	CTH	CTH	CTH
2009.11~2009.39	CTH+RVC 45	CTH or RVC40	CC (ex.0805)	CC or RVC40
2009.41~2009.89	CTH+RVC 45	CTH or RVC40	CC	CC or RVC40
2009.90	RVC 55	CTH or RVC4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크랜베리 혼합 주스: CTSH -기타: CC	CC or RVC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20류의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호 완전생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주스를 제외한 채소조제품(제2001호~제2008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보통 이들 채소조제품들은 다른류에 속하는 채소를 수입하여 가공할 경우 류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쉽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제2005호의 채소조제품을 수입하여 냉동하여 제2004호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때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제2009호에는 과일 및 채소주스가 분류된다. 제2009.11호~제2009.39호까지는 오렌지와 같은 시트러스계열의 주스가 분류되고 제2009.41호~제2009.89호까지는 시트러스 계열을 제외한 단일의 과일 또는 채소주스가 분류된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함유하는 혼합주스는 제2009.90호에 분류된다.

오렌지 주스 등의 감귤류의 주스는 감귤류(제0805호)가 완전획득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혼합주스 중에서 크랜베리 혼합주스는 제2009호에 속하는 다른 주스(제2009.89호의 크랜베리 주스)를 수입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생산하여도 소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 외의 주스들은 모두 비원산지 과일이나 채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주스를 만들면 류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이 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국가들은 제2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혼합주스(제2009.90호)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을 규정하고 혼합주스는 부가가치기준만 채택하였다.

호주는 주스(제2009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을 택하고 주스를 제외한 모든 품목(제2001호~제2008호)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스(제2009호)를 제외한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주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스 중에서 크랜베리 혼합주스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여 가장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한 특징이 있다.

뉴질랜드는 제2001호~제2007호의 조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제2008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그 외 주스(제2009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을 택하고 있다. 제2008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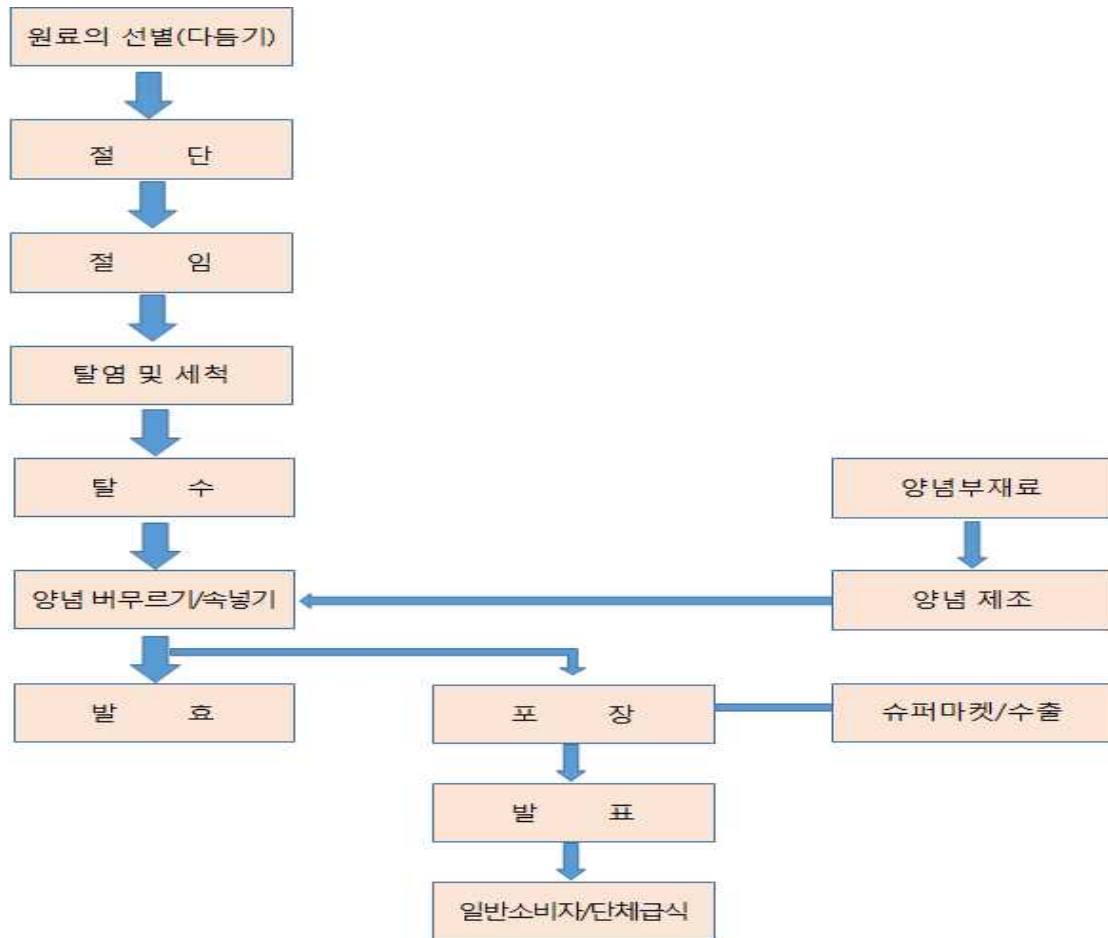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김치)

품명	김치(Kim-chi®)
세번	2005.99.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 김치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배추	0704.90-2000	김치의 주요 재료
고춧가루	0904.22-0000	
마늘	0703.20-1000	
생강	0910.11-1000	김치의 주요 양념재료
대파	0703.90-9000	
양파	0703.10-1000	
플라스틱제 용기	3923.30-0000	상품의 포장 용기 재료
플라스틱제 뚜껑	3923.50-0000	
스티커	3919.90-9000	
라벨	4821.10-0000	

<배추김치의 일반적 제조과정>



한-캐나다 FTA는 김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김치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원재료과 상품의 4단위 세번을 비교하여 변동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된 김치의 주요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한국에서 양념하여 배추김치를 생산하는 경우 원재료의 4단위 세번(제0704호 등)과 상품의 4단위 세번(제2005호)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한-캐나다 FTA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들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배추를 절임하고 양념을 버무리 배추김치를 생산하여도 한국산으로 인정될 것이다.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101	커피·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나 마테(mate)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2. 제2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1류의 '14년 캐나다로의 수출은 21,281천불이며 수입은 32,184천불로 10,903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HS 제2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015,076	1,174,527	-159,452	1,060,672	1,295,627	-234,955
對싱가포르	18,303	20,329	-2,050	19,614	22,569	-2,955
對호 주	23,885	39,674	-15,831	25,200	42,277	-17,077
對캐 나 다	19,151	29,163	-10,043	21,281	32,184	-10,903
對뉴질랜드	10,926	44,067	-33,171	11,578	65,053	-53,475

나. 주요 수출물품

제21류의 '14년 對캐나다 주요 수출물품은 2106904010이며, 10,841천불을 수출하였다.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105001090로 2,506천불이다.

HS 제2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106909099	5,222	2106904010	4,834	2106904010	10,841	2101129010	7,536
2	2106909010	4,085	2101111000	4,760	2105001090	2,506	2106904010	1,096
3	2101111000	2,590	2106909099	4,455	2103909090	1,599	2105001090	563
4	2103909090	1,454	2103909090	2,380	2103901030	1,557	2103909090	318
5	2106904010	1,081	2103909010	1,212	2103901010	441	2103100000	300
6	2106901020	894	2103901030	1,173	2103100000	415	2103901030	248
7	2103909010	649	2105001090	808	2106909099	413	2103909010	177
8	2101129010	619	2103909030	798	2105009090	413	2101309000	160
9	2103901030	501	2101129010	750	2101129010	383	2106909099	147
10	2105001090	495	2103100000	712	2103909030	334	2103909030	136

3. 제2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2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3.10 ~21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고추장(hot pepper past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9.60호, 제0904.21호 및 제0904.2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된장(bean past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101.11 ~2101.12	RVC 55	CTH	CC	CTH
2101.20 ~2101.30	CTH+RVC 45	CTH	CC	CTH
2102	CTH	CTH	CTH	CTH
2103.10 ~2103.30	CTH+RVC 45	CTH	CTH	CTSH
2103.90	CTH+RVC 45	CTS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고추장 :CC(ex.0709.60,0904.2 1,0904.22) -된장: CC(ex,1201) -기타: CTSH	CTSH or RVC35
2104	CTH+RVC 45	CTSH	CTH	CTSH
2105	CC+RVC 45	CTH	CTH(ex.0401~0406, 1901.90*)	CTH
2106.10	CTH+RVC 45	CTS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우유고형분포함:CC(ex.0401~0406, 1901.90*) -기타:CTH(ex.1211.20 ,1302.19)	CTSH
2106.90	CTH+RVC 45	CTSH(ex.1211.20, 1302.1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우유고형분포함:CC(ex.0401~0406, 1901.90*) -기타:CTH(ex.1211.20 ,1302.19)	CTSH(ex.1211.20,13 02.19) or RVC 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인스턴트 커피, 간장 등 소스, 아이스크림, 인삼차, 조제김 등이 분류되는 제2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호 완전획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101호는 인스턴트 커피나 차가 분류되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커피나 차(제9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생

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102호는 효모와 베이킹 파우더 등으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입하여 역내에서 이 호의 효모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제2103호에는 여러 성분으로 만들어진 소스류가 분류된다. 제2013.10호~제2103.30호는 간장, 토마토소스, 겨자소스로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이 호에 속하는 상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이 된다. 예를 들어 토마토 페이스트(제2002.90호)를 수입하여 토마토 케첩(제2103.20호)을 만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103.90호에는 기타의 소스가 분류되는데 주로 장류와 마요네즈, 카레 등이 이에 속한다. 고추장과 된장은 다른 류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다만 주요 재료인 고추와 대두는 완전획득된 것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그 밖에 이 호에 속하는 소스는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을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2103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혼합소스를 만드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다.

제2104호는 수프와 브로드 및 이들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른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이호의 물품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제2105호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제2106호는 기타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제4류의 낙농품이나 제1901.90호의 낙농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재료들은 완전 획득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인삼을 이용한 조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인삼이나 인삼추출액(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은 완전획득된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21류의 영연방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거의 유사한 결정기준으로 구성되고,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와 달리 대부분의 품목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점. 캐나다는 동일세번임에서 개별 품목을 구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토마토 페이스트(제2002.90호)를 수입하여 토마토 케첩(제2103.20호)를 만드는 경우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뉴질랜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당연히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조제 김)

품명	조제 김 (Laver)	
세번	2106.90.401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 조제김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마른 김	1212.21	조제김의 주요 재료
실리카 겔	2811.22	조제김의 방습제 기능을 하는 재료
참기름	1516.20	마른 김에 첨가하는 재료
정제염	2501.00	마른 김에 첨가하는 재료
포장지	3921.90	포장재료

한-캐나다 FTA는 조제김이 분류되는 제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제김은 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기타’품목에 해당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만약 괄호안의 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사용된다면 이들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위의 표와 같은 조제김의 주요원재료 구성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보면 제시된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한국에서 생산하여도 완성품인 조제김의 4단위 세번(제2106호)와 원재료들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22류 음료·주류와 식초

제22류에는 ‘음료·주류와 식초’를 분류하며, 다음 표22와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얼음과 눈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2203	맥주(맥아로 만든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grape must)(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은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s)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9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 제2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2류의 對개나나 교역실적은 ‘14년기준 수출의 경우 5,850천불이고 수입은 1,592천불로 4,258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2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707,165	808,318	-101,153	769,727	894,654	-124,927
對싱가포르	12,080	869	11,194	7,654	300	7,354
對호 주	12,530	23,584	-11,075	11,686	15,578	-3,892
對개 나 나	5,623	1,490	4,118	5,850	1,592	4,258
對뉴질랜드	3,125	9,308	-6,206	4,160	10,431	-6,271

나. 주요 수출물품

제22류의 對캐나다 대표품목은 ‘14년 기준 2202909000(음료)로 3,632천불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208904000(소주)로 772천불을 캐나다로 수출하였다.

HS 제2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203000000	3,966	2202909000	4,630	2202909000	3,632	2202909000	1,545
2	2202902000	873	2203000000	3,290	2208904000	772	2202902000	853
3	2208904000	688	2208904000	1,164	2202902000	334	2203000000	567
4	2202909000	560	2202101000	530	2202109000	280	2208600000	548
5	2202101000	469	2202902000	479	2202101000	215	2208904000	130
6	2208301000	289	2206002030	417	2206002030	102	2202101000	122
7	2206002030	192	2201100000	190	2202901000	91	2202109000	101
8	2208600000	158	2206001090	172	2203000000	69	2201100000	100
9	2202901000	137	2202109000	137	2201100000	64	2206001090	51
10	2201100000	77	2202901000	131	2206001090	62	2206002030	45

3. 제2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를 함유한 음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3~2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8.30	제2208.3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203호부터 제2208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알코올 용량이 해당 물품의 알코올 전체 용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208.40 ~2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201	CC	CTH	CC	CC
2202.10	CTH+RVC 45	CTH	CTH	CC
2202.90	CTH+RVC 45	CTH (ex.1211.20, 1302.1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우유를 함유한 음료: CTH(ex.0401~0406 ,1901.90) -기타: CTH	CTH (ex.1211.20, 1302.19)
2203~2208.20 2208.40~2209	CTH	CTH	CTH	CTH
2208.30	CTH	CTH	From 2208.30 +VNM 10 of 2203~2208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22류는 음료와 주류가 분류된다. 이 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4단위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재료(낙농품 등)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을 두고 있다.

(기본해설) 제2201호는 모든 종류의 물이 분류되는데 완전 획득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202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이 첨가된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음료는 다른호에 속하는 재료, 예를 들어 물(제2201호)를 수입하여 감미료를 첨가하여 음료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다만 우유를 함유하는 음료의 경우 낙농품(제4류 또는 제1901.90호)은 완전 획득되어야만 한다.

제2203호부터 제2207호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분류된다.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주류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포도주(제2204호)와 레모네이드(제2202호)를 수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주류를 만든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된다.

제2208호에는 위스키, 코냑, 소주와 같은 기타의 주류가 분류된다. 제2208.20호 및 2208.40호~2208.90호의 주류는 다른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주정(제2207호)를 수입하여 이를 물로 희석하여 소주를 만드는 경우 소주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제22류의 음료 및 주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품목들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타의 음료(제2202.90호)의 경우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를 충족할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되 일부 원재료(제1211.20호, 1302.19호)는 원산지 재료만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우유를 포함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구분하여 우유성분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음료)

품명	알로에 음료
세번	2202.90.9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를 함유한 음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 알로에 음료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알로에 조제품	2008.99	알로에
알로에 수액	1302.19	알로에
정제당	1701.99	음료 첨가물
시트르산	2918.14	
시트르산 염	2918.15	
비타민 C	2936.27	
감미료	3302.10	

음료수의 제조공정을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입고하여 핵심원재료와 첨가재료를 혼합하고 이를 여과 및 열처리, 냉각 처리를 통해 제품을 완성 시킨다음 포장하여 출하한다.

<음료수의 일반적 제조공정>

제조공정	원재료입고 → 재료 혼합 → 여과 → 열처리 → 냉각 → 내포장 → 외포장 → 출고

위에서 예로 제시한 알로에 음료의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우선 한-캐나다 FTA에서 알로에 음료의 원산지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이므로 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제시된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재료의 세번과 알로에 음료의 세번(제2202호)이 서로 다르므로 알로에 음료는 원산지상품이라 하겠다.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제23류에는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⁵⁾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2301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지 박(greaves)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의 잔재물[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이나 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잔재물.비트펄프(beetpulp).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양조나 증류할 때에 생기는 찌꺼기(dregs)와 웨이스트(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5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306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형의 잔재물(분쇄한 것이나 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제 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를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7	포도주 리스(lees), 생주석(argol)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잔재물과 부산물(펠릿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 제2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3류의 ‘14년기준 대세계 교역은 수출은 237,984천불이고 수입은 2,420,228로 무역수지는 2,182,244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동물품은 무역수지 적자 품목이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14년 기준 19,531 적자를 기록하였다.

5) 제23류 표제에서 ‘residues’를 ‘잔재물’이라 하고, 각 호에서 ‘박류(粕類)나 박(粕)’이라 하였다. 다른 류와는 달리 류의 표제에 맞춰 잔재물이라 한다. 잔재물은 쌀을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인 쌀겨나 참깨에서 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 등을 말한다. 관세율표에서 ‘residues’를 여러 가지(잔재물, 잔유물, 박 등)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잔재물(잔유물)’로 통일해서 사용하겠다.

HS 제2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90,398	2,359,078	-2,168,681	237,984	2,420,228	-2,182,244
對싱가포르	358	5,533	-5,186	400	6,808	-6,408
對호 주	31	22,475	-22,456	17	22,687	-22,670
對캐 나 다	1	14,043	-14,056	0	19,531	-19,531
對뉴질랜드	74	2,820	-2,752	90	2,700	-2,610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23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로 수출이 발생하였다.

HS 제2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309101000	173	2309101000	17	2301201000	0	2309909090	79
2	2309909090	102	2301101000	0	2302100000	0	2309909010	6
3	2309901010	32	2301201000	0	2302300000	0	2309101000	5
4	2309902020	26	2301209000	0	2302409000	0	2309909000	0
5	2309903030	22	2302409000	0	2303100000	0	2301201000	0

3. 제2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2301~2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사료용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한 것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301 2303	CC	CTH	CC	CC
2302 2304~2308	CC	CTH	CC	CTH
2309.10	RVC 55	CTH	CTH	CTH
2309.90	RVC 55	CT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우유 고품분 함유조제품: CTH(ex.0401~040 6,1901.90) -기타: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23류는 동식물성 원료를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주로 분류된다. 2단위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특정호 완전생산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301호부터 제2308호까지는 동식물성 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들이다. 이 호의 물품은 다른 류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309호는 개 사료나 고양이 사료와 같이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된다. 제2309.10호는 소매용의 개나 고양이 사료로 제2301호~제2308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된다. 다만 제2309.90호에 해당하는 사료가 우유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제4류의 낙농품과 제1901.90호의 우유는 원산지재료여야만 한다.

(4개국 비교분석) 제2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싱가포르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택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품목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였지만 제2301호와 제2303호의 품목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캐나다는 제2309호의 사료조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제2309호의 사료조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우유 형분을 포함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여 우유성분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1. 품목분류 체계

제24류에는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을 분류하며,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물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0.11 %이다. 수출이 60 %이다.

품목번호	품 명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와 껴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3	그 밖의 제조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과 에센스

2. 제2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4류의 대세계 교역실적은 ‘14년기준 372,163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2,947천불이며 수입실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2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617,323	394,962	222,361	760,080	387,917	372,163
對싱가포르	19,976	6,008	13,965	20,430	5,492	14,938
對호 주	7,599	0	7,594	15,674	17	15,657
對캐 나 다	3,033	0	3,031	2,947	0	2,947
對뉴질랜드	739	0	738	792	0	792

나. 주요 수출물품

제24류의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상위 품목은 2424000000로 2,947천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은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HS 제2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2014년말)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402201000	17,210	2402201000	13,797	2424000000	2,947	2424000000	666
2	2424000000	1,734	2424000000	1,876	2401209000	0	2402201000	126
3	2401309000	1,321	2402900000	1	2402101000	0	2402101000	0
4	2401201000	124	2401109000	0	2402201000	0	-	-
5	2401202000	34	2401302000	0	2402209000	0	-	-
6	2401103000	6	2403191000	0	2402900000	0	-	-
7	2403199000	1	2403199000	0	2403199000	0	-	-

3. 제2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402~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401	CC	CC	CC	CC
2402	CTH (ex.2403)	CTH	CTH	CTH
2403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24류는 잎담배와 제조담배 등이 분류되고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부산물 등이 분류되는데 자연 상태인 원형 식물로부터 채취한 잎으로 류변경을 요하고 있으므로 완전획득되어야 한다.

제 2402호~2403호는 시가와 그 밖의 제조담배가 분류된다. 제2401호의 담배를 수입하여 이를 균질화 하고 재구성하여 이 호에 속하는 담배를 생산할 경우 원산지상품이 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24류 담배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영연방 국가들은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제2401호의 잎담배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그 외 모

든 품목은 4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것이 공통된다. 다만 싱가포르는 제2402호의 제조담배 생산시 제2303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다른 국가보다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영연방 국가간에 큰 차이가 없고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煨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제5부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
	제26류	광.슬래그(slag)와 회(灰)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

1. 품목분류 체계

제25류에는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와 시멘트’를 분류하며, 다음 표와 같이 2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과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바닷물
2502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03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과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504	천연흑연
2505	천연모래(착색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slabs) 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2507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한다]

2508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 · 홍주석 · 남정석과 규선석[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한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 나스 어tm(dinas earths)
2509	초크(chalk)
2510	천연인산칼슘·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과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chalk)
2511	천연황산바륨(중정석), 천연탄산바륨(독중석)[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제 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2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 · 트리폴라이트(tripolite)와 다디아토마이트 (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3	부석, 금강사, 천연커런덤 · 천연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연마재료(열처리 여부 를 불문한다)
2514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 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5	대리석 · 트래버틴 · 에코신와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석회질의 암 석(겔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 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16	화강암 · 반암(斑巖) · 현무암 · 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이나 건축용 암석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 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2517	자갈 · 왕자갈 · 쇄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 스트(ballast) 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싱글(single)과 플 린트(flint)(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재료와 혼합한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 의 암석을 알갱이 · 파편 · 가루 모양으로 한 것(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2518	백운석[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톱 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 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응결 백운석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熔融)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 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의 소량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 여부를 불문한다)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s)[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 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

	지 여부를 불문한다]
2521	석회석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2	생석회(生石灰) · 소석회와 수경성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3	포틀랜드(portland)시멘트 · 알루미나(aluminous)시멘트 · 슬랙(slag)시멘트 · 수퍼설페이트(supersulphate)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clinkers)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24	석면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waste)
2526	천연동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활석
2528	천연붕산염과 그 정광[하소(煨燒)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염수로부터 분리한 붕산염을 제외한다], 천연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9	장석(feldspar), 백류석(leucite), 하석(nepheline)과 하석섬장암(nepheline syenite), 형석(fluspar)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성 물질(mineral substances)

※ 2002년도에 제2527호는 삭제

2. 제2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5류의 대세계 교역은 350,342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對개나다로의 수출실적은 12,666천불이며 수입실적은 2,254천불로 10,412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2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512,690	882,997	-370,308	561,997	912,339	-350,342
對싱가포르	9,952	266	9,667	16,604	54	16,550
對호 주	532	119,953	-119,434	1,289	107,333	-106,044
對개 나 다	13,114	1,279	11,817	12,666	2,254	10,412
對뉴질랜드	752	2,077	-1,332	1,500	1,793	-293

나. 주요 수출물품

제25류의 캐나다로의 대표품목은 2523290000(포틀랜드 시멘트 : 기타)이며, '14년 기준 수출실적은 11,449천불로 나타났다. 그 외에 주요 수출 품목은 2506103000이 938천달러이며, 2501009090가 140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HS 제2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523290000	15,114	2503000000	1,014	2523290000	11,449	2503000000	1,408
2	2526200000	498	2501009090	111	2506103000	938	2501009090	35
3	2523909000	264	2520201000	81	2501009090	140	2530909091	19
4	2504101000	219	2501009010	36	2501009010	131	2501009010	18
5	2525200000	115	2508300000	18	2501001020	8	2507001090	13
6	2501009090	96	2530909091	14	2501009020	0	2501001020	4
7	2511100000	92	2523210000	8	2503000000	0	2523901000	3
8	2530909091	39	2520102000	5	2504101000	0	2501001010	0
9	2523300000	37	2501001020	1	2504109000	0	2501009020	0
10	2505100000	24	2506103000	1	2505100000	0	2507001010	0

3. 제2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2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501~2516	CTH	CTH	CTH	CTH
2518~2521				
2524~2530				
2517	CTH(ex.2515, 2516)	CTH	CTH	CTH
2522~2523	CTH (ex.2521)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25류에는 소금과 황, 토석류, 기타광물, 석고와 석회·시멘트로 분류되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2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완제품과 다른호의 비원산지재료를 가공하여 해당호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제25류에 분류되는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는 제2515호, 제2516호, 제2521호의 재료를 사용하는 때에 이 재료들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엄격성을 가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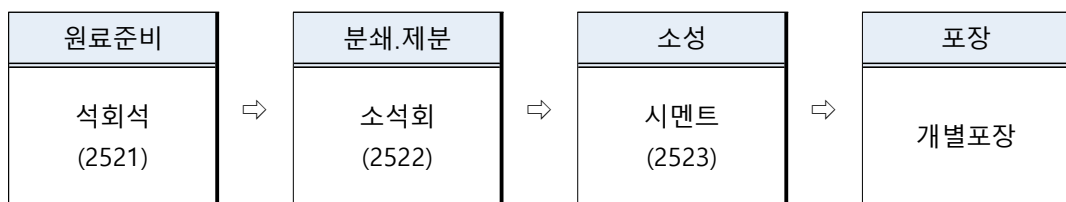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포틀랜드 시멘트 : 기타)

품명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기타(Portland cement : Other)
세번	2523.29.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시멘트는 건축·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수경성(水硬性)의 고운 분말로 일반적으로 시멘트는 골재 같은 메움 재료와 섞어서 사용된다.

시멘트의 제조공정은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HS 제2521호)을 분쇄·제분한 후 응결시간 조절을 위해 석고(HS 제2520호)와 혼합하여 제분하는 단계를 거친다. 시멘트의 제조법은 건식·반건식·습식으로 나뉘는데, 제조법의 구별은 원료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분하여 이장(泥漿)으로서 가마에 공급하느냐, 건조 상태에서 제분하여 건조분말 상태로 공급하느냐 또는 건조상태에서 제분한 후 습기 있게 만들어 가마에 공급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 시멘트 생산과정 >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 원료인 석회석(HS 제2521호) 및 석고(HS 제2520호)를 수입하여 분쇄·가공 및 소성공정을 거쳐 시멘트를 만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석회석을 일차 가공한 소석회(HS 제2522호)를 수입하여 석고와의 혼합공정 및 소성공정을 거쳐 시멘트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

제26류 광·슬래그와 회

1. 품목분류 체계

제26류에는 ‘광·슬래그(slag)⁶⁾와 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2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603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604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2605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2606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607	납광과 그 정광(精鑛)
2608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609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261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4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5	니오븀(niobium)광·탄탈륨(tantalum)광·바나듐(vanadium)광이나 지르코늄(zirconium) 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6) 슬래그는 일반적으로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로 광재(鑛滓)라고도 한다. 슬래그에는 다른 금속이나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 금속이나 비소의 회수나 금속화합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슬래그의 일반적인 정의보다 제26류에서는 폭 넓게 적용하고 있다.(제26류 주 제3호 참조)

2620	슬래그(slag) · 회와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kelp)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제2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6류의 대세계 교역은 수입(16,756,409천불)이 수출(154,229천불)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4년 기준 對캐나다와의 수출은 2천불이며 수입은 940,497천불로 무역수지는 940,495천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HS 제2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61,401	16,618,082	-16,456,681	154,229	16,756,409	-16,602,180
對싱가포르	6,425	835	5,587	4,738	115	4,623
對호 주	0	7,635,935	-7,635,946	0	7,029,896	-7,029,896
對캐 나 다	0	308,933	-308,938	2	940,497	-940,495
對뉴질랜드	0	97	-98	0	82	-82

나. 주요 수출물품

제26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2618000000(슬래그 샌드)로 2천불을 기록하였다.

HS 제2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619001090	3,354	2601111000	0	2618000000	2	2614009000	0
2	2619001010	984	2601112000	0	2601111000	0	2620400000	0
3	2608000000	400	2601119000	0	2601119000	0	-	-

3. 제2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2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6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26류에는 광물성 생산품 가운데 수은, 귀금속, 비금속 및 방사성원소를 채취하기 위한 야금 공업용의 금속광과 정광이 분류되며, 철강제조 시 생기는 슬랙, 드로스, 스케일링 및 웨이스트 등과 도시쓰레기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이 포함된다. 한-캐나다 FTA는 제2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HS 제2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완제품과 다른 호로부터 해당 호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광물의 특성상 다른 호 또는 류로부터 생산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체약당사국 영역 및 개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영해 밖에서 추출되거나 수집되어야 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 모두 제26류의 품목 전체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속광물 원석이 분류되는 제26류의 특성상 4단위 세번변경의 실질적 의미는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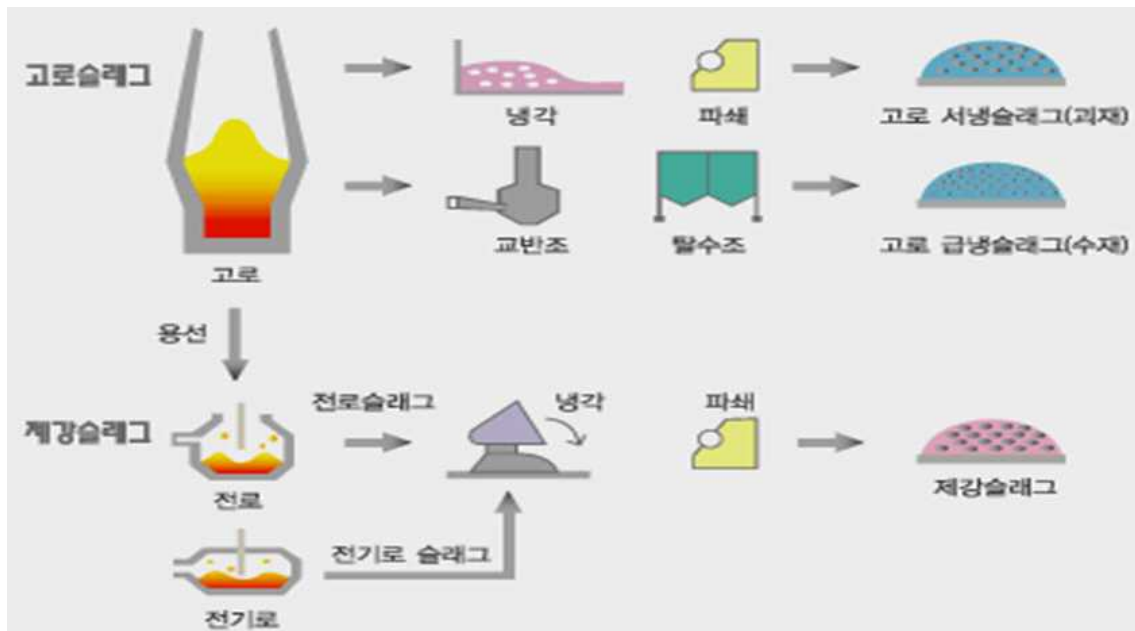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슬래그 샌드)

품명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 Granulated slag (slag sand)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or steel.
세번	2618.0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슬래그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철의 원료인 철광석 등으로부터 철을 분리하고 남은 암석성분으로 시멘트원료, 건설토목용 재료 등 활용분야가 다양하다. 슬래그 샌드는 슬래그의 모양이 알갱이 모양인 것을 지칭한다.

슬래그는 고로(용광로)에서 철광석을 용융하면서 제조하는 고로슬래그와 철에서 강을 만들기 위해 쇳물에 녹아있는 탄소, 규소등의 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로 구분된다.

<철강 슬래그의 제조공정>



철강 슬래그는 철광석(제2601호)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캐나다 FTA는 철광 슬래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철광석을 수입하여 역내의 고로나 전기로에서 생산하여도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 품목분류 체계

제27류에는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제2716호의 전기에너지는 HS 협약의 체약국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호(optional heading)이다.

품목번호	품 명
2701	석탄,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s)과 이와 유사한 고체연료
2702	갈탄(응결 여부를 불문하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3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 여부를 불문한다)
2704	코크스와 반성(半成)코크스(semi-coke)(석탄·갈탄이나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 여부를 불문한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5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2706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7	오일(oils)과 그 밖의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 이와 유사한 생산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나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본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waste oils)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micro-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lignite)왁스·토탄(peat)왁스·그 밖의 광물성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생산품(착색 여부를 불문한다)
2713	석유코크스·석유역청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2714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유모혈암(oil shale)과 타르샌드(tar sands), 아스팔타이트(asphaltites)와 아스팔트질의 암석(asphaltic rocks)
2715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아스팔트·천연역청·석유역청·광물성 타르나 광물성 타르피치를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mastics)과 컷백(cut-backs)]]
2716	전기에너지

2. 제2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7류의 캐나다와의 교역은 '14년 기준 수출은 34,983천불이며, 수입은 1,407,089천불로 1,372,106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HS 제2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54,112,787	180,432,793	-126,320,006	52,384,180	175,612,107	-123,227,927
對싱가포르	8,763,050	1,912,916	6,850,101	10,447,441	2,128,242	8,319,199
對호 주	3,639,784	8,313,765	-4,674,011	4,286,429	8,760,673	-4,474,244
對캐 나 다	17,470	1,592,390	-1,574,940	34,983	1,407,089	-1,372,106
對뉴질랜드	656,398	1,670	654,714	792,920	736	792,184

나. 주요 수출물품

제27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710192020(제트 연료유)로 24,654천불을, 2707999000(콜타르)가 8,214천불을 수출하였다.

HS 제27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710193000	7,220,722	2710193000	2,470,608	2710192020	24,654	2710121000	440,195
2	2710121000	2,139,360	2710121000	918,876	2707999000	8,214	2710193000	273,590
3	2710192020	587,286	2710192020	678,833	2711130000	2,091	2710192020	70,727
4	2710195020	321,705	2713200000	74,179	2715003000	10	2713200000	3,061
5	2710199000	100,808	2710195020	66,188	2710199000	8	2710192090	2,383
6	2707999000	32,460	2710192010	30,514	2710197430	5	2711130000	1,347
7	2710194090	17,229	2707500000	23,080	2710209810	1	2710197120	589
8	2707500000	5,892	2711130000	9,524	2701121000	0	2710195020	215
9	2710197320	4,313	2710199000	6,787	2701122000	0	2710199000	160
10	2707500000	5,892	2710192030	2,649	2701129010	0	2710197320	157

3. 제2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2701~2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707.10 ~2707.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707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707.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페놀: 제2709.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3. 기타: 제2709.99호에 해당하는 페놀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708~27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화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 3. 직접 혼합의 결과로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재료의 용량이 해당 물품 용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711.11 ~2711.13	제2711.11부터 제2711.13까지의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용량이 해당 물품 용량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711.14 ~271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71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71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2호부터 제2711.2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713.11 ~271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713.20	제2713.2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용량이 해당 물품 용량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7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714~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 27류 주(Note)의 규정

주 1	제2707호와 제2710호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2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또는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주 3	제2710호의 목적상, “직접혼합”이란 정제공정으로서 처리단위로부터의 다양한 석유 스트림과 저장탱크로부터의 석유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제품은 사전에 결정된 수치로 제2710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701~2706 2708~2709 2712~2713.12 2713.90~2716	CTH	CTH	CTH	CTH
2707.10~2707.91	CTH	CTH or (CTSH+화학반응)	CTH or (CTSH+화학반응)	CTH or (CTSH + 화학반응)
2707.99	CTH	CTH or (CTSH+화학반응)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CTSH + 화학반응)
2710	CTH	CTH or (From 2710 + 화학반응)	CTH or 화학반응 or 직접혼합	CTH or (From 2710 +화학반응 등)
2711.11	CTH	CTSH (ex.2711.21)	From 2711.11~2711.13 +VNM 49	CTH
2711.12~2711.13	CTH	CTSH (ex.2711.29)	From 2711.11~2711.13 +VNM 49	CTH
2711.14~2711.19	CTH	CTSH (ex.2711.29)	CTSH (ex.2711.29)	CTH
2711.21	CTH	CTSH (ex.2711.11)	CTSH (ex.2711.11)	CTH
2711.29	CTH	CTSH (ex.2711.12~2711.21)	CTSH (ex.2711.12~2711.21)	CTH
2713.20	CTH	CTH	From 2713.20 +VNM 49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석탄, 석유와 같은 광물성 연료가 분류되는 제27류는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27류에 분류되는 물품 중에서 제2707호(벤젠 및 나프탈렌), 제2710호(석유), 제2711호(천연가스), 제2713.20호(석유 역청)를 제외한 품목들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석탄(제2701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증류과정을 거쳐 석탄가스(제2705호)를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제2707.10호~제2707.91호 등의 벤젠 및 나프탈렌은 콜타르(제2706호)를 고온으로 증류하여 화합물을 첨가하여 생산한다. 이때 원재료인 콜타르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증류공정을 거쳐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동일 호(제2707호) 내의 다른 소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지만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화학반응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석유조제품(제2710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2710호의 석유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27류 주(Note)에서 규정하는 화학반응을 거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석유가스(제2711호)의 경우 우선 제2711.11호~제2711.13호의 액화가스는 동일 소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동일 소호에 속하는 재료의 용량이 물품의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 즉 액화프로판가스(제2711.12호)를 수입하여 동일한 액화프로판가스를 생산할 때 투입된 비원산지액화프로판가스의 용량이 완성물품의 49%이내이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액화 에틸렌(제2711.14호)과 기타의 액화가스(제2711.1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단, 2711.29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이다. 따라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될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만 제2711.29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천연가스는 통상 액화상태(제2711.11)로 수입된 후 가스상태(제2711.21호)로 되는데 이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711.2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단 제2711.11호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27류의 품목에 대하여 대체로 4단위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화학반응)을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27류 모든 품목을 4단위 세번변경 단일기준을 규정하고, 뉴질랜드는 제2707호와 제2710호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원재료를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하는 제한 규정을 두거나 특정 화학반응이 역내에서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역청(제2713.20호)의 경우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캐나다는 동일소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면 비원산지재료의 용량이 물품의 49%를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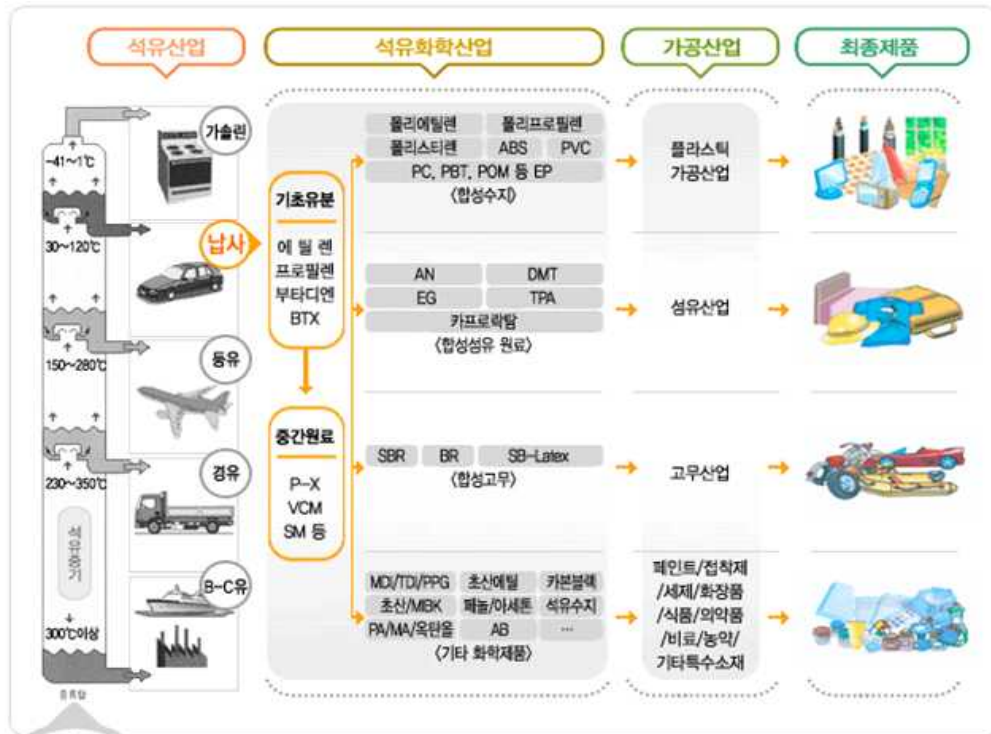
따라서 석유역청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다시 석유역청을 생산하는 경우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동일 소호의 석유역청을 수입하여 생산하더라도 최종생산품의 용량의 49%를 넘지 않는 비중이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제트 연료유)

품명	제트 연료유 (Jet fuel)
세번	2710.19.202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화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 3. 직접 혼합의 결과로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재료의 용량이 해당 물품 용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등유 및 제트연료는 원유(HS 제2709호)를 가열하여 생산하는데 LPG는 -42~1℃, 휘발유 및 나프타는 30~120℃, 등유 및 제트연료유는 150~280℃, 경유는 230~350℃, 아스팔트 및 잔사유는 300℃ 이상에서 생산된다.

< 제트연료유 생산공정 >



제트연료유는 3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HS 제2710호 이외의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2710호의 물품인 등유타입 제트 연료유(HS 제2710.19.2020호)가 생산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동일한 호(제2710호)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27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에 의해 생산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제27류 주에서 규정한 '직접혼합'에 의해 생산하더라도 비원산지재료의 용량이 물품용량의 25%이내이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제6부	제28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유기화합품
	제30류	의료용품
	제31류	비료
	제32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es),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s), 잉크
	제33류	정유(essentials oils)와 레지노이드(resinoids), 조제향료,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s), 효소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1. 품목분류 체계

① 원소

품목번호	품 명
2801	플루오르(fluorine) · 염소(chlorine) · 브롬(bromine)과 요드(iodine)
2802	황[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 황(colloidal sulphur)
2803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4	수소 · 희(稀)가스(rare gase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5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스칸듐(scandium)과 이트륨(yttrium)(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수은

② 무기산⁷⁾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⁸⁾

품목번호	품 명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7	황산, 발연황산
2808	질산, 황질산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10	붕소의 산화물, 붕산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③ 비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7) '무기산(inorganic acids)'이란 염소·황·질소·인 등 비금속을 함유하는 산기(酸基)가 수소(H)와 결합하여 생긴 산으로 염산(HCl, 제2806호), 황산(H₂SO₄, 제2807호), 질산(HNO₃, 제2808호), 인산(H₃PO₄, 제2809호) 등을 말한다. 탄산(H₂CO₃)도 무기산으로 취급한다.

8) '산화물'이란 산소와 다른 원소와의 이원(二元)화합물을 지칭하며, 다른 원소가 비금속이면 비금속산화물이라고, 금속이면 금속산화물이라 한다. 따라서 CO₂, SO₂, SiO₂(제2811호)는 비금속산화물에 해당하고, CrO₂, MnO₂, Fe₂O₃ 등은 금속(크롬·망간·철)산화물에 해당한다.

④ 무기염기와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과 금속과산화물

품목번호	품 명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과 과산화물
2817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9	산화크롬과 수산화크롬
2820	산화망간
2821	산화철과 수산화철, 어스컬러(earth colours)[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2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3	산화티타늄
2824	산화납, 연단(red lead)과 오렌지 납(orange lead)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그 밖의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과 금속과산화물

⑤ 무기산과 금속의 염⁹⁾과 과산화염

품목번호	품 명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과 산화요드화물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아염소산염, 하이포아브롬산염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산의 H^+ 가 다른 양이온으로 치환된 물질이나 염기의 OH^- 가 다른 음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한다.

2831	아이티온산염(dithionites)과 술폭실산염(sulphoxylates)
2832	아황산염(sulphites), 티오황산염(thiosulphates)
2833	황산염, 명반(alums),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4	아질산염(nitrites), 질산염(nitrates)
2835	포스피네이트(phosphinates)(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네이트(phosphonates)(아인산염)와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7	시안화물 · 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
2839	규산염, 상관습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 제2838호는 삭제

⑥ 기타

품목번호	품 명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s)
2844	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생산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5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48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ferrophosphorus)은 제외한다)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850	수소화물 · 질화물 · 아지드화물 · 규화물과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2	무기나 유기 수산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¹⁰⁾ 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아말감은 제외한다)
2853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은 제외한다)

※ 제2851호 삭제

2. 제2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8류의 교역실적은 캐나다의 경우 '14년 기준 수출은 13,413천불을 수입은 301,153천불을 기록하였다.

HS 제2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3,099,622	5,918,872	-2,819,250	3,672,674	5,866,696	-2,194,022
對싱가포르	36,270	9,759	26,450	49,830	11,913	37,917
對호 주	118,471	343,457	-225,011	105,695	250,983	-145,288
對캐 나 다	17,260	83,749	-66,529	13,413	301,153	-287,740
對뉴질랜드	11,074	8	11,055	8,839	8	8,831

나. 주요 수출물품

제28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2844101000(천연 우라늄)로 4,296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2841909000이며 1,851천불을 캐나다로 수출하였다.

HS 제2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804610000	12,707	2815120000	92,779	2844101000	4,296	2808001090	3,322
2	2812909000	9,931	2815200000	5,260	2841909000	1,851	2815120000	1,512
3	2815120000	5,292	2836400000	2,533	2815200000	1,840	2809201090	1,454
4	2803009019	4,521	2820909000	740	2823001000	1,540	2837111000	1,065
5	2808001010	3,794	2807001090	589	2836400000	1,534	2815200000	529
6	2815200000	2,926	2803009019	566	2815120000	1,352	2807001090	477
7	2807001010	2,575	2836991090	453	2804502000	460	2811221000	165
8	2836400000	1,256	2837111000	401	2847009000	141	2825501000	138
9	2847009000	1,115	2836500000	323	2849909090	128	2836400000	63
10	2826195000	812	2847009000	312	2817001000	115	2812902000	37

10) 소호 제2852.10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란 제28류 주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나 제29류 주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기나 무기의 수산화합물을 말한다.(제28류 소호 주 제1호)

3.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2801~28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04.10 ~280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04.70 ~28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05~28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15.11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15.20 ~2815.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17~28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19~285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8류의 주(Note)

주 1	이 류의 주3부터 주5까지는 이류의 호 또는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주 2	주 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류의 원산지규정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주 3 :화학 반응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4 :정 제	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
주 5 :분 리 금 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801~2803 2804.70~2805 2807~2808, 2810 2822~2823 2825.90 2845~2848 2850~2852.10, 2853	CTH	CTH	CTSH	CTH
2804.10~2804.69 2814, 2817 2806, 2809	CTH	CTH	CTH	CTH
2811~2813 2815.20~2816 2819~2821 2825.10~2825.80 2826~2842.10 2843~2844, 2849	CTH	CTSH	CTSH	CTSH
2815.11	CTH	CTSH (ex.2815.12)	CTH	CTSH
2815.12	CTH	CTSH (ex.2815.11)	CTH	CTSH
2818	CTH	CTSH	CTH	CTSH
2824	CTH	CTH	CTSH	CTSH
2842.90	동일세번 품목 분리 PSR	CTSH	CTSH	CTSH
2852.90	CTH	CTSH or RVC 40	CTSH	HS 2007--2012 변경으로 PSR 중첩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28류의 무기화학품은 재료와 상품의 4단위 혹은 6단위 세번변경에 의해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다.

(기본해설) 제28류의 품목은 기본적으로 개별 세번에 해당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만,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28류 주(Note)에서 규정한 화학반응, 정제, 분리금지과 같은 공정에 의해서도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2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대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8류에 분류되는 화합물은 해당 세번변경기준 외에 화학반응 등과 같은 특정 공정을 규정하고 역내에서 이러한 반응이 이뤄지는 경우에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개별 주(Note)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별로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일하게 7가지(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입자크기의 변화, 표준물질, 이성체 분리, 분리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3가지만(화학반응, 정제, 분리금지)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소 좁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천연 우라늄)

품명	천연 우라늄 (Natural uranium)
세번	2844.1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천연상태인 우라늄은 세 개의 동위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라늄 238은 총질량의 99.28%, 우라늄 235는 0.71%, 우라늄 234는 소량(약 0.006%)이다. 따라서 천연 우라늄은 핵분열성원소(이유: 우라늄 235함유)와 연료친핵원소(이유: 우라늄 238함유)로 간주된다.

우라늄은 미소한 방사성 원소이며 매우 무겁고 경고하다. 은회색인 표면과 금속광택을 갖고 있으며 공기 중에서 산소와 접촉하면 금속 광택을 잃고 산화물이 된다. 분말상태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하여 급속히 발화한다. 금속우라늄은 보통 잉곳상태로 시판되며 봉, 로드, 튜브, 판, 선 등의 생산에 사용된다.

우라늄은 주로 우라늄광석에서 추출된다. 또한 과인산염의 제조 잔재물 또는 금광의 웨이스트와 같은 이차원료에서 얻는다. 정상적인 공정으로는 갈슘 또는 마그네슘으로 사(四) 플루오르화물의 환원 또는 전해방법이 있다.

따라서 우라늄 광석(제26류)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천연우라늄을 추출하는 경우 류변경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제29류 유기화합물

1. 품목분류 체계

제29류에는 ‘유기화합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3개의 절에 속한 42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2	환식탄화수소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 여부를 불문한다)

②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③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④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과 헤미아세탈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	3원고리(three-membered ring)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

	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1	아세탈.헤미아세탈(hemiacetals)(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⑤ 알데히드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3	제2912호의 생산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⑥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14	케톤과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⑦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추가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⑧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과 이들의 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⑨ 질소관능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3	제4암모늄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s)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7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과 아족시화합물
2928	히드라진이나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9	그 밖의 질소 관능화합물

⑩ 유기·무기화합물 · 헤테로고리화합물 · 핵산과 그들의 염과 술폰아미드

품목번호	품 명
2930	유기-황화합물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2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
2935	술폰아미드

⑪ 프로비타민 · 비타민과 호르몬

품목번호	품 명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s) · 트롬복산(thromboxanes)과 류코트리엔(leukotrienes)(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 [변성된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s)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⑫ 글리코시드와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품목번호	품 명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⑬ 그 밖의 유기화합물

품목번호	품 명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와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1	항생물질
2942	그 밖의 유기화합물

2. 제2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29류의 대세계 교역은 수출실적이 '14년 기준 24,330,477천불이며 수입이 14,307,634천불로 10,022,843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와의 교역은 '14년 기준 수출이 71,259천불을 수입이 37,889천불로 33,370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HS 제2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4,856,006	14,381,568	10,474,438	24,330,477	14,307,634	10,022,843
對싱가포르	164,361	659,431	-495,165	191,646	546,520	-354,874
對호 주	47,670	1,793	45,814	38,347	2,466	35,881
對캐 나 다	34,843	28,018	6,738	71,259	37,889	33,370
對뉴질랜드	6,239	171,483	-165,270	7,407	347,262	-339,855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29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 품목은 2934992000(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로 24,753천불을 수출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2901109000(포화비환식 탄화수소)가 55,435천불을 수출하였고, 2917121000(아디프산)가 2위 품목으로 28,513천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였다.

HS 제2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2901109000	55,435	2929101000	7,802	2934992000	24,753	2907111000	3,181
2	2917121000	28,513	2917321000	4,086	2934109090	13,130	2929101000	605
3	2901230000	22,588	2917350000	3,235	2934999090	8,252	2916121000	551
4	2936230000	10,967	2917140000	2,235	2921519090	6,855	2917321000	479
5	2929102000	10,267	2901210000	2,136	2917361000	3,098	2915210000	470
6	2902200000	9,276	2905320000	1,342	2933499090	2,542	2905320000	423
7	2902440000	5,661	2901102000	952	2917321000	1,690	2902300000	418
8	2915320000	5,463	2917349000	910	2929101000	1,484	2921112010	198
9	2918299090	5,059	2902300000	879	2917349000	1,215	2916124000	141
10	2902300000	4,400	2902440000	834	2916131000	1,062	2902440000	132

3. 제2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29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901~2902.30	CTH	CTSH	CTSH	CTSH
2902.44~2902.50				
2903.11~2903.14				
2903.19				
2903.22~2903.76				
2903.78~2905.11				
2905.17~2905.29				
2905.32				
2905.41~2907				
2909~2910				
2912				
2914~2915.24				
2915.33~2915.90				
2916.15~2918				
2920~2926				
2929~2930				
2932.11~2932.19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932.91~2934				
2902.41~2902.43	CTH(ex.2701)	CTSH	CTSH	CTSH
2902.60~2902.70 2903.15 2903.21 2905.12~2905.16 2905.31 2916.11~2916.14	CTH(ex.2901) or (CTH + RVC 50)	CTSH	CTSH	CTSH
2902.90	CTSH or RVC45	CTSH	CTSH	CTSH
2903.77 2932.20	CTH	CTSH or RVC 40	CTSH	CTSH
2905.39	CTH(ex.2912) or (CTH+RVC50)	CTSH	CTSH	CTSH
2908 2911 2913 2919 2927~2928 2931 2935 2937.12 2937.21~2938 2939.19~2942	CTH	CTH	CTSH	CTH
2915.2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SH	CTSH
2915.31~2915.32	CC or (CTH + RVC 50)	CTSH	CTSH	CTSH
2936.21~2936.28	CTH	CTH	CTSH	CTSH
2936.29~2936.90	CTH	CTH or RVC 40	CTSH	CTSH
2937.11 2937.19	CTH(ex.2933, 2934)or (CTH+RVC 50)	CTH	CTSH	CTH
2939.11	CTH(ex.1211.40)	CTH	CTS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29류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2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 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905호의 프로필렌 글리콜은 기초원재료인 석유(제2709호)를 가공하여 제조하기도하고 프로필렌 옥사이드(제2910호)를 가공하여 생산하기도 한다. 이때 두 원료 모두 수입하여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므로 프로필렌 클리콜은 원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2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에 대하여 영연방 국가들은 싱가포르는 다소 다양하고 엄격한 규정을 선택한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4단위 및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대부분 선택하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옥살산)

품명	옥살산
세번	2917.11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옥살산(HOCCOOH)은 독성이고 무취·무색·투명의 미세한 결정체로서 식물 및 가축의 표백제·식물공업의 매염제·유기합성에 사용된다.

옥살산의 주된 염은 옥살산암모늄·옥살산칼륨·옥살산나트륨·옥살산칼슘·옥살산철과 옥살산암모늄철이고, 옥살산의 주된 에스테르는 옥살산디메틸과 옥살산디에틸이다. 옥살산의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이므로 옥살산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제29류의 주(note) 규정의에 의하여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규정에 나열된 화학반응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30류 의료용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0류에는 ‘의료용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30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001	장기(臟器) 요법용의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이나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4	의약품(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제3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30류의 대세계 교역은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었고, 캐나다와의 교역 역시 48,573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3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243,125	4,244,280	-3,001,155	1,473,429	4,861,261	-3,387,832
對싱가포르	11,541	77,053	-65,534	12,028	117,234	-105,206
對호 주	3,329	19,600	-16,298	7,706	36,167	-28,461
對캐 나 다	952	52,320	-51,391	5,923	54,496	-48,573
對뉴질랜드	139	4,169	-4,042	760	3,606	-2,846

나. 주요 수출물품

제30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3002101000(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로 4,150천불을 수출하였고, 그 외에 3006402000(치과용 충전제)가 577천불을 해당국가로 수출하였다. 호주와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은 3004909900(4,099천달러)와 3004909900(5,862천달러)로 파악되었다.

HS 제3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004909900	4,099	3004909900	5,862	3002101000	4,150	3004909900	484
2	3004901000	3,064	3005109000	1,050	3006402000	577	3005903000	131
3	3005904000	1,240	3005903000	270	3001901010	546	3005109000	74
4	3002903090	595	3006402000	197	3005109000	345	3002903090	47
5	3004209900	507	3004209900	150	3005904000	242	3006402000	14
6	3005101000	505	3002309000	96	3005903000	17	3001901010	6
7	3004503000	438	3002903090	39	3006105010	13	3002101000	2
8	3006101020	333	3002101000	29	3002109090	11	3002109010	2
9	3004101000	263	3006401000	5	3002904000	7	3001203000	0
10	3004509000	211	3001901010	3	3005909000	6	3001209000	0

3. 제3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001~30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3003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003호의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 및 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0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006.10~3006.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006.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001 3002.20~3002.30	CTH	CTH	CTSH (ex.3006.92)	CTH or RVC 40
3002.10	CTH	CTH	CTSH (ex.3006.92)	CTSH / CTH or RVC 40
3002.90	CTH	CTSH or RVC 40	CTSH (ex.3006.92)	CTSH / CTH or RVC 40
3003	CTH	CTH	CTH(ex.3006.92) or (From 3003+ MC40 of 3003)	CTH
3004	CTH (ex.3003)	CTH (ex.3003)	CTH (ex.3003, 3006.92)	CTH (ex.3003)
3005~3006.70	CTH	CTH	CTSH (ex.3006.92)	CTH
3006.91	CTH	CTH	CTH	CTH
3006.92	CC	CTH	CC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30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번변경 기준의 경우 품목에 따라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을 요하고 특정세번(제 3006.93호)의 경우 제외하여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본해설) 장기 및 그 추출물(제3001호)와 백신등(제3002호)는 6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지위를 얻는다. 다만 제3006.92호에 해당하는 폐(廢) 의료용품의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세번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00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 2가지의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어느 것이든 충족하면 원산지 지위를 얻는다. 우선 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지위를 얻는다. 앞서 설명한 제3001호와 마찬가지로 폐(廢) 의료용품의 경우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4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6단위 세번이 변경되고 제3003호의 소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제3004호는 소매의약품으로 제3003호의 의약품을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한 것이다. 소매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을 기본으로 하고 제3003호나 제3006.92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3003호의 의약품으로 소매 포장하여 제3004호를 만들 경우 제3003호의 의약품은 원산지재료이어야만 원산지지위를 얻을 수 있다.

제3005호~제3006.70호에는 탈지면·반창고, 혈액형 분류 시약, 검사용 조영제, 치과용 충전제, 구급상자 등이 속한다. 이들 물품은 6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다만 제3006.92호의 원재료가 사용될 경우에는 이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306.91~0306.92호는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와 폐(廢) 의료용품으로 각각 4단위, 2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제3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부가적으로 핵심원재료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매용 의약품(제3004호)의 경우 영연방 국가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원재료인 제3003호의 의약품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영연방 국가 모두 원료 의약품(제3003호)을 역내에서 생산하여 소매포장하여 소매용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품명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 and put up in packings as medicaments)
세번	3002.1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2.10-1000호에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다.

제3002호에 분류되는 다양한 의약품 중에서 특정 의약품을 예로 들어 원산지 판단을 해보고자 한다. 펌브롤리주맵(Pembrolizumab 100mg, 단일클론항체)이란 약품은 흑색종 치료에 사용되는 단일클론항체로 폴리소르베이트 80, 히스티딘, 주사용수 등으로 혼합된 무색 투명액상을 유리바이알에 소매포장(내용량 4ml) 된다.

< 펌브롤리주맵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소르베이트 80	3402.19	펌브롤리주맵의 주요 원재료
히스티딘	2937.90	
정제수	2201.90	

본 물품은 단일클론항체(면역물품)인 펌브롤리주맵에 안정제 등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동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제3006.93호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는 제한이 있다.

위에서 제시된 핵심 원재료의 세번과 비교해 볼 때 6단위 세번뿐만 아니라 상위 단계인 4단위 세번부터 서로 상이하므로 제시된 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을 거친다면 펌브롤리주맵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31류 비료

1. 품목분류 체계

제31류에는 ‘비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물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약 0.10 %이며, 그 중에서 수입이 53 %이다. 제3105호·제3102호·제3104호·제3103호의 순으로 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101	동물성 비료나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이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이나 식물성 생산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제(tablets)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2. 제3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31류의 대세계 교역은 237,648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이 9천달러, 수입이 167,033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HS 제3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62,642	634,626	-171,985	356,552	594,200	-237,648
對싱가포르	131	8	116	234	84	150
對호 주	17,146	243	16,896	28,182	237	27,945
對캐 나 다	77	204,097	-204,025	9	167,033	-167,024
對뉴질랜드	5,820	9	5,809	13,228	9	13,219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31류의 캐나다로의 수출품목은 3105909000으로 9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3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102210000	121	3105200000	22,981	3105909000	9	3102210000	7,287
2	3102109000	47	3105590000	4,161	3101002000	0	3105200000	5,278
3	3102300000	33	3104301000	867	3102101000	0	3102109000	621
4	3105200000	27	3102109000	110	3102509000	0	3104301000	25
5	3105909000	6	3102210000	63	3103909000	0	3105590000	15
6	3101002000	0	3101003000	0	3104200000	0	3101003000	1
7	3102101000	0	3102101000	0	3104309000	0	3105901000	1

3. 제3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31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101	CTH	CTH	CTH	CTH
3102~3104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 40
3105.10~3105.60	CTH (ex.3102~3104)	CTH or RVC 40	CTH	CTH or RVC 40
3105.90	CTH (ex.3102~3104)	CTH or RVC 40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31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31류에는 비료가 분류되는데 재료와 완성품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4단위가 다른 비원산지재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4개국 비교분석) 제31류의 비료에 대하여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호주와 뉴질랜드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임은 캐나다와 동일한 유형이지만 제3105호의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엄격성을 보인다.

따라서 제3105호의 복합비료의 원산지 판단시에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제 3105.90호의 기타의 복합비료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택하고 있으므로 제3102~제3104호의 질소·인·칼륨 비료를 수입하여 복합비료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호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호주와 뉴질랜드와 동일하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제3102~제3104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므로 이를 수입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제32류 유연용이나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3202	합성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유연제(천연유연제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의 효소계 조제품
3203	식물성 착색제나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animal black) ¹¹⁾ 은 제외한다],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나 합성유기루미노퍼(luminophores)(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05	레이크안료,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생산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s)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207	조제안료·조제유백제(乳白劑)·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slips)·액체상태 러스터(lusters)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이나 유리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프리트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8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과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하여 비수성 매질(non-aqueous medium)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9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과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하여 수성 매질(aqueous medium)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1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래커와 디스토퍼를 포함한다), 가족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1	조제드라이어

3212	비수성 매질(non-aqueous medium)에 분산시킨 안료(금속가루 · 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foils),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3	화가용 · 학생용 · 간판도장공용 · 색조수정용 · 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정제 모양인 것 · 튜브들이 · 병들이 · 접시들이와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s),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 · 실내벽 · 마루 · 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5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3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32류의 대세계 교역은 337,384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수출은 2,000천불을, 4,874천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3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278,277	2,487,521	-209,244	2,271,658	2,609,042	-337,384
對싱가포르	20,028	54,480	-34,486	17,892	55,283	-37,391
對호 주	11,824	13,717	-1,922	10,862	29,007	-18,145
對개 나 다	1,712	6,468	-4,788	2,000	4,874	-2,874
對뉴질랜드	1,758	87	1,658	2,594	88	2,506

나. 주요 수출물품

제32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3206499000(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로 440천불을 해당국가로 수출하였으며, 3204170000가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으로 377천불을 수출하였다.

11) 수탄(animal black)은 제3802호로 분류한다.

HS 제3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214101090	5,269	3214101090	5,358	3206499000	440	3208901011	1,285
2	3215190000	2,520	3215190000	2,109	3204170000	377	3208909019	484
3	3208909019	2,316	3214900000	1,023	3204160000	339	3214101090	425
4	3204170000	1,657	3215110000	582	3215190000	215	3215190000	95
5	3204119000	1,464	3208909019	413	3212100000	114	3206499000	78
6	3215110000	649	3214101080	329	3204200000	96	3206200000	50
7	3212100000	557	3212100000	300	3212909000	66	3214101080	50
8	3208909030	466	3206200000	198	3215110000	62	3215110000	44
9	3206499000	340	3204170000	128	3206190000	43	3214900000	19
10	3214900000	314	3204160000	84	3207400000	39	3206190000	18

3. 제3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201~320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2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20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207~3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201~3202 3204.11~3204.17 3204.20~3204.90 3206.20~3206.50	CT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40
3203 3207 3212	CTH	CTSH or RVC 40	CTH	CTSH or RVC40
3204.19	CTH	CTSH (ex.3204.11~3204.17) or RVC 40	CTSH	CTSH or RVC40
3205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 40
3206.11	CTH	CTSH (ex.3206.19) or RVC 40	CTSH	CTSH or RVC40
3206.19	CTH	CTSH (ex.3206.11) or RVC 40	CTSH	CTSH or RVC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208~3209	CTH + RVC 50	CTSH or RVC 40	CTH	CTSH or RVC40
3210	CTH + RVC 50	CTH	CTH	CTH
3211 3213 3215.90	CTH	CTH	CTH	CTH
3214	CTH(ex.3824.50)	CTSH or RVC 40	CTH	CTSH or RVC40
3215.11~3215.19	CTH	CTH or RVC 40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32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3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제3203호, 제3205호, 제3207~3215호)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제3201~3202호, 제3204호, 제3206호)이 있다.

따라서 제32류에 속하는 염료는 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 또는 6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32류의 유연 및 착색제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택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를 제외한 영연방 국가들은 일부 품목(특히 제2308호~제3209호, 제3214호)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외에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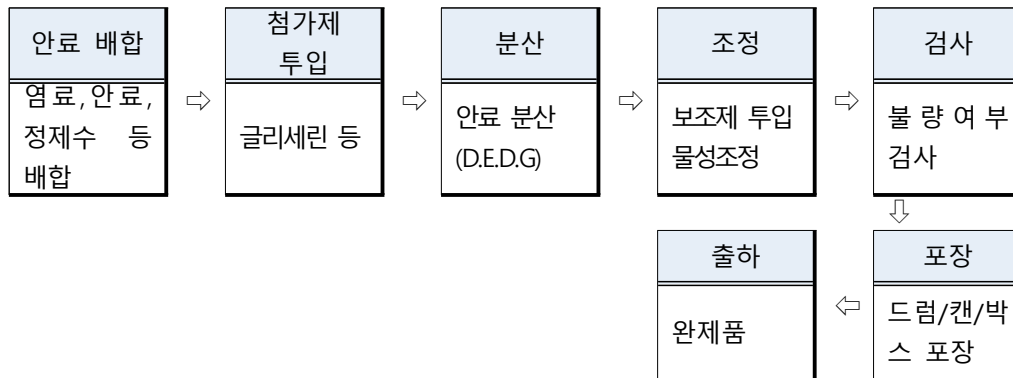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품명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Pigment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세번	3206.49.9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안료란 분말상의 합성유기착색제로 그림물감이나 인쇄용 잉크, 페인트, 화장품이나 플라스틱용 색재로 사용된다.

안료와 비슷한 것으로 염료가 있는데 이는 물 및 유기 용제에 녹으며 주로 섬유의 착색에 사용되는 점이 다르며 안료는 염료에 비해 불투명하다.

< 안료의 생산공정 >



안료(제3206.49.9000호)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안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와 안료의 세번을 파악하여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안료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안료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안 료	3206.11	착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원료
계면활성제	3402.11	안료의 분산제로 사용
폴리프로필렌	3902.10	프로필렌을 중화하여 얻는 열가소성 수지
인조왁스	3404.90	화학적으로 생산된 인조왁스

안료생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를 파악한 결과 위의 표처럼 나타난다. 원산지결정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이므로 안료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6단위가 다른 경우 모든 원재료가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더라도 안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완제품 안료의 세번이 제3206.49호 이고 원재료로 사용되는 안료는 제3206.11호이므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6단위 세번이 상이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이나 화장용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3301	정유[콘크리트(concretes)와 애플루트(absolutes)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의 제거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resinoids),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습수법이나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s)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s)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3	향수와 화장수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pedicure) 제품류
3305	두발용 제품류
3306	구강이나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rs)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3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33류의 대세계 수출은 1,918,421천불이며 수입은 1,692,942천불로 무역수지는 225,479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14년 기준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은 11,281천불을 수입은 34,189천불로 22,908이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시현하고 있다.

HS 제3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276,977	1,546,452	-269,475	1,918,421	1,692,942	225,479
對싱가포르	41,142	35,966	5,155	47,858	42,717	5,141
對호 주	15,507	11,845	3,640	29,927	11,077	18,850
對캐 나 다	7,558	39,355	-31,818	11,281	34,189	-22,908
對뉴질랜드	1,006	2,151	-1,159	2,565	2,844	-279

나. 주요 수출물품

제33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3304991000(기초화장용 제품)로 '14년 기준 수출실적은 3,858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3304991000의 경우 싱가포르로의 수출실적은 23,942천불로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HS 제3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304991000	23,942	3307909000	13,098	3304991000	3,858	3307909000	1,516
2	3304999000	5,132	3304991000	12,061	3304999000	3,076	3304991000	542
3	3304992000	4,985	3304999000	1,966	3307909000	1,152	3305100000	95
4	3303001000	2,387	3305909000	610	3304992000	622	3304999000	92
5	3307909000	2,057	3305100000	552	3304209000	532	3304992000	77
6	3305909000	1,832	3304992000	393	3304309000	480	3305909000	51
7	3305100000	1,390	3304209000	291	3304101000	422	3304309000	36
8	3304209000	1,326	3306100000	162	3305909000	266	3305200000	31
9	3304109000	829	3307490000	151	3304109000	228	3305901000	25
10	3304309000	799	3304109000	139	3304201000	114	3304301000	19

3. 제3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3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302~3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301	CTH	CTSH	CTSH	CTSH
3302~3306.10 3306.90~3307	CTH	CTH	CTH	CTH
3306.20	CTH	CTH (ex54) or RVC 40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33류에는 정유와 레지노이드(제3301호), 조제향료(제3302~3303호), 화장품류(제3304~3305호), 위생 및 화장품품류(제3306~3307호)등이 분류된다.

한-캐나다 FTA는 제3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이 류에 속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제3301호의 물품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그 외의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3301호의 물품은 비원산지 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상이할 경우, 그 외 물품은 4단위 세번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국가들은 제3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대체로 채택하고 있다. 제3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영연방 4개국 모두 4단위 세번변경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33류에 속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정유와 레지노이드가 분류되는 제3301호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제3301호 외의 품목은 기본적으로 3국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호주의 FTA에서 치실(제3306.20호)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역내부가가치 40%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제54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실을 생산할 때 제5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마스크 팩)

품명	마스크 팩 (Mask Pack)
세번	3307.90.9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마스크 팩은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미용제가 도포된 마스크로서 피부의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긴장시켜 탄력을 주거나 혹은 모공을 정화해 청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마스크 팩의 주요 원재료로서 얼굴 형상의 부직포와 피부미용제로 글리세롤, 스쿠알렌,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화학물질이 주로 사용된다. 마스크 팩은 일반적으로 눈과 코 입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얼굴 형상의 부직포에 피부 미용제를 도포하여 만든다.

< 마스크 팩의 생산공정 >



< 마스크 팩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부 직 포	5603.91	마스크 팩의 본체가 되는 부직포
글리세롤제	2905.45	모발이나 피부의 수분을 보급하는 작용
스쿠알렌	2901.29	상어의 간유 추출물
프로필렌글리콜	2905.32	습기를 흡수하여 수분을 보유하는 효과

한-캐나다 FTA상 마스크 팩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원재료의 4단위 세번과 마스크팩의 4단위 세번이 달라지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앞서 소개된 기본적인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각각 제5603호, 제2905호, 제2901호로 마스크팩의 4단위 세번(제3307호)과 모두 다르므로 이와 같은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하였다면 마스크팩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제시된 원재료를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모두 수입하여 하여 한국에서 마스크팩을 제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제34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세제 · 조제윤활제 · 인조왁스 · 조제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 · 조형용 페이스트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4류에는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 왁스·광택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제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생산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이나 주형 모양으로 한정하며, 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생산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계면활성제 ·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의 함유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절삭제 · 볼트나 너트 방출제 · 방청제나 부식방지제와 이형(離型)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oil)처리나 가지(grease)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4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5	신발용 · 가구용 · 마루용 · 차체용(coachwork) · 유리용이나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 · 연마페이스트 ·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 셀룰러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이나 판 모양·말굽모양·막대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틱(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2. 제3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34류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수지 적자 품목이며 '14년 기준 대세계 교역은 93,998천불을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교역역시 1,956천불을 실현하고 있다.

HS 제3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世 계	763,001	895,378	-132,377	838,957	932,955	-93,998
對싱가포르	6,767	6,747	3	7,956	6,470	1,486
對호 주	26,887	2,629	24,242	29,579	3,188	26,391
對캐 나 다	4,788	6,988	-2,217	5,679	7,635	-1,956
對뉴질랜드	4,182	245	3,922	5,413	433	4,980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3402110000(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로 1,766천불이 수출되었으며, 싱가포르와 호주로는 각각 3403999000이 1,747천불이 3402202000(조제 청정제)가 17,489천불이 수출된바 있다.

HS 제3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403999000	1,747	3402202000	17,489	3402110000	1,766	3402202000	3,264
2	3402110000	1,591	3402110000	3,736	3402139000	1,726	3402110000	1,448
3	3404901090	1,405	3402139000	2,911	3404200000	999	3402139000	209
4	3402901000	545	3402201000	1,251	3401300000	263	3403191000	187
5	3401300000	542	3402120000	979	3402120000	262	3402201000	157
6	3404902000	470	3403191000	978	3407002000	218	3402901000	51
7	3402201000	302	3402190000	481	3403999000	133	3402120000	32
8	3402902000	209	3404200000	397	3404901090	132	3402190000	16
9	3401119000	175	3404901090	282	3402209000	46	3403991000	12
10	3403199000	157	3402902000	269	3405300000	40	3401300000	8

3. 제3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401.11 ~3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2.12 ~34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4~3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401.11~3401.20 3402.11 3406~3407	CTH	CTH	CTH	CTH
3401.30	CTH (ex.3402.90)	CTH	CTH (ex.3402.90)	CTH
3402.12~3402.19 3402.90~3403	CTH	CTH	CTSH	CTH
3402.20	CTH	CTH	CTSH (ex.3402.90)	CTH
3404	CTH	CTH or RVC 40	CTH	CTH
3405	CTH	CTSH	CTH	CTS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34류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고 제 3402.90호에 속하는 재료의 경우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하는 품목군이 존재한다.

(기본해설) 제34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401.11호의 화장비누는 다양한 화학성분을 조합하여 제조하는데 대체로 29류에 속하는 원재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요 원재료가 제29류로 확장

비누(제3401호)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제3401.30호(클렌징 폼)와 제3402.20호(소매용 세제)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더불어 제3402.90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클렌징 폼을 예로 들면 클렌징 폼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제3401호에 속하지 않는 재료라면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클렌징 폼을 생산하는데 제3402.90호의 원재료를 사용한다면 동호의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클렌징 폼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국가와의 FTA는 제3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한-싱가포를 FTA는 제34류 전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캐나다와 뉴질랜드 FTA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호주의 경우 유일하게 부가가치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FTA는 지역적 인접성 및 산업유사성에 기인하여 제3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거의 흡사하고 캐나다의 경우 일부 세제류에 대하여 다른 국가와 달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거나 제3402.90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규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품명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whether or not put up for retail sale - Anionic)
세번	3402.11.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계면(표면) 활성제란 액체에 용해되어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 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이다.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 양성 계면활성제의 4종으로 분류되는데 음이온성의 계면활성제는 수용액 속에서 활성제의 주체가 음이온이 되는 것을 말한다.

기름에 녹기 쉬운 친유기(親油基)와 물에 녹기 쉬운 친수기(親水基)의 두 상반되는 성질을 지닌 기(基)를 하나의 분자 내에 가진 것으로, 기름과 물이 분리하는 것을 막고 기름은 미세한 입자가 되어 물 전체 속에 분산하여 유화되며 마침내 기름은 투명하게 물속에 용해된다.

이 성질을 기본으로서 습윤작용, 유화작용, 분산작용, 가용화작용, 기포작용, 소포작용, 세정작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살균작용과 방청작용도 있다.

유기계면활성제(음이온의 것)는 지방, 트리글리세리드, 지방성 알코올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는데,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의 일종인 Sodium laureth sulfate의 경우에는 지방성 알코올(Lauryl alcohol)을 발연황산, 가성소다 등과 화학 반응시켜 제조한다.

< 유기계면활성제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지방성 알코올	2905.17	유기계면활성제의 주요 원재료
발연황산	2807.00	유기계면활성제의 주요 원재료
가성소다	2815.11	유기계면활성제의 주요 원재료

한-캐나다 FTA는 유기계면 활성제(제3402.1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HS 4단위 기준에서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달라지도록 계약당사국에서 제조·가공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기계면활성제가 분류되는 제3402호에 속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유기계면활성제를 계약당사국 내에서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시된 원재료의 예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면 지방성 알콜, 발연황산, 가성소다 모두 제3402호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들 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조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유기계면활성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1. 품목분류 체계

제35류에는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501	카세인 · 카세인산염(caseinates)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s)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을 포함하며, 표면 가공이나 착색 여부를 불문한다]와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s)[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s)는 제외한다]
3504	펩톤(peptones)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 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재료로 한 글루(glues)
3506	조제글루(glues)와 그 밖의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s)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생산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s)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

2. 제3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35류의 대세계 교역은 ‘14년 기준 253,172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역시 각각 2,439천달러, 29,780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HS 제3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43,678	722,406	-278,728	462,205	715,377	-253,172
對싱가포르	7,672	5,964	1,696	6,649	4,880	1,769
對호 주	6,442	2,846	3,589	4,165	2,687	1,478
對캐 나 다	487	3,023	-2,541	415	2,854	-2,439
對뉴질랜드	10,041	37,048	-27,015	6,975	36,755	-29,780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35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 품목은 3506102000[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로 341천불을 수출하였다. 이외에 3506109000가 33천불을 3506999000이 29천불을 캐나다로 수출하였다.

HS 제3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506910000	5,852	3506102000	2,589	3506102000	341	3503001010	6,316
2	3506102000	371	3503001010	946	3506109000	33	3506102000	358
3	3506999000	286	3506910000	243	3506999000	29	3506910000	173
4	3506109000	109	3506999000	169	3506910000	8	3504002090	50
5	3505109090	21	3507906020	145	3504002090	2	3506999000	35
6	3506101000	6	3506109000	61	3507907000	1	3507909000	29
7	3504002090	4	3504002090	12	3507909000	1	3505201000	13
8	3501109000	0	3501901110	0	3502200000	0	3506109000	1

3. 제3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50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502.11 ~35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502.20 ~35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503~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501	CTH	CTSH	CTSH	CTSH
3502.20~3502.90	CTH	CTSH	CTH	CTSH
3502.11~3502.19	CTH	CTSH	CTH	CTSH
3503~3504	CTH	CTH	CTH	CTH
3506.99~3507	CTH	CTH	CTH	CTH
3505	CTH (ex.1108)	CTSH	CTH	CTSH
3506.10	CTH (ex.3501, 3503, 3505)	CTH (ex.3503, 3501.90)	CTH	CTH
3506.90	CTH + RVC 55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한-캐나다 FTA에서 제35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제3502호의 일부 알부민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기본해설) 제35류에 속하는 대부분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카세인(제3501호) 과 알부민 일부(제3502.20~3502.90호)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상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3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영연방 국가들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만 부가가치기준을 두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세번변경기준만 택하고 있다.

제35류에 속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영연방 4개국 모두 대동소이하나 제3505호(변성전분)와 제3506호(조제접착제)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제3506호의 조제접착제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호주 FTA는 특정원재료는 반드시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및 뉴질랜드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채택하고 있어 엄격한 원재료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3506호의 조제접착제의 경우 싱가포르 또는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의 주의가 필요하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접착제]

품명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Products suitable for use as glues or adhesives - Based on plastic (including artificial resins)]
세번	3506.10.2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물체를 접착시키려면 접착제를 물체에 도포하고 서로 붙인 후에 접착제가 고화(固化)되어야 한다. 따라서 접착제는 처음에는 액상이다가 나중에 고화되는 경우 떨어지지 않고 또한 접착제 자체가 파괴되지 않는 고분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물에 녹인 녹말풀, 가솔린에 녹인 고무풀, 시너에 녹인 폴리아세트산비닐계(系) 등과 같이 고분자를 용액으로 사용하는 접착제, 둘째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비스아크릴레이트 등과 같이 처음에는 저분자의 액상이던 것이 붙은 다음에 중합반응으로 고분자가 되는 접착제, 셋째는 고분자의 고체를 가열하여 용융시켜 붙이는 접착제(핫멜트법)가 있다.

< 접착제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SODIUM STEARATE	2915.70	접착제의 주요 원재료
폴리 프로필렌	3902.10	접착제의 주요 원재료
공업용 전분	3505.10	접착제의 주요 원재료

접착제(제3506.10호)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접착제 생산에는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지만 주요 원재료는 위의 표와 같다. 소개된 주요 원재료를 예로 원산지를 판단하면 원재료 모두 접착제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접착제를 원산지 상품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접착제와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조가공하더라도 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달라지므로 접착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36류 화학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6류에는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601	화약(propellant powders)
3602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rain rockets)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5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3606	페로세륨과 그 밖의 발화성 합금(모양 여부를 불문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2. 제3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36류의 ‘14년 대세계 교역은 26,185천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14년 기준 캐나다와의 교역은 138천달러를 수출, 929천달러를 수입하였다. 제36류의 교역은 영연방 국가중 캐나다와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3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8,314	44,801	-16,488	30,064	56,249	-26,185
對싱가포르	0	0	0	52	0	52
對호 주	17	0	16	50	32	18
對캐 나 다	60	1,939	-1,880	138	929	-791
對뉴질랜드	0	0	0	0	0	0

나. 주요 수출물품

제36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 품목은 3606100000(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로 138천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3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606100000	51	3606100000	50	3606100000	138	-	-
2	3605009000	1	3604100000	0	3603002000	0	-	-

3. 제3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3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601~3605 3606.90	CTH	CTH	CTH	CTH
3606.10	CTH (ex2711~2711.19)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3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의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화약, 폭약, 불꽃놀이 제품 등이 포함된 제3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36류에 속하는 화약 등은 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36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영연방 4개국 모두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한-싱가포르 FTA에서 제3606.10호(라이터에 주입된 액화가스 연료)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되, 제2711호~제2711.19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소매용 액화가스)

품명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Liquid or liquefied-gas fuels in containers of a kind used for filling or refilling cigarette or similar lighters)
세번	3606.1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HS 제3606호의 소매용 액화가스는 천연가스(HS 제2711호)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액화하여 소매판매용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한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HS 4단위 기준에서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달라지도록 체약당사국에서 제조·가공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소매용 액화가스가 분류되는 HS 제3606호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소매용 액화가스를 체약당사국 내에서 제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주요 원재료인 천연가스(HS 제2711호)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액화가스로 만든 후 소매용기에 주입하는 경우 4단위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3701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packs)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나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	사진인화지·판지와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4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와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이나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glues)·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제3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37류의 대세계 교역은 337,970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교역은 377천불을 수출, 273천불을 수입하여 104 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3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65,003	1,079,953	-614,950	638,898	976,868	-337,970
對싱가포르	17,626	4,944	12,666	17,676	5,267	12,409
對호 주	1,259	82	1,165	1,626	0	1,626
對개 나 다	344	207	125	377	273	104
對뉴질랜드	29	0	25	45	0	45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37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3702983000(롤 모양 사진필름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인쇄기판용의 것)로 152천불을 수출하였고, 다음으로 3707902990(사진용 화학조제품)가 151천불을 캐나다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S 제37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705901000	9,414	3701309100	578	3702983000	152	3704002000	41
2	3707909900	2,988	3704002000	562	3707902990	151	3702983000	2
3	3702983000	1,849	3707909200	460	3707909200	49	3707909200	2
4	3707901010	1,837	3707902920	9	3703203000	21	3701100000	0
5	3707909200	1,021	3707903100	9	3705901000	4	3701200000	0
6	3705909090	241	3701999100	4	3701200000	0	3701309200	0
7	3703203000	98	3703101030	2	3701919990	0	3701309999	0
8	3701991000	42	3705901000	2	3701999990	0	3701999990	0
9	3707902100	39	3707901010	0	3702312000	0	3702329030	0
10	3707902990	34	3707909300	0	3702399090	0	3702399090	0

3. 제3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703~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701.10	CTH (ex.3702)	CTH (ex.3702, 3703)	CTH (ex.3702)	CTH (ex.3702)
3701.20 ~3701.99	CTH (ex.3702)	CTH (ex.3702, 3703)	CTH (ex.3702)	CTH
3702.10	CTH (ex.3701)	CTH (ex.3701, 3703)	CTH (ex.3701)	CTH (ex.3701)
3702.31 ~3702.98	CTH (ex.3701)	CTH (ex.3701, 3703)	CTH (ex.3701)	CTH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703	CTH	CTH (ex.3701, 3702)	CTH	CTH
3704	CTH	CTH	CTH	CTH
3705	CTH (ex.3706)	CTH	CTH	CTH
3706	CTH (ex.3705)	CTH	CTH	CTH
3707	CTH	CTSH	CTH	CTS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37류는 4단위 세번변경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한-캐나다 FTA는 제37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3701호를 생산함에 있어 제3702호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제3702호의 재료는 반드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또한 제3702호의 상품을 생산할 때 제3701호의 재료가 사용된다면 동호의 재료는 '원산지 재료'만 사용하여야하는 제한된 규정을 두고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국가와의 FTA는 제3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영연방 4개국 모두 특정품목에 대하여 제3701호 및 제3702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이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제3701호 및 제3702호 외에 제3705호와 제3706호의 재료도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엄격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토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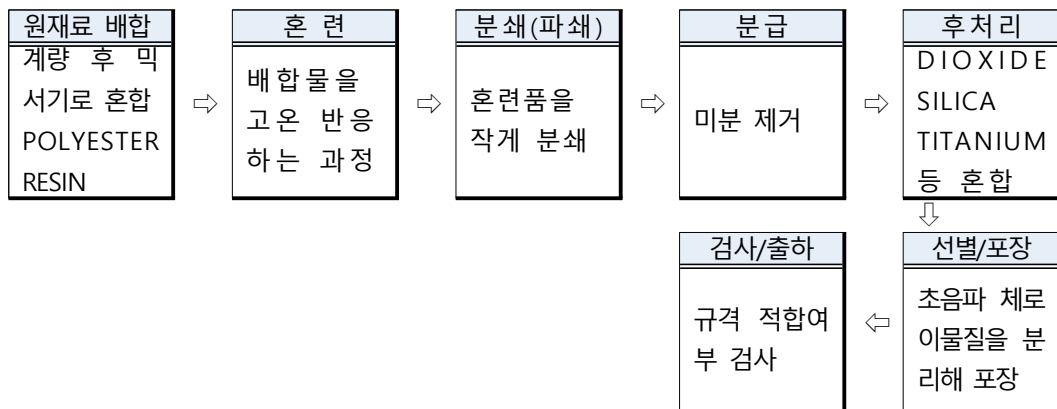
품명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e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세번	3707.9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프린터용 토너는 복사기 또는 레이저 인쇄기에서 잉크 대신 사용되는 검은색 탄소 가루. 가열 또는 압력에 의해 종이에 흡착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를 인쇄한다.

토너는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2종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인 “조색제(Toners)”가 담겨 있는 물품으로서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으로 발생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그 홀더에 끼워져 피동적으로 회전하며 복합기와 연결이 되도록 양 끝단이 특별히 제작되었으나 기어·교반장치 등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교체되는 소모성 물품이다.

토너의 제조과정은 우선 원재료를 계량 후 믹서기로 혼합한다. 배합한 재료를 혼련기에 투입하여 혼련하고 식힌 후 1차 및 2차 분쇄를 거친다. 2차 분쇄 후 재료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3차 분쇄하여 분급하며, 분급한 재료를 후 처리제를 투입한 후 믹싱하여 메쉬를 통해 제품을 선별하고 제품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에 주입하거나 소매포장하여 완성한다.

< 토너의 제조과정 >



< 토너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합성유기 착색제	3204.19	토너의 주요 원재료
dioxide silica	2811.22	
카본 블랙	2803.00	
스티렌 수지	3903.99	
CCA bontron	2918.23	
아크릴 폴리머	3906.90	
안료	2821.10	

앞서 제시된 토너의 원재료를 예로 원산지를 판단해보도록 한다. 토너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토너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4단위 세번이 토너의 4단위 세번(제3707호)과 다르면 토너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위에 예로 제시한 원재료의 세번은 모두 토너의 4단위 세번과 상이하다. 따라서 위의 원재료들을 수입하여(즉, 비원산지재료를) 생산하여도 상품에 사용된 재료와 상품의 세번이 상이하여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토너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8류에는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s)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3	톨유(tall oil)(정제 여부를 불문한다)
3804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하거나 당류를 제거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lignin sulphonates)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3805	검(gum)테레빈유 · 우드(wood)테레빈유나 황산(sulphate)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terpenic oils)(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dipentene),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para -cymene),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6	로진(rosin).수지산(rosin acids)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 (rosin oils), 런검(run gums)
3807	목타르(wood tar), 목타르유(wood tar oils) · 목크레오소트(wood 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 수지산이나 식물성피치(pitch)를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생산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와 파리 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9	완성가공제 · 염색촉진용이나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드레싱과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생산품과 조제품(섬유공업 · 제지공업 · 가죽공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조제품, 납불임용 · 땀질용이나 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조제품, 납불임용 · 땀질용이나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s)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이나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1	안티녹제(anti-knock)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gum inhibitors)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3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s)(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나 바니시 제거제
3815	반응시작제 · 반응촉진제과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6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생 산품은 제외한다)
3817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나 제2902호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doped)된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 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 (doped)된 화학화합물
3819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癭靑油)를 함유하지 않거 나 석유나 역청유(癭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 정한다]
3820	부동(不凍)조제품과 조제 제빙액(de-icing fluids)
3821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이나 동물세포의 성 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culture media)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뒤 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나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 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s), 공업 용 지방성 알코올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6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癭靑油)를 함유하지 않았거나 석유나 역 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3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24,540천달러를 수입은 14,790천달러로 9,750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HS 제3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3,475,794	7,116,457	-3,640,664	3,578,094	6,842,552	-3,264,458
對싱가포르	90,065	411,016	-320,988	76,305	373,626	-297,321
對호 주	15,279	10,155	5,092	14,864	5,525	9,339
對개 나 다	8,446	17,549	-9,132	24,540	14,790	9,750
對뉴질랜드	11,622	4,783	6,824	2,261	4,659	-2,398

나. 주요 수출물품

제38류의 캐나다로의 수출품목은 3822001020(조제된 진단용 시약)로 13,675천불을 수출하였으며, 3824908090(조제유기과산화물)가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으로 3,127천불이다.

HS 제3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818001000	49,113	3817000000	3,449	3822001020	13,675	3824909090	999
2	3824909090	6,730	3824909090	2,448	3824908090	3,127	3808919000	346
3	3814001090	5,626	3822001011	1,335	3810901000	2,787	3816002000	253
4	3811210000	4,662	3808919000	1,198	3812301000	2,673	3808931000	155
5	3814002110	4,007	3811210000	894	3824909090	1,516	3808991000	64
6	3808919000	799	3809910000	885	3818001000	165	3824907500	60
7	3809910000	762	3822001020	810	3822002099	162	3820001000	59
8	3822001011	690	3812301000	653	3817000000	136	3824908090	55
9	3811900000	508	3809100000	604	3815191000	123	3819001000	43
10	3812301000	350	3812302000	505	3824907500	54	3821000000	40

3. 제3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801~3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05~380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07~3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0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12~3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5.3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905.3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3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821~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7류까지, 제40류 및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8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801	CTH	CTSH	CTH	CTSH
3802~3804 3807, 3810 3812~3813 3815~3816 3818~3819 3822	CTH	CTH	CTH	CTH
3805 3809.91 ~3809.93 3811	CTH	CTH	CTSH	CTH
3806 3823	CTH	CTSH	CTSH	CTSH
3808.50	CTH	(CTSH + 유효성분 중량의 50% 이상이 원산지물품) or RVC40	CTH	CTH or RVC 40
3808.91 ~3808.99	CTH	CTSH + 유효성분 중량의 50% 이상이 원산지물품	CTH	CTH or RVC 40
3809.10	CTH (ex.3505)	CTH	CTSH	CTH
3814	CTH + RVC 55	CTH	CTH	CTH
3817	CTH	CTH or RVC 40	CTH	CTH
3820	CTH + RVC 55	CTH	CTH(ex.2905.31) or (From 2905.31 + MC 55 of 2905.31)	CTH
3821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CTH	CTH
3824	CTH	CTSH	CTH	CTSH
3825.10 ~3825.69	CC (ex.28~38, 40~90)	CTH	CC (ex.28~37, 40~90)	CTH
3825.90	CC (ex.28~38)	CTH	CC (ex.28~37, 40, 90)	CTH
3826	CTH (ex.3824)	CTSH	CTH	CTS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38류는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MC법)으로 다양한 결정기준이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38류에는 매우 다양한 화학공업생산품이 분류된다. 제3801호 및 제3802호는 흑연 및 탄소제품이 분류되고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목재로부터 얻은 화학생산품이 분류되는 제3803호~제3807호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그 외 각종 화학공업 조제품 및 화학품이 분류되는 제3808호~제3823호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제3820호의 부동액은 제2905.31호의 물품으로 생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제2905.31호 외의 재료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반면 제2905.31호로부터 생산할 경우에는 제2905.31호의 재료가 비원산지재료라면 상품(부동액)의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아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화학공업 및 연관공업의 화학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824호~제3825호의 경우 제3824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제3825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3825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면서 제28류~제37류, 제40류~제90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국가와의 FTA는 제3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고르게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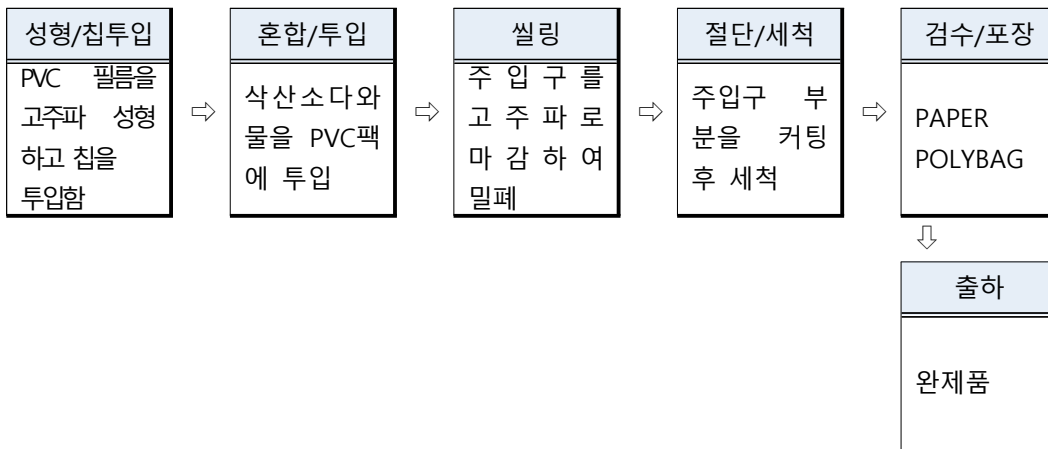
다만 제3808호의 품목에 대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유효성분 중량의 50%이상이 원산지물품일 것을 요하는 특징이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핫팩)

핫팩은 스팀이나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하는 팩으로 체온이 내려갔을 때 주로 사용되며, 의료목적으로 저체온증의 환자에게 이용되기도 하는 등 활용성이 매우 높다.

품명	핫팩
세번	3824.9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 핫팩의 제조과정 >



핫팩의 제조과정은 PVC 필름을 일정한 모양대로 고주파하여 팩을 만든 후 칩을 투입한다. 삭산소다와 물의 혼합물에 열을 가하여 일정비율로 준비한 후 혼합물을 PVC 팩에 투입한다. 액주입구를 고주파로 마감하여 밀폐시키고 주입구 부분을 모양에 맞게 커팅하고 세척한다. 이후 제품을 검수하여 폴리백과 포장지에 포장한다.

< 핫팩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이소프로필 알콜	2905.12	토너의 주요 원재료
항상디에틸	2920.90	
유기계면활성제	3402.13	
스테아린산	3823.11	
PVC 필름	3920	
폴리백	3923.29	
활성탄	3802	

햇팍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위에서 햇팍의 일반적인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확인하였다. 햇팍은 제3824.90호에 분류되므로 사례에서 제시된 원재료의 4단위 세번과 비교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면 모든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햇팍과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된 원재료 모두 비원산지재료라고 하더라도 햇팍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제40류)

제7부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절에 속한 2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일차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젠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4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②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과 반제품·완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갈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2. 제3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39류의 대세계 교역은 21,121,951천불이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캐나다로의 교역역시 139,265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3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31,172,468	10,615,390	20,557,077	31,825,944	10,703,993	21,121,951
對싱가포르	163,266	256,406	-93,225	171,962	290,299	-118,337
對호 주	218,112	9,324	208,722	231,879	7,046	224,833
對캐 나 다	147,876	20,099	127,698	160,182	20,917	139,265
對뉴질랜드	70,863	2,895	67,921	74,806	3,217	71,589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39류의 캐나다로의 수출 상위품목은 3903300000(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로 26,707천불을 3903110000(발포성의 폴리스티렌)가 15,571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HS 제3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3920100000	13,768	3918101000	16,725	3903300000	26,707	3902300000	21,218
2	3919900000	11,649	3907309000	15,898	3903110000	15,571	3903110000	12,019
3	3907309000	8,508	3903110000	14,556	3923210000	15,113	3902100000	5,834
4	3903901000	8,428	3919900000	12,214	3918101000	14,976	3901101000	4,325
5	3923100000	8,144	3903300000	12,064	3921901000	10,221	3903300000	2,288
6	3921906020	8,139	3926909000	12,056	3926909000	8,531	3921904020	2,280
7	3920510000	7,575	3902300000	10,158	3921904020	6,935	3920200000	2,161
8	3921191010	7,507	3921901000	7,826	3923290000	4,965	3917311000	1,919
9	3926909000	7,397	3906909000	7,782	3921902000	3,941	3920510000	1,776
10	3902100000	5,857	3907910000	6,660	3912399000	3,586	3919900000	1,403

3. 제3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3901~39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해당 물품의 폴리머 전체 중량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916~3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901~3913	CTH	CTH	CTH + MW 40 of 3901~3915	CTH
3914~3915	CTH+RVC 45	CTH	CTH + MW 40 of 3901~3915	CTH
3916~3918 3920~3921	CTH+RVC 45	CTSH	CTH	CTH
3919	CTH+RVC 45	CTH	CTH	CTH
3922~3926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한-캐나다 FTA는 제3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였다. 다만 제3901호~제3913호, 제3914호~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외에 특정 비원산지재료가 전체중량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해설) 한-캐나다 FTA는 제39류에 속하는 품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다른 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품목은 제3901호~3915호에 속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중량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제3901.10호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생산할 때 제3902.30호의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할 경우, 폴리프로필렌이 '비원산지재료'라면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저밀도 폴리에틸렌 전체중량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국가와의 FTA는 제39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싱가포르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부가가치 기준이나 6단위 세번변경기준도 함께 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폴리머의 사용을 중량기준으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택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제39류의 품목에 대하여 영연방 4국 중에서 유일하게 4단위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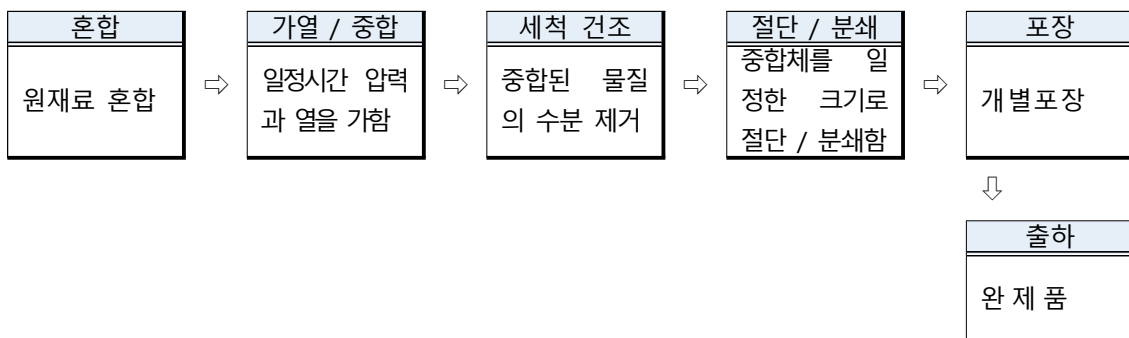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폴리스티렌)

품명	폴리스티렌
세번	3903.3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해당 물품의 폴리머 전체 중량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스티렌을 중합하여 만든 열가소성의 수지로 무색투명하다. 유전체로서 또 전기 절연물로서 매우 양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스티렌이라고도 하는데 동축 케이블의 중심 도체의 지지물, 광학 렌즈 등에 사용된다.

폴리스티렌을 제조는 원재료를 중화하기 전에 물에 용해시켜 준비공정을 거친 후 주요 원재료인 스티렌 단량체를 투입하여 중합반응을 일으키고 세척과 탈수, 건조공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 반응시 넣었던 잔존물들을 제거한 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고 여기서 Pentane의 방출을 막기 위해 코팅을 한다. 이후 개별포장 후 완제품을 완성한다.

< 스티렌의 주요 제조공정 >



폴리스티렌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다만 동호의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제3901호~제3915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품 총중량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사례에서 폴리스티렌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를 나열하였다. 상품의 원산지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원재료의 지위를 '원산지재료'인지 '비원산지재료'인

지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각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알수 없지만 폴리스티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는 무리가 없다.

< 폴리스티렌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styrene monomer	2902.50	폴리스티렌의 주요 원재료
pentane	2901.10	
acrylo-nitrile monomer	2926.10	
fatty soap	3401.20	
methyl methacrylate	2916.14	

왜냐하면 폴리스티렌의 4단위 세번(제3903호)와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비원산지재료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례에서 모든 원재료 세번이 상품세번과 달라 사례의 원재료는 모두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폴리스티렌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동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3901호~제3915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는 일정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 열거된 원재료 외에 제3901호~제3915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중량의 40%를 초과해서는 쓸 수 없다.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4011호와 제4002호는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나, 제4001호(천연고무)는 수입이 절대적으로 많다.

품목번호	품 명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4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型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4007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型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7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2. 제4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40류의 '14년 기준 대세계 교역은 수출이 8,082,441천불, 수입이 2,749,882천불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동일연도 캐나다로의 수출역시 149,945천불을 수입의 경우 36,966천불로 112,979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4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8,321,428	3,084,129	5,237,299	8,082,441	2,749,882	5,332,559
對싱가포르	30,352	17,128	13,182	30,376	40,751	-10,375
對호 주	147,098	4,202	142,858	129,896	3,732	126,164
對캐 나 다	158,303	50,652	107,616	149,945	36,966	112,979
對뉴질랜드	23,898	29	23,843	22,091	225	21,866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40류의 캐나다로의 수출 상위품목은 4011101000(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타이어), 4002190000(스티렌-부타디엔고무), 4011201090(래디알 구조의 버스용·화물차용 고무타이어)로 수출실적은 각각 64,580천불, 36,582천불, 15,038천불을 수출하였다.

HS 제4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4011101000	8,026	4011101000	45,358	4011101000	64,580	4011101000	13,160
2	4005101000	4,816	4011201010	28,362	4002190000	36,582	4011201010	4,344
3	4014100000	3,004	4011201090	20,742	4011201090	15,038	4011201090	1,518
4	4013102000	2,704	4002190000	10,539	4011201010	10,336	4012120000	749
5	4016940000	2,245	4002209000	4,713	4016991090	6,777	4002190000	664
6	4008299000	1,559	4013102000	3,940	4016930000	5,160	4008211000	251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7	4011201090	1,465	4016930000	2,060	4009210000	2,381	4013102000	222
8	4016930000	767	4013909020	1,592	4002209000	2,117	4011400000	200
9	4011201010	725	4016100000	1,530	4013102000	1,100	4005910000	156
10	4002590000	592	4009210000	1,021	4009410000	833	4008299000	112

3. 제4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4001~4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400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0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4007~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001	CC	CTSH	CTH	CTH
4002.11~4002.70	CTH (ex.29)	CTSH	CTH	CTH
4002.80~4002.99	CTH (ex.29)	CTH or RVC 40	CTH	CTH
4003~4005 4007~4012.19 4013~4017	CTH	CTH	CTH	CTH
4006	CTH	CTH	CTH(ex.4001) or (From 4001 + MC 65 of 4001)	CTH
4012	CTH (ex.4011)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제4006호의 경우에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해설) 제40류에는 천연고무, 천연고무와 유사한 천연검, 합성고무 라텍스 및 재생고무 등의 일차제품과 웨이스트, 스크랩 등과 고무류의 기타 제품들이 분류된다.

우선 제4006호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호와 다른호의 비원산지 재료로 붙어 해당호로 변경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4006호 비가황의 기타고무제품은 천연고무(제4001호)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 제4006호의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제4001호의 천연고무가 사용된다면 천연고무가 원산지재료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 판단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제4006호의 한-캐나다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4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400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0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우선 천연고무가 원산지 재료이고 그 외 상품과 다른 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호 1호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쉽게 충족한다.

만약 천연고무를 포함하여 기타의 재료들도 모두 비원산지재료인 경우에 각호 1의 규정에 따라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제4001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각호 2호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각호 제2호에 따라 제40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는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65%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40류에 속하는 품목들에대하여 영연방 4개국은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한-캐나다 FTA는 제4006호의 물품은 제4001호의 재료사용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구체화한 특징이 있다.

그 외 싱가포르의 합성고무(4002호)의 일부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되 제29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외에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규정한 유일한 국가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승용자동차용 고무타이어)

품명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타이어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Of radial carcass)
세번	4011.1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 타이어의 종류와 구조

- ① 튜브타입 타이어 : 타이어 내부에 있는 튜브에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타이어
- ② 튜브레스 타이어 : 튜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타이어 내면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특수고무 (인너라이너)를 입혔으며 비드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 타이어
- ③ 바이어스타이어 :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타이어로서 크레드 센서터라인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도(약 38도)를 이룬 타이어
- ④ 래디알 타이어 : 카카스 코드가 트레드 센터라인에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배열된 구조로 스틸 벨트로 잘 보강된 타이어

타이어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카이어코드지, 비드와이어, 기타 고무 배합재료 및 기타 배합재료 등을 제조공정에 따라 결합 및 조립하여 제조한다.

< 승용차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합성고무	4002.11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카본블랙	2803.00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타이어코드지	5902.10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스틸코드	7312.10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가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완제품과 동일한 세번의 물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8부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요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제43류)

제8부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1. 품목분류 체계

제41류에는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dreed)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ed)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이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ed)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이나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 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를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7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parchment-dressed)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2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4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가죽(patent leather)과 적층한 페이턴트 가죽(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가죽(metallised leather)
4115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s) 모양이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 2002년도에 제4108호부터 제4111호까지의 4개 호는 삭제

2. 제4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41류의 대세계 교역은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싱가포르·호주·캐나다·뉴질랜드 4개국 역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14년 기준 캐나다의 경우 41류의 수입이 23,846천불, 수출이 1,509천불로 22,337천불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4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006,486	1,026,219	-19,733	1,003,882	1,077,294	-73,412
對싱가포르	375	7,330	-6,965	476	7,861	-7,385
對호 주	233	3,732	-3,511	488	2,023	-1,535
對캐나다	1,186	17,148	-15,968	1,509	23,846	-22,337
對뉴질랜드	75	21,001	-20,936	75	24,302	-24,227

나. 주요 수출물품

캐나다에서의 제41류의 수출 상위품목은 4107920000(그레인 스플릿)가 1,341천불로 다른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실적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4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4107920000	405	4107920000	319	4107920000	1,341	4107920000	71
2	4104110000	30	4107990000	106	4113200000	132	4113900000	4
3	4113300000	29	4113200000	61	4107990000	16	4101501014	0
4	4107990000	6	4115100000	2	4112000000	11	4101501024	0
5	4112000000	6	4101501024	0	4107110000	9	4102211000	0

3. 제4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4101~41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4.11 ~41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4.41 ~4104.49	제4104.11호 또는 제4104.1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5.30	제4105.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22	제4106.2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32	제4106.3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40	1. 유연처리한 원피[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크러스트 원피: 제4106.40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한 원피[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41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92	제4106.9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7~4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101~4103	CC(ex.01)	CC	CC	CTH
4104.11~4104.19 4105.10 4106.21 4106.31 4106.91 4107~4113	CTH	CTH	CTH	CTH
4104.41	CTH	CTSH	CTH or From 4104.11,4104.19	CTSH
4104.49	CTH	CTSH (ex.4104.41)	CTH or From 4104.11,4104.19	CTSH (ex.4104.41)
4105.30	CTH	CTSH	CTH or From 4105.10	CTSH
4106.22	CTH	CTSH	CTH or From 4106.21	CTSH
4106.32	CTH	CTSH	CTH or From 4106.31	CTSH
4106.40	CTH	CT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SP
4106.92	CTH	CTSH	CTH or From 4106.91	CTSH
4114~4115	CTH	CTS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1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재료로부터 생산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1류에는 모피를 제외한 원피와 가죽이 분류된다. 소, 양, 기타의 원피가 분류되는 제4101호~제4103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제4101호 소의 원피를 제0102호의 소로부터 생산하면 2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된다. 그러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제4101호)를 수입하여 털을 깎은 후 캐나다로 수출할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4104.11~4104.19호의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습윤상태의 것)는 제4101호(소의 원피)로부터 생산된다. 동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소의 원피를 수입하여 습윤상태의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를 생산하면 이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4104.41~4104.49호의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건조상태)는 ‘제4104.11호 또는 제4104.1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명시한 특정 세번에서 생산하면 원산지지위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동물품은 제4104.11호 또는 제410.19호를 건조하면 완성되는 물품으로 습윤상태의 소 원피(제4104.11호~제4104.19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건조하여 캐나다로 수출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동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사용을 불문하고 폭넓게 원산지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 모두 제41류의 원피 및 가죽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택하고 있다.

다만 제4101호~4103호의 원피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뉴질랜드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물품의 특성상 원산지판단에 있어 동일한 풀이로 해석되므로 차이가 없다.

제4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체로 비원산지재료 사용에 대해 엄격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나 뉴질랜드의 경우 제4104.49호의 경우 원재료인 제4104.41호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그레인 스플릿)

품명	그레인 스플릿 (Grain split)	
세번	4107.92.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가죽제조과정에서 스플릿(split)이란 원피를 두 층 또는 세 층씩 상하로 분할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분할하지 않은 원래 두께의 통가죽은 풀 그레인(full grain)이라 부르며, 털이 붙어 있는 표면층을 분할하여 가공한 것은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은면혁)이라고 하며, 은면층 아래의 육면층을 가공한 것을 스플릿(split, 스플릿)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완성가공을 거친 소가죽의 주요 원재료는 유연처리한 소의 원피이다.

< 그레인 스플릿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유연 처리한 소의 원피	4104	소의 원피를 유연 처리 가공한 것

가죽의 가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① 준비단계 : 가죽생산에 불필요한 원피의 성분들인 털, 지방, 가용성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단백질 섬유외 망상조직만을 남겨 놓는 공정

② 유연처리 및 크러스트 처리 단계 : 단백질 섬유의 망상조직에 유제약품을 반응시켜 일정한 섬유조직을 만드는 공정.

③ 완성가공 단계 : 유연처리가 끝난 섬유조직에 충실감, 색깔, 유연성 및 윤활감을 주어 사람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정

< 소가죽 생산 공정 >

원피	유연처리, 크러스트처리	완성가공
생것, 염장, 건조, 석회처리, 산처리, 기타 보존처리한 원피(탈모.스플릿여부 불문)	유연제(식물성탄닌, 크로뮴염, 합성화학약품 등) 처리 ⇒ 건조처리(크러스트처리)	유연.신장.박연.타연.경화.도료 도포.은면가공 또는 각인.윤택.연마.왁스처리.흑염.그레이징.광택처리.날염 등 완성가공
HS 제4101호~제4103호	HS 제4104호~제4106호	HS 제4107호, 제4112호~제4113호

동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원재료인 소의 원피(HS 제4101호)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유연처리 등 가죽을 만드는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그레인 스플릿(HS 제4107호)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마찬가지로 유연처리 등 일차 가공된 원피(HS 제4104호)의 경우에도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입하여 추가가공을 통해 그레인 스플릿(HS 제4107호)을 생산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2류에는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201	동물용 마구(고삐 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는 불문한다)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executive-cases)·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 케이스·권총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 시트(sheets)·방직용 섬유재료·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나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 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3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5	그 밖의 제품[가죽이나 컴퍼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6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방광이나 건(腱)의 제품

※ 2007년도에 제4204호는 삭제

2. 제4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42류의 ‘14년 기준 대세계 교역은 1,809,309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은 4,870천불, 수입은 338천불로 4,532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HS 제4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657,607	2,006,303	-1,348,697	399,088	2,208,397	-1,809,309
對싱가포르	12,620	3,430	9,153	20,553	2,785	17,768
對호 주	13,992	231	13,731	4,250	426	3,824
對캐 나 다	7,849	352	7,470	4,870	338	4,532
對뉴질랜드	2,498	25	2,450	506	20	486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42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4202921020(외부 표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케이스·가방)가 2,574천불을 4202321020가 775천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4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4202211090	6,791	4202321020	1,021	4202921020	2,574	4202921020	289
2	4202222000	3,379	4202921020	969	4202321020	775	4202321020	141
3	4202121010	1,081	4202211090	418	4202121010	704	4202999000	16
4	4202311090	1,061	4202321090	323	4201009090	111	4202311090	13
5	4202921020	1,010	4202122000	205	4202921090	83	4202211010	12
6	4202122000	998	4201009090	198	4202211090	73	4202921010	12
7	4202111090	885	4202922000	185	4202221010	64	4202921090	6
8	4202922000	682	4202921090	135	4202122000	58	4202922000	3
9	4202322000	656	4202221010	100	4202121090	48	4201009090	2
10	4203301090	564	4202221020	100	4202321010	48	4202121090	2

3. 제4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4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201~4203 4206	CTH	CTH	CTH	CTH
4205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41류의 가죽을 수입하여 마구(제4201호), 핸드백 등 가죽제품(제4202호), 가죽의류(제4203호), 공업용가죽제품(제4204호), 기타의 가죽제품(제4205호)을 생산하여 캐나다로 수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 모두 제42류의 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어 국가간 원산지 판단의 차이가 없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패션 에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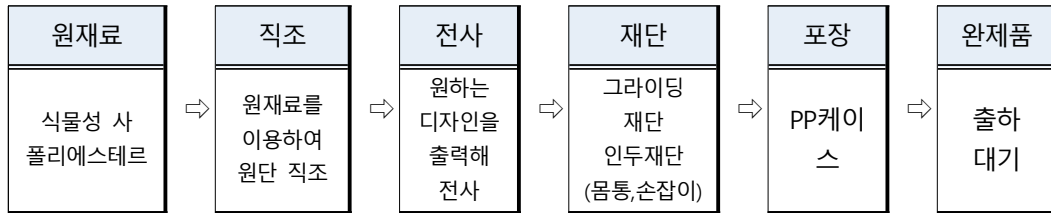
품명	패션 에코백
세번	4202.92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패션에코백은 최근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지거나 가볍게 휴대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이다. 친환경 소재의 경우 린넨이나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며 이외에도 폴리에스테르 등 패션을 중시한 것도 있다.

원단직조공정에 있어서 폴리에스테르 및 면사 등 원재료로 원단을 직조한 후 디자인을 위해 종이에 원하는 디자인을 출력하고 종기와 원단을 함께 디지털로 전사한다.

전사된 원단을 컴퓨터 그라인딩 재단과 인두재단으로 가방 몸판과 손잡이 부분을 재단하고, 패키징 공정에서 끈 부분에 플라스틱제 탭을 이용하여 종이 품질보증서와 내지를 사용하여 PP케이스에 넣고 봉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 에코백 생산공정 >



< 에코백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인조필라멘트 사	5402	에코백의 주요 원재료
면 재봉사	5204	
코딩제	3208.90	
안료	3212.90	
라벨	482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4202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4202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4202호에 속하는 패션 에코백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원재료는 없다. 따라서 원산지 지위를 불문하고 사례의 에코백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며 한-캐나다 FTA 협정상 원산지 물품이다.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3류에는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43과 같이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꼬리부분·발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나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2	모피(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꼬리부분·발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2. 제4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43류의 무역수지는 286,175천불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19,314천불을 수입은 305,489천불을 기록하였다.

HS 제4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5,644	312,770	-297,127	19,314	305,489	-286,175
對싱가포르	89	0	85	408	0	408
對호 주	6	1	3	94	13	81
對캐나다	26	36,100	-36,088	10	26,161	-26,151
對뉴질랜드	0	65	-66	14	228	-214

나. 주요 수출물품

제43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4303101600(여우 모피의류)로 4천불을 4304002000(인조모피의 제품)가 3천불로 수출실적은 존재하나 미미하다.

HS 제4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4303101100	277	4303101100	76	4303101600	4	4303900000	14
2	4303101600	54	4303101600	14	4304002000	3	4302199010	0
3	4303101200	29	4303101200	4	4303102100	1	4302199090	0
4	4303900000	28	4302199010	0	4303102600	1	4303101200	0
5	4303102100	14	4302199090	0	4303102920	1	4303102990	0
6	4303102600	4	4303101300	0	4301100000	0	-	-
7	4303102990	2	4303101920	0	4301600000	0	-	-

3. 제4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302~4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301	CTH (ex.01)	CTH	CC	CTH
4302~4304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3류는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모피(제4301호)를 수입하여 모피(제4302호), 모피의류(제4303호)를 역내에서 생산하여 캐나다로 수출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인조모피와 그 제품(제4304호)를 생산하고 이를 캐나다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생모피(제4301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동물(주로 01류에 분류)로부터 생모피를 획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43류의 품목에 대하여 영연방 4개국은 대체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생모피(제430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 국가별로 상이한 특징이 있다.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국가들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데, 생모피의 생산 특성상 동물(01류)로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의미는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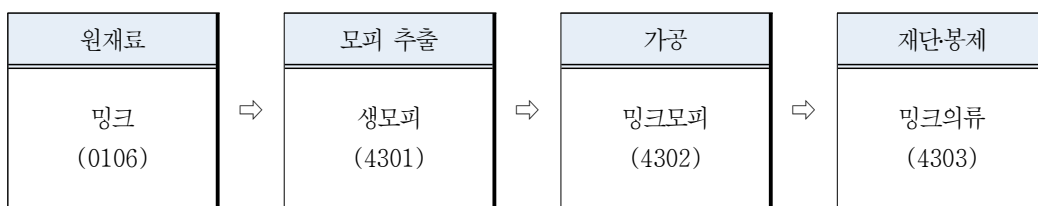
그러나 싱가포르의 생모피의 원재료가 되는 01류를 원산지재료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결정기준을 택한 차이점이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밍크 모피의류)

품명	밍크 모피의류 (Articles of apparel of Fox)		
세번	4303.10.11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밍크의류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대부분이 밍크모피로 구성된다.

< 밍크의류 생산공정 >



한-캐나다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밍크의류의 원재료인 밍크(HS 제0106호), 생모피(HS 제4301호), 밍크모피(HS 제4302호) 중 어떤 물품이든 수입 후 밍크의류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과 지조세공물 (제44류~제46류)

제9부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1. 품목분류 체계

제44류에는 ‘목재와 그 제품, 목탄’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401	떨나무(통나무.목편.작은 가지.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모양의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s)·펠릿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2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3	원목[껍질이나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split poles),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s)[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휼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5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4406	궤도용 침목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평삭한 것이나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용 단판과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평삭(平削)한 것이나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s)과 프리즈(friezes)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 쪽의 가장자리·마구리나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나 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 OSB)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 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1	섬유판(fibre-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3	고밀도화 목재[블록(blocks) 모양·플레이트(plates) 모양·스트립(strips)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4	목재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5	목재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s)·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로 만든 케이블드럼(cable-drums), 목재로 만든 팔레트(pallets)·박스팔릿과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팔레트 칼라(pallet collars)
4416	목재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s)·텍(tubs)과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품[통널(staves)을 포함한다]
4417	목재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목제골
4418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建具)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s)·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9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420	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inlaid) 목제품, 목재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용이나 칼붙이와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caskets)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재로 만든 가구
4421	그 밖의 목제품

2. 제4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44류의 대세계 교역은 3,264,151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에서의 수출은 404천불을 수입은 288,347천불로 287,943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HS 제4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93,712	2,870,813	-2,777,102	101,537	3,365,688	-3,264,151
對싱가포르	675	690	-46	601	617	-16
對호 주	2,284	30,604	-28,348	1,988	44,696	-42,708
對캐 나 다	275	245,840	-245,596	404	288,347	-287,943
對뉴질랜드	59	401,648	-401,601	92	383,012	-382,920

나. 주요 수출물품

제44류의 캐나다로의 수출품목은 4415100000(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가 217천달러, 4421909000가 59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4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4415200000	256	4411149000	1,055	4415100000	217	4411149000	66
2	4418600000	106	4411142090	240	4421909000	59	4411142010	8
3	4403102000	83	4411922010	204	4411141000	41	4411922010	5
4	4419009000	65	4402909000	87	4419009000	41	4421909000	5
5	4411949000	44	4412999299	76	4412999299	18	4411142090	4
6	4421909000	12	4415200000	69	4412941000	7	4412999219	2
7	4418200000	8	4413000000	61	4421100000	6	4418909000	1
8	4415100000	5	4407999010	38	4418100000	5	4419002090	1
9	4411149000	4	4414000000	30	4414000000	2	4401310000	0
10	4414000000	3	4421909000	25	4402901000	2	4401390000	0

3. 제4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44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401~4403 4409~4413 4415~4421	CTH	CTH	CTH	CTH
4404~4408	CTH (ex.4401, 4403)	CTH	CTH	CTH
4414	CTH (ex.4409)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4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국가 모두 제44류의 목제품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제4401호, 제4403호, 제4409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화물용 나무상자)

품명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Cases, boxes, crates, drums and similar packings; cable-drums of wood)
세번	4415.1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나무상자는 주로 HS 제4407호에 해당하는 제재목을 못 등으로 조립하여 만든다.

< 목재 패럿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제재목	4407.99	기타 제재목(두께 6mm 초과)
못	7317.00	제재목의 결합용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원재료인 제재목과 못이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5류에는 ‘코르크(cork)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501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의 웨이스트, 부순 코르크·알갱이 모양 코르크나 잘게 부순 코르크
4502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거칠게 각을 만든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판 모양·시트(sheets) 모양이나 스트립(strips) 모양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s) ¹²⁾ 을 포함한다]
4503	천연코르크의 제품
4504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응집코르크의 제품

2. 제4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45류의 교역은 대세계의 경우 ‘14년 기준 3,604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교역실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4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世 계	247	3,606	-3,360	224	3,828	-3,604
對싱가포르	0	0	0	0	3	-3
對호 주	0	1	-1	0	0	0
對개 나 다	0	5	-6	0	5	-5
對뉴질랜드	0	0	0	0	0	0

12) 일반적으로 블랭크(blanks)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된 제품과 같이 분류한다. 그러나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는 코르크의 제품(제4503호나 제4504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코르크의 반제품으로 제4502호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제4502호의 용어에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통칙 제2호 가목보다 통칙 제1호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물론 가장자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마개용 코르크는 제4503호나 제4504호로 분류한다.

3. 제4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4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501	CTH	CTH	CTH	CTH
4504				
4502	CTH(ex.4501)	CTH	CTH	CTH
4503	CTH(ex.4502)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코르크 제품에 4단위 호의 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가 부여된다. 예를들어 천연코르크(제4501호)를 잘라서 코르크제품(제4502호)을 만드는 단순공정이라 하더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 모두 제45류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천연코르크 자체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코르크 제품의 원산지 판단시 주의가 필요하다.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1. 품목분류 체계

제46류에는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생산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를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생산품(시트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과 같이 최종 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602	바구니세공물(basketware)·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2. 제4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46류의 대세계 교역은 ‘14년 기준 30,051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교역실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4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066	29,315	-28,249	1,119	31,170	-30,051
對싱가포르	0	0	-1	3	0	3
對호 주	0	0	-1	1	2	-1
對캐 나 다	0	0	-2	0	0	0
對뉴질랜드	0	0	-1	0	0	0

3. 제4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46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6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물 혹은 플라스틱을 수비하여 조물재료(제4601호)를 생산하거나, 조물재료(제4601호)를 수입하여 농세공품 등(제4602호)를 생산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 모두 제46류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와 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제49류)

제10부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종이나 판지의 제품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이프문서와 도면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품목분류 체계

제47류에는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701	기계목재펄프
4702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5	기계적 펄핑(pulping)과 화학적 펄핑(pulping)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제4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47류의 대세계 교역은 1,761,361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교역 역시 수출은 존재하지 않으며, 266,980천불의 수입만 발생하였다.

HS 제4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73,797	1,930,576	-1,856,780	70,218	1,831,579	-1,761,361
對싱가포르	0	23,133	-23,134	113	17,125	-17,012
對호 주	0	4,868	-4,871	0	3,970	-3,970
對캐 나 다	0	296,543	-296,549	0	266,980	-266,980
對뉴질랜드	0	61,564	-61,566	0	75,058	-75,058

3. 제4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4701~4702, 4705~4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703~47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701~4702 4705~4707	CTH	CTH	CTH	CTH
4703.11~4703.19 4704.11~4704.19	CTH	CTH	CTSH	CTH
4703.21~4703.29 4704.21~4704.29	CTH	CTSH	CTS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7류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7류에 속하는 물품은 제4703호와 제4704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다·황산펄프(제4703호)와 아황산펄프(제4704호는) 목재를 화학처리하여 제조하는데 표백하지않은 소다펄프나 황산펄프(제4703.11~19호)를 수입하여 표백을 하는 경우에 표백한 소다펄프나 황산펄프(제4703.21~29)호로 소호가 변경되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아황산 펄프역시 미표백의 아황산펄프를 수입

하여 역내에서 표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47류의 펄프에 대하여 영연방 4개국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소다·황산펄프(제4703호)와 아황산펄프(제4704호)의 경우 캐나다만 다른 국가와 달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미표백 펄프(제4703.11~4703.19호, 호4704.11~4704.19호)를 표백한 것(제4703.21~4703.29호, 호4704.21~4704.29호)만으로는 호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그러나 캐나다와의 FTA에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례에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차이가 있다.

제48류 종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48류에는 ‘종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2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 제4815호는 삭제

품목번호	품 명
4801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으로 한정한다)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이나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종이[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손으로 만든 종지와 판지
4803	화장지나 안면용 티슈스톡·타월이나 냅킨스톡(napkin stock)·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 것(crinkled)·올록볼록한 것(embossed)·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으로 한정한다]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s, 透寫紙)·글라신지(glassine papers)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7	겹붙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08	물결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주름지거나(creped).구겨지거나(crinkled)·올록볼록하거나(embossed)·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세트플레이트(offset plates)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지와 판지[결합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령

	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로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1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으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이나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나 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2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 블록(blocks).필터 슬래브(slabs)와 필터 플레이트(plates)
4813	꺾리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booklets)나 튜브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플레이트(offset plates)(상자에 든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pouches).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s)·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로 만든 상자·포장대와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제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제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s)·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나 그 밖의 것)·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의 앨범과 책 커버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 여부를 불문한다)
4822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s)·스풀(spools)·콕(cops)과 이와 유사한 권취용 제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s)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4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48류의 교역은 수출의 경우 3,095,462천불을 수입은 1,721,513천불로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동일연도 캐나다와의 교역은 21,390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4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3,246,479	1,628,819	1,617,660	3,095,462	1,721,513	1,373,949
對싱가포르	52,422	12,335	40,041	47,058	9,024	38,034
對호 주	155,327	7,098	148,183	167,750	5,550	162,200
對캐 나 다	29,259	9,268	19,959	33,088	11,698	21,390
對뉴질랜드	23,685	16,706	6,947	18,483	18,748	-265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48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4810191000[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지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이 25,293천불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810131000가 1,767천불을 기록하였다.

HS 제4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4801000000	23,381	4810191000	108,949	4810191000	25,293	4810191000	16,463
2	4810191000	9,192	4801000000	23,449	4810131000	1,767	4820100000	515
3	4819501000	2,813	4810131000	7,951	4809902090	1,664	4819400000	364
4	4810929000	2,195	4820100000	5,535	4809902010	577	4809902090	200
5	4819200000	1,567	4810929000	4,872	4819200000	562	4818100000	107
6	4811590000	1,306	4810199000	2,926	4814201000	488	4810929000	96
7	4809201000	628	4809902090	2,512	4816902090	421	4809902010	78
8	4805190000	574	4810139000	2,486	4814901090	364	4810199000	73
9	4805259000	496	4811410000	1,933	4818900000	293	4821900000	64
10	4819509000	481	4818200000	1,471	4820100000	256	4810131000	60

3. 제4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4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801~4808.10 4808.90~4810 4811.41~4811.49 4812~4814 4817~4822 4823.40	CTH	CTH	CTH	CTH
4808.40	CTH	CTH (ex.4804)	CTH	CTH
4811.10 4811.51~4811.9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CTH	CTH
4816	CTH(ex.4809)	CTH (ex.4809)	CTH	CTH (ex.4809)
4823.20	CTH	CTH (ex.4805.40)	CTH	CTH
4823.61~4823.70	CTH	CTSH	CTH	CTH
4823.9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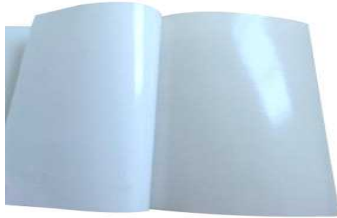
(기본해설) 제4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롤상의 복사지(제4809호)를 잘라서 복사지(제4816호)를 만드는 비교적 단순한 공정의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 모두 제48류의 종이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한-캐나다 FTA는 제4816호에 대하여 제한 없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였으나,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되 제4809호는 원산지재료로 사용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4809호의 물상의 복사지를 수입하여 절단하여 제4816호의 복사지를 만들 경우, 한-캐나다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동물품의 특성상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필기용, 인쇄용 종이]

품명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지와 판지
세번	4810.19.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지와 판지는 식물성 재료, 폐지, 펄프 등을 가공하여 제조한다.

< 필기용 종지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식물성 재료	제14류	펄프의 원료
목재	제44류	펄프의 원료
펄프	제47류	종이의 원료

< 종이 생산공정 >

목재 (HS 제44류)	⇒	목재펄프 (HS 제4701호~제4705호)	⇒	종이 (HS 제48류)
식물성 재료 (HS 제14류)	⇒	기타펄프 (HS 제4706호)	⇒	종이 (HS 제48류)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원재료인 식물성 재료(HS 제14류), 목재(HS 제44류) 또는 펄프(HS 제47류) 등이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와 도면

1. 품목분류 체계

제49류에는 ‘인쇄서적·신문·회화와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와 도면’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s)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날장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2	신문·잡지와 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3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904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의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 복사나 카본 복사한 것 ¹³⁾
4907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이나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s)]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이나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나 장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91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2. 제4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49류의 ‘14년 기준 대세계 교역은 71,951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같은해 캐나다가 2,021천불을 수출하였고, 1,140천불을 수입하여 881천불의 무역

13) 제4906호로 분류되는 도안은 제4906호의 용어와 HS 해설서에 의거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감광성 종이에 사진 복사한 것과 카본 복사한 것만이 분류되는 것이며, 원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생산된 원본은 제4911.91호로 분류되는 것이다.(관세청 분류 47280-640, 1997. 9. 10)

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4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91,394	311,481	-20,087	247,268	319,219	-71,951
對싱가포르	1,611	11,453	-9,859	21,049	9,619	11,430
對호 주	5,576	1,315	4,247	6,291	1,383	4,908
對캐 나 다	2,448	1,052	1,384	2,021	1,140	881
對뉴질랜드	1,446	92	1,344	1,446	40	1,406

나. 주요 수출물품

제49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4901999000로 913천달러를 4910009000(단
매인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가 347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4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4907009000	19,983	4901999000	2,872	4901999000	913	4901999000	783
2	4901999000	522	4901109000	973	4910009000	347	4909000000	210
3	4911100000	196	4910009000	858	4910001000	302	4910001000	169
4	4911919000	109	4910001000	347	4901109000	155	4910009000	146
5	4911990000	61	4911100000	341	4911100000	119	4911100000	84
6	4905911000	39	4911990000	274	4911990000	69	4901109000	19
7	4901101000	37	4909000000	252	4901991000	53	4911990000	16
8	4909000000	33	4908100000	221	4911919000	19	4902909010	14
9	4901109000	24	4903000000	73	4902901010	14	4901991000	4
10	4910009000	21	4901991000	19	4901101000	11	4905919000	1

3. 제4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4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9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4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4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48류의 종이를 수입하여 인쇄물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인쇄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동일한 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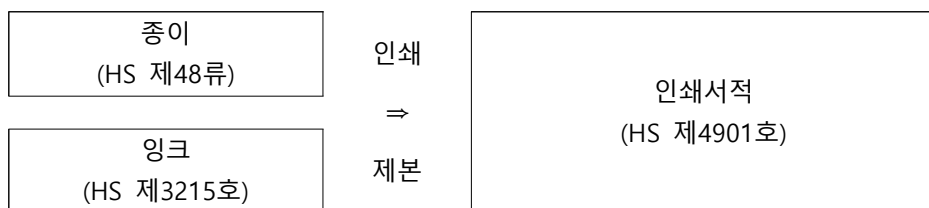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인쇄서적은 HS 제48류에 분류되는 종이류에 특정내용을 인쇄하고 책자의 형태로 제본하여 제조하는데, 제본의 방법은 크게 접착제를 이용하는 방법과 실 등으로 편철하는 방법이 있다.

< 인쇄서적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잉 크	제3215호	종이에 내용을 프린트하는 인쇄서적의 원료
종 이	제48류	내용을 인쇄하기 위한 원료

< 인쇄서적 생산공정 >



한-캐나다 FTA는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투입되는 원재료인 종이(HS 제48류)와 잉크(HS 제3215호) 등이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이다.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14개 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에서 ‘yarn’은 실이나 사(絲)란 단어를 적절히 사용한다.

제11부	제50류	견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	면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	워딩·펠트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천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 제품
	제60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 제품, 냅마

제50류 견

1. 품목분류 체계

제50류에는 ‘견(silk)’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물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0.02 %이며, 그 중에서 수입이 55 %이다. 제5007호(견직물)·제5002호·제5004호의 순이다.

품목번호	품 명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2	생사(곤 것은 제외한다)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004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2. 제5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50류의 ‘14년 기준 대세계 교역은 9,538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은 480천달러, 수입은 2천달러로 478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5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86,057	99,116	-13,060	78,212	87,750	-9,538
對싱가포르	605	30	572	592	1	591
對호 주	568	0	561	594	12	582
對개 나 다	462	0	457	480	2	478
對뉴질랜드	3	0	0	203	0	203

나. 주요 수출물품

제50류의 캐나다로의 수출 상위품목은 5007202020(사틴)로 181천달러를 5007202030(크랩 데신)가 138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5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007202020	347	5007202030	209	5007202020	181	5007909000	203
2	5007202090	183	5007202020	155	5007202030	138	5007201000	0
3	5007202030	55	5007202090	95	5007202090	95	5007202090	0
4	5007903000	4	5007201000	53	5007904000	66	-	-
5	5007904000	2	5007909000	51	5006001000	0	-	-
6	5007209000	1	5007209000	31	5007209000	0	-	-

3. 제5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001~5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004~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001~5002	CC	CC	CC	CC
5003	CC	CTH	CC	CTH
5004~5005	CTH(ex.5006)	CTH	CTH	CTH
5006	CTH (ex.5004~5005)	CTH	CTH	CTH (ex.5004~5005)
5007	CTH	CTH or (From 직물 + 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 + 염색/날염+마무리)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0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누에고치(제5001호)와 생사(제5002호)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으로 풀이된다. 누에고치 이전의 원료단계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류변경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누에고치는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생사는 누에고치에서 뽑는데 역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누에고치를 수입하여 생사를 뽑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역내에서 완전생산한 누에고치에서 생사를 뽑을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이 된다

견웨이스트(제5003호), 견사(제5004호), 견방사(제5005호), 소매용 견사(제5006호)와 같은 사(絲)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생사(제5002호)를 수입하여 견사(제5004호)를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견사(제5004호)를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해도 동일한 호에 분류되므로 이때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견직물이 분류되는 제50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견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견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제5007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50류의 물품에 대하여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택하고 있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누에고치는 모든 국가가 완전생산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생사의 경우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생사의 생산특성상 표현만 다를 뿐 모두 완전생산의 의미로 풀이된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실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견사를 수입하여 견방사를 생산하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만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원재료로 사용하는 실을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견직물의 경우 호주와 캐나다는 생지를 수입하여 염색날염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가공공정기준을 택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을 수입하여 견직물을 짜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 되지만 직물자체를 수입하여 염색날염하는 경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만 원산지상

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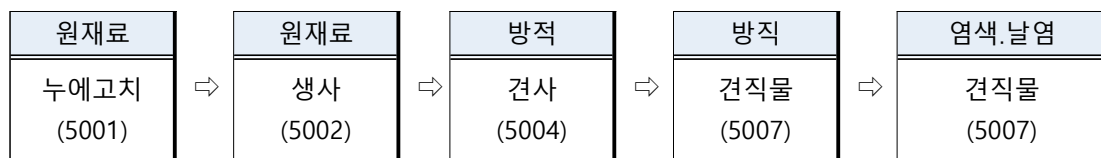
제5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다소 엄격한 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사틴)

품명	사틴 (Satin)
세번	5007.20.202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견직물은 견사, 견방사 또는 견웨이스트로 제직한 직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제사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염색 및 마무리 가공을 거쳐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견직물 생산공정 >



< 견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견사	5004	제5002호에 해당하는 생사로 제조하는 사
합성필라멘트사	5402	제39류 플라스틱으로부터 압출하여 제조하는 사
합성스테이플사	5509	제5001호~제5007호까지의 섬유를 방직하여 제조하는 사

한-캐나다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방직공정을 거쳐 견직물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한편 생지의 견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제5007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1. 품목분류 체계

제51류에는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섬수모)이나 거친 털(조수모),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5101	양모[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4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ed)한 단편 모양의 양모를 포함한다]
5106	카드(carde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	코움(combe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1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gimped)한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111	직물[카드(carde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2	직물[코움(combe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제5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1류의 대세계 교역은 259,422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은 435천달러를 수입은 3천달러로 432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였다.

HS 제5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77,970	336,228	-258,258	75,240	334,662	-259,422
對싱가포르	0	2	-3	44	1	43
對호 주	831	53,228	-52,404	1,467	57,707	-56,240
對캐 나 다	424	1	421	435	3	432
對뉴질랜드	2,172	1,191	977	862	775	87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51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5112111000(양모로 만든 직물)와 5112900000로 각각 428천달러, 7천달러로 나타났다.

HS 제5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109101000	38	5107101000	1,023	5112111000	428	5107101000	636
2	5111900000	4	5107201000	185	5112900000	7	5107201000	111
3	5111191000	2	5107202000	138	5105390000	0	5107202000	92
4	5106209000	0	5107209000	120	5107209000	0	5107209000	19
5	5107101000	0	5107109000	1	5109909000	0	5112300000	4

3. 제5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101~5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106~5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111~5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101~5102	CC	CC	CC	CC
5103 5105.29~5105.40	CC	CC	CC	CTH
5104 5105.10~5105.21	CC	CTH	CC	CTH
5106~5108	CTH (ex.5109)	CTH	CTH	CTH
5109	CTH (ex.5106~5108)	CTH	CTH	CTH (ex.5106~5108)
5110	CTH	CTH	CTH	CTH
5111~5113	CTH	CTH or (From 직 물 +SP(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 +염색/날염+마무리)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1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양모(제5101호~5105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양(01류)을 수입하여 양모를 획득하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만 카드·코움하지 않은 양모(제5101호)를 수입하여 카드·코움하는 경우(제5105호)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모사(제5106호~5110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양모를 수입하여 양모사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카드·코움한 양모사(제5106호~5107호)를 수입하여 소매용(제5109호)으로 만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양모사를 수입하여 염색 또는 날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모직물이 분류되는 제5111호~제5113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모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모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51류의 물품에 대하여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택하고 있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양모와 수모의 구분없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나 호주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카드·코움하지 않은 양모(제5101호)를 수입하여 카드·코움하여 양모(5105.10~5105.21)를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원산지상품이 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수모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카드나 코움하지 않은 수모(제5102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카드·코움 하여도(제5105.29~5105.40) 류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경우에는 해당 동물은 수입하여 이로부터 수모를 획득하고 이를 다시 카드 코움하여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므로 매우 엄격하게 원산지를 판단한다 할 수 있다.

한편 소매용의 양모사(제5109호)의 원산지 판단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호주와 캐나다보다 엄격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4개국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소매용 실의 원재료가 되는 실(제5106호~제5108호)이 원산지재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모직물의 원산지판단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엄격하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외에 가공공정기준도 선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호의 생지를 수입하여 가공공정을 역내에서 거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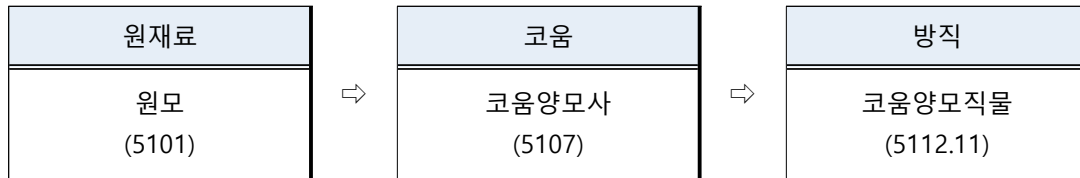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양모로 만든 직물)

품명	양모로 만든 직물 (Woven fabrics of wool)
세번	5112.11.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HS 제5112호에 속하는 모직물은 양모 또는 섬수모 및 기타 인조섬유의 혼방으로 이루어진 모직물 제품이 분류된다.

양모직물은 소재의 대부분이 코옴한 양모사로 구성된 직물을 말하며, 부분적으로 다른 종류의 실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

< 양모직물의 세번변경 흐름도 >



< 양모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카드한 양모사	5106	소매용의 것을 제외
코옴한 양모사	5107	소매용의 것을 제외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계약당사국 내에서 방직공정을 거쳐 양모직물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제5106호~제5109호)을 수입하여 직물을 짜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계약당사국 내에서 염색 및 날염공정을 포함하여 마무리공정을 수행하여 견직물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코옴한 양모직물(제5112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과 마무리공정을 수행하면 비록 동일한 호에 속할 지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52류 면

1. 품목분류 체계

제52류에는 ‘면’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201	면[카드(carded)하지도 코움(combed)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3	면[카드(carded)하거나 코움(combed)한 것으로 한정한다]
5204	면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2	그 밖의 면직물

2. 제5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2류의 대세계 교역은 771,852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수출은 6,329천불 수입은 36천불로 무역수지 흑작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5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785,696	1,692,343	-906,647	733,373	1,505,225	-771,852
對싱가포르	114	170	-68	341	9	332
對호 주	3,434	131,240	-127,826	3,429	116,912	-113,483
對캐 나 다	6,774	3	6,753	6,329	36	6,293
對뉴질랜드	843	0	825	759	0	759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52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 품목은 5208520000(날염한 면직물)로 4,821천불을 5205241000은 702천불을 수출하였다.

HS 제5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210310000	80	5208520000	2,844	5208520000	4,821	5208520000	357
2	5211320000	58	5205439000	142	5205241000	702	5205229000	165
3	5208330000	42	5208320000	83	5208320000	237	5210310000	36
4	5209310000	40	5205429000	71	5205221000	151	5205429000	31
5	5211310000	34	5208599000	56	5208599000	115	5205221000	29
6	5210320000	22	5209310000	53	5205231000	95	5211390000	29
7	5208520000	21	5211390000	37	5209590000	38	5205239000	19
8	5210390000	21	5210390000	26	5209520000	33	5205241000	19
9	5210590000	11	5208220000	21	5210310000	27	5209320000	13
10	5206459000	6	5205229000	14	5205239000	26	5206221000	12

3. 제5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201~52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204~5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208~5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201	CC	CC	CC	CC
5202	CC	CTH	CC	CTH
5203	CC	CC	CC	CTH
5204~5206	CC	CTH	CTH	CTH
5207	CC	CTH	CTH (ex.5204~5206)	CTH (ex.5205, 5206)
5208~5212	CTH	CTH or (From 직물 +SP(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 +염색/날염+마무리)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2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면(제5201호~5203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면은 52류에 분류되므로 제5201호의 카드·코움 하지않는 면으로 면웨이트(제5202호)나 카드·코움한 면(제5203호)를 만든다. 따라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은 원산지재료여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면사(제5204호~5206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면을 수입하여 면사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매용 면사(제5207호)의 경우 제5204호~제5206호의 면사를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들 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직물이 분류되는 제5208호~제52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면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52류의 물품에 대하여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택하고 있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면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카드·코움하지 않은면(제5201호)을 수입하여 면웨이스트(제5202호)나 카드코움한 면(제5203호)을 생산해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4단이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면사(제5204호~5206호)의 경우 영연방 4개국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면을 수입하여 면사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매용 면사(제5207호)의 경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제5205호 또는 제5206호의 면사를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들 호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직물이 분류되는 제5208호~제52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캐나다와 호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다. 우선 영연방 국가 모두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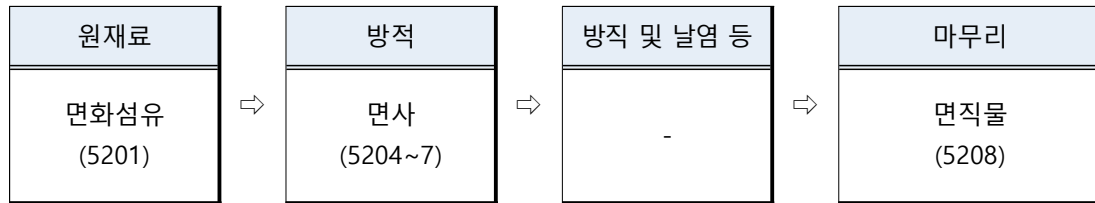
한편 생지의 면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캐나다와 호주는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명	날염한 면직물 (Printed woven fabrics : of cotton)
세번	5208.52.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면직물은 면사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작한 직물이다.

< 면직물 생산공정 >



< 면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면 사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면 사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100 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 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면 사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1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재 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면 사	5207	면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면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직물을 짜고 날염을 하는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면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1. 품목분류 체계

제53류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아마,대마와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노일(noils)과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6	아마사
5307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사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9	아마직물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의 직물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직물, 종이실(paper yarn)로 만든 직물

2. 제5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3류의 대세계 교역은 100,794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동일연도에 캐나다와의 수출실적은 아주 미미하며 15천불을 수출하였다.

HS 제5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0,279	83,785	-73,506	10,310	111,104	-100,794
對싱가포르	14	0	14	18	0	18
對호 주	15	1	12	49	1	48
對캐 나 다	63	0	62	15	0	15
對뉴질랜드	35	0	33	6	0	6

나. 주요 수출물품

제53류의 수출상위품목은 5309290000와 5311009000로 각각 13천달러, 2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5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309290000	18	5301301000	24	5309290000	13	5309290000	6
2	5305001000	0	5311009000	13	5311009000	2	5309190000	0
3	5309190000	0	5309290000	12	5301290000	0	5311009000	0

3. 제5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301~5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306~5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309~5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301~5305	CC	CTH	CC	CC
5306~5308	CTH	CTH	CTH	CTH
5309~5311	CTH	CTH or (From 직물 +SP)	CTH or (From 생지 +염색/날염+마무리)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3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마 및 기타 식물성 섬유(제5301호~5305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마섬유는 02류의 아마경을 수입하여 섬유를 획득하는 경우 2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된다. 그러나 생아마(제 5301.10호)를 수입하여 코옴한 아마를 만드는 경우에는 동일한 류에 속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아마는 원산지재료여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제5306호~5308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섬유(제5301호~5305호)를 수입하여 실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직물이 분류되는 제5309호~제531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마 및 기타 식물성 섬유(제5301호~5305호)의 경우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호주는 유일하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나 제53류의 품목분류가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5301호부터 제5305호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동일한 의미로 풀이 된다.

즉 제5301호에는 아마섬유, 제5202호에는 대마섬유, 제5303호에는 황마섬유, 제5305호에는 그 외 기타의 식물성 섬유가 분류되므로 제5301호 아마섬유로부터 제5305호 기타 섬유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사(제5306호~5308호)의 경우 모든 국가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 직물의 경우(제5309호~제5311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호주와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동일호에 속하는 생지를 수입하여 염색등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비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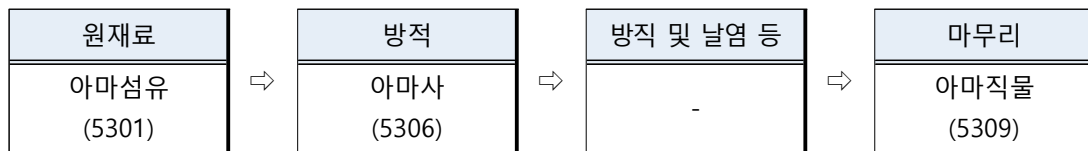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HS 제5309호에 속하는 아마직물은 아마를 주원료로 하는 것으로 아마는 목화 다음가는 중요한 섬유작물이었으나, 손방직기계의 발달 이후 목화에 밀려 이용범위가 줄어들었다. 아마 섬유는 부드럽고 빛깔이 좋으며 액체의 흡수와 발산이 빠르고 열에 강하여 여러 방면에서 사용된다.

품명	아마직물(Woven fabrics of flax)
세번	5309.29.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물품예시	

아마직물은 원재료인 아마와 아마사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작한 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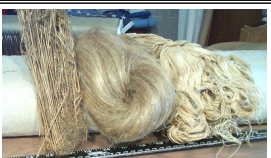
< 아마직물 생산공정 >



< 아마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아마	5301	아마식물의 섬유
아마사	5306	아마식물의 섬유로 만든 실

< 마(麻)의 종류 >

종류	특징
 아마(HS 제5301호)	아마(Flax)는 BC 5,000년전 이집트 파라오의 수의(壽衣)로 사용된 바 있으며, 18C초까지 제1의 섬유작물이었으나 1764년 면방직기계 발명 이후 점차 사용량이 줄어든 천연섬유이다.
 대마(HS 제5302호)	대마(Hamp)는 BC 4,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여 15C 경에 유럽에 전파된 천연섬유이다.

종 류	특 징
	황마(Jute)는 인도가 주산지인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섬유로 현재 목화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천연섬유이다.
황마(HS 제5303호)	

아마식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다. 우선 실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직물을 짜는 경우 호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생지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서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및 날염등의 공정을 완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것

1. 품목분류 체계

제54류에는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8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반(半)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5	재생.반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와 재생.반(半)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2. 제5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4류의 대세계 교역은 3,478,572천달러를 수출하였고 수입은 1,219,399천달러로 2,259,173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실적이 수입보다 높으며 6,680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HS 제5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3,478,672	1,075,856	2,402,816	3,478,572	1,219,399	2,259,173
對싱가포르	5,898	6,835	-954	5,044	5,823	-779
對호 주	5,786	114	5,640	5,655	57	5,598
對캐 나 다	13,446	6,863	6,553	14,059	7,379	6,680
對뉴질랜드	1,810	1	1,793	2,074	1	2,073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54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5402110000(아라미드 강력사), 5407530000[서로 다른 색실로 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로 각각 2,106천달러, 1,598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5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407612000	1,344	5407612000	2,117	5402110000	2,106	5407612000	693
2	5404199000	1,051	5407614000	645	5407530000	1,598	5408220000	431
3	5407530000	589	5407694000	547	5402200000	1,452	5407614000	201
4	5407614000	542	5408320000	473	5407612000	1,227	5407611000	139
5	5402469000	431	5408220000	276	5408220000	1,206	5408320000	125
6	5407420000	151	5401201000	239	5407694000	1,053	5402699000	118
7	5407692000	133	5407692000	206	5407614000	913	5407692000	62
8	5407693000	126	5407530000	168	5402480000	784	5402440000	52
9	5407520000	105	5407102000	140	5407102000	670	5407729000	49
10	5402440000	92	5407520000	113	5407922000	508	5407520000	47

3. 제5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401~5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407~5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401~5406	CC	CC	CTH	CC
5407~5408	CTH	CTH or (From 식물 +SP(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 +염색/날염+마무리)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54류에는 인조필라멘트가 분류된다. 제5401호~제5406호까지는 각종 실이 분류되고 제5407호~제5408호에는 직물이 분류된다.

우선 인조섬유로 만들어진 실(제5401호~제5406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인조필라멘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면(제5201호~제5203호)이나 합성필라멘트투 등(제5501호~제5507호)를 수입하여 인조필라멘트를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다른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필라멘트사의 식물(제5407호)의 직물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특히 양모사(제5106호~제5110호) 면사(제5205호~제5206호) 또는 합성, 재합성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제5509호~제5510호)를 수입하여 이를 섞어 직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외에 가공공정기준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인조섬유로 만들어진 실(제5401호~제5406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인조필라멘트를 생산하는 경우 영연방 국가 모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른호에 속하는 면이나 합성필라멘트 투 등을 수입하여 인조필라멘트를 생산하는 경우 캐나다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조필라멘트 섬유에 대하여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영연방국가들은 다소 엄격하고 제한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물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가공공정기준 없이 4단위 세번변경만 선택하여 캐나다와 호주에 비하여 엄격한 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아라미드 강력사)

품명	아라미드 강력사 (High tenacity yarn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 of aramids)
세번	5402.11.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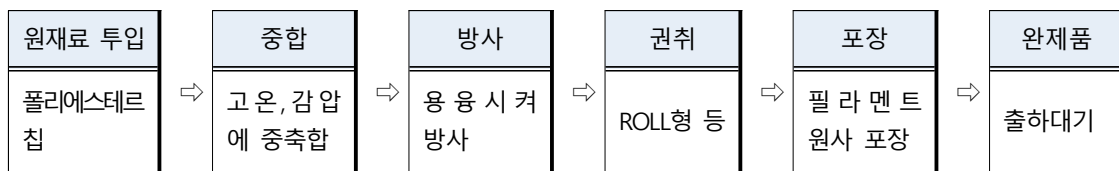
합성필라멘트의 제조에는 폴리에스테르 칩을 포함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이 주요 원재료로 사용된다. 아래는 합성필라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내역이다.

< 합성필라멘트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테레프탈산과 그 염	2917.36	합성 필라멘트의 주요 원재료
ethylene glycol	2905.31	
조제 윤활유	3403	
antimony oxides	2825.80	
초산 칼슘	2915.29	
초산코발트	2915.29	
폴리에스테르 칩	3907.99	

원재료를 투입하고 촉매제를 혼합하여 폴리머를 생성한 후 안정제를 투입하고 방사공정을 통해 필라멘트 원사를 추출한다. 추출된 원사는 롤 형으로 권취되고 광택과정을 거쳐 보빈에 실을 감는데, 필요시 꼬임을 주어 텍스처드를 만들고 포장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한다.

<합성필라멘트 제조공정>



합성필라멘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위에 제시된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1. 품목분류 체계

제55류에는 ‘인조스테이플섬유’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2	재생.반(半)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노일(noils)·실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7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6	재생.반(半)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2. 제5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5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051,245천불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동일연도의 캐나다로의 수입실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출은 16,026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5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933,954	954,109	979,845	1,941,109	889,864	1,051,245
對싱가포르	11,888	269	11,600	4,518	178	4,340
對호 주	23,249	902	22,328	20,587	197	20,390
對캐 나 다	16,359	150	16,194	16,026	0	16,026
對뉴질랜드	3,653	1	3,643	4,823	0	4,823

나. 주요 수출물품

제55류의 수출상위품목은 5503201000(이형단면인 폴리에스테르 합성스테이프섬유)와 5503209090로 각각 7,852천달러, 5,779천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외에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의 수출 상위 품목은 5502002010, 5503201000로 나타났다.

HS 제5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502002010	3,986	5503201000	9,774	5503201000	7,852	5503201000	3,710
2	5503201000	181	5503209090	6,514	5503209090	5,779	5503209090	849
3	5503209090	109	5502002010	3,228	5503900000	1,190	5510119000	105
4	5516229000	71	5503400000	635	5503119000	568	5515139000	44
5	5514300000	45	5512191000	104	5506209000	269	5516221000	31
6	5512191000	30	5503900000	85	5516221000	213	5512191000	25
7	5512110000	20	5510111000	65	5512110000	57	5509219000	23
8	5515919000	19	5515139000	41	5503199000	55	5508102000	12
9	5516221000	18	5516221000	32	5509530000	21	5513299000	8
10	5514420000	11	5512999000	27	5512192000	7	5512999000	7

3. 제5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501~5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508~5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512~5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구분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섬유 (fiber)	5501~5504	CTH	CC	CC	CC
	5505	CTH	CTH	CC	CTH
	5506~5507	CTH	CC	CC	CTH
실 (yarn)	5508~5510	CTH	CTH	CTH	CTH
	5511	CTH	CTH	CTH	CTH (ex.5509, 5510)
직물 (fabric)	5512~5516	CTH	CTH or (From 직물+SP(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염색/날염+마무리)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5류는 2단위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55류에는 인조스테이플섬유가 분류된다. 제5501호~제5507호까지는 각종 섬유(fiber)가 분류되고 제5508호~제5511호까지 실(yarn)이, 제5512호~제5516호에는 직물(fabric)이 분류된다.

우선 인조로 만들어진 섬유(fiber)(제5501호~제55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섬유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등(제5508호~제5511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류 뿐만아니라 같은 류의 물품중에서 합성, 재합성 또는 바합성스테이플섬유(제5503.30호 또는 제5504호)를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등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조스테이플 섬유사를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는 경우, 인조스테이플 섬유사를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제5512호~5516호)의 직물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특히 양모사(제5106호~제5110호) 면사(제5205호~제5206호) 또는 합성, 재합성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제5509호~제5510호)를 수입하여 이를 섞어 직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외에 가공공정기준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인조스테이플 섬유사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인조스테이플 섬유(fiber)의 경우 영연방 국가간 품목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제5501호~제5504호에는 토우 및 카드·코움하지 않은 섬유가 분류되는데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외의 국가들은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제5501호~제5504호를 생산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제5501호 또는 제5502호의 토우를 수입하여 카드·코움하지 않은 섬유로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차이가 있다.

제5505호는 인조섬유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데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55류 내의 다른 호를 수입하여 인조섬유 웨이스트를 생산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만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다.

섬유로 만들어진 실(제5508호~제551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소매용 실을 생산하는 제5509호~제5510호의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직물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가공공정기준 없이 4단위 세번변경만 선택하여 캐나다와 호주에 비하여 엄격한 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폴리에스테르 합성스테이플섬유)

품명	이형단면인 폴리에스테르 합성스테이플섬유 (Synthetic staple fibre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 Of polyesters : Of special section face)
세번	5503.2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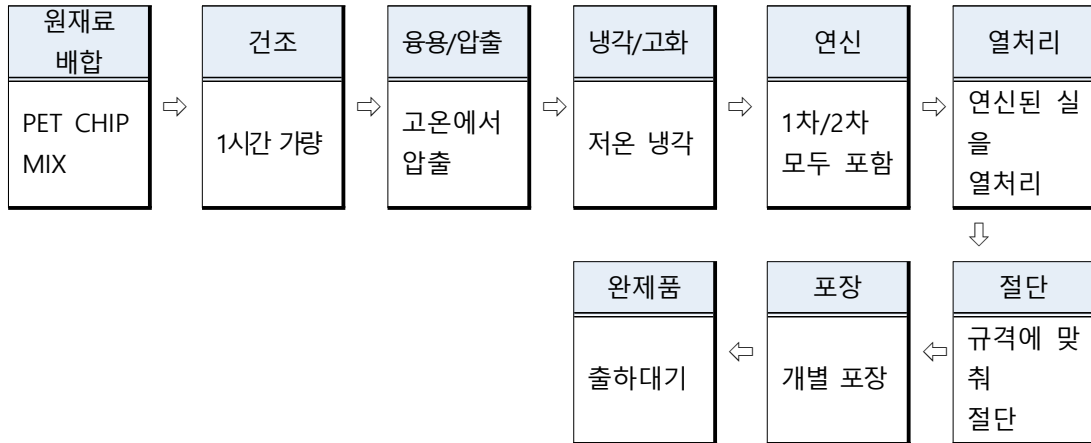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는 합성섬유 중 길이가 짧은 단섬유로 특히, HS 제 5503.20호에 속하는 물품은 카드나 코움 등 방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섬유를 말한다.

<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생산공정별 형태 >

종 류	종 류	종 류	종 류
			
칩(폴리에스테르 원료)	합성필라멘트 토우	아크릴 스테이플	인조섬유의 웨이스트
			
재생 등 필라멘트 토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아크릴 톱	방적처리된 스테이플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은 수많은 구멍으로 된 방사구를 통하여 방출되어 제조되는데, 수많은 방사구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장섬유)는 토우(섬유다발)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이 토우는 짧은 길이로 절단되어 솜 모양으로 정제된 후 스테이플섬유로 가공된다.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생산공정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에스테르	3907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유연제	3402.90	섬유유연제
합성필라멘트사	5401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실
합성필라멘트 토우	5501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토우
염료	3204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하는 유색유기화합물의 색소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fiber)(제550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등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섬유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때 동일 류에 속하는 토우(제5501호~제5502호)를 수입하여 합성스테이플 섬유(제5503호)를 생산한다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 할 수 없고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최소허용기준의 정도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

제56류 워딩·펠트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56류에는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56과 같이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flock).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s)]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6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405호의 것과 짐프한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7	끈·코디지(cordage)·로프와 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여부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코디지(cordage)나 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된 어망과 그 밖의 제품으로 된 그물
5609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코디지(cordage)·로프나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5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6류의 수출은 804,638천달러를 수입은 543,110천달러로 261,528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무역수지는 1,485천달러의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5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778,019	473,158	304,861	804,638	543,110	261,528
對싱가포르	13,270	13,267	-8	16,220	17,392	-1,172
對호 주	5,503	86	5,405	8,935	50	8,885
對캐 나 다	734	2,080	-1,358	814	2,299	-1,485
對뉴질랜드	2,010	41	1,959	2,755	154	2,601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제56류의 수출상위 품목은 5607490000[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기타의 끈, 배의 밧줄, 로프, 케이블)]와 5603149000(부직포)로 각각 445천달러, 87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5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607490000	11,542	5607490000	4,144	5607490000	445	5607490000	1,212
2	5607500000	3,023	5603139000	3,216	5603149000	87	5608111000	635
3	5603129000	647	5607500000	264	5608191000	74	5607500000	263
4	5601220000	246	5602101000	194	5606001000	71	5609003000	212
5	5609003000	206	5608191000	177	5603129000	43	5606001000	127
6	5603920000	169	5603930000	146	5608111000	29	5603121000	109
7	5603121000	77	5603121000	127	5603121000	15	5608191000	74
8	5608909000	77	5607909000	109	5604909000	14	5603930000	49
9	5608191000	73	5609003000	107	5607500000	12	5607410000	13
10	5607909000	52	5607410000	93	5603920000	9	5604909000	11

3. 제5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601~5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6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부터 제5406호까지 및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부터 제54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601~5602 5604~5606	CTH	CC	CTH	CC
5603	CTH	CTH or (From 직물 +SP)	CTH	CTH
5607	CTH	CC	CTH (ex.5205~5207, 5401,5402, 5404~5406, 5508~5511)	CC
5608	CTH	CTH	CTH	CTH
5609	CTH	CTH	CTH (ex.5106~5110, 5204~5207, 5401,5402, 5404~5406, 5509~5511)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특정 원재료의 원산지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기본해설)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제5601호~제5606호)를 수입하여 끈, 케이블 등 제품(제5607호~제5609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끈, 로프, 케이블(제5607호)의 경우 면사(제5205호~5207호), 인조필라멘트(제5402호, 제5404호~제5406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08호~제5511호)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끈, 로프, 케이블로 만든 제품(제5609호)의 경우 양모사(제5106호~제5110호), 면사(제5204호~5207호), 인조필라멘트(제5401호~제5402호, 제5404호~제5406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09호~제5511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

고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류의 제품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하거나 소매용으로 만들어도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의 제56류의 물품에 대하여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캐나다의 경우 끈, 로프, 케이블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택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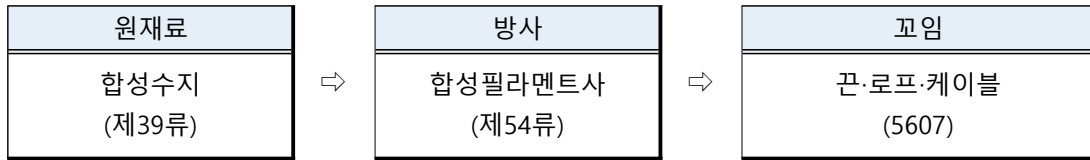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끈]

품명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기타의 끈·배의 밧줄·로프·케이블)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of polyethylene or polypropylene : other)
세번	5607.49.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부터 제5406호까지 및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HS 제5607호에 속하는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 등은 일반적으로 포장, 예인, 하적 등에 있어서 묶는 끈으로 사용된다. 이들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섬유는 대마, 황마, 사이살마, 면, 코이어섬유와 합성섬유이며, 지사로도 제조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엮었거나 금속으로 보강된 것에 한한다. 제5607.4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이러한 원재료 중 합성섬유인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제작된 것이다.

HS 제5607호에 분류되는 끈·로프 등은 합성수지로 생산된 합성섬유를 가공하여 실의 형태로 만든 후 이를 꼬아서 만든다.

< 끈.로프.케이블 생산공정 >



< 끈.로프 등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합성필라멘트사	5402	로프의 원재료
합성모노필라멘트사	5404	로프의 원재료

한-캐나다 FTA는 폴리에스테르 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끈, 로프, 케이블(제5607호)의 경우 면사(제5205호~5207호), 인조필라멘트(제5402호, 제5404호~제5406호),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08호~제5511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허용기준에 의해 상품 총중량의 10%까지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1. 품목분류 체계

제57류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ed)하거나 플록(flocked)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켈렘(Kelem)·슈맥(Schumacks)·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만든 러그(rugs)를 포함한다]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ed)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터프트(tufted)하거나 플록(flocked)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 제5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7류의 대세계 교역은 50,531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시현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교역실적은 미미하며 수출은 12천달러 수입은 390천달러가 이루어졌다.

HS 제5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52,200	93,219	-41,020	50,906	101,437	-50,531
對싱가포르	263	35	226	162	6	156
對호 주	881	197	678	1,246	75	1,171
對캐 나 다	9	172	-166	12	390	-378
對뉴질랜드	512	70	439	527	92	435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기준 제57류의 수출대표품목은 5705000000(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로 12천달러가 수출되었다.

HS 제57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705000000	65	5703200000	1,180	5705000000	12	5703200000	527
2	5703200000	45	5702910000	60	5701900000	0	5701100000	0
3	5702420000	17	5704900000	6	5702500000	0	5702100000	0
4	5702320000	15	5701100000	0	5702990000	0	5702310000	0
5	5703900000	10	5701900000	0	5703100000	0	5702390000	0
6	5702490000	9	5702100000	0	5703200000	0	5702490000	0
7	5703300000	1	5702200000	0	5703300000	0	5702910000	0

3. 제5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57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701~5703	CTH	CC	CC	CC
5705				
5704	CTH	CC (ex.5602)	CC	CC (ex.5602)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7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2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류의 제품을 수입하여 염색이나 날염을 하거나 소매용으로 만들어도 가공공정기준을 별도로 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개국 비교분석) 제57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외 국가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제5704호의 기타 양탄자와 바닥깔개의 경우 제5602호의 재료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제한이 있다.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1. 품목분류 체계

제58류에는 ‘특수직물, 터프트(tufted)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rstries), 트리밍(trimming), 자수천’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801	파일(pile)직물과 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2	테리타월(terry towelling)직물과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 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ed)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5804	튤(tulles)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 · 스트립(strips)이나 모티프(motifs)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5	고블랭직 · 플랜더스직 · 오뷔송직 · 보베직.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와 자수가공한 태피스트리[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806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bolducs)]
5807	방직용 섬유로 만든 레이블(labels) · 배지(badges)와 이와 유사한 제품[원단 상태 · 스트립(strips)이나 특정의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8	원단 상태의 브레이드(braids),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tassels) · 폼퐁(pompons)과 이와 유사한 제품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 · 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s)모양이나 모티프(motifs)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2. 제5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8류의 교역은 425,605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동일연도 캐나다와의 수출실적은 11,628천달러로 수입은 56천달러로 11,572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5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502,450	74,885	427,565	510,277	84,672	425,605
對싱가포르	4,497	190	4,292	3,164	111	3,053
對호 주	478	22	443	581	65	516
對캐 나 다	10,933	180	10,743	11,628	56	11,572
對뉴질랜드	226	0	224	126	0	126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58류의 수출상위품목은 5806320000(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세 폭 직물)로 10,550천달러가 수출되었으며, 5810920000(인조섬유로 만든 자수천)가 453천달러 수출되었다.

HS 제5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810920000	2,589	5810100000	145	5806320000	10,550	5804103000	30
2	5807909000	182	5810920000	144	5810920000	453	5804210000	29
3	5804103000	78	5801372000	102	5804210000	175	5806320000	25
4	5810100000	71	5804103000	91	5804103000	105	5810910000	13
5	5806320000	64	5804210000	25	5803000000	82	5801330000	11
6	5804210000	48	5806103000	24	5810100000	45	5804102000	8
7	5809000000	48	5801272000	13	5807901000	45	5804292000	8
8	5801372000	38	5804102000	11	5801372000	31	5802200000	1
9	5803000000	14	5806320000	6	5801272000	30	5811004000	1
10	5810990000	13	5807101000	6	5804102000	27	5804109000	0

3. 제5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58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801~5802 5809	CTH	CTH or (From 식물 +SP)	CC	CC
5803~5808	CTH	CC	CC	CC
5810~5811	CTH	CTH	CC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8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5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레이스 등 특수직물(제5801호~제5811호)를 생산하여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58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 외 국가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58류에 모든 품목에 대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의 기준을 두고 있어 다른 국가들 보다 다소 엄격하다 할 수 있다. 동일 류 내에서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세폭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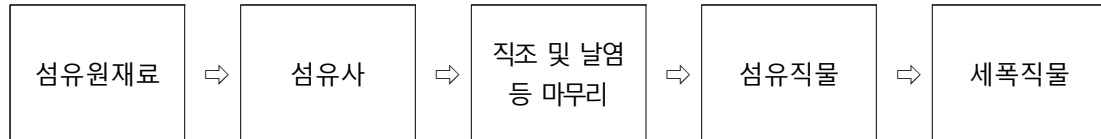
품명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세폭 직물 (Other narrow woven fabrics : Of man-made fibres)
세번	5806.32.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HS 제5806호에 속하는 세폭직물은 폭이 30cm이하인 직물로 여기에는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직조 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가이(false selvedge ; 절단된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물)를 가지는 것에 한하며, 관상의 직물 평폭이 30cm 이하의 것,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 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뿔었을 때의 폭이 30cm 이하의 것이다.

세폭직물은 광폭의 직물을 절단하거나, 스트립의 가장자리를 단지 감치거나 고무 가공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의 인조섬유 리본의 경우 가장자리를 용융하여 만들기도 한다.

< 세폭직물 생산공정 >



< 세폭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견 사	5504	세폭식물의 원재료가 되는 섬유사
견 방 사	5505	
양 모 사	5106~5107	
면 사	5205~5206	
아 마 사	5306	
황 마 사	5307	
인조필라멘트사	5402~5405	

한-캐나다 FTA는 세폭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완제품의 세번과 2단위 기준에서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방직공정을 거쳐 세폭직물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58류가 아닌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59류에는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1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나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4	리놀륨(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갈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나 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s)과 백열가스 맨틀(mantles)용 관(tubular) 모양의 편물(침투 여부를 불문한다)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하거나 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910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911	방직용 섬유 생산품과 방직용 섬유 제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으로 한정한다)

2. 제5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59류의 교역은 940,251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은 2,172천달러 수입은 1,613천달러로 나타났다.

HS 제5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340,619	421,907	918,711	1,353,293	413,042	940,251
對싱가포르	1,760	321	1,430	2,987	420	2,567
對호 주	17,954	3,285	14,660	19,481	3,894	15,587
對캐 나 다	2,086	1,548	528	2,172	1,613	559
對뉴질랜드	772	0	768	1,201	11	1,190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제59류 수출상위품목은 5903200000(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5907009000로 각각 1,348천달러, 385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5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5903200000	1,276	5907009000	7,284	5903200000	1,348	5907009000	339
2	5911900000	839	5903900000	6,708	5907009000	385	5911320000	239
3	5907009000	194	5903100000	3,861	5903900000	216	5903200000	200
4	5911109000	187	5903200000	995	5903100000	136	5903900000	195
5	5903900000	161	5911320000	374	5911320000	55	5911900000	153
6	5911400000	131	5911900000	207	5901100000	12	5903100000	59
7	5905000000	63	5909000000	18	5902200000	10	5906100000	16
8	5903100000	61	5905000000	12	5902100000	5	5908001000	0
9	5909000000	45	5901100000	10	5902900000	4	5910000000	0
10	5907002000	13	5906100000	6	5907002000	1	5911310000	0

3. 제5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5901~59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 제5308호, 제5310호, 제5311호, 제54류 및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901~5909 5911	CTH	CC	CC	CC
5910	CTH	CC	CTH (ex. 5106~5113, 5204~5212, 5307, 5308, 5310, 5311, 54, 5509~5516)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59류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서적 장정용 식물(제5901호), 타이어코드 식물(제5902호), 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식물(제5903호~제5908호), 호스등(제5909호), 공업용 섬유제품(제5911호)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59류에 속하지 않는 류의 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 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컨베이어 벨트 등(제5910호)은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생산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양모사 또는 모직물(제5106호~제5113호), 면사 또는 면질물(제5204호~제5212호), 기타 식물성 섬유 사 또는 직물(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인조섬유(제54류, 제5509호~제5516호)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재료의 경우에도 협정에서 규정한 총중량의 10%까지는 수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4개국 비교분석) 제59류의 품목에 대하여 영연방 4개국은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제59류 전체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였으므로 동일 류에 속하는 다른 호의 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을 인정된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제59류 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제59류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캐나다 전동용 벨트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전동용 벨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였다. 다만 전동용 벨트는 원재료 사용에 있어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가장 엄격하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타이어 코드 직물)

타이어코드 (Tyre Cord)란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무 내부에 들어가는 섬유재료의 보강재이며, 타이어 제조에 사용된다.

타이어코드는 병렬된 필라멘트 경사가 위사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잡아매어져 있는데, 경사는 항상 고강력의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사, 폴리에스테르사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사로 되어 있고 위사는 기타 다른 사로 구성되며 넓은 간격의 위치에서 오로지 경사를 지탱하도록 되어 있다.

품 명		폴리에스테르제의 강력사 타이어코드직물 (Tyre cord fabric of high tenacity yarn polyesters)
세 번		5902.20.0000
PSR	한-터키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한-EU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한-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예시		

타이어코드의 주요 재료로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이 사용되는데, 현재 자동차용 레디얼타이어코드의 재료로는 형태안정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폴리에스테르코드가 90%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나일론코드는 강도와 내열성 등에 강점이 있어 트럭이나 버스, 중장비나 항공기의 바이어스 타이어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타이어에도 주로 사용된다. 용도에 따라 비포장도로용, 일반승용차용, 고속주행용 등으로 구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비포장 도로용 타이어에는 나일론 타이어코드를 일반 승용차에 많이 사용되는 래디얼 타이어(포장도로용)에는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를 고속 주행용 차량(유럽 아우토반 등)에는 레이온 타이어코드를 주로 사용한다.

< 타이어코드직물 생산공정 >



타이어코드직물은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만든 나일론사, 폴리에스테르사, 레이온사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작한 직물이다.

<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직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나일론사	5402	강도와 내열성이 강한 타이어코드 사
폴리에스테르	5404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이어코드 사
비스코스레이온	5403	고속 주행용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코드 사
합성필라멘트직물	5407	각종사를 이용하여 만든 직물

한-캐나다 FTA는 타이어코드 직물에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59류 이외의 물품으로부터 타이어코드직물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결국 완제품과 동일 제59류 이외의 비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 타이어코드 직물을 만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60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 품목분류 체계

제60류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001	파일(pile)편물[롱파일(long pile)편물과 테리(terry)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5	경편물(warp knit fabrics)[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제6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0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3,790,159천달러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이 27,991천달러로 수입실적(105천달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HS 제6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087,689	125,992	3,961,697	3,930,772	140,613	3,790,159
對싱가포르	10,115	275	9,831	5,541	399	5,142
對 호 주	14,606	25	14,570	15,634	0	15,634
對캐 나 다	30,461	57	30,390	27,991	105	27,886
對뉴질랜드	3,798	30	3,757	4,973	64	4,909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캐나다로의 제60류의 수출상위품목은 6004100000(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와 6006320000(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각각 20,255천달러, 3,009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6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004100000	2,546	6004100000	6,718	6004100000	20,255	6005320000	2,058
2	6006240000	1,392	6005320000	5,160	6006320000	3,009	6005310000	1,653
3	6006320000	652	6005310000	2,216	6006340000	1,340	6004100000	782
4	6005320000	310	6006320000	803	6001920000	1,127	6006420000	161
5	6001920000	167	6001920000	261	6005320000	966	6006320000	150
6	6006220000	145	6006340000	164	6005340000	263	6006220000	52
7	6006340000	116	6006420000	97	6006420000	251	6005220000	35
8	6005340000	99	6005340000	65	6005310000	227	6001920000	23
9	6005420000	32	6004900000	42	6006220000	151	6006340000	22
10	6005900000	24	6006220000	29	6006330000	78	6005340000	19

3. 제6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001 6004~6006	CTH	CTH or (From직물 +SP)	CTH or (From 생지+염색/날염+마무리)	CC
6002	CTH (ex.6006)	CTH or (From직물 +SP)	CTH or (From 생지+염색/날염+마무리)	CC
6003	CTH (ex.6005~6006)	CTH or (From직물 +SP)	CTH or (From 생지+염색/날염+마무리)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0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우선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선택 할 수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동일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염색 또는 날염을 하는 경우 가공공정 기준에 의해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60류의 품목에 대하여 호주와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의 선택기준을 택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2단위,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제6006호의 기타편물을 수입하여 제6002호 내지 제6003호에 속하는 형태의 편물을 만드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일단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6006호의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다만 최소허용기준에 따라서 총중량의 10%까지는 제6006호를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사례에서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품명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을 제외한다)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or rubber thread)
세번	6004.1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메리야스(Knitted fabric)란 편성기계로 짠 편물로 경사나 위사로서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편조된 직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메리야스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니트로 통용되고 있는데, 동 물품은 합성필라멘트사(Polyester Yarn)로 편성한 편직물로 폭이 30cm를 초과하며 탄성사(Spandex Yarn)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것이다.

메리야스 편물의 주요 원재료는 폴리에스테르 사, 스판덱스 사와 염색을 위한 각종 염료 등이 포함되는데, 제60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주로 제50류~제55류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재료 및 사(yarn)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되어 만들어진다.

< 메리야스편물 생산공정 >



< 메리야스 편물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에스테르 사	5402.62	합성필라멘트사로 67데시텍스 미만의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 사	5402.44	폴리우레탄(Pu) 사
염료	3204.15	건염염료로 날염공정에 사용
표백조제물	3402.90	표백제 비이온계면활성제, 탄산나트륨, 고탄산나트륨, 유기킬레이트로 구성된 백색계 분말상
섬유염색농축액	3809.10	섬유의 날염용 호료로 염색촉진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으로 섬유공업 완성가공제

한-캐나다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투입되는 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다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만약 제시된 재료 외에 제6004호의 생지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과 같은 가공공정을 거친다면 이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 품목분류 체계

제61류에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s)(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로 한정한다)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 · 브리프(briefs)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s) · 브리프(briefs)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s)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0	저지(jerseys) · 풀오버(pullovers) · 카디건(cardigans) · 웨이스트코트(waistcoats)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와 수영복(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3	의류(제5903호 · 제5906호나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	팬티호스(panty hose) · 타이즈(tights) ·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7	그 밖의 의류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제6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1류의 대세계 교역은 1,472,398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동일연도에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은 15,569천달러를 수입은 2,454천달러로 13,115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6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932,474	2,237,117	-1,304,643	988,852	2,461,250	-1,472,398
對싱가포르	4,233	389	3,793	5,451	385	5,066
對호 주	9,382	409	8,914	7,427	260	7,167
對캐 나 다	20,138	594	19,490	15,569	2,454	13,115
對뉴질랜드	540	18	499	802	7	795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61류의 캐나다와의 수출상위품목은 6115950000(면으로 만든 양말류), 6116100000(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장갑류)로 각각 7,045천달러, 3,698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6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109101000	797	6116100000	3,670	6115950000	7,045	6116100000	231
2	6116930000	515	6115950000	1,469	6116100000	3,698	6115950000	200
3	6110110000	504	6106909000	262	6115960000	1,747	6105100000	150
4	6116100000	350	6114909000	253	6111202000	527	6115960000	42
5	6109903010	331	6109109000	222	6116930000	445	6109101000	40
6	6104630000	310	6109909090	203	6109101000	249	6110110000	31
7	6110200000	278	6115960000	182	6105100000	212	6104630000	18
8	6110301000	238	6116930000	169	6110301000	211	6109109000	11
9	6117809000	225	6104430000	155	6115990000	184	6110909000	11
10	6104410000	220	6115220000	111	6114909000	130	6115220000	10

3. 제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봉제 또는 기타의 결합공정이 요구되지 않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진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101~6114	CC + 재단/편성 +봉제/ 기타결합공정	CC	CC + 재단/편성 +봉제/ 기타결합공정 or CC+편성	CC
6115~6117	CC(ex.60) + SP	CC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1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1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우선 2단위 세번변경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상품과 동일한 류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2단위 세번변경과 더불어 체약국내에서 재단(편성)과 봉제(또는 기타방법의 결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봉제 또는 기타의 결합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편성방식에 의한 생산인 경우에는 제61류를 제외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양말을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61류의 품목에 대하여 캐나다를 제외 모든 국가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을 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제61류 이외의 재료를 수입하여 의류를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한편 싱가포르의 경우 양말류(제6115호), 장갑류(제6116호), 의류부속품 등(제6117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함께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원산지판단에 엄격성이 필요하다. 특히 제60류의 편물의 경우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하는 제한까지 두고 있으므로 원산지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면으로 만든 양말류)

품명	면으로 만든 양말류 (other hosiery : Of cotton)
세번	6115.95.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봉제 또는 기타의 결합 공정이 요구되지 않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진 것
물품 예시	

양말은 발을 편안하게 하며, 발의 체온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보통 면직이나 모직으로 만들어지며, 발목까지 오는 종류도 있지만, 무릎 위까지 올라와 다리 전체를 감싸는 것도 있다. 각각의 발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양말은 발가락 양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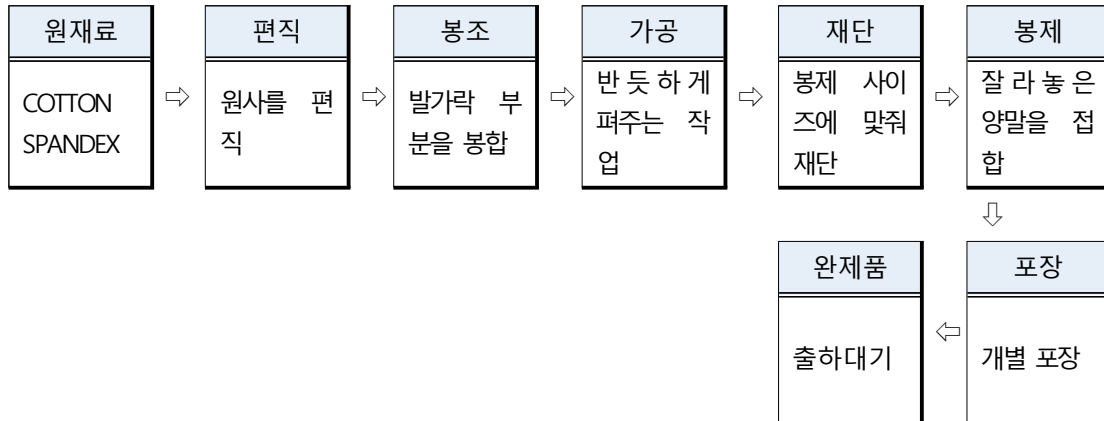
HS 제61류의 물품은 편물제품으로 사(yarn)로부터 생산되며, 제6115.95의 제품은 ‘면제의 것(of cotton)’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주요 원재료인 면사로부터 생산된다. 또한 발목부분 등 탄성이 필요한 부분에 일부 고무사 등이 포함되고 봉제 등에 폴리에스테르 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양말류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면사	5205	면사로서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
나일론사	5402	합성필라멘트 나일론사
폴리에스테르사	5402	합성필라멘트 폴리에스테르사
스판덱스사	5402	짐프사
고무사	5604	고무사

품 명	HS	설 명
페이퍼라벨	4821	양말 포장용 재료
폴리 백	3923	양말 포장용 재료

< 양말류 생산공정 >



양말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 및 가공공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 제시된 실을 모두 수입하여 양말을 만들더라도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2단위 세번변경과 더불어 역내에서 재단과 봉제가 함께 이뤄져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양말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는 자유로이 수입산으로 사용하여도 되지만 양말의 주된 가공단계인 재단과 봉제는 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 품목분류 체계

제62류에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7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다.

품목번호	품 명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s) · 카코트(car-coats) · 케이프(capes) · 클록(cloaks)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s) · 윈드재킷(wind-jackets)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s) · 재킷 · 블레이저(blazers)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와 셔츠블라우스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briefs)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s)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s) · 브리프(briefs)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s)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10	의류(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나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1	트랙슈트(track suits) · 스키슈트(ski suits) · 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s)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s) · 가터(garters)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213	손수건
6214	숄(shawls)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s) · 베일(veils)과 이와 유사한 제품
6215	넥타이류
6216	장갑류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나 의류 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6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2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4,531,130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동일연도에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3,378천달러 수입은 20,359로 16,981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나타냈다.

HS 제6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986,087	4,898,167	-3,912,081	1,043,228	5,574,358	-4,531,130
對싱가포르	8,126	139	7,934	10,580	328	10,252
對호 주	1,724	519	1,145	1,476	770	706
對개 나 다	2,502	13,117	-10,690	3,378	20,359	-16,981
對뉴질랜드	501	125	333	521	187	334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제62류의 수출상위품목은 6204430000(합성섬유로 만든 드레스)와 6202920000로 각각 865천달러, 397천달러를 캐나다로 수출하였다.

HS 제6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204430000	2,530	6217100000	230	6204430000	865	6204330000	158
2	6204330000	745	6204430000	166	6202920000	397	6206401000	62
3	6203421000	660	6204330000	135	6201920000	379	6203330000	41
4	6205200000	491	6204629000	84	6205200000	165	6205200000	34
5	6217100000	356	6203390000	57	6205301000	156	6206300000	20
6	6204629000	327	6211321000	56	6204330000	131	6204320000	19
7	6212102000	309	6206401000	55	6201131000	127	6204621000	17
8	6203330000	275	6211331000	54	6206401000	109	6204310000	16
9	6204440000	244	6201920000	42	6202131000	103	6204630000	16
10	6214100000	241	6204599000	42	6204530000	79	6206900000	13

3. 제6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62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 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201~6212	CC + 재단 + 봉제/기 타결합공정	CC	CC + SP(재단+ 봉제/기타결합공 정)	CC
6213~6217	CC (ex.5007,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5903, 5906~5907) +SP	CC	CC + SP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2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6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우선 2 위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 할 수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2단위 세번변경과 더불어 체약국내에서 재단(편성)과 봉제(또는 기타방법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2단위 세번변경과 가공공정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제6217호의 견장을 수입하여 제6201호의 남성용 방한 외투에 부착하는 경우 비록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견장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최소허용기준에 의해 비원산지재료가 일부 허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 모두 제62류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만 택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더불어 특정한 가공공정도 함께 역내에서 이뤄질 것을 요하므로 보다 엄격하다 하겠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합성섬유로 만든 드레스)

품명	합성섬유로 만든 드레스 (Dresses : Of synthetic fibres)
세번	6204.43.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 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 원피스는 보통 제54류 및 제55류의 직물을 재단 및 봉제하여 만든다. 주로 폴리에스테르제의 직물(제5407호)과 아세테이트 직물(5516호)을 이용하여 재단하고 봉제를 통해 원피스를 제작하게 된다.

합성섬유 직물과 봉제에 사용되는 실((제54류~제55류)을 수입하여 이를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가공을 거쳐 원피스를 완성하는 경우 수입 원재료의 2단위 세번과 완성품의 세번이 상이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더불어 재단 및 봉제 가공이 역내에서 이뤄졌으므로 원피스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이다.

제63류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닙마

1. 품목분류 체계

제63류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닙마’를 분류하며, 세 개의 절에 속한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s)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3	커튼[드레이프(drapes)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s),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s)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6	방수포(tarpaulins).차양(awnings)과 차일(sunblinds), 텐트, 돛[보트.세일보트(sailboard)나 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s)을 포함한다]

② 세트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6308	러그(rugs)용 · 태피스트리(tapestries)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이나 서비에트(serviettes)용 직물과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 유무를 불문한다)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③ 사용하던 의류와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닙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6310	닙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와 끈 · 코디지(cordage) · 로프나 케이블의 스크랩(scrap)과 끈 · 코디지(cordage) · 로프나 케이블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3류의 대세계 교역은 69,302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연도에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1,588천달러이며 수입은 1,079천달러로 509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6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673,861	671,559	2,302	666,363	735,665	-69,302
對싱가포르	13,884	1,337	12,527	11,138	2,453	8,685
對호 주	5,293	1,410	3,850	5,788	1,247	4,541
對개 나 다	1,663	797	839	1,588	1,079	509
對뉴질랜드	967	218	733	1,017	175	842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63류의 캐나다 수출상위품목은 6307909000과 6307100000(마루담이포, 접시담이포, 더스터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로 600천달러, 493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6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309000000	5,131	6307909000	1,848	6307909000	600	6307909000	693
2	6307909000	4,464	6305390000	1,386	6307100000	493	6305330000	130
3	6307100000	508	6307100000	1,219	6303920000	119	6307100000	87
4	6303120000	258	6309000000	251	6301400000	95	6309000000	80
5	6301400000	228	6306120000	243	6306220000	80	6306220000	9
6	6304190000	155	6303920000	234	6302910000	47	6303920000	5
7	6303920000	109	6305330000	216	6305330000	37	6306120000	3
8	6303990000	63	6302930000	154	6306120000	20	6302910000	2
9	6302930000	54	6303199000	80	6309000000	19	6303990000	2
10	6303199000	51	6305320000	45	6303990000	17	6304930000	2

3. 제6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6301~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 제5311호, 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3호까지, 제5903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306~6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직물 또는 사(絲)가 별도로 분류될 경우 그 직물 또는 사(絲)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6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체약당사국에서 최종 수집되고 선적을 위하여 포장된 것
6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념마(신품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체약당사국에서 최종 수집되고 선적을 위하여 포장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301~6302	CC(ex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 5906~5907, 60) + SP	CC+SP(From 직물 + 염색/날염 + 마무리공정)	CC (ex.5111~5113, 5208~5212, 5310, 5311, 5407, 5408, 5512 ~ 5516, 5801~5803, 5903, 6001~6006)	CC(From 생지+염색/날염+마무리공정) or RVC40
6303~6304	CC + 재단/편성 + 봉제/기타결합공정	CC+SP(From 직물 + 염색/날염 + 마무리공정)	CC (ex.5111~5113, 5208~5212, 5310, 5311, 5407, 5408, 5512 ~ 5516, 5801~5803, 5903, 6001~6006)	CC(From 생지+염색/날염+마무리공정) or RVC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305	CC(ex.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5906~5907, 60) + SP	CC	CC (ex.5111~5113, 5208~5212, 5310, 5311, 5407, 5408, 5 5 1 2 ~ 5 5 1 6 , 5801~5803, 5903, 6001~6006)	CC or RVC40
6306 6307.20	CC + 재단/편성 +봉제/기타결합공 정	CC	CC + SP(재단/편 성+봉제/기타 결 합공정)	CC or RVC40
6307.10 6307.90	CC(ex.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 5906~5907, 60) + SP	CC+SP(From 직 물+마무리공정)	CC + SP(재단/편 성+봉제/기타 결 합공정)	CC or RVC40
6307.90	CC(ex.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5906~5907, 60) + SP	CC +(From 직물 + 마무리공정)	CC + SP(재단/편 성+봉제/기타 결 합공정)	CC or RVC40
6308	CC + 재단/편성 + 봉제/기타결합공정	CC	CC + (직물 또는 사(絲)가 별도로 분 류될 경우 그 직물 또는 사(絲)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 준을 충족)	CC or RVC40
6309	CC (ex.61, 62)	CTH	CTH or 체약국 수 집+선적포장	CTH
6310	CC	CT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3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과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대체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이 결합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포, 린넨제품(제6301호~제6302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 면직물(제5208호~제5212호), 기타 식물성직물(제5310호~제5311호) 등 각종 직물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 커튼, 기타실내용품, 포대 등(제6303호~제6305호)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직물은 원산지직물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6309호의 구제의류는 체약국에서 수집되고 선적포장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폭넓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제6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과 주요원재료의 원산지재료 사용의무,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을 주로 택하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유일하게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공공정기준을 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제6309호의 구제의류를 예로들면 싱가포르의 2단위세번변경기준을 택하되 제61류와 제62류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하고 있다. 구제의류의 대부분이 의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원산지 의류를 조달하여 구제의류 거래를 하는 경우만 원산지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의류(제61류, 제62류)를 수입하여 구제의류로 거래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가장 완화된 기준으로 풀이된다.

캐나다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고 이외에 체약당사국에서 수집하여 선적포장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구제의류의 원산지지위 인정에 완화된 규정을 하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청소용 포는 극세사 등의 원단을 사용하여 편직 및 제직과정을 한 후 염료를 이용한 정련과 염색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로고를 인쇄하는 등의 후가공 작업을 거쳐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규격으로 재단한 후 봉제사를 이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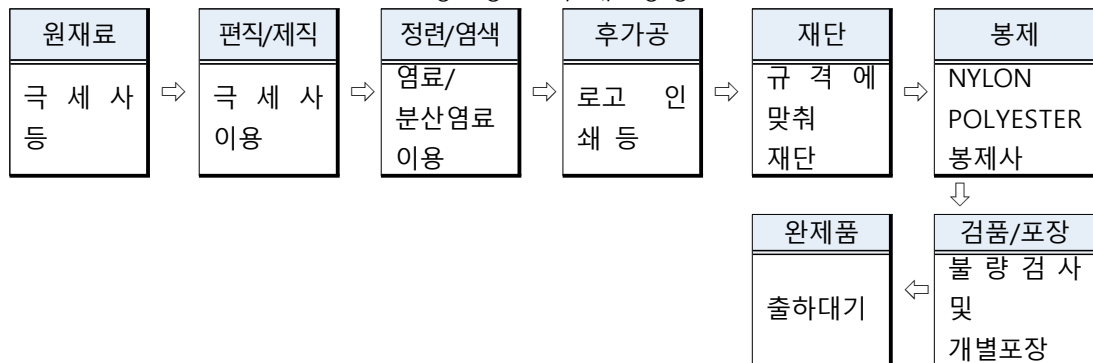
봉제를 하고 검품 및 포장을 하면 완성된다.

품명	청소용 포
세번	6307.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 청소용 포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부직포	5603.94	청소용 포의 주요 원재료
폴리에스테르 사	5402.33	
	5402.47	
극세사 직물	6005.32	

<청소용 포의 제조과정>



청소용 포는 주로 제54류, 제56류, 제60류에 분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청소용 포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하고 있다.

만약 위에서 제시된 기본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재단과 기타의 결합공정을 수행한다면 2단위 세번변경과 가공공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제품(제64류~제67류)

제12부에는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s)·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羽毛]와 그 제품, 조화(造花), 인모(人毛)제품’을 분류하며, 다음 표64-1과 같이 제64류부터 제67류까지 4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다.

제12부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s).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造花), 인모(人毛)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4류는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명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이나 콤포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이나 콤포지션 가죽(composition leather)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 쿠션(heel cushions)과 이와 유사한 제품, 각반.레깅 스(leggings)와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2. 제6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4류의 대세계 교역은 수출은 483,824천달러 수입은 2,320,378천달러로 1,836,554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6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522,805	2,029,765	-1,506,961	483,824	2,320,378	-1,836,554
對싱가포르	5,743	177	5,553	11,114	73	11,041
對호 주	1,983	398	1,575	655	538	117
對캐 나 다	1,719	214	1,482	1,004	153	851
對뉴질랜드	123	237	-131	92	56	36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64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6406909010(신발류 부분품 :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가 455천달러이며, 6403999000가 221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6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403599000	3,432	6403999000	256	6406909010	455	6403999000	47
2	6403999000	3,335	6405900000	101	6403999000	221	6404110000	17
3	6404199000	877	6404199000	79	6404199000	101	6402991000	13
4	6403519000	611	6402999000	40	6403190000	43	6404199000	8
5	6403919000	589	6406909010	38	6403200000	31	6403190000	3
6	6402190000	486	6402991000	36	6406909090	27	6404209000	2
7	6402999000	442	6401999000	24	6402991000	24	6402999000	1
8	6404110000	436	6403919000	15	6405900000	23	6406201000	1
9	6404209000	405	6402992000	14	6402999000	21	6405900000	0
10	6403400000	116	6404209000	12	6404191000	18	6406909010	0

3. 제6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6401~64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64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640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401~6405	CTH	CTH	CTH(ex.6406) or (From 6406 + MC 55 of 6406)	CTH
6406	CTH	CTH	CTH	CC or RVC 30/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4류는 2단위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결합기준 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4류는 다양한 종류의 신발(제6401호~제6405호)와 신발의부분품(제6406호)로 분류된다. 특히 제6406호는 신발의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갑피, 안창, 힐쿠션 등이 분류된다. 신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도 원산지 충족에 무리가 없다. 다만 ‘제6406호의 것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발의 부분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만 한다(최소허용기준에 따라 10%까지의 비원산지재료 사용은 가능하다)

만약 신발부분품을 수입하여 신발을 생산하면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호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한 신발부분품이 신발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 않는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이다.

신발부분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무, 플라스틱, 가죽과 같은 다른 류의 재료들을 수입하여 갑피 등을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대체로 신발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는 신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뉴질랜드는 신발 부분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는 차이가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신발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때 (다른 모든 국가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지만) 2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발류의 부분품은 대체로 가죽(42류), 플라스틱(제39류), 고무(제40류) 등으로 만들고 동일 류인 제64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의미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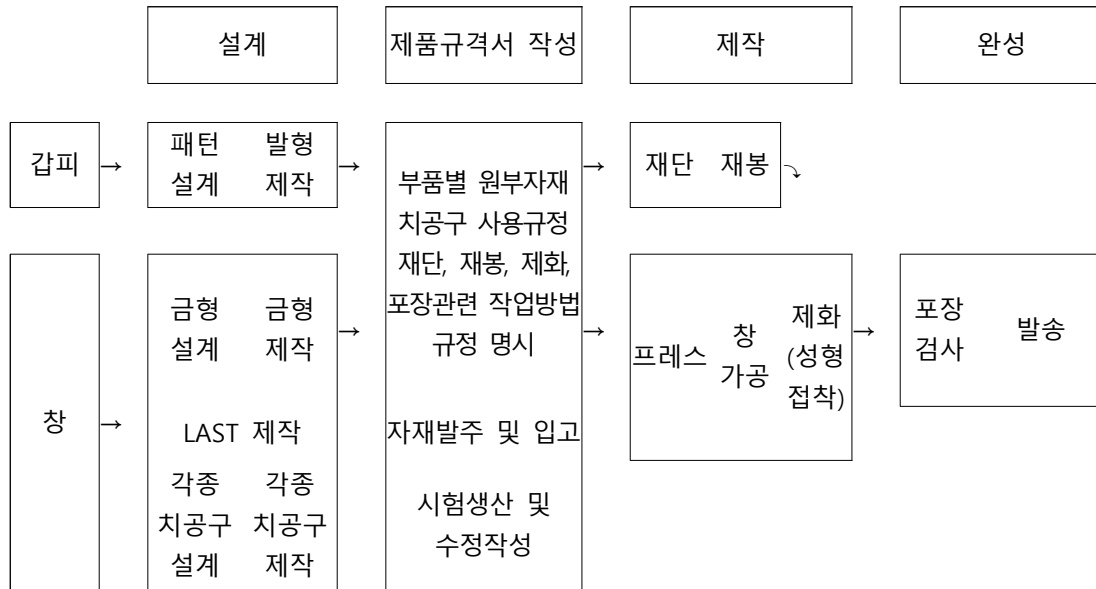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고, 부가가치기준은 활용의 여지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안창)

품명	신발류 부분품 :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Parts of footwear : Removable in-soles)
세번	6406.90.901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안창은 신발의 내부면을 구성하는 신발 부분품으로 주로 체중을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여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완충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 소재로는 합성섬유와 고무가 많이 쓰이며 특히 혼합고무가 주로 이용된다.

< 신발류 부분품 생산공정 >



< 신발 안창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폴리에스테르직물	5512.19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Insole 의 외피부분
PE Foam	3921.19	폴리에틸렌 판상으로 Insole 의 몸통부분
EVA Sponge	3921.19	안창에 쿠션을 주는 스펀지. Insole의 쿠션부분
열가소성 고무	4005.91	Insole의 앞부분에 부착되는 부품
PP Cap	3920.99	폴리프로필렌 캡. Insole의 뒷굽치를 보강하는 부품

신발 안창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발안창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들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인 HS 제6406호가 아닌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계약당사국 내에서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신발안창을 제조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5류에는 ‘모자류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501	모체[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는 것으로서 모자챙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로 만든 플레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s)[슬릿망송(slit manchons)을 포함한다]
6502	모체[각종 재료의 스트립(strips)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형하지 않은 것이나 모자챙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은 것이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04	모자와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 ¹⁴⁾ [각종 재료의 스트립(strips)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5	모자와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과 원단 상태[스트립(strips)상태는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felts)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6	그 밖의 헤드기어(headgear)(안을 댄 것이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07	헤드밴드(head-bands)·내장재·커버·해트 파운데이션(hat foundations)·해트 프레임(hat frames)·챙과 턱 끈

※ 2007년도에 제6503호는 삭제

2. 제6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5류의 대세계 교역은 36,033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동일연도에 캐나다와의 수출실적은 1,893천달러를 수입은 299천달러로 1,594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HS 제6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34,700	96,423	38,277	161,376	125,343	36,033
對싱가포르	2,905	29	2,873	2,667	21	2,646
對호 주	2,322	15	2,302	1,235	37	1,198
對캐 나 다	2,417	410	2,002	1,893	299	1,594
對뉴질랜드	348	14	333	320	3	317

14) 현행 관세율표에서는 ‘모자’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hats and other headgear’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제65류 표제는 ‘headgear’로 ‘모자류’라 하였다.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제65류의 수출상위품목은 6506100000(안전 모자)와 6505009011로 각각 1,114천달러, 435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6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506999000	2,235	6506100000	749	6506100000	1,114	6506100000	297
2	6506100000	257	6505009090	360	6505009011	435	6507000000	12
3	6507000000	66	6505009011	88	6507000000	235	6506910000	6
4	6505009090	38	6507000000	19	6505009029	38	6505009021	3
5	6505009021	35	6505009029	15	6505009090	28	6505009090	2
6	6506910000	15	6504000000	2	6506910000	14	6505009011	0
7	6506991000	14	6505009021	1	6506991000	14	6505009022	0
8	6505009019	5	6506910000	1	6505009021	9	6505009029	0
9	6505009029	2	6501000000	0	6505009019	5	6506999000	0
10	6501000000	0	6505001000	0	6506999000	1	-	-

3. 제6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65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501~6502	CTH	CTH	CTH	CC or RVC 30/40
6504	CTH (ex.6502)	CTH	CTH	CTH
6505~6507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5류에는 모자와 모자의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65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

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502호의 모체를 수입하여 성형하거나 차양을 붙여서 모자(제6504호)를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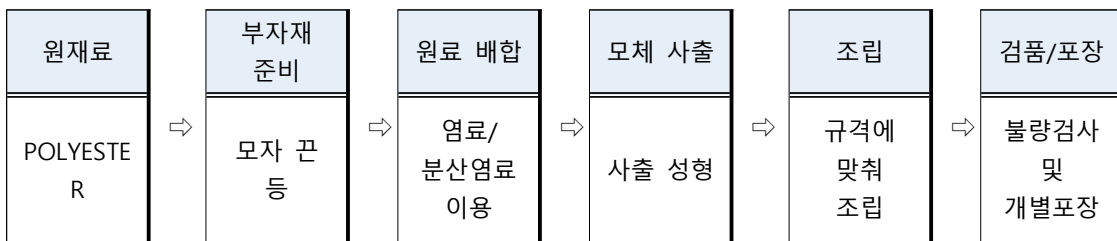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체(제6501호~제6502호)는 뉴질랜드만 2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물재료의 모자(제6504호)의 경우 모든 국가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모자의 핵심재료인 모체(제6502호)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안전 모자)

품명	안전 모자 (Safety headgear)
세번	6506.1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안전모의 제조과정>



산업용 안전모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칩(제3901.20호)을 녹여 사출기에 넣고 원하는 모양대로 사출성형하여 제작한다. 따라서 안전모의 주된 원재료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할 수 있다.

한-캐나다 FTA는 안전모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칩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사출하여 완성품을 만드

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안전모는 폐안전모를 수거하여 이를 다시 녹여서 재생상품으로서 사출 성형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따라서 폐안전모(제6506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이를 녹여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제6506호)로서 호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안전모만 수거하여 생산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이다.

제66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6류에는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s)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 · 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2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s)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6603	제6601호나 제6602호의 제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s)과 부속품

2. 제6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6류의 대세계 교역은 수출의 경우 5,104천달러를 수입은 92,226천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21천달러를 수입은 2천달러로 19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6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7,149	91,691	-84,543	5,104	92,226	-87,122
對싱가포르	17	2	12	25	6	19
對호 주	48	75	-28	77	1	76
對개 나 다	0	67	-70	21	2	19
對뉴질랜드	1	6	-7	1	0	1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제66류의 수출상위 품목은 6601991000(지팡이 겸용 우산)가 14천달러, 6601910000(대가 접철식인 산류)가 4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6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601999000	14	6602001000	66	6601991000	14	6601999000	1
2	6602009000	8	6601999000	8	6601910000	4	6601991000	0
3	6601991000	2	6601910000	1	6601999000	3	6601992000	0
4	6602001000	1	6601991000	1	6601100000	0	6602001000	0
5	6601910000	0	6603900000	1	6601992000	0	6602003000	0

3. 제6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6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6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66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66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6602~6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601	CTH (ex.6603)	CTH	CTH(ex.6603) or (From 6603 + MC 55 of 6603)	CTH
6602	CTH (ex.6603)	CTH	CTH	CTH
6603	CTH	CC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6류에는 우산과 지팡이 및 그 부속품이 분류된다. 제66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503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성형하여 우산(제6601호)이나 지팡이(제6602호)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한다. 다만 우산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제6603호의 부속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이때 최소허용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10%까지는 제6603호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속품을 수입하여 우산을 만드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는 각호 2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부속품은 우산의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팡이는 우산과 달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부속품을 수입하여 지팡이를 역내에서 가공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산의 경우 캐나다와 싱가포르가 다소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우산의 부속품(제6603호)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는 부속품은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완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산의 부속품을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지팡이 겸용 우산)

품명	지팡이 겸용 우산 (Walking-stick umbrellas)
세번	6601.99.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6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66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66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제67류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造花),인모(人毛)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7류에는 ‘조제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인모(人毛, 사람머리카락)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701	새의 깃털(羽毛)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quills)와 깃촉(scapes)은 제외한다]
6702	인조(人造)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人造) 꽃·잎이나 과실로 만든 제품
6703	인모(人毛)(정돈·표백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그 밖의 동물의 털(animal hairs)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6704	가발·가수염·눈썹과 속눈썹·스위치(switches)와 이와 유사한 것[인모(人毛)·동물의 털(animal hairs)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인모(人毛)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7류의 대세계 수출실적은 45,746천달러를 수입실적은 70,673천달러로 24,927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은 449천달러 수입은 145천달러로 304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HS 제6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7,045	67,087	-20,042	45,746	70,673	-24,927
對싱가포르	54	5	46	92	8	84
對호 주	297	1	290	358	9	349
對개 나 다	372	169	194	449	145	304
對뉴질랜드	33	0	29	29	0	29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67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주요 품목은 6704194000(가속눈썹)가 433천달러를 6704110000(전체가발)가 10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67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704194000	51	6704194000	261	6704194000	433	6704194000	29
2	6704201000	15	6704205000	73	6704110000	10	6702100000	0
3	6704900000	14	6704201000	15	6704900000	6	6702901000	0
4	6704191000	12	6702100000	4	6701000000	0	6702909000	0
5	6704199000	0	6702909000	2	6702100000	0	6704110000	0
6	6704202000	0	6704191000	1	6702902000	0	6704191000	0
7	6704205000	0	6704199000	1	6702909000	0	6704199000	0
8	6702100000	0	6704900000	1	6704191000	0	6704900000	0

3. 제6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6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670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깃털 또는 솜털 제품
6702~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701	CTH	CTH	CTH or From 6701 (깃털 또는 솜털 제품)	CTH
6702~6704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호 물품생산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7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701호에 분류되는 우모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동일호(제670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이다. 따라서 우모의 경우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 동일세번의 우모재료를 수입하여 우모 완성품을 생산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조화(제6702호), 인모(제6703호), 가발(제6704호)의 경우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모를 수입하여 가발을 만드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 모두 제67류의 상품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한-캐나다 FTA에서 우모의 경우에만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제6701호 부서의 생산기준을 두고 있어 차이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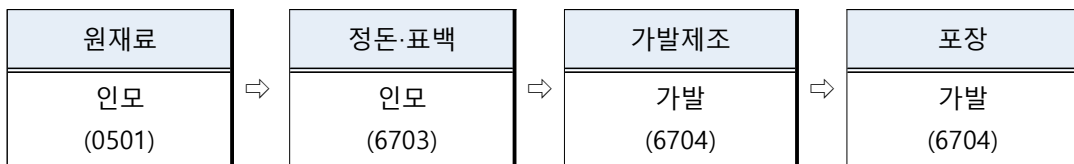
결국 우모의 원산지 판단시 다른 국가들은 동일호에 속하는 우모재료(제6701호)를 수입하여 우모 완성품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캐나다의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가속눈썹)

품명	인모제의 전체 가발(Wigs)
세번	6704.2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가발은 주로 HS 제6703호에 분류되는 인모를 가공하여 생산하는데, HS 제6703호에 분류되는 인모는 HS 제0501호에 분류되는 인모를 정돈·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여 만들어 진다.

< 가발 생산공정 >



< 가발의 주요 원재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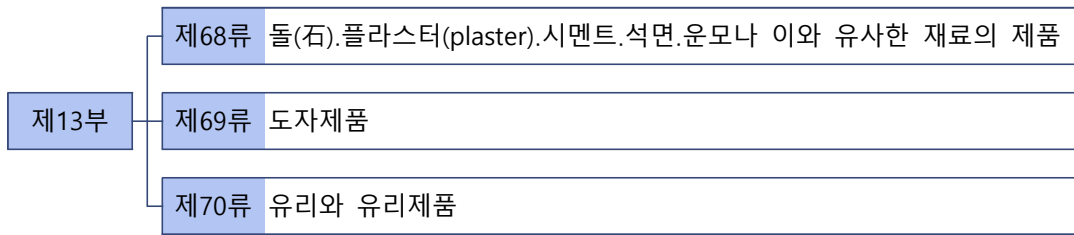
품 명	HS	설 명
인 모	제6703호	가발의 주요 원재료

가발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제6704호가 아닌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가발을 제조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0501호 또는 제6703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 인모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에서 가발을 제조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된 가발의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13부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 자제품, 유리과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제13부에는 ‘석(石)·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
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과 유리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3개 류로 구성되어
있다



제68류 돌(石)·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8류에는 ‘돌[石].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
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6801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 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6803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 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 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 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8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6811호와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제6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68류의 대세계 교역은 708,112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의 경우 9,883천달러를 수입은 4,078천달러로 5,805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HS 제6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587,007	1,255,252	-668,245	665,347	1,373,459	-708,112
對싱가포르	6,286	3,581	2,678	5,811	3,296	2,515
對호 주	10,512	392	10,103	9,819	534	9,285
對캐 나 다	11,302	1,624	9,664	9,883	4,078	5,805
對뉴질랜드	1,965	0	1,957	2,479	20	2,459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의 제68류의 수출대표품목은 6810999000이 5,249천달러를 6810192000(판석)가 2,131를 수출하였다.

HS 제6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804210000	1,556	6805300000	4,150	6810999000	5,249	6815102000	500
2	6815101000	804	6805200000	1,046	6810192000	2,131	6805300000	455
3	6806901000	607	6810192000	1,018	6804210000	1,021	6804210000	388
4	6805200000	472	6804210000	847	6805300000	529	6807900000	387
5	6805300000	453	6805100000	451	6805100000	399	6805100000	206
6	6810999000	252	6810999000	398	6804220000	173	6810999000	195
7	6806102000	211	6814100000	390	6805200000	135	6815109000	124
8	6807900000	184	6804100000	317	6804300000	99	6806102000	124
9	6806109000	179	6815109000	282	6804100000	40	6805200000	78
10	6805100000	176	6811820000	247	6815990000	28	6810191000	7

3. 제6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68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801~6811	CTH	CTH	CTH	CTH
6813~6815	CTH	CTH	CTH	CTH
6812	CTH	CTS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8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68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면섬유의 의류 등 제품(제6812.50호)의 경우 당해호 내부에 속하는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은 발생하지만 4단위세번은 동일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4개국 비교분석) 제68류의 돌, 시멘트 제품에 대하여 영연방 국가들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 석면제품(제6812호)에 대하여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어 다른 국가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석면제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소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석면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 다른 영연방 국가와의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명	시멘트 판석(Cement Flagstone)
세번	6810.19.2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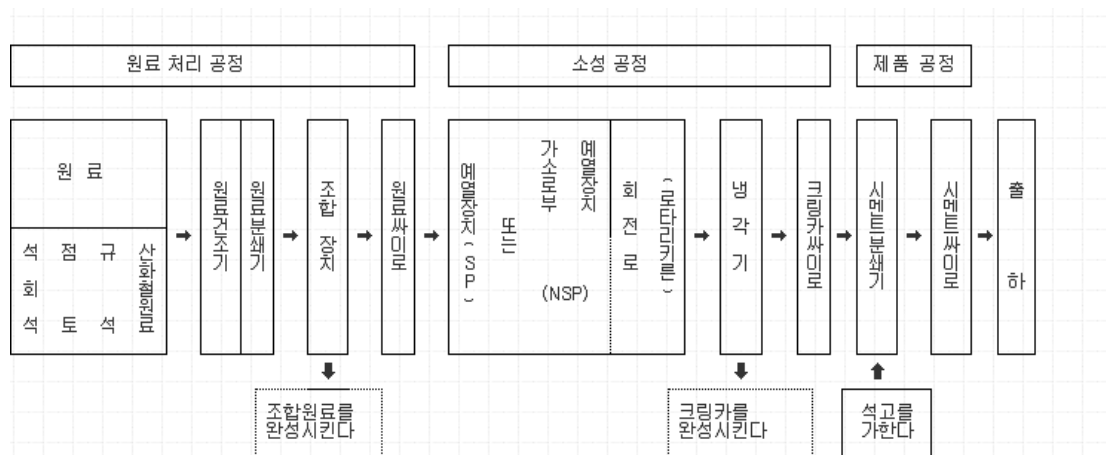
판석이란 두께가 15cm 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넓적하고 큰 돌을 말한다. 주로 인도나 공원, 광장 등의 보도용 판석 및 건물의 외벽으로도 사용된다.

판석(시멘트의 것)은 시멘트의 원재료인 석회석, 점토, 석고 등의 원재료를 적정 비율로 물과 함께 혼합하여 만든다.

<시멘트 판석의 주요 원재료>

품 명	HS	설 명
석 회 석	제2521.00호	석회석은 총 시멘트 원료량의 95% 이상을 차지
점 토	제2505.90호	입자크기가 작고 무른 흙으로 석회석과 일정 비율로 조합
석 고	제2520.10호	시멘트의 혼재 비료·백색 안료로 사용

<시멘트 판석 생산공정>



시멘트 판석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HS 제6810호가 아닌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시멘트 판석을 제조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 모두를 수입하여 완제품인 판석을 제조하여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69류 도자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69류에는 ‘도자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절에 속한 1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규산질의 화석분말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901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제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s) · 도가니 · 머플(muffles) · 노즐 · 플러그 · 서포트(supports) · 회분접시(cupels) · 관(tubes) · 덮개(sheaths)와 막대(rod)] (규산질의 화석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② 그 밖의 도자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6904	도자로 만든 건축용 벽돌 · 바닥 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support tiles)이나 필러타일(filler tiles)과 이와 유사한 것
6905	기와 · 굴뚝 통 · 굴뚝 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로 만든 건설용품
6906	도자로 만든 관(管) · 도관(導管) · 흙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6907	도자로 만든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용(爐用)이나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로 만든 모자이크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한다)
6908	도자로 만든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용(爐用)이나 벽용 타일(유약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한다)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로 만든 항아리 · 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6910	도자로 만든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 변기통 · 수세식변기용 물통 · 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1	자기(porcelain or china)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6912	도자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자기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6913	도자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4	도자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6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69류의 대세계 교역은 1,118,960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시현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의 경우 1,106천달러를 수입은 168천달러로 938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6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96,998	1,205,744	-1,008,746	305,951	1,424,911	-1,118,960
對싱가포르	2,616	5,293	-2,700	2,068	4,131	-2,063
對호 주	2,976	391	2,566	1,709	740	969
對캐 나 다	1,288	790	483	1,106	168	938
對뉴질랜드	58	341	-295	36	294	-258

나. 주요 수출물품

제69류의 수출주요품목은 6909190000(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과 이와 유사한 제품)로 614천달러를 6912001020(공기, 대접과 접시)가 두 번째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으로 183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6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6903109000	708	6909190000	778	6909190000	614	6909190000	12
2	6909190000	340	6908901000	179	6912001020	183	6901009090	9
3	6903209000	219	6911109000	146	6912001090	140	6912001020	8
4	6906002000	153	6912001020	109	6914909000	55	6911109000	3
5	6909110000	136	6912001090	108	6911109000	49	6908109000	2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6	6907101000	59	6902100000	105	6911102000	22	6912001090	2
7	6902200000	53	6907909000	91	6902909000	12	6901001000	0
8	6909120000	49	6914909000	76	6903209000	11	6903206000	0
9	6906001000	47	6911102000	68	6904900000	5	6903209000	0
10	6912001090	44	6912009000	26	6912009000	5	6908909000	0

3. 제6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69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6901~6907 6909~6914	CC	CC	CTH	CTH
6908	CC	CC or RVC 40	CTH	CC or RVC 30/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6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2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6907호의 도자제 판석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유약을 시공하여 제6908호의 도자제 제품으로 완성하면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도자제 제품에 대하여 영연방 국가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소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는 제69류에 대하여 2단위,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일괄적으로 선택하였다.

우선 유약시공한 도자제품(제6908호)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2단위 세번변경을,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유약시공한 도자제품의 경우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6907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유약시공하여 도자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당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의 30%/40% 보다 적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토기화분)

품명	실험실용,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세번	6909.12.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세라믹은 열과 냉각 활동 등으로 마련된 무기화합의 비금속 고체이다. 점토 등 천연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용기로 주로 사용된다. 파인세라믹스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에 비하여 녹이 슬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며 손상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자기적, 광학적, 기계적, 생체공학적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캐나다 FTA는 세라믹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탄화규소(제2849호), 질화물(제2850호), 지르코니아(호2825호) 등 제 28류의 무기화합물을 주원료로 하는 세라믹은 원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이미 류단위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1. 품목분류 체계

제70류에는 ‘유리와 유리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19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번호	품 명
7001	깨진 유리(cullet)와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mass)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s)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	주입법(鑄入法)과 롤법(rolled)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s)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s)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6	제7003호·제7004호나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8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multiple-walled insulating units)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s)·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ampoules)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이나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 여부를 불문한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segments)

7016	압축하거나(pressed) 주형한(moulded) 유리로 만든 포장용(鋪裝用) 블록(blocks) · 슬래브(slabs) · 벽돌 · 스퀘어(squares) · 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세공품(뒷면의 보강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s)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s) · 패널(panels) · 플레이트(plates) · 셸(shell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包)유리
7017	실험실용 · 위생용이나 약제용 유리제품(눈금 유무를 불문한다)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s) · 모조진주 · 모조귀석이나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小像)과 램프에 사용되는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s)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702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2007년도에 제7012호는 삭제

2. 제7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70류의 대세계 교역은 1,409,826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이 5,962천달러를 수입이 290천달러로 5,672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7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256,697	3,471,525	-2,214,828	1,348,733	2,758,559	-1,409,826
對싱가포르	11,862	12,726	-894	13,069	16,848	-3,779
對호 주	14,017	3,165	10,829	19,765	3,632	16,133
對캐 나 다	6,714	491	6,206	5,962	290	5,672
對뉴질랜드	1,140	544	580	1,234	47	1,187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제70류의 수출상위 품목은 7013490000(식탁용 유리제품과 주방용 유리제품)로 2,501천달러를 수출하였다. 두 번째로 수출실적이 높은 품목은 7019901000(글라스 울)이며 1,017천달러를 해당국가로 수출하였으며, 이외에도 7019110000(단연사), 7010900000를 각각 982천달러, 898천달러가 수출상위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HS 제7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020009000	5,622	7020009000	8,788	7013490000	2,501	7019590000	612
2	7020001011	2,497	7010900000	6,944	7019901000	1,017	7019120000	202
3	7020001019	1,513	7019120000	1,270	7019110000	982	7019310000	128
4	7019110000	733	7009100000	1,100	7010900000	898	7019400000	99
5	7019590000	595	7019590000	382	7008000000	251	7020009000	60
6	7020001013	504	7007191000	315	7007192000	107	7013490000	47
7	7019400000	457	7013490000	314	7009100000	84	7019520000	36
8	7010900000	171	7019520000	160	7018109000	61	7010900000	22
9	7007111000	168	7013370000	115	7007191000	12	7007191000	14
10	7013490000	159	7019310000	83	7016909090	10	7013370000	6

3. 제7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001~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00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009.91 ~70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010~70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019.11 ~701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019.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19.52호 및 제7019.5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019.52 ~701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001~7005 7010~7018	CTH	CTH	CTH	CTH
7006	CTH (ex.7003~7005)	CTH	CTH	CTH
7007~7008 7009.91~7009.92	CTH (ex.7003~7006)	CTH	CTH	CTH
7009.10	CTH (ex.7003~7006)	CTSH	CTSH	CTH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019.11~7019.40 7019.52~7019.90	CTH	CTH	CTSH	CTH
7019.51	CTH	CTH	CTSH (ex.7019.52, 7019.59)	CTH
702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0류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0류에 속하는 대부분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제품의 원재료인 유리쉬트(제7004호~ 제7006호를 수입하여 제 7007 호의 안전유리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7009.10호, 제7019.11호~제7019.40호, 제제7019.52호~제7019.90호의 물 품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제7019.52호의 폭이 30cm 초과하는 유리섬유 직물을 수입하여 제 7019.51호의 폭이 30cm 이하인 품목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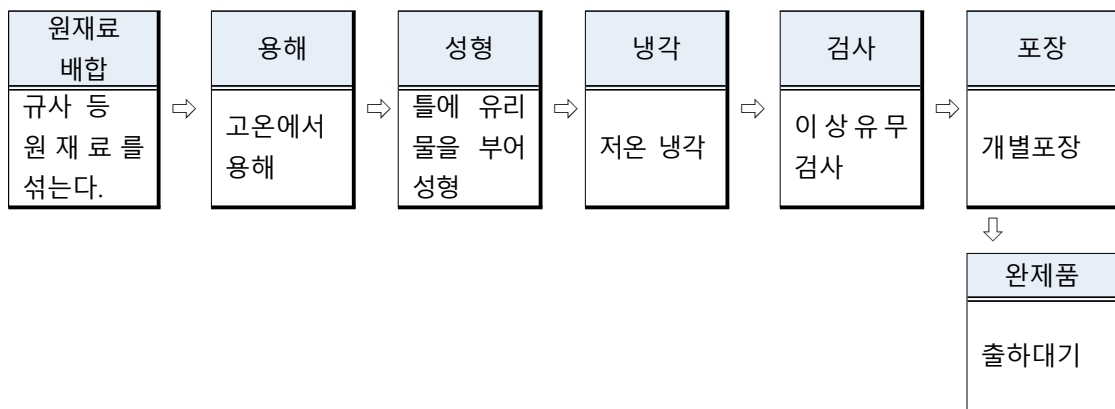
그러나 제7019.51호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만, 주의할 것은 제 7019.52호와 제7019.59호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경우 이들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70류 유리 및 유리제품에 대하여 연연방 국가들의 대체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는 유리제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유리쉬트 등(제7003호~제7006호)은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주방용 유리제품)

품명	식탁용 유리제품과 주방용 유리제품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 or kitchen purposes other than of glass-ceramics :)
세번	7013.49.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규사와 소다회, 석회석과 파유리 등의 원재료를 분해해서 섞어준 후 고온에서 용해를 한다. 그 후 틀에 유리물을 부어 모양을 만드는 성형공정을 거친 후 서서히 냉각시켜 굳혀준다. 냉각되어 모양이 갖춰진 유리기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글래스 락의 주요 원재료>

품 명	HS	설 명
규사	2505.10	글래스 락 유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석회석	2521.00	
소다회	3824.90	
파유리	7001.00	
플라스틱 뚜껑	3902.10	글래스락 플라스틱제 뚜껑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3902.50	

한-캐나다 FTA는 글래스 락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기본적인 핵심 원재료들을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글래스 락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14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제71류 제14부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 귀석이나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1. 품목분류 체계

① 천연진주나 양식진주와 귀석이나 반귀석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꿰 것 · 장착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꿰 것을 포함한다)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꿰 것 · 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꿰 것을 포함한다)
7104	합성한 것이나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이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꿰 것 · 장착되거나 세트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꿰 것을 포함한다)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이나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②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07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09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7111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이나 금(반가공인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이나 귀금속 회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은세공품과 그 밖의 제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4	금세공품이나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합성한 것이나 재생한 것)의 제품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8	주화

2. 제7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71류의 대세계 교역은 193,004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14,311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HS 제7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3,991,787	3,692,806	298,981	3,936,190	3,743,186	193,004
對싱가포르	71,163	6,508	64,632	74,868	7,679	67,189
對호 주	9,697	214,869	-205,199	9,319	174,437	-165,118
對캐 나 다	2,278	2,102	159	2,612	16,923	-14,311
對뉴질랜드	120	176	-65	136	114	22

나. 주요 수출물품

제71류의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7112929000(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백금의 것)로 631천달러를 수출하였다. 그 외에 싱가포르의 7108121000(럼프·빌릿·알갱이 모양의 금)가 41,933천달러를 호주의 7106921000(막대와 형제 모양의 반가공한 은)가 5,706천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7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108121000	41,933	7106921000	5,706	7112929000	631	7117199000	79
2	7108131010	21,292	7117199000	777	7117193000	464	7117191000	33
3	7113192000	5,746	7113191000	776	7113192000	354	7117192000	18
4	7113191000	2,143	7117191000	641	7116209010	287	7117900000	3
5	7106921000	743	7113192000	603	7117191000	218	7105909000	1
6	7107009000	686	7117193000	317	7117199000	204	7113110000	1
7	7117199000	681	7117195000	222	7117195000	131	7117195000	1
8	7117193000	308	7117192000	116	7117192000	131	7105102000	0
9	7117191000	265	7113110000	58	7113199000	71	7106923000	0
10	7117192000	258	7117900000	57	7113110000	38	7112919000	0

3. 제7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101~710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06~7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11~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101	CC	CC	CTSH	CTH
7102~7103.10	CC	CC	CTSH	CC
7103.91~7103.99	CC	CC	CTSH	CTSH
7104.10~7104.20	CC	CTH	CTSH	CTH
7105	CC	CTH	CTSH	CTH
7104.90	CC	CTH	CTSH	CTSH
7106~7107	CC	CC	CTH	CTH
7111	CC	CC	CTSH	CTSH
7108, 7110	CC	CC	CTSH	CTSH
7109	CC	CC	CTH	CTSH
7112	CC	CTH	CTH	CTH
7113~7118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1류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1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진주, 다이아몬드, 귀석등이 분류되는 제7101호~제7105호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제 7103.10호에 속하는 단순톱질한 귀석원석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7103.91~제7103.99호로 변경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금(제7108호)의 경우 화폐용이 아닌 가공하지 않은 금(제7108.12호)을 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71류의 귀금속에 대하여 영연방 4개국은 다소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와 호주는 대체로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여 매우 엄격한 원산지 판단을 요한다.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여 싱가포르보다는 다소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귀석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연마하는 경우 캐나다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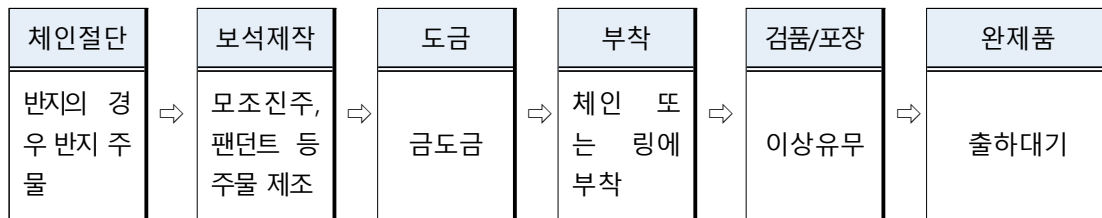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백금 웨이스트)

품명	신변장식용품, 금제의 것(Article of jewellery, of gold)
세번	7113.19.2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금제의 신변장식용 목걸이는 순수한 금으로 만들거나, 철 또는 니켈제의 목걸이를 습식도금(전기도금)을 통해 금도금하여 만들 수 있다.

신변장식용 금목걸이에 금 도금을 하는 경우에는 탈지 후 도금막의 밀착성을 위한 에칭과 무전해 니켈형성 과정을 거쳐 금을 도금한다.

<도금된 금목걸이 생산공정>



<금 목걸이의 주요 원재료>

품 명	HS	설 명
금	7108.12	귀금속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금
규빅 등	7104	목걸이의 장식용 재료
철강제 체인	7117.19	목걸이의 줄 부분을 구성하는 철강제의 체인

제7113호에 분류되는 금제의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므로, 제7113호가 아닌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금 목걸이를 제조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금, 규빅, 철강제 체인 등을 수입하여 체약당사국에서 형성 및 도금과정 등을 거쳐 금목걸이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도금된 금목걸이가 아닌 순수 금제의 목걸이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7108호에 분류되는 금(가공여부를 불문)을 수입하여 용융 및 형성과정을 거쳐 금목걸이를 생산한 경우 4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제15부	제72류	철강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s), 이들의 제품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비금속(卑金屬)로 만든 각종 제품

제72류 철강

1. 품목분류 체계

① 일차재료,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의 생산품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명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 · 블록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7202	합금철(ferro-alloys)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 생산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 생산품[덩어리(lumps) · 펠릿(pellet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덩어리(lumps) · 펠릿(pellets)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과 철강으로 한정한다]

② 철과 비합금강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 ·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입히거나(clad)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 · 열간압연(熱間壓延) · 열간인발(熱間引拔)이나 열간압출(熱間壓出)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延)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③ 스테인리스강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 모양으로 한정한다]와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④ 그 밖의 합금강과 합금이나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의 분류체계

품목번호	품 명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생산물(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압연(熱間壓延)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기타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hollow drill bars)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

2. 제7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72류의 대세계 교역은 흑자기조를 시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수출은 332,430천달러를 수입은 67,377천달러로 수출실적이 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의 교역역시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7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2,269,931	20,369,660	1,900,270	23,943,952	21,956,436	1,987,516
對싱가포르	222,009	4,050	217,913	185,331	9,656	175,675
對호 주	175,251	58,432	116,770	204,372	49,485	154,887
對캐 나 다	219,775	62,867	156,856	332,430	67,377	265,053
對뉴질랜드	55,592	44,504	11,049	55,275	30,360	24,915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72류의 수출 주요품목은 7216334000(철이나 비합금강의 에이치 형강) 가 69,931천달러를, 721070200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가 38,600천달러로 상위품목으로 나타났다.

HS 제7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214201000	25,993	7216334000	24,559	7216334000	69,931	7210120000	19,527
2	7216334000	24,753	7208519000	20,952	7210702000	38,600	7210702000	7,487
3	7208519000	24,536	7210702000	19,962	7208279000	21,631	7209179000	5,186
4	7208511000	19,614	7214201000	17,511	7209169000	19,785	7210610000	4,239
5	7225190000	10,004	7210610000	14,546	7208519000	18,782	7210309000	2,671
6	7208529000	8,440	7208529000	13,079	7210491010	13,157	7208519000	1,720
7	7228309000	8,416	7216310000	12,817	7209161000	12,746	7216334000	1,712
8	7223000000	5,499	7208511000	7,035	7210491090	10,740	7212402000	1,581
9	7216333000	5,081	7228309000	6,314	7217100000	10,535	7208529000	1,167
10	7220201090	4,323	7210491090	4,559	7208399000	9,789	7219331090	1,056

3. 제7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72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201~7202.19 7202.29~7202.49 7202.60~7202.70 7202.91~7206 7208, 7213, 7216 7218, 7221~7229	CTH	CTH	CTH	CTH
7202.21, 7202.50 7202.80	CTH	CC	CTH	CTH
7207	CTH	CTH (ex.7206)	CTH	CTH
7209	CTH	CTH (ex.7208,7211)	CTH	CTH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210	CTH	CTH (ex.7208,7209,7211)	CTH	CTH
7211	CTH	CTH (ex.7208, 7209)	CTH	CTH
7212	CTH	CTH (ex.7208~7211)	CTH	CTH
7214	CTH	CTH (ex.7213)	CTH	CTH (ex.7213)
7215.10	CTH	CTH (ex.7213, 7214)	CTH	CTH (ex.7213, 7215)
7215.50	CTH	CTH (ex.7213, 7214)	CTH	CTH (ex.7213, 7216)
7215.90	CTH	CTH (ex.7213, 7214)	CTH	CTH (ex.7213, 7217)
7217	CTH	CTH (ex.7213~7215)	CTH	CTH
7219~7220	CTH	CTSH	CTH	CTS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2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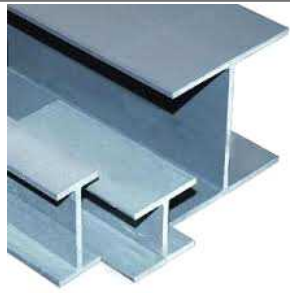
예를 들어 철광석을 수입하여 선철과 페로알로이등(제7201호~제7203호)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또한 제7205호의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이호외의 다른 호(제72류 내의 호)의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4단위 세번변경에 의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잉곳(제7206호)를 수입하여 반제품(제7207호)를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4개국 비교분석) 제72류의 철강제품들은 영연방 4개국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모든 품목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한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품목들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보다 엄격하다.

특히 호주는 철강제품의 핵심원재료를 대체로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 영연방 국가간에서 원산지 판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철이나 비합금강의 에이치형강)

품명	철이나 비합금강의 에이치형강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alloy steel. : H sections)
세번	7216.33.4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H형강은 빌릿, 블룸, 빔블랭크를 가열하여 조압연한 후 사상압연의 과정을 거쳐 냉각하고 H형으로 만든다. 주로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와 교량 건설에 사용된다. 일반형강은 단면형상에 따라 ㄱ형강, ㄷ형강, 평강, 프로파일 등이 있고 선박이나 철탑, 기계 등의 부자재로 널리 사용된다.

주로 철강 빌릿과 블룸은 제7207호에 속하므로 이들재료를 수입하여 H형강을 제작하더라도 한-캐나다 FTA에서 규정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다.

제73류 철강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천공이나 조립 여부를 불문한다), 용접된 형강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s) · 체크레일(check-rails)와 치형레일(rack rails) ¹⁵⁾ · 스위치블레이드(switch blades) · 교차구류(crossing frogs) · 전철봉(point rods)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s) · 침목(크로스타이) · 이음매판(fish-plates) · 좌철(chairs) · 좌철썰기(chair wedges) · 밑판(sole plates)(베이스플레이트) · 레일클립 · 받침판(bedplates) · 격재(ties)와 궤조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
7304	철강(주철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무계목(無繼目,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 · 리벳(riveted)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프로파일(hollow profiles)[예: 오픈 이음매(open seam)이나 용접 · 리벳(riveted)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7	철강으로 만든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 · 엘보(elbows) · 슬리브(sleeves)]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기둥(lattice masts)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플레이트(plates) · 대(rods) · 봉 · 형강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의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하거나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의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하거나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엮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3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鉄, 철조망), 철강으로 만든 대(hoop)나 평선을 끈 것 (가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끈 이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4	철강으로 만든 클로드(cloth)[엔드리스밴드(endless bands)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6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7317	철강으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파형 못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제품[두부(頭部)가 다른 재료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을 제외한다]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 · 너트 · 코치스크루(coach screws) · 스크루 훅(screw hooks) · 리벳(rivets) · 코터(cotters) · 코터핀(cotter-pins) · 와셔(washers)(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제품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 수편침 · 돛바늘 · 코바늘(crochet hooks) ·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 판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 레인지 · 화상 · 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s)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wool),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 패드(polishing pads)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5) 제7302호에서 척레일은 보호레일이나 안전레일로 알려진 것으로 횡단이나 커브에서 차량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랙레일에 고정시킨 것이다. 치형레일은 급경사진 노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톱니가 있는 궤조를 말한다.

2. 제7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제73류의 대세계 교역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와의 교역역시 수출의 경우 141,149천달러를 수입은 23,860로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기록하고 있다.

HS 제7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1,179,899	8,514,948	2,664,951	12,655,474	8,904,284	3,751,190
對싱가포르	259,073	149,719	109,290	216,327	201,849	14,478
對호 주	841,638	11,815	829,754	998,121	17,380	980,741
對캐 나 다	174,019	27,592	146,376	141,149	23,860	117,289
對뉴질랜드	9,359	513	8,805	8,930	234	8,696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73류의 캐나다와의 수출상위 품목은 7308909000과 7326909000로 각각 18,207천달러, 15,615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HS 제7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312102099	35,784	7308909000	854,240	7308909000	18,207	7312102099	2,796
2	7308909000	25,949	7309000000	29,639	7326909000	15,615	7308909000	1,025
3	7326909000	15,715	7305111000	14,568	7305111000	13,554	7326909000	666
4	7307930000	11,553	7306301090	10,761	7308400000	12,214	7307999000	630
5	7305111000	9,860	7306190000	10,579	7307910000	11,242	7307991000	603
6	7308300000	8,735	7308400000	10,006	7306190000	8,152	7306190000	394
7	7306190000	8,477	7326909000	8,289	7307930000	7,185	7306691090	379
8	7307290000	7,665	7314490000	4,178	7312102099	6,485	7312102019	246
9	7305311000	6,055	7307910000	3,994	7318160000	5,877	7306909000	198
10	7307910000	5,721	7317001011	3,261	7307290000	3,468	7307929000	192

3. 제7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301~73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4.11 ~7304.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4.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4.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4.59 ~73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5~7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03호부터 제73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03호부터 제7306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03호부터 제7306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08~73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15.11 ~7315.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15.1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15.1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15.20 ~7315.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1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1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16~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21.11 ~7321.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22~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324.10 ~7324.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2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2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25~73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301~7304.39 7304.49 7304.59~7306 7308~7314 7315.19 7315.90 7317~7319 7323 7324.90~7326	CTH	CTH	CTH	CTH
7304.41 7304.51	CTH	CTH	CTSH	CTH
7307	CTH	CC or RVC 40	CTH(ex.7303~7306) or (From 7303~7306+ MC 55 of 7303~7306)	CTH
7315.11~7315.12	CTH	CTH or (From 7315.19 + RVC 40)	CTH or (From 7315.19+ MC 55 of 7315.19)	CTH
7315.20~7315.89	CTH	CTH or (From 7315.90 + RVC 40)	CTH or (From 7315.90+ MC 55 of 7315.90)	CTH
7316	CTH (ex.7003~7005)	CTH	CTH	CTH
7320 7321.90~7322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7321.11~7321.89	CTH	CTSH	CTH or (From 7321.90+ MC 55 of 7321.90)	CTSH
7324.10~7324.2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7324.90+ MC 55 of 7324.90)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3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호로부터 생산과 부가 가치기준이 결합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73류에 속하는 물품은 대체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호에 속하는 철강제품을 수입하여 제7308호의 다리, 지붕틀, 문틀과 같은 철강제 구조물을 만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비주철제의 관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경우 제7304.41호, 제7304.51호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7304.49호의 기타 합금강제의 관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7304.41호에 속하는 냉간압연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원산지판단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제7307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다만, 다른 호의 재료라 하더라도 제7303호~제7306호의 재료는 수입하여 생산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데 제한이 있다. 한편 제7307호의 연결구류를 제7303호~제7306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들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55% 넘지 않는 범위의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7303호~제7306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55% 범위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7315호의 철강으로 만든 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체인의 부분품(제7315.19호, 제7315.90호)을 수입하여 체인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한 부분품은 체인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는 범위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다.

철강으로 만든 스토프 및 레인지(제7321호)와 철강제의 위생용품(제7324호) 역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만 동일호에 소하는 제7321.90호와 제7324.90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들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7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풀이해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도록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택하고 있다. 다만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같은 물품이 상품과 동일한 호(4단위)에 속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품목분류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비중을 일정이하로 사용토록하는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여 원산지판단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73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개 영연방국가들 모두 대체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321호의 스토프 및 레인의 경우 동일한 생산구조에서도 국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르들은 제7321호의 스토프를 생산할 때 부분품(제7321.90호)은 역외국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 싱가포르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완성품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 않는 점위에서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조하였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철강제의 로프)

품명	철강제의 로프
세번	7312.1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캐나다 FTA는 철강제의 로프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철강제의 로프는 통상 도금 또는 비도금한 철선을 원재료로 하여 신선, 연선, 크로싱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주요 재료는 아연도금한 스틸선(제7217.20호), 아연도금하지 않는 스틸선(제7217.10호) 등으로 로프와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7401	구리의 매트(mattes), 시멘트구리(cement copper)(침전구리, precipitated copper)
7402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의 구리 양극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405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s)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s)
7408	구리의 선
7409	구리의 판(plates) · 시트(sheets)와 스트립(strips)(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이나 종이 · 판지 ·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2	구리로 만든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 · 엘보(elbows) · 슬리브(sleeves)]
7413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415	구리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제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지는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s)와 볼트(bolts) · 너트(nuts).스크루 훅(screw hooks) · 리벳(rivets) · 코터(cotters) · 코터핀(cotter-pins) · 와셔(washers)[스프링와셔(spring washers)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제품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polishing pads) · 글러브(gloves)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74류의 대세계 무역은 1,925,766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동일연도 캐나다와의 수출은 9,840천달러를 수입은 22,153천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HS 제7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520,789	6,245,237	-1,724,448	4,497,741	6,423,507	-1,925,766
對싱가포르	44,107	86,614	-42,534	40,499	84,614	-44,115
對호 주	89,987	56,039	33,927	89,573	85,802	3,771
對캐 나 다	35,418	22,883	12,523	9,840	22,153	-12,313
對뉴질랜드	18,655	10,747	7,900	43,660	4,832	38,828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의 제74류의 수출 주요품목은 7407210000(구리의 붕과 프로 파일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와 7411100000(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로 각각 4,705천달러, 1,956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7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409319000	10,602	7411100000	45,379	7407210000	4,705	7408110000	37,478
2	7407210000	7,072	7401002000	16,599	7411100000	1,956	7407210000	3,128
3	7408110000	6,487	7419999000	12,247	7412100000	1,244	7411100000	1,174
4	7411100000	4,364	7407210000	9,787	7408210000	1,073	7409119000	1,059
5	7412200000	2,514	7407100000	1,193	7412200000	700	7409219000	325
6	7411221000	2,378	7412100000	965	7419999000	67	7408291000	229
7	7411210000	1,698	7409119000	388	7405000000	45	7409299000	59
8	7409119000	1,364	7408110000	364	7418109010	17	7412200000	52
9	7401002000	744	7408210000	357	7410219000	8	7407100000	44
10	7409909000	596	7409399000	349	7407100000	7	7411210000	29

3. 제7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401~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41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41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40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40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415~7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401~7407 7411 7415~7418	CTH	CTH	CTH	CTH
7408	CTH(ex.7407) or (CTH+RVC 50)	CTH (ex.7407)	CTH	CTH (ex.7407)
7409	CTH(ex.7407) or (CTH+RVC 50)	CTH	CTH	CTH
7410	CTH (ex.7409)	CTH (ex.7409)	CTH	CTH (ex.7409)
7412	CTH	CTH (ex.7411)	CTH(ex.7411) or (7411From + MC 55 of 7411)	CTH (ex.7411)
7413	CTH	CTH	CTH(ex.7408) or (From 7408+ MC 55 of 7408)	CTH
7419.10~7419.91	CTH	CTSH	CTH	CTH
7419.9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봉(제7407호)를 수입하여 구리 선(제7408호)를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구리로 만든 관연결구(제74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리관(제7411호)를 수입하여 연결구류를 만드는 경우 제7411호의 재료가 완성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구리케이블(제7413호)을 생산할 때 주재료인 구리선(제7408호)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경우 케이블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연연방 국가들은 구리의 원산지결정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의하고 있다. 캐나다를 제외한 3국은 구리선, 구리판, 구리박의 주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사용토록 엄격히 제한 하는 반면에 캐나다는 이를 완화한 규정을 택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는 구리관 열결구류, 구리케이블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과 달리 주재료의 사용에 있어 비원산지재료 투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구리로 만든 기타제품(제7419호)의 원산지 판단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다소 완화하고 있다. 호주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제 7419.91호의 주조 등의 가공을 한 제품을 수입하여 7419.10 또는 제7419.99호의 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구리의 봉과 프로파일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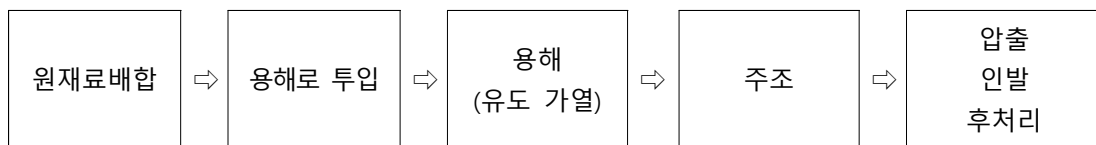
품명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 (Copper bars, rods and profiles. : Of copper-zinc base alloys)
세번	7407.21.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황동봉은 환봉 및 육각봉의 형태로 주로 구리와 아연, 납, 주석, 철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및 기계부품과 각종 밸브, 전자부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절삭·가공·주조성 등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고 내부식성·내해수성이 뛰어나며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및 강도가 크고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다.

황동봉은 주로 황동 잉곳으로부터 생산되나 스크랩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리와 아연, 납 등을 혼합하여 만든다.

< 황동봉 생산공정 >



< 황동봉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황동스크랩	7404.00	황동 봉/선재/판 절삭·절단 후 생성된 설, 분, 판, 절봉 등의 형태의 스크랩
황동잉곳	7403.21	동-아연 합금의 황동
구리캐소드	7403.19	정제한 동으로 음극과 음극의 형재
아연잉곳	7901.11	아연 함유량이 99.99% 이상인 아연괴
납	2607.00	납

황동봉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된다.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7407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제7407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므로, HS 4단위 기준에서 세번이 다른 황동스크랩(HS 제7404호), 납(HS 제2607호) 등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 내에서 황동봉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7501	니켈의 매트(matted)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2	니켈의 괴(塊)
7503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504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7506	니켈의 판 · 시트(sheets) · 스트립과 박(箔, foil)
7507	니켈로 만든 관이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 · 엘보(elbows) · 슬리브(sleeves)]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75류의 대세계 교역은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은 2천달러를 수입은 66,724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7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분	2013			2014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對세계	266,977	1,115,327	-848,351	160,449	980,486	-820,037
對싱가포르	361	807	-452	306	1,645	-1,339
對호주	193	159,442	-159,254	14	138,338	-138,324
對캐나다	1,850	62,406	-60,561	2	66,724	-66,722
對뉴질랜드	0	0	0	1	0	1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75류의 수출상위품목은 7506202000(니켈의 박)와 7507200000(니켈로 만든 관 연결구류)로 동일하게 1천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제7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507200000	256	7505220000	8	7506202000	1	7506201000	1
2	7505220000	21	7502200000	3	7507200000	1	-	-
3	7508909000	16	7508909000	2	7501201090	0	-	-
4	7508902020	11	7508902020	1	7501209090	0	-	-
5	7508901000	2	7501100000	0	7502101000	0	-	-

3. 제7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501~7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505.11 ~75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505.21 ~7505.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5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5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두께 0.15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7507~7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501~7505.12 7507~7508	CTH	CTH	CTH	CTH
7505.21~7505.22	CTH	CTH	CTSH	CTH
7506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7506(두께 0.15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5류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75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니켈 판(제7506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거나, 동일 호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두께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박으로 변경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니켈의 경우 영연방 국가들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모든 품목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호주와 캐나다는 니켈 판에 대하여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니켈판의 경우 대체로 니켈판을 재가공하여 생산하는데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적용하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니켈판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재생산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수입한 니켈판이 재생산 한 완성품의 가격의 40% 이내만 사용되었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호주와 달리 특정 두께를 넘지 않으면(두께 0.15밀리미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니켈판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호주와 캐나다에 비하여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s)
7605	알루미늄의 선(線)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s)와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箔, foil)[인쇄한 것이나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9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s)·엘보(elbows)·슬리브(sleeves)]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기둥(lattice masts)·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plates)·봉(rod)·프로파일(profiles)·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1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가열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7613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polishing pads)·글러브(gloves)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2. 제7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76류의 대세계 교역은 3,351,045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시현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수입이 171,962천달러로 수출실적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HS 제7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644,572	5,725,422	-3,080,850	2,880,272	6,231,317	-3,351,045
對싱가포르	41,306	17,697	23,586	39,401	24,307	15,094
對호 주	30,323	780,313	-750,005	54,957	644,874	-589,917
對캐 나 다	28,938	220,908	-191,991	35,287	171,962	-136,675
對뉴질랜드	2,355	117,934	-115,591	2,842	89,691	-86,849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제76류의 수출상위품목은 7610908000(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 : 기타)와 7609000000(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로 각각 12,021천달러, 8,045천달러로 나타났다.

HS 제7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606120000	13,558	7606120000	47,323	7610908000	12,021	7607119000	751
2	7610100000	4,050	7606119000	2,676	7609000000	8,045	7610908000	740
3	7607119000	3,618	7615109020	917	7610100000	7,318	7606120000	575
4	7604299000	3,230	7607119000	829	7615109020	2,020	7604291000	244
5	7610909000	3,040	7604102010	778	7602000000	1,761	7615109020	203
6	7615109020	2,179	7616999090	765	7607119000	1,441	7616999090	201
7	7610908000	1,447	7604291000	592	7616999090	1,263	7610901000	86
8	7608100000	1,441	7610909000	335	7610909000	664	7613001000	9
9	7616999090	1,365	7610908000	214	7608200000	160	7608200000	9
10	7607199000	994	7608200000	201	7601100000	129	7616100000	8

3. 제7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601~7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6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604~7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6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60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608호에 해당하는 비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610~76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60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605호에 해당하는 비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615~7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601~7602 7604 7606~7608 7610~7613 7615	CTH	CTH	CTH	CTH
7603	CTH	CTH	CTSH	CTH
7605	CTH	CTH (ex.7604)	CTH	CTH (ex.7604)
7609	CTH	CTH (ex.7608)	CTH(ex.7608) or (From 7608+ MC 55 of 7608)	CTH (ex.7608)
7614	CTH	CTH	CTH(ex.7605) or (From 7605+ MC 55 of 7605)	CTH
7616	CTH	CTS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6류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76류의 대부분의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는 알루미늄 분(제7603호)의 경우 동일 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소호의 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알루미늄 관연결구류(제7609호)와 케이블(제7614호)의 경우 주재료인 알루미늄 관(제7608호)과 알루미늄 선(제7605호)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주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들 재료의 비중이 완성품 가격의 5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연연방 4개국은 대체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제7609호에 분류되는 알루미늄 관 연결구류에 대해서 국가별로 원산지 판단이 상이하다.

알루미늄 관 연결구류(제7609호)의 주재료인 알루미늄 관(제7608호)을 수입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국가별로 상이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제7608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캐나다는 제7608호의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완성품 가격의 55%이내의 비중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싱가포르 > 캐나다 > 호주=뉴질랜드의 순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하다 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알루미늄으로 만든 편자)

품명	알루미늄 편자(Horseshoe)
세번	7616.99.909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알루미늄 편자는 주로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에 장착하는 쇠붙이로 말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로 무게 300g, 두께 10cm 정도의 것이 일반적이다.

목적에 따라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빙상편자, 다리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변형편자도 존재하는데 무게가 가벼워 주로 경주용 말에 사용된다.

알루미늄 편자의 주요 원재료는 알루미늄¹⁶⁾바이며, 이를 편자 형상으로 주조하여 완성한다.

<알루미늄 편자의 주요 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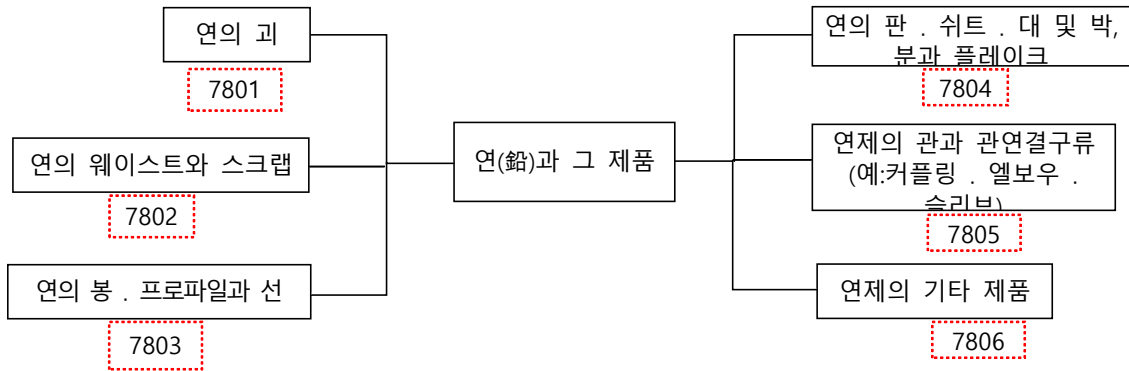
품 명	HS	설 명
알루미늄 바	7604.29	알루미늄 재질의 봉 형상

기타 알루미늄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완제품과 4단위 기준에서 세번이 상이한 비원산지 원재료를 수입하여 체약당사국에서 금형 및 주조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완제품과 동일 호인 HS 제7616호의 물품을 체약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불가능하다.

16) 알루미늄은 주로 보크사이트 즉, 수산화 조알루미나(HS 제2606호)에서 얻어지는데 제조의 제1단계는 보크사이트를 순수한 산화알루미늄(알루미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쇄한 광석을 가소시킨 다음 가성소다로 처리하면 알루미늄산소다의 용액이 되고, 이후 불용액성의 불순물(산화철, 규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여과하는데, 이때 침전되는 것이 수산화알루미늄이다. 이것을 가소하여 백색분말상인 순수한 산화알루미늄을 얻는다. 하지만 수산화알루미늄과 산화알루미늄은 제28류에 분류된다. 제조의 제2단계는 용융된 수정석에 알루미나를 용해시켜 전해환원하면 알루미늄이 생성되는데(수정석은 불화알루미늄소다이지만 단지 용제로서만 작용한다), 이 전해는 음극으로 작용하는 전해통(탄소로 도장되어 있음)에서 행해지며 양극으로는 탄소봉을 사용한다. 알루미늄은 사이퍼 된 곳에서 전해통의 저부에 모여지는데 이것은 보통 정제 후 블록·잉곳·빌레트·슬래브·와이어 바 등의 모양으로 주조된다. 전해를 되풀이하면 아주 고순도의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다. 알루미늄은 또한 백류석(알루미늄과 칼리의 규산복염)과 같은 어떤 타 광석을 처리하든가 알루미늄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재용해 하든가 또는 잔유물(슬랙, 드로스 등)처리에 의해서도 얻어진다.

제78류 납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2. 제7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78류의 '14년 대세계 교역은 187,945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4년 기준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입이 1천달러이며 수출실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HS 제7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84,875	462,009	22,866	628,004	440,059	187,945
對싱가포르	10	1,424	-1,416	646	3,501	-2,855
對호 주	8,700	126,532	-117,839	9,376	107,603	-98,227
對캐 나 다	0	0	-1	0	1	-1
對뉴질랜드	23	0	22	57	0	57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78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싱가포르와의 수출상위품목은 7801109000의 경우 460천달러, 7801101000가 183천달러로 나타났다.

HS 제7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801109000	460	7806009000	9,201	7801101000	0	7801109000	57
2	7801101000	183	7801101000	175	7804202000	0	7801101000	0
3	7806001000	2	7806003030	0	7806001000	0	7801910000	0
4	7806009000	1	7801109000	0	-	-	-	-

3. 제7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801 78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8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804.1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7804.11호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78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봉, 프로파일(profile), 선(線), 관(管) 및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엘보(elbow), 슬리브(sleeve)]: 제78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801~7802	CTH	CTH	CTH	CTH
7804	CTH	CTH	CTSH or From 7804.11(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CTH
7806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8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납의 괴(제7801)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802호)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납의 판 및 쉬트(제7804호)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두께가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납의 박(제7804.11호)을 수입하여 가루나 플레이크(제7804.20호)가 생산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는 제7804.11호의 박을 수입하여 동일 소호에 분류되는 뒷면을 덧대지 않는 형태의 박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7806호에 속하는 기타의 납제품은 동일 세번에 속하지만 품목을 구분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납으로 만든 봉, 선, 관, 관연결구류와 같은 제품은 다른 호나 동일 호내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7806호에 분류되는 납 봉, 선, 관, 관연결구류로 만든 기타의 제품은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기준으로 택하고 있어 협정별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캐나다는 납의 판 및 쉬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른 국가들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한 것과 달리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 형태의 생산을 규정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두고 있다.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7901	아연의 괴(塊)
7902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와 플레이크(flakes)
7904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7905	아연의 판.시트(sheets).스트립과 박(箔, foil)
790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제7906호는 삭제

2. 제7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79류의 대세계 교역은 875,438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캐나다와의 수출실적은 12천달러이며, 수입은 12천달러로 수출입실적이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HS 제7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029,125	183,581	845,544	1,052,599	177,161	875,438
對싱가포르	6,955	28	6,921	4,344	1	4,343
對호 주	4,916	0	4,914	23,746	778	22,968
對캐 나 다	3	18	-16	12	12	0
對뉴질랜드	0	0	0	0	0	0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79류의 캐나다로의 수출 상위품목은 7905001000(아연의 판·시트·스트립), 7907009090이며 각각 7천달러, 5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7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7901201000	3,532	7901209000	22,966	7905001000	7	7901120000	0
2	7901110000	665	7901201000	335	7907009090	5	7907009090	0
3	7907009090	114	7905001000	223	7901110000	0	-	-
4	7907009010	21	7903100000	222	7907002020	0	-	-
5	7903100000	12	7901110000	0	-	-	-	-

3. 제7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7901~7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904	제7904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9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90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7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관(管) 및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엘보(elbow), 슬리브(sleeve)]: 제7907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901~7903	CTH	CTH	CTH	CTH
7904	CTH	CTH	CTH or From 7904	CTH
7905	CTH	CTH	CTH or From 7905(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CTH
7907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7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아연의 괴(제7901)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902호~7903호)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연의 봉 및 선(제7904호) 등은 다른 호의 재료 또는 동일 호의 재료에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전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풀이된다.

아연의 판 및 쉬트의 경우 제7905.20호의 박을 수입하여 동일 소호에 분류되는 뒷면을 덧대지 않는 형태의 박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7907호에 속하는 기타의 아연제품은 동일 세번에 속하지만 품목을 구분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아연으로 만든 봉, 선, 관, 관연결구류와 같은 제품은 다른 호나 동일 호내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7907호에 분류되는 아연 봉, 선, 관, 관연결구류로 만든 기타의 제품은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기준으로 택하고 있어 협정별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캐나다는 아연 봉 및 선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일 호에서의 생산이 이뤄지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므로 다른 국가들 보다 매우 완화된 기준이라 하겠다.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001	주석의 괴(塊)
8002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003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s)과 선(線)
800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2007년도에 제8004호 · 제8005호 · 제8006호는 삭제

2. 제8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0류의 대세계 교역은 300,729천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같은해 캐나다와의 수출실적은 9천달러가 발생하였고 수입은 존재하지 않았다.

HS 제8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분	2013			2014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對세계	63,367	369,639	-306,273	58,729	359,458	-300,729
對싱가포르	75	5	67	36	32	4
對호주	0	0	0	0	0	0
對캐나다	0	0	-1	9	0	9
對뉴질랜드	2	0	2	5	0	5

나. 주요 수출물품

제80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8002000000(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와 8007003021(주석 가루)로 각각 7천달러, 1천달러이다.

HS 제8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007003021	24	8007003010	0	8002000000	7	8003002090	5
2	8007009000	12	-	-	8007003021	1	8007003010	0
3	8001100000	0	-	-	8007009000	1	-	-

3. 제8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001~8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003	제80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박(箔)(인쇄 또는 종이,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덧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가루와 플레이크(flake), 관(管) 및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엘보(elbow), 슬리브(sleeve)]: 제8007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001~8002	CTH	CTH	CTH	CTH
8003	CTH	CTH	CTH or From 8003	CTH
8007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0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주석의 괴(제8001) 및 웨이스트와 스크랩(제8002호)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주석의 봉 및 선(제8003호) 등은 다른 호의 재료 또는 동일 호의 재료에서 변경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전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풀이된다.

제8007호에 속하는 기타의 주석제품은 동일 세번에 속하지만 품목을 구분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주석으로 만든 봉, 선, 관, 관연결구류와 같은 제품은 다른 호나 동일 호내의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 생산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78007호에 분류되는 주석 봉, 선, 관, 관연결구류로 만든 기타의 제품은 이들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기준으로 택하고 있어 협정별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캐나다는 주석 봉 및 선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일 호에서의 생산이 이뤄지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므로 다른 국가들 보다 매우 완화된 기준이라 하겠다.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s), 이들의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	몰리브데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	탄탈룸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	비스무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	안티몬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	베릴륨 · 크롬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 탈륨과 이들 금속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3	서멧(cermets)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2. 제8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1류의 대세계 교역은 690,497천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수출은 446,103천달러가 수입은 1,136,600천달러가 이루어졌다. 동일연도에 캐나다로의 수출은 2,162천달러에 달한다.

HS 제8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61,325	1,201,022	-739,698	446,103	1,136,600	-690,497
對싱가포르	3,464	364	3,089	9,380	289	9,091
對호 주	808	21,606	-20,809	965	26,098	-25,133
對개 나 다	2,058	13,747	-11,704	2,162	12,684	-10,522
對뉴질랜드	0	10	-11	5	0	5

나. 주요 수출물품

제81류의 캐나다로의 수출 상위품목은 8101100000(팅스텐 가루),8113000000(서멧과 그 제품)로 각각 913천달러,518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8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103900000	5,437	8108902000	298	8101100000	913	8104909000	5
2	8108909000	1,472	8110100000	294	8113000000	518	8111000000	0
3	8101970000	1,262	8102990000	94	8104190000	493	8113000000	0
4	8108902000	600	8108909000	81	8104909000	134	-	-
5	8113000000	255	8112210000	73	8109300000	103	-	-
6	8112925000	172	8101999000	60	8104110000	1	-	-
7	8109300000	63	8109909000	32	8101970000	0	-	-
8	8108300000	48	8112925000	19	8102100000	0	-	-
9	8101100000	32	8113000000	14	8102940000	0	-	-
10	8101991030	12	8101100000	0	8102970000	0	-	-

3. 제8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81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101~8105 8107~8110 8112	CTH	CTSH	CTSH	CTSH
8106 8111	CTH	CTH or RVC 40	CTSH	CTSH
8113	CTH	CTH or RVC 40	CTS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1류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1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 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8101.94호의 텅스텐 괴를 수입하여 기계적으로 타발하고 이를 압연 또는 인발에 의해서 시트, 바, 형재 또는 선(제8101.99호) 가공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81류 기타 비금속에 대한 영연방 국가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체로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제81류 전체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택하고, 캐나다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택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서멧(제8113호)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그 외 모든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였다.

호주는 비스무트(제8106호), 망간(제8111호), 서멧(제8113호)의 경우 4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그 외 모든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텅스텐 가루)

품명	텅스텐 가루 (Tungsten powders)
세번	8101.1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텅스텐은 단일 물질로 가장 높은 녹는 점을 가지는 금속으로 중석(重石)이라고도 불린다. 텅스텐은 잘 늘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얇은 판을 만들 때 쓰이며 주로 합금제조나 전구, 진공관의 필라멘트를 만들 때 사용된다.

텅스텐은 비교적 널리 존재하지만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주로 회중석, 철망간 중석 등의 텅스텐산염석의 형태로 채굴되고 아시아의 태평양 연안이나 북아메리카 등에 풍부한 광맥이 있다.

텅스텐은 철망간중석을 알칼리용해하거나 회중석을 염산으로 처리하면 산화텅스텐수화물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원료로 수소기류 속에서 700℃ 이상, 또는 탄소와 1100℃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규소,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금속과 함께 가열하면 텅스텐 분말을 얻는다.

< 텅스텐 분말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텅스텐광	2611.00	특수강용, 텅스텐 합금용, 전기나 진공관 필라멘트용, 화학용으로 사용

한-캐나다 FTA의 경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의 생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제품과 6단위 기준에서 세번이 상이한 비원산지 원재료를 수입하여 체약 당사국에서 가열 및 분쇄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펀과 모크,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201	수(手)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도끼·빌훅(bill hooks)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올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용(製材用)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공구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나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3	줄·플라이어(pliers)[절단용 플라이어(pliers)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s)·볼트크로퍼(bolt croppers)·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수(手)공구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s)와 렌치(wrenches)[토크미터렌치(torque wrenches)를 포함하나 탭 렌치(tap wrenches) ¹⁷ 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 유무를 불문한다)
8205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s),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s)·클램프(clamps)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anvils), 이동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s)
8206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7	수(手)공구용(동력작동식 여부를 불문한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스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이나 스크루드라이빙용(screw driving)][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壓出)용 다이(dies)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9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s)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나 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1	칼(톱니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날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s)로서 스트립(strips)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3	가위·재단용 가위.이와 유사한 가위와 이들의 날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choppers)칼과 다지기용(mincing)칼·종이용칼],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 줄을 포함한다)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킴머(skimmers) · 케이크서버(cake-servers)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2. 제8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2류의 대세계 교역은 1,255,222천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캐나다로의 수출이 26,118천달러, 수입이 2,717천달러를 무역수지는 23,401천달러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8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903,459	887,255	1,016,204	2,179,791	924,569	1,255,222
對싱가포르	15,482	5,967	9,467	13,439	11,766	1,673
對호 주	11,826	577	11,196	11,435	758	10,677
對캐 나 다	25,018	3,120	21,851	26,118	2,717	23,401
對뉴질랜드	1,786	125	1,629	1,549	126	1,423

나. 주요 수출물품

제82류 캐나다의 수출 상위 품목은 8207301000(프레싱용 공구)와 8207702000(밀링커터)이며, 각각 18,090천달러, 1,961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8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207901000	2,411	8207901000	3,384	8207301000	18,090	8207901000	503
2	8207702000	1,778	8209001040	1,444	8207702000	1,961	8202392090	343
3	8209001090	1,082	8202392090	1,357	8207199000	1,048	8209001040	157
4	8214200000	1,009	8207401000	711	8207309000	444	8207702000	111
5	8209001040	928	8207301000	614	8209001010	441	8214200000	67
6	8208900000	815	8207501010	593	8207501010	438	8207401000	44
7	8202391000	703	8207191000	489	8207901000	399	8209001090	43
8	8202999000	507	8214200000	422	8207401000	359	8207501010	40
9	8207191000	446	8207199000	271	8207191000	345	8207909000	39
10	8207309000	372	8209001090	237	8202392090	329	8205599000	31

17) 탭 렌치는 제8205호로 분류한다.

3. 제8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02.10 ~82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0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2.3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3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02.39 ~82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03~82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05.10 ~8205.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5.90호 또는 제8205.10호부터 제8205.70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5.90호 또는 제8205.10호부터 제8205.70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0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7.19호 또는 제820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7.19호 또는 제820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07.19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08~8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14호 및 제821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11.91호부터 제8211.93호까지, 제8214호 또는 제821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11.91호부터 제8211.93호까지, 제8214호 또는 제8215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211.91 ~8211.9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11.94호 또는 제8211.9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11.94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11.94 ~8211.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12~8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1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14.2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세트물품.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15.10 ~821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11호, 제8215.91호 또는 제8215.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11호, 제8215.91호 또는 제8215.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15.91 ~82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201 8203~8205.70 8208~8209 8211.94~8211.95 8213~8214.10 8214.90 8215.91~8215.99	CC	CC	CTH	CC
8202.10~8202.20 8202.39~8202.99 8207.19~8207.90 8210	CC	CC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202.31	CC	CC or RVC 40	CTH or (From 8202.39+ MC 55 of 8202.39)	CTH or RVC30/40
8205.90	CC	CC	CTH or (From 8205.90, 8205.10~8205.70 + MC 35 of 8205.90, 8205.10~8205.70)	CC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206	CC	CC	CTH(ex.8202~8205) or (From 8202~8205+ MC 35 of 8202~8205)	CC
8207.13	CC	CC or RVC 40	CTH(ex.8209) or {From (8207.19 or 8209)+ MC 55 of (8207.19 or 8209)}	CTH or RVC30/40
8211.10	CC	CC	CTH(ex.8214,8515) or (From 8211.91~8211.93,8214,8215+ MC 55 of 8211.91~8211.93,8214,8215)	CC
8211.91~8211.93	CC	CC or RVC 40	CTH or (From 8211.91,8211.95 + MC 55 of 8211.94,8211.95)	CC
8212	CC	CC or RVC 40	CTH	CC
8214.20	CC	CC	CTH or (From 8214.20 + MC 35)	CC
8215.10~8215.20	CC	CC	CTH(ex.8211) or (From 8211,8215.91,8515.99+ MC 35 of 8211,8215.91,8515.99)	CC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2류의 비금속제의 공구는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판단된다. 따라서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제8202.31호, 제8205.90호, 제8206호 등)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호 또는 소호의 원재료를 수입 하여 생산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가 완성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8215.10호의 주방용품 세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면 주방용품 세트에 칼(제8211호)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칼을 제외한 다른 구성품은 수입하여 세트를 만들어도 되지만 칼은 원산지재료여야 세트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칼을 비롯하여 스푼, 포크, 국장, 집게 등을 수입하여 주방용품 세트를 만드는 경우 수입한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완성품의 공장도가격의 35%를 넘지않아야

주방용품 세트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82류의 비금속제 공구에 대하여 싱가포르의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단일 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82류 외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공구를 생산하는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비금속제의 공구들은 대체로 동일 류(제82류)에 속하므로 다소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제82류 품목에 대하여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경우 비록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 제82류 품목에 대하여 가장 완화된 원산지결정 기준을 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주요원재료의 비원산지 비중이 일정수준 이하(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프레싱용 공구)

품명	프레싱용 공구 (Tools for pressing)
세번	8207.3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에는 금속판의 냉간프레스 또는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스, 드롭(drop) 단조용(鍛造用) 다이스,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다이스와 절단용다이스 및 펀치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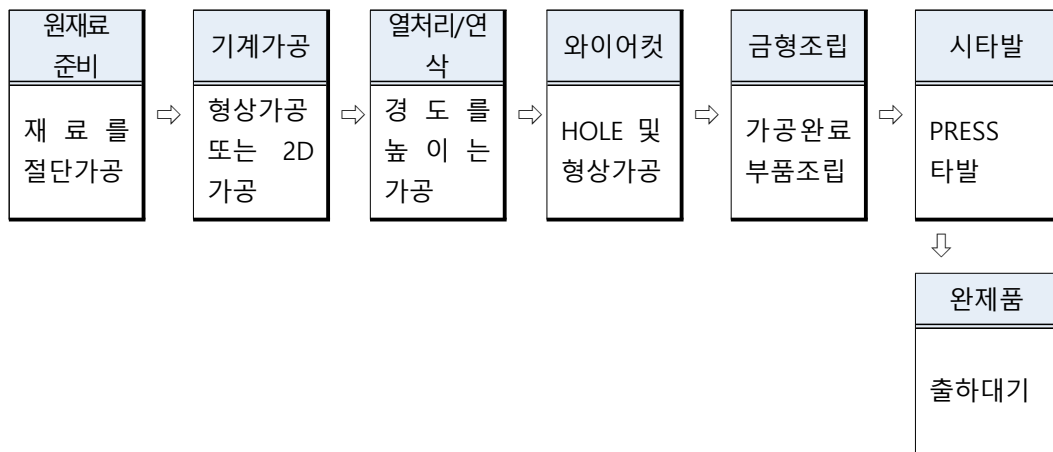
다이스란 “단조(鍛造), 드로잉 가공, 압출가공 또는 프레스 가공 등 금속의 소성가공(塑性加工)에 사용하는 틀[型]”로 정의하고 있다.

프레싱 펀치의 주요 원재료는 철강판과 텅스텐 파우더이다.

< 프레싱 펀치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철 강 판	7211.14	프레싱 펀치를 지지하고 공구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철판
텅스텐 파우더	8101.10	프레싱 펀치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탄화텅스텐 분말

< 프레싱 펀치 생산공정 >



한-캐나다 FTA는 프레싱용 공구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프레싱 펀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철판과 텅스텐 파우더를 주재료로 금형가공하여 생산한다.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와 상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7211호 및 제8101호의 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역내에서 프레싱 펀치를 생산하여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3류 비(卑)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301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이나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열쇠
※8302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제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s)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캐스터(casters)와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3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갑(armoured)하거나 보강한 금고·스트롱박스(strong-boxes)와 스트롱룸(strong-rooms)용 문과 저장실·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4	비(卑)금속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s)·페이퍼 레스트(paper rests)·펜 트레이(pen trays)·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305	비(卑)금속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卑)금속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s in strips)(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6	비(卑)금속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과 그 밖의 장식품,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卑)금속으로 만든 거울
8307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튜브링(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308	비(卑)금속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s)·버클걸쇠(buckle-clasps)·훅(hooks)·아이(eyes)·아일릿(eyelets)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관리벳(tubular rivets)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s), 비(卑)금속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s)
8309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栓)·캡과 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s)과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s)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10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symbols)(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1	비(卑)금속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생산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이나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卑)금속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2. 제8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3류는 대세계 교역에 있어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시현하고 있는 품목이며 캐나다와의 교역 역시 12,326천달러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다.

HS 제83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233,122	434,413	798,708	1,380,840	479,901	900,939
對싱가포르	24,300	3,184	21,096	20,715	3,038	17,677
對호 주	15,797	816	14,957	15,567	1,012	14,555
對캐 나 다	13,775	923	12,835	13,678	1,352	12,326
對뉴질랜드	13,139	3	13,118	9,977	145	9,832

나. 주요 수출물품

제83류의 캐나다와의 수출 상위 품목은 8301401090(도어록)와 8302600000(자동 도어폐지기)이며, 각각 2,570천달러, 1,977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8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302499000	9,538	8311209000	5,010	8301401090	2,570	8309901000	7,461
2	8311209000	4,491	8307100000	4,066	8302600000	1,977	8311209000	558
3	8301401010	2,555	8302100000	1,282	8311209000	1,818	8309909000	456
4	8303001000	990	8309901000	1,203	8302100000	1,570	8301401010	302
5	8311109000	708	8303001000	995	8301200000	1,522	8302411000	199
6	8302300000	457	8303009000	813	8302300000	1,185	8309100000	178
7	8307100000	320	8302300000	778	8301600000	564	8311109000	165
8	8303009000	282	8301401010	541	8303001000	544	8307100000	153
9	8307900000	264	8309909000	229	8311109000	379	8303009000	143
10	8301700000	185	8301409000	124	8301409000	335	8303001000	116

3. 제8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301.10 ~8301.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301.6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301.6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301.60 ~8301.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02~8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05.10 ~830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30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30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06~8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08.10 ~83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30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30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09~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11.10 ~831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31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31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301.10 8301.30~8301.50	CTH	CC or RVC 40	CTH or (From 8301.60+ MC 55 of 8301.60)	CTH or RVC30/40
8301.20	CTH	CC or RVC 40	CTH or (From 8301.60+ MC 55 of 8301.60)	CTSH
8301.60~8301.70	CTH	CC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302~8304 8306~8307 8309~8310 8311.90	CTH	CTH	CTH	CTH
8305.10~8305.2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8305.90+ MC 25 of 8305.90)	CTSH
8305.90	CTH	CTH or RVC 40	CTH	CTSH
8308.10~8308.20	CTH	CTSH	CTH or (From 8308.90+ MC 25 of 8308.90)	CTH or RVC30/40
8308.90	CTH	CTSH	CTH	CTH or RVC30/40
8311.10~8311.30	CTH	CTH	CTH or (From 8311.90+ MC 55 of 8311.90)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3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3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8301호에 분류되는 자물쇠 및 열쇠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와 상품간에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8301호는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8301.60호)도 동일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품(제8301.60호)를 수입하여 자물쇠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이때에는 부분품이 상품(자물쇠 등)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는 비중만큼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305호의 사무용품과, 제8308호의 버클 등의 경우에도 부분품이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므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부가가치기준을(완성품의 공장도가격의 55%)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83류의 품목에 대하여 영연방국가들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거나, 4단위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제83류의 품목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01.90호, 제8305.90호, 제8311.90호와 같은 부분품을 사용하는 동일호의 상품(제8301호, 제8305호, 제8311호)의 경우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호주는 자물쇠(제830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한 특징이 있다.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보다 엄격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여 제83류에 속하는 재료는 수입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지만 부가가치기준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83류의 재료를 수입하여 제8301호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비중이 협정에서 규정한 이내의 범위이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대체로 유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동일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자동차 시트용 힌지)

품명	자동차 시트용 힌지(Hinges)
세번	8302.1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자동차의 의자 고정을 위한 자동차 시트용 힌지(Hinges)는 자동차 의자의 측면에 부착되어 등받이를 움직일 때 이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시트용 힌지는 비금속제의 것으로 플레이트와 커버 및 기타 부분품으로 만들어진다.

<자동차 시트용 힌지의 주요 원재료>

품 명	HS	설 명
힌지 플레이트	8302.10	자동차용 의자 고정을 위한 부분품
커 버	8302.10	자동차용 의자 고정을 위한 부분품
샤 프 트	7326.90	자동차용 의자 고정을 위한 철강제 부분품
스 프 링	7320.10	자동차용 관상 스프링
너 트	7318.16	각 부분품의 결합을 위한 너트

한-캐나다 FTA는 제8302호의 제품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원재료들이 자동차 시트용 힌지의 제조에 투입된다고 가정해 볼 때 상기 제품의 경우 힌지 플레이트(HS 제8302.10호) 및 커버(HS 제8302.10호)는 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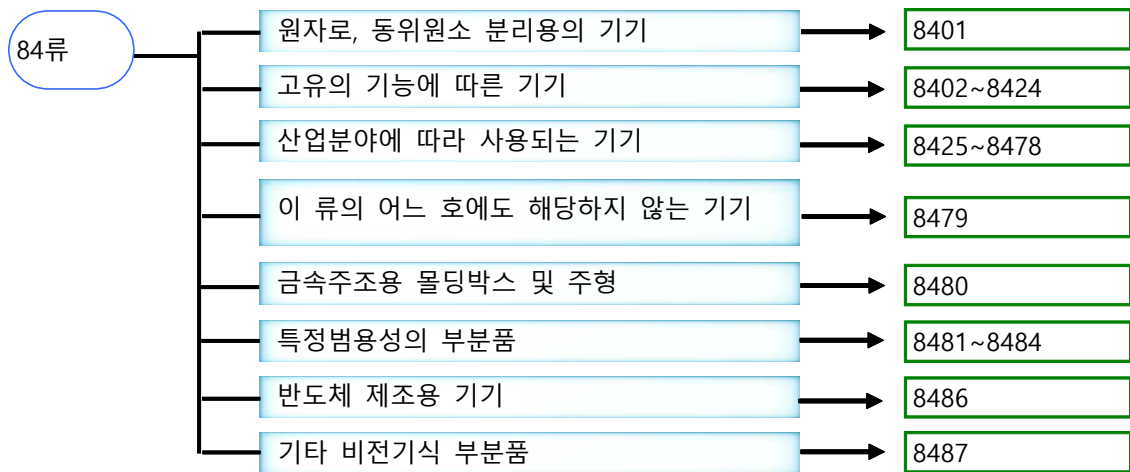
다만, 최소허용기준의 특례를 이용할 경우 힌지 플레이트(HS 제8302.10호) 및 커버(HS 제8302.10호)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10% 미만이거나 두 물품중 하나의 가격이 10% 미만일 경우 해당물품은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원산지물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4류~제85류)

제16부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이들의 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

2. 제8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84류의 '14년 대세계 교역은 14,230,895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교역 역시 흑자를 발생하였다.

HS 제8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世 계	59,318,363	47,449,514	11,868,848	63,040,039	48,809,144	14,230,895
對싱가포르	1,277,438	1,054,307	222,775	1,049,964	1,231,416	-181,452
對호 주	547,172	154,521	392,400	579,174	102,009	477,165
對캐 나 다	585,237	373,948	211,041	582,456	412,643	169,813
對뉴질랜드	100,766	6,677	93,943	129,346	7,385	121,961

나. 주요 수출물품

제84류의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주요 수출물품은 8418101030(가정형 냉장고·냉동고)와 8451290000(건조기)로 나타났으며, 수출실적은 각각 75,395천달러, 49,413천달러로 확인되었다.

HS 제8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473304060	200,968	8418101030	58,618	8418101030	75,395	8429521021	46,973
2	8409999090	99,763	8429521021	53,609	8451290000	49,413	8419899090	12,743
3	8429521021	34,771	8450200000	39,226	8483509000	41,497	8429511011	7,382
4	8481801090	34,113	8402199000	35,849	8481801090	35,790	8418101030	4,504
5	8479909090	24,109	8428909000	27,249	8413400000	33,976	8431499000	4,466
6	8431499000	22,548	8481801090	24,338	8419509000	29,256	8427201011	4,403
7	8409993030	20,567	8431499000	16,534	8482102000	15,691	8432909000	3,965
8	8486902010	19,917	8415102020	16,268	8483109010	14,904	8427201021	3,710
9	8471702020	19,491	8407349000	15,307	8422110000	14,317	8450200000	2,497
10	8479909070	17,089	8450110000	12,120	8413919000	14,165	8409999090	1,747

3.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01.10 ~84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2.11 ~840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4.10 ~840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6.10 ~8406.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7~84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0.11 ~8410.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1.11 ~8411.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1.91호 또는 제8411.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1.91호 또는 제8411.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1.91 ~84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2.10 ~8412.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3.11 ~8413.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3.91호 또는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3.91호 또는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3.91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4.10 ~841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5.10 ~8415.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6.10 ~841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7.10 ~841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8.10 ~8418.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8.91호 또는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8.91호 또는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8.91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9.11 ~841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2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0.91호 또는 제8420.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0.91호 또는 제8420.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0.91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21.11 ~8421.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1.9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1.9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1.21 ~8421.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1.91 ~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22.11 ~8422.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23.10 ~8423.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24.10 ~8424.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25~84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28~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2.10 ~843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3.11 ~843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4.10 ~843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6.10 ~843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6.91호 또는 제8436.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6.91호 또는 제8436.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6.91 ~843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7.10 ~843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8.10 ~8438.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39.10 ~8439.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9.91호 또는 제8439.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9.91호 또는 제8439.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9.91 ~843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4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41.10 ~844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4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2.40호 또는 제8442.5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2.40호 또는 제8442.5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2.40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43.11 ~8443.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3.91호 또는 제8443.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3.91호 또는 제8443.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3.91 ~844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44~844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8.11 ~844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8.20호부터 제8448.5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8.20호부터 제8448.5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8.20 ~844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50.11 ~845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51.10 ~845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52.10 ~845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53.10 ~8453.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54.10 ~845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55.10 ~8455.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5.30호 또는 제845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5.30호 또는 제845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5.30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59호 및 제846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9호 또는 제846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9호 또는 제846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8~846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6.9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6.9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6.9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6.9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67.11 ~8467.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7.91호부터 제8467.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7.91호부터 제8467.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7.91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68.10 ~8468.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70~84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74.10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75.10 ~8475.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76.21 ~8476.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77.10 ~847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7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79.10 ~847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481.10 ~848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82.10 ~8482.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2.91호 또는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2.91호 또는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2.91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8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2호 또는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2호 또는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3.30 ~8483.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84.10 ~848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8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6.10 ~848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01.10~8401.30	RVC 50	CTSH	CTSH	CTSH
8401.40	CTH	CTH	CTH	CTH
8402.11	CTH or (CTSH + RVC 45)	CTSH (ex.8402.12)	CTH or (From 8402.90+ MC 55 of 8402.90)	CTSH
8402.12	CTH or (CTSH + RVC 45)	CTSH (ex.8402.11)	CTH or (From 8402.90+ MC 55 of 8402.90)	CTSH
8402.19~8402.20	CTH or (CTSH + RVC 45)	CTSH	CTH or (From 8402.90+ MC 55 of 8402.90)	CTSH
8402.90 8403.90	CTH or (CTSH + RVC 45)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03.10	CTH or (CTSH + RVC 45)	CTSH	CTH or (From 8403.90+ MC 55 of 8403.90)	CTSH
8404.10~8404.2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8404.90+ MC 55 of 8404.90)	CTSH
8404.90,8405.90, 8406.90,8409.10, 8413.91~8413.92, 8414.90,8415.90, 8416.90,8417.90, 8418.91~8418.99, 8419.90,8420.99, 8421.91~8421.99, 8422.90,8423.90, 8424.90, 8428~8431, 8432.90,8433.90, 8434.90,8435.90, 8436.91~8436.99, 8437.90,8438.90, 8439.91~8439.99, 8440.90,8441.90, 8442.40, 8448.20~8449, 8450.90,8451.90, 8454.90,8455.90, 8466, 8467.91~8467.99, 8474.90,8475.90, 8476.90,8477.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78.90,8480, 8481.90, 8482.91~8482.99				
8405.1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8405.90+ MC 55 of 8405.90)	CTSH
8406.10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8406.90+ MC 55 of 8406.90)	CTSH
8406.81	CTSH + RVC50	CTSH (ex.8406.82)	CTH or (From 8406.90+ MC 55 of 8406.90)	CTSH or RVC 30/40
8406.82	CTSH + RVC50	CTSH (ex.8406.81)	CTH or (From 8406.90+ MC 55 of 8406.90)	CTSH or RVC 30/40
8407.29~8408.90	RVC 50	CTH or RVC 40	CTH(ex.8409) or (From 8409+ MC 55 of 8409)	CTH or RVC30/40
8409.91~8409.99 8411.91~8411.99 8473 8479.90 8487.9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10.11	CTH	CTH (ex.7411)	CTH(ex.7411) or (7411From + MC 55 of 7411)	CTH (ex.7411)
8410.12	CTSH	CTSH (ex.8410.11, 8410.13) or RVC 40	CTH or (From 8410.90+ MC 55 of 8410.90)	CTH
8410.13	CTSH	CTSH (ex.8410.11, 8410.12) or RVC 40	CTH or (From 8410.90+ MC 55 of 8410.90)	CTH
8410.90	CTH	CTH or RVC 40	CTH	CTH
8411.118411.22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12)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8411.12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11)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8411.2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22) or	CTH or (From 8411.91,8411.99	CTSH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RVC 40	+ MC 55 of 8411.91, 8411.99)	
8411.8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82)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8411.82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81)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8412.10~8412.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2.90 + MC 55 of 8412.90)	CTSH or RVC 30/40
8412.9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13.11~8413.82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3.91, 8413.92 + MC 55 of 8413.91, 8413.92)	CTSH or RVC 30/40
8414.10~8414.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4.90 + MC 55 of 8414.90)	CTSH or RVC 30/40
8415.10~8415.83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5.90+ MC 55 of 8415.90)	CTSH or RVC 30/40
8416.10~8410.3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6.90+ MC 55 of 8416.90)	CTSH or RVC 30/40
8417.10~8417.8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7.90+ MC 55 of 8417.90)	CTSH or RVC 30/40
8418.10~8418.6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8.91, 8418.99 + MC 55 of 8418.91, 8418.99)	CTSH or RVC 30/40
8419.11~8419.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9.90 + MC 55 of 8419.90)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20.1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0.91, 8420.99 + MC 55 of 8420.91, 8420.99)	CTSH or RVC 30/40
8420.91 8442.50	CTH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8421.11~8421.1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1.91+ MC 55 of 8421.91)	CTSH or RVC 30/40
8421.21~8421.3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1.99+ MC 55 of 8421.99)	CTSH or RVC 30/40
8422.11~8422.4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2.90+ MC 55 of 8422.90)	CTSH or RVC 30/40
8423.10~8423.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3.90+ MC 55 of 8423.90)	CTSH or RVC 30/40
8424.10~8424.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4.90+ MC 55 of 8424.90)	CTSH or RVC 30/40
8425~8426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27	CTH(ex.8431) or (CTH+RVC 50)	CTH or RVC 40	CTH(ex.8431) or (From 8431+ MC 55 of 8431)	CTH or RVC30/40
8432.10~8432.80 8433.11~8433.60 8434.10~8434.20 8474.10~8474.80	CTS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435.1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5.90+ MC 55 of 8435.90)	CTSH or RVC 30/40
8436.10~8436.8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6.91, 8436.99 + MC 55 of 8436.91, 8436.99)	CTSH or RVC 30/40
8437.10~8437.8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7.90+ MC 55 of 8437.90)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38.10~8438.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8.90+ MC 55 of 8438.90)	CTSH or RVC 30/40
8439.10~8439.3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9.91, 8439.99 + MC 55 of 8439.91, 8439.99)	CTSH or RVC 30/40
8440.1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0.90+ MC 55 of 8440.90)	CTSH or RVC 30/40
8441.10~8441.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1.90+ MC 55 of 8441.90)	CTSH or RVC 30/40
8442.30	CTH or From 8442.30 + rvc 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2.40, 8442.50 + MC 55 of 8442.40, 8442.50)	CTSH or RVC 30/40
8443.11~8443.1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3.91, 8443.99 + MC 55 of 8443.91, 8443.99)	CTSH or RVC 30/40
8443.31~8443.39	동일세번 품목 분리 PSR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3.91, 8443.99 + MC 55 of 8443.91, 8443.99)	CTSH or RVC 30/40
8443.91~8443.99	동일세번 품목 분리 PSR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44~8447	CTH+RVC 45	CTH or RVC 40	CTH or (From 8448+ MC 55 of 8448)	CTH or RVC30/40
8448.11~8448.19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8.20~8448.59 + MC 55 of 8448.20~8448.59)	CTH or RVC30/40
8450.11~8450.2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0.90+ MC 55 of 8450.90)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51.10~8451.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1.90+ MC 55 of 8451.90)	CTSH or RVC 30/40
8452.10	CTH or (CTSH + RVC50)	CTSH (ex.8452.21, 8452.29) RVC 40	CTH or (From 8452.90+ MC 55 of 8452.90)	CTSH or RVC 30/40
8452.2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52.10, 8452.29) or RVC 40	CTH or (From 8452.90+ MC 55 of 8452.90)	CTSH or RVC 30/40
8452.29	CTH or (CTSH + RVC50)	CTSH (ex.8452.10, 8452.21) or RVC 40	CTH or (From 8452.90+ MC 55 of 8452.90)	CTSH or RVC 30/40
8452.3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2.90+ MC 55 of 8452.90)	CTSH or RVC 30/40
8452.90	CTH	CTSH or RVC 40	CTH	HS 2007--2012 변경으로 PSR 중첩
8453.10~8453.8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3.90+ MC 55 of 8453.90)	CTSH or RVC 30/40
8454.10~8454.3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4.90+ MC 55 of 8454.90)	CTSH or RVC 30/40
8455.10~8455.22	CTH or (CTSH + RVC45)	CTH or RVC 40	CTH or (From 8455.30, 8455.90 + MC 55 of 8455.30, 8455.90)	CTSH or RVC 30/40
8455.30	CTH or (CTSH + RVC45)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8456.10~8456.30 8458~8463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466) or (From 8466+ MC 55 of 8466)	CTH or RVC30/40
8456.90	CTH+RVC 45	CTH or RVC 40	CTH(ex.8466) or (From 8466+ MC 55 of 8466)	HS 2007--2012 변경으로 PSR 중첩
8457.10~8457.3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459,8466) or (From	CTH or RVC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59,8466 + MC 55 of 8459,8466)	
8464	CTH(ex.8466.91) or (CTH+RVC 50)	CTH or RVC 40	CTH(ex.8466.91) or (From 8466.91+ MC 55 of 8466.91)	CTH or RVC30/40
8465+G505C483:G5C 483:G517	CTH(ex.8466.92) or (CTH+RVC 50)	CTH or RVC 40	CTH(ex.8466.92) or (From 8466.92+ MC 55 of 8466.92)	CTH or RVC30/40
8467.11~8467.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67.91~8467.9 9 + MC 55 of 8467.91~8467.9 9)	CTSH or RVC 30/40
8468.10~8468.8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68.90+ MC 55 of 8468.90)	CTSH or RVC 30/40
8469.00	CTH(ex.8473) or (CTH+RVC 45)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70.10~8470.50 8471.60~8471.90	CTS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470.90~8471.50	동일세번 품목 분리 PSR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472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473) or (From 8473+ MC 55 of 8473)	CTH or RVC30/40
8475.10~8475.2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5.90+ MC 55 of 8475.90)	CTSH or RVC 30/40
8476.2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76.29~84 76.89) or RVC 40	CTH or (From 8476.90+ MC 55 of 8476.90)	CTSH or RVC 30/40
8476.29	CTH or (CTSH + RVC50)	CTSH (ex.8476.21, 8476.81, 8476.89) or RVC 40	CTH or (From 8476.90+ MC 55 of 8476.90)	CTSH or RVC 30/40
8476.8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76.21,	CTH or (From 8476.90+ MC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76.29, 8476.89) or RVC 40	55 of 8476.90)	
8476.89	CTH or (CTSH + RVC50)	CTSH (ex.8476.21~84 76.81) or RVC 40	CTH or (From 8476.90+ MC 55 of 8476.90)	CTSH or RVC 30/40
8477.10~8477.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7.90+ MC 55 of 8477.90)	CTSH or RVC 30/40
8478.1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8.90+ MC 55 of 8478.90)	CTSH or RVC 30/40
8479.1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9.90+ MC 55 of 8479.90)	CTSH or RVC 30/40
8479.20~8479.60 8479.81~8479.82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9.90+ MC 55 of 8479.90)	CTSH or RVC 30/40
8479.71~8479.79	CTSH(ex.8479.8 9) + RVC 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9.90+ MC 55 of 8479.90)	CTSH or RVC 30/40
8479.89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9.90+ MC 55 of 8479.90)	CTSH or RVC 30/40
8481.10 8481.30~8481.8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481.90+ MC 55 of 8481.90)	CTSH or RVC 30/40
8481.20	CTH or (CTSH + RVC45)	CTH or RVC 40	CTH or (From 8481.90+ MC 55 of 8481.90)	CTSH or RVC 30/40
8482.10~8482.8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2.91, 8482.99 + MC 55 of 8482.91, 8482.99)	CTSH or RVC 30/40
8483.10 8483.30~8483.60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483.90+ MC 55 of 8483.90)	CTSH or RVC 30/40
8483.20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ex.8482) or (From 8482,8483.90+ MC 55 of 8482,8483.90)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83.90	CTH+RVC 45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8484.10~8484.20 8487.10	CTH	CTS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8484.90	CTH	CTSH or RVC 40	CTSH +MC 55	CTSH or RVC 30/40
8486.10	(CTH or From 8486.10)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6.90+ MC 55 of 8486.90)	CTSH or RVC 30/40
8486.20	(CTH or From 8486.20)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6.90+ MC 55 of 8486.90)	CTSH or RVC 30/40
8486.30	(CTH or From 8486.30)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6.90+ MC 55 of 8486.90)	CTSH or RVC 30/40
8486.40	(CTH or From 8486.40)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6.90+ MC 55 of 8486.90)	CTSH or RVC 30/40
8486.90	CTH or From 8486.90	CTSH or RVC 40	CTH	CTH or RVC 30/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4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4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84류의 품목분류 구조는 동일한 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84류의 특징에 따라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외에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분품을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부분품의 비중을 규정한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401.40호의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401.10호~제8401.30호의 원자로를

생산하면 6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402.90호의 보일러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402.11호의 보일러를 생산하는 경우 부분품의 가격이 보일러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제8402호와 동일한 호에 속하는 다른 소호(제8402.12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과정을 거치는 경우 4단위 세번변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8402.11호의 보일러를 수입하여 제8402.12호의 보일러를 생산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보일러의 부분품(제8402.90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다른호에 속한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동일호에 속하는 재료는 수입산을 사용할 수 없다(다만 이때 최소허용기준에 따른 비중만큼의 비원산지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제84류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제8402호의 해설과 유사하게 원산지 판단이 가능하다.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동일호에 속하는 특정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는 단순히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좁다고 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8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영연방 4개국은 다소 상이한 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CTH or(CTSH + RVC))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을 적용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SH or RVC)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소호 생산시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84류가 동일한 호에 부분품의 세번이 함께 분류되는 특징을 가지는 점을 바탕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풀이해 보면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경우가 다수 이므로 수입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농후하다.

반면 싱가포르는 4단위세번변경을 충족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주가 캐나다보다는 엄격한 결정기준으로 이해된다. 캐나다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소호로부터의 생산 및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이므로 싱가포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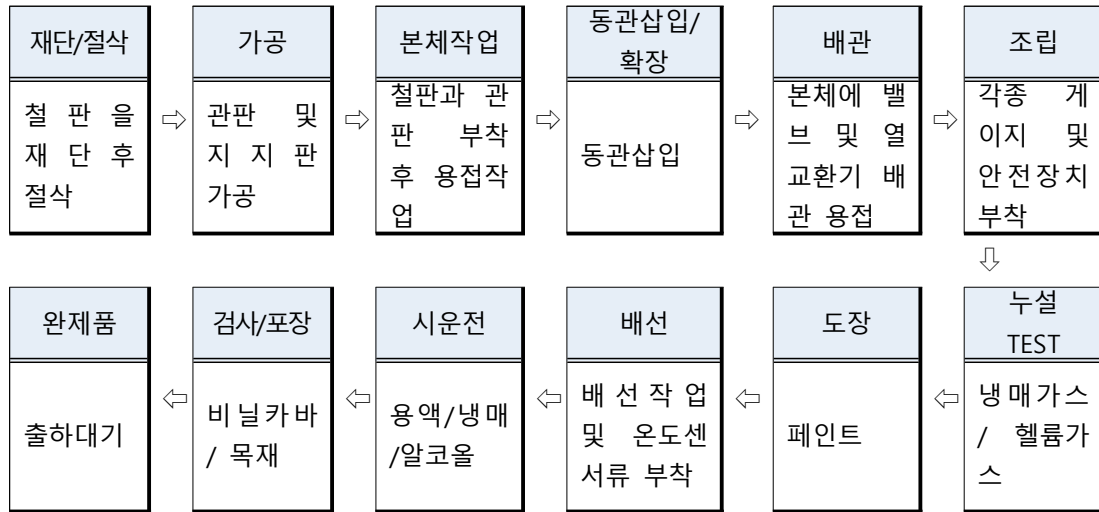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가정형 냉장고·냉동고)

품명	가정형 냉장고·냉동고 :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 Of the household type : Of a capacity exceeding 400 l)
세번	8418.10.103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8.91호 또는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8.91호 또는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냉동·냉장기구의 제조공정은 크게 본체작업과 배관용접 및 조립, 시험, 도장,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철판을 프라즈마로 사이즈에 맞춰 재단한 후 절삭하고 관판 및 지지판을 가공한 후 철판과 관판을 부착하여 용접작업을 통해 본체를 완성한다. 여기에 각 파트에 적합한 동관을 삽입하고 확장을 하며 이어 배관작업으로서 본체에 밸브 및 열교환기, 냉매펌프, 용액펌프, 각종 밸브 등을 용접한다.

이어서 본체에 각종 게이지 및 안전장치를 부착한 후 누설여부를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시 냉매가스 및 헬륨가스의 누설확인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마무리 작업으로서 페인트를 이용하여 본체에 도장을 하고 각종 온도센서류 등의 배선작업을 실시한 후 시운전을 통해 최종검사 및 포장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제품의 포장은 주로 비닐카바와 목재가 사용된다.



< 냉장고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철판류	7208.52	냉장고 몸체의 철판류
냉매	2827.59	냉매
밸브	9026.90	온수콘트롤 밸브
end cross tube	7411.29	튜브
부분품	8418.99	드라이어, 방연판, 온수통 등
측정기	9025	센서, 온도계, 비중계 등

냉장고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거나, 만약 비원산지 냉장고 부분품(제8418.91호~제8418.99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재료가 냉장고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냉장고에는 사실 매우 많은 부품과 원재료들이 사용되지만, 위의 예시에서는 모든 내용을 나열할 수 없기에 주요 원재료만 제시하였다. 만약 위에 제사한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여 냉장고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부분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제8418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

냉장고 부분품인 제8418.99호를 수입하여 생산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비원산지재료로서 동재료의 비중은 냉장고의 거래가격의 55%를 넘지 않을 경우에만 냉장고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한-캐나다 FTA에서는 냉장고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냉장고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원산지지위 여부와 세번, 재료 및 상품의 거래가격 등을 모두 파악하여야 한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3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제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ecks)·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s), 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s)
8506	일차전지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여부를 불문한다)
8508	진공청소기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내장(內藏한 것 ¹⁸)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10	면도기·이발기와 모발제거기[전동기를 내장(內藏)한 것으로 한정한다]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이나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와 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장비(제8539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s)·제상기(defrosters)와 제무기(demisters)(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장비는 제외한다)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dielectric loss) ¹⁹ 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dielectric loss) 재료가열기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magnetic pulse)이나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의 납땀이나 용접용 기계와 장치(절단기능 유무를 불문한다), 금속이나 서멧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계와 장치
8516	전기식의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장치와 토양가열장치,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s)],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장치(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

	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이나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며, 제 8443호.제8525호.제8527호나 제8528호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장치는 제외한다)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9	음성녹음용이나 음성재생용 장치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장치(비디오튜너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8522	제8519호부터 제8521호까지의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3	디스크 · 테이프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그 밖의 매체[기록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s)과 마스터(masters)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생산품은 제외한다)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장치(수신장치나 음성녹음장치나 음성재생장치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레코더
8526	레이더장치 · 항행용 무선장치와 무선원격조절장치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장치[음성녹음장치.음성재생장치나 클록(clock)을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라디오 방송용 수신 장치 ·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이나 재생용 장치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0	철도용 · 궤도용 · 도로용 · 내륙수로용 · 주차장용 · 항만용이나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장비 · 안전장비나 교통관제장비(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전기장치(예: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2	축전기[고정식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셋)으로 한정한다]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s)와 전위차계(potentiometers)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4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전기식 장치[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억제기(surge suppressors) ·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전기식 장치(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억제기(surge suppressors)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 ·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용 커넥터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데스크(desks)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장치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90류의 기기나 장치와 수치제어장치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

	장치는 제외한다)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나 제8537호의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unit lamps)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arc-lamps)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이나 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攝像管, camera tubes)]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로 조립되거나 패널로 만들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	전자집적회로
8543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전기식 기계와 장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8546	애자(磚子, electrical insulators)(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8547	전기식 기계·기기나 장비용으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계류나 장치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07년도에 제8520호·제8524호는 삭제

2. 제8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5류의 대세계 교역은 63,132,554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의 교역은 313,483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 18) “내장(self-contained)”이란 면도기·진공청소기·시계와 같이 케이스 안에 동력(전동기)을 비롯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자급식(自給式)이라고도 한다. ‘갖춘 것’보다는 ‘내장한 것’이 의미전달이 보다 정확하다.
- 19) 제8514호에서 “유전손실(dielectric loss)”이란 유전체 재료에서 열로 전환된 전기적 에너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열을 이용하는 방식의 노와 오븐이나 재료가열기는 이 호로 분류한다.

HS 제8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35,497,123	72,273,717	63,223,406	138,212,608	75,080,054	63,132,554
對싱가포르	6,209,201	5,108,351	1,100,535	5,136,802	5,496,437	-359,635
對호 주	668,570	79,975	588,342	534,494	76,736	457,758
對캐 나 다	910,489	146,319	763,913	522,861	209,378	313,483
對뉴질랜드	64,629	33,370	31,093	71,658	36,176	35,482

나. 주요 수출물품

제85류의 주요수출품목은 8517129090(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 기타)와 8517122090(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이며 수출실적은 191,548천달러, 123,427천달러로 나타났다.

HS 제8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542311000	3,091,749	8528722020	88,606	8517129090	191,548	8507100000	18,712
2	8542313000	712,143	8507100000	83,535	8517122090	123,427	8528722020	13,753
3	8542321010	208,924	8517129090	30,761	8504230000	55,992	8504230000	9,923
4	8542323000	117,883	8528591090	24,787	8507100000	21,098	8517122090	4,451
5	8542321030	85,981	8517122090	23,936	8501311010	12,053	8541409020	2,935
6	8542391000	72,549	8544602010	17,734	8512900000	7,260	8528591090	2,088
7	8541299000	58,701	8541409020	15,110	8528591090	7,057	8528723020	1,494
8	8517129090	52,701	8527212000	14,258	8517626090	6,511	8535212000	1,331
9	8534002000	49,616	8528511000	11,575	8541409020	4,796	8532290000	1,278
10	8531201090	44,178	8544200000	11,253	8543709090	4,301	8544111000	1,261

3. 제8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5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06호, 제8411호, 제8501호 및 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6호, 제8411호, 제8501호 또는 제8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6호, 제8411호, 제8501호 또는 제85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04.10 ~8504.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4.40 ~85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05.11 ~850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06.10 ~850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07.10 ~850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08.11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8.7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8.7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509.40 ~8509.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0.10 ~851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1.10 ~851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2.10 ~8512.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4.10 ~8514.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5.11 ~851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516.10 ~851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8.10 ~8518.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10호, 제8518.21호부터 제8518.29호까지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세트물품. 다만, 제8518.10호, 제8518.21호부터 제8518.29호까지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제8518.10호, 제8518.21호부터 제8518.29호까지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10호, 제8518.21호부터 제8518.29호까지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8.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2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2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22~85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25.8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8525.80호의 자이로스테블라이즈드 카메라(gyrostabilized camera)
8526~852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528~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30.10 ~8530.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31.10 ~85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32.10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33.10 ~853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35~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39.10 ~8539.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40.11 ~8540.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40.91호 또는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40.91호 또는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40.91 ~854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41~854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43.10 ~854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4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4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54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44.11 ~8544.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4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45~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01.10~8501.63	CTH(ex.8503) or (CTH + RVC50)	CTH or RVC 40	CTH(ex.8503) or (From 8503+ MC 55 of 8503)	CTH or RVC30/40
8501.64	CTH(ex.8503) or (CTH + RVC45)	CTH or RVC 40	CTH(ex.8503) or (From 8503+ MC 55 of 8503)	CTH or RVC30/40
8502	CTH(ex.8503) or (CTH + RVC50)	CTH or RVC 40	CTH(ex.8406,841 1,8501,8503) or (From 8406,8411,8501,8 503 + MC 55 of 8406,8411,8501,8 503)	CTH or RVC30/40
8503, 8504.90, 8507.90, 8509.90, 8510.90, 8513.90, 8514.90, 8516.90, 8518.90,8522.10~ 8522.90, 8529.10, 8530.90, 8531.90, 8532.90, 8534, 8538, 8539.90, 8545.11~8547.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04.10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21~ 8504.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21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 8504.22~850 4.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22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 8504.21, 8504.23~850 4.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23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 8504.22, 8504.31~850 4.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04.31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32~8504.34)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32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04.31, 8504.33~8504.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33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04.32, 8504.34~8504.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34	CTH or (CTSH + RVC50)	CTSH(ex.8504.10~8504.33 or 8504.40~8504.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40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04.34, 8504.50)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04.50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04.40)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05.11~8505.2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5.90+ MC 55 of 8505.90)	CTSH or RVC 30/40
8505.90 8508.70 8529.9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06.1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6.90+ MC 55 of 8506.90)	CTSH or RVC 30/40
8506.30~8506.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6.90+ MC 55 of 8506.90)	CTSH or RVC 30/40
8506.90	CTH or RVC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07.10~8507.4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7.90+ MC 55 of 8507.90)	CTSH or RVC 30/40
8507.50~8507.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7.90+ MC 55 of 8507.90)	CTSH or RVC 30/40
8508.11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8.19) or RVC 40	CTH or (From 8508.70+ MC 55 of 8508.70)	CTSH or RVC 30/40
8508.1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ex.8508.11) or RVC 40	CTH or (From 8508.70+ MC 55 of 8508.70)	CTSH or RVC 30/40
8508.60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8.70+ MC 55 of 8508.70)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09.4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9.90+ MC 55 of 8509.90)	CTSH or RVC 30/40
8509.8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9.90+ MC 55 of 8509.90)	CTSH or RVC 30/40
8510.10~8510.3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0.90+ MC 55 of 8510.90)	CTSH or RVC 30/40
8511.10~8511.50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1.90+ MC 55 of 8511.90)	CTSH or RVC 30/40
8511.8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1.90+ MC 55 of 8511.90)	CTSH or RVC 30/40
8511.90 8512.90 8528.49 8528.59 8528.69~8528.73 8544.11~8544.6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12.10	CTSH + RVC50	CTSH (ex.8512.20, 8512.30) or RVC 40	CTH or (From 8512.90+ MC 55 of 8512.90)	CTSH or RVC 30/40
8512.20	CTSH + RVC50	CTSH (ex.8512.10, 8512.30) or RVC 40	CTH or (From 8512.90+ MC 55 of 8512.90)	CTSH or RVC 30/40
8512.30	CTSH + RVC50	CTSH (ex.8512.10, 8512.20) or RVC 40	CTH or (From 8512.90+ MC 55 of 8512.90)	CTSH or RVC 30/40
8512.40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2.90+ MC 55 of 8512.90)	CTSH or RVC 30/40
8513.1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3.90+ MC 55 of 8513.90)	CTSH or RVC 30/40
8514.10~8514.3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4.90+ MC 55 of 8514.90)	CTSH or RVC 30/40
8514.4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4.90+ MC 55 of 8514.90)	CTSH or RVC 30/40
8515.11~8515.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5.90+ MC 55 of 8515.90)	CTSH or RVC 30/40
8515.9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16.10~8516.29 8516.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6.31~8516.79	CTH or {CTSH(ex.8516.80)+RVC 50}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7.11	CT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7.12	CTH + RVC 50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17.18~8517.70 8541.10~8541.60	CTS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7.70 8533.90	CTS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18.10~8518.29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8 + MC 55 of 8518)	CTSH or RVC 30/40
8518.3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Set Product from 8518.10, 8518.21~8518.29 , 8518.90 + MC35 of 8518.10, 8518.21~8518.29 , 8518.90) or (From 8518.10, 8518.21~8518.29 , 8518.90 + MC35 of 8518.10, 8518.21~8518.29 , 8518.90)	CTSH or RVC 30/40
8518.4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8.90 + MC 55 of 8518.90)	CTSH or RVC 30/40
8518.5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8 + MC 35 of 8518)	CTSH or RVC 30/40
8519.20~8519.5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522) or (From 8522+ MC 55 of 8522)	CTH or RVC30/40
8519.81~8519.89	동일세 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ex.8522) or (From 8522+ MC 55 of 8522)	CTH or RVC30/40
8521.10~8521.9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23.21~8523.29 8523.51~8523.80 8543.90 8548.90	동일세 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23.41	CTH or From 8523.49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23.49	CTH or From 8523.41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25.50~8525.60	CTH + RVC 50	CTSH (ex.8517) or RVC 40	CTSH or From8525.80(자이로스테블라이즈드 카메라(gyrostabilized camera))	CTH or RVC30/40
8525.80	동일세 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SH or From8525.80(자이로스테블라이즈드 카메라(gyrostabilized camera))	CTH or RVC30/40
8526	CTH+RVC 45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27	CTH + RVC 55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28.41 8528.51 8528.61	CTS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30.10~8530.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30.90+ MC 55 of 8530.90)	CTSH or RVC 30/40
8531.10~8531.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31.90+ MC 55 of 8531.90)	CTSH or RVC 30/40
8532.10~8532.30 8533.10~8533.40 8542.31~8542.39	CTS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35~8536.69 8536.90	CTH(ex.8539) or (CTH + RVC50)	CTH or RVC 40	CTH(ex.8538) or (From 8538+ MC 55 of 8538)	CTSH or RVC 30/40
8536.7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ex.8538) or (From 8538+ MC 55 of 8538)	CTSH or RVC 30/40
8537	CTH(ex.8539) or (CTH + RVC50)	CTH or RVC 40	CTH(ex.8538) or (From 8538+ MC 55 of 8538)	CTH or RVC30/40
8539.10~8539.21 8539.31~8539.4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39.90+ MC 55 of 8539.90)	CTSH or RVC 30/40
8539.22	CTH or (CTSH + RVC50)	CTSH (ex.8539.29) or RVC 40	CTH or (From 8539.90+ MC 55 of 8539.90)	CTSH or RVC 30/40
8539.29	CTH or (CTSH + RVC50)	CTSH (ex.8539.22) or RVC 40	CTH or (From 8539.90+ MC 55 of 8539.90)	CTSH or RVC 30/40
8540.11~8540.12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40.91, 8540.99 + MC 55 of 8540.91, 8540.99)	CTSH or RVC 30/40
8540.20~8540.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40.91, 8540.99 + MC 55 of 8540.91, 8540.99)	CTSH or RVC 30/40
8540.91~8540.99	CTH	CTS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41.90 8542.90	CTSH	CTS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43.10~8543.3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43.90+ MC 55 of 8543.90)	CTSH or RVC 30/40
8543.7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44.70	CT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48.10	CTH	CTH	CTH	CTH or RVC30/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5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5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85류의 품목분류 구조 역시 제84류와 유사하게 동일한 호에 완제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85류의 특징에 따라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외에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분품을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부분품의 비중을 규정한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503호의 발전기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501호의 발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호로 부터의 생산 및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 보면 4단위 세번의 변동이 발생하지만 제8503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때 제8503호를 수입하여 생산하더라도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부분품의 가격이 발전기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는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8504.90호의 변압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504.10호의 안정기, 제8504.23호의 변압기, 제8504.32호~제8504.50호의 변압기를 생산하면 비록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더라도 부분품의 가격이 완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85류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제8504호의 해설과 유사하게 원산지 판단이 가능하다.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동일호에 속하는 특정 부분품으로부터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는 단순히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엄격한 결정기준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85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영연방 4개국은 제84류와 유사한 규정을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CTH or(CTSH + RVC))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을 적용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SH or RVC)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소호 생산시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84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부분품의 세번이 함께 분류되는 특징을 가지는 특징이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들어 제8515.90호의 용접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515.11호의 전기식 인두를 생산하는 경우 영연방 4개국의 원산지판단이 상이해진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므로 다른 소호에 속하는 수입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농후하다.

반면 싱가포르의 4단위세번변경을 충족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15.90호의 재료의 가격이 인두가격의 40%이내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캐나다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소호 생산 및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의 가격이 인두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을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두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인두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부분품을 수입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가장 FTA를 활용하기에 가장 용이한 결정기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경우 호 주나 캐나다보다는 엄격한 결정기준으로 이해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 기타)

품명	산업용 모니터
세번	8528.59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모니터는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컴퓨터에서 생성한 정보를 화면상의 점행렬 소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주는 화면 출력 장치로 단색 또는 컬러가 있으며 글자나 그래픽을 나타낼 수 있다.

그 활용도는 다양해서 현재는 TV수신까지 가능한 모니터가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LCD뿐만 아니라 LED를 넣어 더욱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 있다.



모니터는 PCB, 케이블 등의 원자재의 외관 상태를 검사한 후 PCB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다. 그 후 각 부자재를 이용하여 TOP면과 BOTTOM면을 각각 조립하고 결합시켜 해당 스크루를 이용해 조립완료 시킨 후 기능과 외관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품이 완성된다.

품 명	HS	설 명
LCD 패널	8528.41	모니터의 주요 원재료
터치패널	8529.10	
LED 칩	8541.10	
케이블	8544.11	
CPU	8542.31	

산업용 모니터(제8528.59호)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의 4단위 세번과 완제품인 산업용 모니터의 4단위 세번이 서로 상이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로 제시한 원재료 내역을 살펴보면 완제품이 모니터와 동일한 4단위 세번에 속하는 LCD 패널이 존재 한다. 따라서 LCD 패널을 수입하여 모니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이때에도 세번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비중이 최소허용기준에서 정한 10%이내의 범위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LCD 패널을 수입하였을 경우에 패널의 수입가격이 모니터 가격의 10%를 넘지 않으면 모니터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장비 관련품(제86류~제89류)

제17부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88류	항공기·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장비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 여부를 불문한다][예: 공작차(workshops)·기중기차(cranes)·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s)·트랙라이너(trackliners)·검사차(testing coaches)와 궤도검사차(track inspection vehicles)]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철도차량의 부분품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이나 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용·안전용이나 교통관제용 장비, 이들의 부분품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제8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6류의 대세계 교역은 무역수지 흑자로 나타났다. 2014년 캐나다로 수출은 152천불, 수입은 236천불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HS 제8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78,542	339,140	139,402	520,233	266,790	253,443
對싱가포르	2,239	53	2,181	2,110	2,518	-408
對호 주	50	1,249	-1,201	3	1,976	-1,973
對캐 나 다	132	55	73	152	236	-84
對뉴질랜드	385	2	382	525	1	524

나. 주요 수출물품

제86류의 캐나다 수출상위 품목은 8609009000(컨테이너 : 기타), 8609005000(냉동용과 냉장용 컨테이너)로 각각 110천달러, 40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8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607990000	871	8607990000	3	8609009000	110	8607990000	501
2	8601200000	594	8607210000	0	8609005000	40	8607910000	16
3	8607120000	208	8607290000	0	8609003000	2	8608009000	5
4	8609003000	128	8607301000	0	8607191000	0	8607199000	3
5	8607910000	124	8607302000	0	8607210000	0	8603101000	0
6	8609009000	59	8607303000	0	8607302000	0	8607120000	0
7	8607210000	48	8607309000	0	8607309000	0	8607192000	0
8	8605001090	32	8608002000	0	8607910000	0	8607210000	0
9	8608002000	22	8608009000	0	8607990000	0	8609009000	0
10	8609002000	20	8609003000	0	8608002000	0	-	-

3. 제8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601~8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603~86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6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607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607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607~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601~8602 8607.11~8607.12	CTH	CTH	CTH	CTH
8603~8606	CTH	CTH	CTH(ex.8607) or (From 8607+ MC 55 of 8607)	CTH
8607.19~8607.99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8608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609	CTH	CTH or RVC 40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6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6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8607호의 철도차량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603호~제8606호의 객차 등을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객차와 다른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만 제8607호에 속하는 재료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다만 이경우에도 최소허용기준 만큼의 비원산지재료 사용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비록 제8607호를 수입하여 비원산지 부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원산지 부분품의

가격이 객차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대체로 철도차량의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일부 부분품(제8607호)와 기계식 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결합기준을 택하고 있어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 엄격성이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결합기준이 아닌 선택기준을 채택하여 원산지판단의 범위가 보다 넓고 완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객차 등(제8603호~제8606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인 반면, 캐나다는 부가가치기준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객차의 부분품(제8607호)를 수입하여 객차를 생산하는 경우 캐나다 외 3개국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에 어려움이 없으나, 캐나다는 제 8607호의 수입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s)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ies)·기중기차(crane lorries)·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 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6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9	공장·창고·부두나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10	전차(戰車)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s)를 포함한다]와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s)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사이드카(side-cars)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자전거를 포함한다)
8713	신체장애이용 차량(모터의 유무나 기계구동식 여부를 불문한다)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2. 제8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7류의 대세계 교역은 6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같은 해 캐나다로의 수출은 24억달러, 수입은 7천만달러이며 약 23억달러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HS 제8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72,771,813	10,484,487	62,287,325	73,345,214	13,314,544	60,030,670
對싱가포르	109,333	7,962	101,336	145,107	4,697	140,410
對호 주	2,367,454	80,751	2,286,670	2,090,702	58,437	2,032,265
對캐 나 다	2,453,317	88,040	2,365,250	2,405,556	70,921	2,334,635
對뉴질랜드	277,506	88	277,396	313,333	63	313,270

나. 주요 수출물품

제87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8703231010(승용 자동차 : 2000cc 이하인 신차), 8703239010로 각각 1,449,360천달러, 376,263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87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 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703321010	56,456	8703231010	886,839	8703231010	1,449,360	8703231010	106,042
2	8708999000	44,683	8703239010	360,299	8703239010	376,263	8703239010	68,358
3	8703231010	17,938	8703239010	277,826	8703241010	199,759	8703239010	53,997
4	8703239010	5,603	8708999000	116,783	8708999000	186,643	8703227000	19,013
5	8703227000	4,185	8703321010	109,643	8703227000	114,913	8703321010	17,146
6	8705909090	3,134	8703227000	87,338	8703249010	19,899	8704211010	13,049
7	8704219090	2,145	8704219090	61,218	8708309000	13,880	8704219090	9,909
8	8704211010	1,770	8703241010	53,533	8708290000	11,743	8703337000	6,780
9	8708930000	1,678	8708290000	32,855	8708400000	7,862	8703241010	4,428
10	8716809000	1,458	8708400000	22,159	8708501000	7,452	8704311010	2,870

3. 제8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701~87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이상인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07호의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07호의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08호의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08호의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09.11 ~8709.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0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0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711~8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71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14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14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14.10 ~8714.9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14.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14.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716.10 ~8716.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701~8702 8704	CTH + RVC 55	CTH + RVC 40	MC 55(VNM)/NC65 or MC35(VOM)	CTH or RVC30/40
8703	CTH + RVC 55	CTH +(RVC 30/40)	MC 55(VNM)/NC65 or MC35(VOM)	CTH or RVC30/40
8705~8706	CTH + RVC 55	BU 30 or BD 40	MC 55(VNM)/NC65 or MC35(VOM)	CTH or RVC30/40
8707	CTH + RVC 55	BU 30 or BD 40	CTH or (From 8707 + MC 55/NC 65 of 8707)	CTH or RVC30/40
8708.10~8708.94	CTH + RVC 50	CTSH or RVC 40	CTSH or (From 8708 + MC 55/ NC 65 of 8708)	CTH or RVC30/40
8708.95~8708.99	CTH + RVC 55	CTSH or RVC 40	CTSH or (From 8708 + MC 55/ NC 65 of 8708)	CTH or RVC30/40
8709.11~8709.1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8709.90+ MC 55 of 8709.90)	CTSH or RVC 30/40
8709.90	CTH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8710.00 8714.99~8715.00 8716.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711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714) or (From 8714+ MC 55 of 8714)	CTH or RVC30/40
8712	CTH + RVC 50	CTH	CTH(ex.8714) or (From 8714+ MC 55 of 8714)	CTH or RVC30/40
8713	CTH	CTH or RVC 40	CTH(ex.8714) or (From 8714+ MC 55 of 8714)	CTH or RVC30/40
8714.10~8714.96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8714.99+ MC 55 of 8714.99)	CTH or RVC30/40
8716.10~8716.8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716.90+ MC 55 of 8716.90)	CTSH or RVC 30/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특히 순원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701호~제8706호의 자동차 등은 세번변경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번변경과 상관없이 협정에서 규정한 직접법 35%이상, 공제법 55% 미만, 순원가법 65%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8707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거나 동일호에 속하는 소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되고 그 재료가 비원산지재료라면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않거나 순원가의 6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709.90호의 부분품은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이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8709.11호 내지 제8709.19호의 상품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 부분품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아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제87류의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 적용하거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므로 다소 완화된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다른 영영방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동차등에 있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순원가법을 도입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8703호의 승용차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는 CTH+RVC 55, 호주는 CTH+RVC 30/40, 캐나다는 MC 35/55/NC65, 뉴질랜드는 CTH or RVC 30/40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규정하는 뉴질랜드가 가장 완화된 결정기준으로 풀이되고 싱가포르와 호주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호주의 부가가치기준 비중이 다소 낮으므로 싱가포르보다는 완화된 규정으로 풀이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세번변경과 상관없이 3개의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중에서 한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안전벨트 부분품)

품명	안전벨트 부분품(Safety belt parts)
세번	8708.29.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08호의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08호의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자동차 안전벨트의 출입부분에 부착되는 안전벨트용 플라스틱 성형품이다.

안전벨트 부분품의 주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 안전벨트 부분품의 주요 원재료 >

품명	HS	설명
폴리프로필렌칩	3902.10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의 원재료로써 PP칩
침쇄(Fastener)	8708.99	차체에 부착되어 안전벨트의 출입을 고정시키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품
서열 라벨 테그	4821.10	서열 및 바코드 종이 라벨
캡	3926.90	제품 외부 전면 커버(플라스틱 사출물)

한-캐나다 FTA는 제8708호에 분류되는 안전벨트 부분품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 또는 제8708호와 동일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부터 생산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HS 제8708.29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8708.29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주요 원재료의 6단위 기준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6단위 기준에서 동일한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동 제품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에 속하는 침쇄(Fastener)가 존재하지만 6단위 소호가 서로 상이하므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8708호의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되는 경우 특정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짐쇄가 제8708호의 하위 소호에 해당하지만 완제품과 동인한 소호는 아니므로 부가가치기준을 고려치 않아도 된다. 다만 동일한 소호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5% 또는 순원가의 6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88류 항공기·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8801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8803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s),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2. 제88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8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3.6억달러 적자를 시현.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26백만달러 수입은 8.6백만달러이며 17백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HS 제88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748,253	2,908,202	-1,159,950	1,667,792	2,994,266	-1,326,474
對싱가포르	6,300	885	5,412	8,140	756	7,384
對호 주	7,427	1,015	6,407	8,258	252	8,006
對캐 나 다	6,070	16,014	-9,949	26,402	8,692	17,710
對뉴질랜드	81	257	-180	161	3,391	-3,230

나. 주요 수출물품

제88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 품목은 8802129000(헬리콥터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803302000(헬리콥터의 부분품)로 각각 18,874천달러, 5,013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HS 제88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803301000	5,567	8803301000	8,046	8802129000	18,874	8803200000	121
2	8803200000	2,434	8804001000	83	8803302000	5,013	8803301000	35
3	8804001000	77	8803909000	52	8803301000	2,206	8805292090	3
4	8803909000	62	8803200000	28	8803200000	182	8803302000	2
5	8805102090	0	8803302000	20	8804001000	85	8802129000	0
6	8805109090	0	8802201000	17	8801009010	24	8803909000	0
7	8805291010	0	8804009010	12	8803100000	18	8804001000	0

3. 제8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8801~880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804~8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801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802~8803	CTS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804~8805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8류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 8801호~제8803호에 분류되는 항공기와 부분품은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8801.10호~제8803.90호의 항공기 등은 동일 호에 속 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6단위 세번변경결정기준을 채택한 것은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의 원산지 판단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주로 항공기 부분품은 다양한 재료로 복잡하

게 설계되고 생산되지만 ‘항공기용’이라는 용도를 제한하여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8류에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88류의 품목분류 구조와 특징에 따라 제8803.90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동일 호에 속하지만 다른 소호에 분류되는 품목으로 변경되도록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다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전받기 어려우므로 보다 완화하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8804~제8805호에 속하는 낙하산 및 훈련장비 등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낙하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804.90호)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낙하산을 생산하는 경우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항공기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다른 동일한 호에 속하는 부분품으로 생산한 경우에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세번변경의 정도를 다소 완화시켜 비원산지 재료의 가능성을 넓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단을 완화시키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헬리콥터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품명	낙하산 프레임(Parachutes Frame)
세번	8804.00.901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낙하산 프레임은 낙하산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개의 기다란 봉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다.

낙하산 프레임의 주요 원재료는 합금강의 봉으로 여기에 표면처리제를 도포하여 완성한다.

< 낙하산 프레임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합금강의 봉	7228.60	낙하산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합금재질의 봉
표면처리제	3824.90	프레임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한 조제정결제

낙하산의 부분품인 프레임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제8804호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제8804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위에 제시된 주요 원재료의 4단위 기준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4단위 기준에서 동일한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동 제품의 경우 동일 세번이 없으므로 원재료들은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8901	순항선(cruise ships)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s) · 화물선 · 부선(barges)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2	어선, 공작선(factory ships)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의 그 밖의 선박
8903	요트와 유람용이나 운동용의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4	예인선(tugs)과 푸셔크라프트(pushers)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舢舨, floating docks),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6	그 밖의 선박(군함과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 탱크 · 코퍼댐(coffer-dams) · 부잔교(landing-stages) · 부표(buoys) · 수로부표(beacons)]
8908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2. 제89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89류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36,563,987천달러 흑자기조를 시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수출은 43천달러, 수입은 2,452천달러로 2,409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HS 제89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분	2013			2014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對세계	35,869,754	1,693,733	34,176,020	38,338,234	1,774,247	36,563,987
對싱가포르	4,324,508	21,729	4,302,775	5,355,539	63,679	5,291,860
對호주	297	60,331	-60,038	192,350	58,783	133,567
對캐나다	58	3,334	-3,280	43	2,452	-2,409
對뉴질랜드	20	184	-164	152	1,797	-1,645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89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8903100000(인플랫터블 식의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이며 43천달러를 수출하였다. 이외에 다른 품목은 수출실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HS 제89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8901200000	2,109,752	8905209000	192,186	8903100000	43	8901901000	130
2	8905907000	1,749,388	8907909000	147	8903910000	0	8903999000	21
3	8901901000	1,453,331	8903100000	17	8903920000	0	8907905000	1
4	8905909000	19,043	8903920000	0	8903991000	0	8903100000	0
5	8905100000	12,400	8903991000	0	8903999000	0	8903920000	0
6	8906900000	10,340	8903999000	0	8905209000	0	8903991000	0
7	8902001010	1,150	8905909000	0	8907909000	0	8906900000	0
8	8903100000	68	8906900000	0	-	-	8907100000	0
9	8907909000	56	8907905000	0	-	-	-	-
10	8903999000	11	8907906000	0	-	-	-	-

3. 제89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89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901~8902 8904~8905	CC	CC or RVC 40	CC	CTH or RVC30/40
8903 8906	CC	CTH	CC	CTH or RVC30/40
8907~8908	CTH	CTH	CC	CTH or RVC30/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89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89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류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선 직전의 중고 어선(제8902호)을 수입하여 기계장치등을 제거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만들면 동일 류 내에서 세번변동이 없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선박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제89류 전체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8907호~제8908호의 수상구조물과 해체용 선박이다. 이 품목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동호 외의 재료를 수입하여 동호에 속하는 선박을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 조건하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고무보트)

품명	인플랫터블 식의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Yachts and other vessels for pleasure or sports; rowing boats and canoes. : Inflatable)
세번	8903.10.0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소형 고무보트(Inflatable Boat)는 내외부가 유연한 고무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 압축가스를 주입하는 경량의 보트이다.

크기에 따라 재질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길이가 3m 이상의 것은 바닥재가 3~5개 정도의 플라이우드(plywood)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보트는 분해가 가능하여 휴대가 용이하게 만들어 진 것도 있으며 필요시 물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주로 구명보트나 레저용 보트로 사용되며 군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

소형 고무보트의 주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 소형 고무보트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바 닥 재	4408.90	고무보트의 바닥을 구성하는 나무재질의 바닥재
고 무	4016.99	보트의 외부 및 내부 소재로 보트의 대부분을 차지
로 프	5607.49	이기상황을 대비한 로프
PVC	3921.90	보트의 다양한 장소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
핸 들	4016.99	보트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부분품

고무보트의 한-캐나다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제89류가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제8903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결국 위에 제시된 주요 원재료의 2단위 기준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2단위 기준에서 동일한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동 제품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원재료로 투입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제18부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살아있는 동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polarizing)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구와 장치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구와 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장착구와 이들의 부분품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구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장치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기록장치나 재생장치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008	투영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장치와 장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우프(negatoscopes), 영사용 스크린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이나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장치(diffraction apparatus)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s)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es)와 그 밖의 항행용(navigation) 기기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기기 ·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compasses)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6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
9017	제도용구 · 설계용구나 계산용구(예: 제도기 · 축소확대기 · 분도기 · 제도세트 · 계산척 · 계산반), 수지식 길이측정용구(예: 곤은 자와 줄자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이나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의 진단장치 · 그 밖의 전기식 의료장치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장치,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장치, 오존흡입기 · 산소흡입기 · 에어로졸치료기 · 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 장치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スマ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trusses)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와 결함 ·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사용하는 장치(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이나 수의용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장치 ·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 · 고압발생기 · 조절반 · 스크린 · 검사나 치료용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다)
9023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장치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4	재료(예: 금속 · 목재 ·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플라스틱)의 경도 · 항장력 · 압축성 · 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계와 기기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 · 액면 · 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예: 유량계 · 액면계 · 압력계 · 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호 · 제9028호나 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구와 장치(예: 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 분석기나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porosity) · 팽창 · 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측정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 열 · 소리 · 빛의 양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s)

9028	기체·액체나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calibrating meters)를 포함한다]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s)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s)·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구와 장치(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구와 장치
9031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구·기기와 기계, 윤곽 투영기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구와 장치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기구나 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02년도에 제9009호는 삭제

2. 제90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90류의 '14년 기준 대세계 교역은 18,032,104천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같은해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의 경우 40,745천달러 수입은 108,829천달러이며 무역수지는 68,084천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HS 제90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35,943,226	17,235,283	18,707,942	35,901,409	17,869,305	18,032,104
對싱가포르	173,187	400,696	-227,664	139,549	486,262	-346,713
對호 주	39,218	44,760	-5,659	42,746	46,956	-4,210
對캐나다	50,012	113,935	-64,067	40,745	108,829	-68,084
對뉴질랜드	11,482	8,373	3,039	13,116	11,464	1,652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90류의 수출상위품목은 9001501000(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9003199000(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이며 4,231천달러, 3,802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90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9018199000	14,461	9031809099	6,934	9001501000	4,231	9027909099	5,798
2	9031419000	8,761	9018909080	4,969	9003199000	3,802	9031809099	2,012
3	9018909090	8,080	9018120000	3,648	9031809099	3,367	9027802090	1,197
4	9030901000	7,804	9021290000	2,282	9018120000	3,020	9018909080	828
5	9031499000	5,183	9022141090	1,406	9031909000	2,337	9027801000	604
6	9030820000	5,103	9018909071	1,303	9013909000	2,050	9022192000	213
7	9001300000	4,589	9018199000	1,228	9018909080	1,863	9027100000	175
8	9018120000	4,341	9022130000	1,094	9018199000	1,794	9021901000	169
9	9032899090	4,198	9018198000	771	9021100000	1,643	9018120000	151
10	9013200000	3,824	9018909019	769	9004109000	1,387	9019209000	151

3. 제90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3.11 ~9003.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5.10 ~900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06.10 ~9006.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6.91호 또는 제9006.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6.91호 또는 제9006.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6.91 ~90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7.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9007.10호의 자이로스테블 라이즈드 카메라(gyrostabilized camera) 3. 제9007.9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7.9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7.9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7.9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7.91 ~90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0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0.50 ~9010.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1.10 ~90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3.10 ~9013.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4.10 ~901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5.10 ~901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7.10 ~9017.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8~90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2.13 ~902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2.19 ~902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2.29 ~902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4.10 ~902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025.11 ~902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6.10 ~902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7.20 ~902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8.10 ~902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9.10 ~902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30.10 ~9030.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31.10 ~903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3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3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32.10 ~9032.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3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3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001, 9005.90, 9006.91~ 9006.99, 9007.91~ 9007.92, 9010.90, 9011.90, 9012.90, 9013.90, 9014.90, 9016, 9023.00, 9024.90, 9026.90, 9029.90, 9030.90, 9032.90~ 9033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002	CTH(ex.9001) or (CTH + RVC50)	CTSH	CTH(ex.9001) or (From 9001+ MC 55 of 9001)	CTSH
9003.11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9003.90+ MC 55 of 9003.90)	CTH or RVC30/40
9003.1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003.90+ MC 55 of 9003.90)	CTH or RVC30/40
9003.90	CTH	CTH	CTH	CTH or RVC30/40
9004	CC or (CTH + RVC 50)	CC or RVC 40	CC or (From 90 + MC 55 of 90)	CTH or RVC30/40
9005.10~ 9005.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05.90+ MC 55 of 9005.90)	CTSH
9006.10~ 9006.51 9006.61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06.91, 제9006.99 + MC 55 of 9006.91, 제9006.99)	CTSH
9006.52~ 9006.59 9006.6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H or (From 9006.91, 제9006.99 + MC 55 of 9006.91, 제9006.99)	CTSH
9007.1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07.10(자이로스 태블라이즈드 카메라(gyrostabili zed camera)) or From 9007.91+	CTSH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MC 55 of 9007.91	
9007.2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07.92+ MC 55 of 9007.92)	CTSH
9008.5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08.90+ MC 55 of 9008.90)	CTSH
9008.90	CT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9010.10 9012.10 9030.31~ 9030.39 9030.84~ 9030.89	CTH or (CTSH + RVC50)	CTSH	CTSH	CTSH
9010.50~ 9010.6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0.90+ MC 55 of 9010.90)	CTSH
9011.10~ 9011.80	CTH or (CTSH + RVC45)	CTSH	CTSH	CTSH
9013.10~ 9013.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3.90+ MC 55 of 9013.90)	CTSH
9014.10~ 9014.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4.90+ MC 55 of 9014.90)	CTSH
9015.10~ 9015.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5.90+ MC 55 of 9015.90)	CTSH
9015.90 9017.90 9028.90	CTH	CTH or RVC 40	CTH	CTH
9017.10~ 9017.2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7.90+ MC 55 of 9017.90)	CTSH
9017.30~ 9017.8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9017.90+ MC 55 of 9017.90)	CTSH
9018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9019.10~ 9019.20 9021.10~ 9021.90	CTS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9020.00	CT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9022.12 9022.19~ 9022.21	CTH or (CTSH + RVC50)	CTSH	CTSH	CTSH or RVC 30/40
9022.13~ 9022.14 9022.29~ 9022.3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2.90+ MC 55 of 9022.90)	CTSH or RVC 30/40
9022.90 9027.90	CTH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9024.10~ 9024.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4.90+ MC 55 of 9024.90)	CTSH or RVC 30/40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025.11~ 9025.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5.90+ MC 55 of 9025.90)	CTSH
9026.10~ 9026.80	CTSH	CT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9027.1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7.90+ MC 55 of 9027.90)	CTSH
9027.20~ 9027.50 9030.10 9030.40~ 9030.82	CTSH	CTSH	CTSH	CTSH
9027.80 9030.2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SH	CTSH
9028.10~ 9028.3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8.90+ MC 55 of 9028.90)	CTSH
9029.10~ 9029.2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9029.90+ MC 55 of 9029.90)	CTSH
9031.10~ 9031.2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31.90+ MC 55 of 9031.90)	CTSH
9031.41	CTSH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31.90+ MC 55 of 9031.90)	CTSH
9031.4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31.90+ MC 55 of 9031.90)	CTSH
9031.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31.90+ MC 55 of 9031.90)	CTSH or RVC 30/40
9031.9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032.10 9032.81~ 9032.89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32.90+ MC 55 of 9032.90)	CTSH
9032.20	CTH or (CTSH + RVC45)	CTSH	CTH or (From 9032.90+ MC 55 of 9032.90)	CTS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0류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0류에 속하는 물품은 크게 3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둘째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셋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주요 원재료의 비원산지 비중을 제한하는 부가가치기준이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광섬유(제9001호)는 제7002호의 유리제품을 수입하여 제9001.10호의 광섬유를 생산하면 4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됨에 무리가 없고 따라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것이다.

9011.90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9011.10호~제9011.80호의 광학현미경을 생산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경우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채택되거나, 주요재료의 비원산지재료 사용비중을 제한하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낮아질 것이다.

제9027.90호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9027.10호의 분광계를 만드는 경우 분광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므로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선 동일 호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하였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제9027.90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동 소호가 비원산지재료라면 그 비중은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분광계 외에도 한-캐나다 FTA는 제90류에 속한 광학기기 및 정밀기기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해당제품 생산에 핵심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4개국 비교분석) 제90류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 영연방 4개국의 서로 상이한 규정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소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는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대체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캐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캐다는 제90류의 광학기기 등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광학기기 등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동일호에 속하는 재료들을 고려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충족이 용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경우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체로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만 채택하는 엄격한 기준을 선택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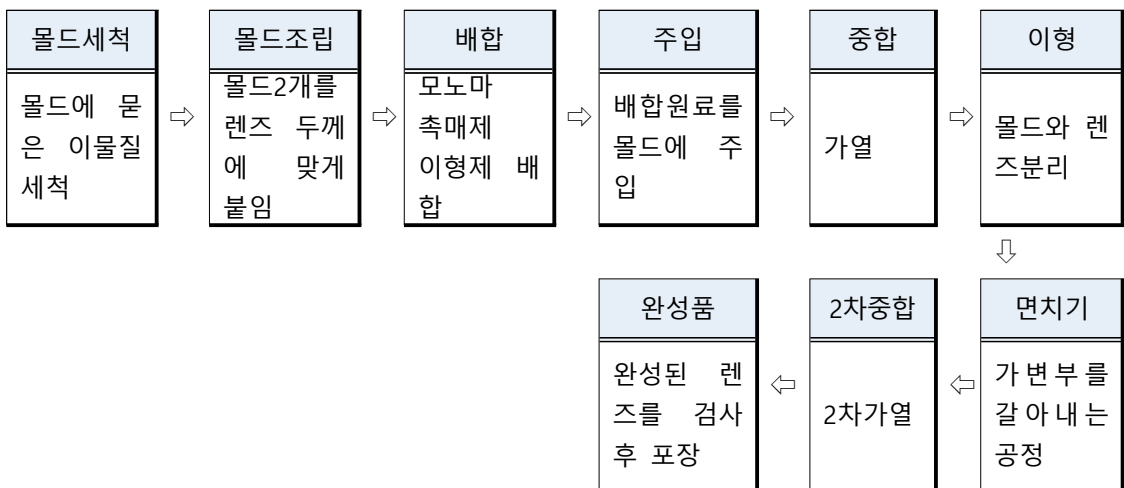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품명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Spectacle lenses of other materials : For vision correction)
세번	9001.5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렌즈는 유리와 같이 투명한 물질의 면을 구면(球面)으로 곱게 갈아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거나 발산시켜 광학적 상(像)을 맺게 하는 물체이다.

렌즈를 가공할 몰드를 세척한 후 몰드 2개를 제조할 렌즈 두께에 맞게 붙인다. 이형제 등을 배합해서 몰드에 주입한 후 가열하여 중합과정을 거친 후 몰드와 렌즈를 분리한다.

만들어진 렌즈의 가변부를 갈아내는 공정인 면치기를 해준 후 한 번 더 중합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이 만들어진다.



품 명	HS	설 명
IPP	3824.90	렌즈의 주요 원재료
인듐 산화물	2811.22	
촉매제	2931.00	
모노머 촉진제	2919.90	
모노머	2929.10	

한-캐나다 FTA는 안경렌즈(제900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안경렌즈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 호(HS 제900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완제품과 동일 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101	손목시계 · 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가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2	손목시계 · 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를 갖춘 클록(clocks)(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4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이나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s)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s)
9105	그 밖의 클록(clocks)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나 동기(同期)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 · 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s) · 타임레코더(time-recorders)]
9107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나 동기(同期)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s)(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s)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2	클록(clocks) 케이스와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3	휴대용 시곗줄 · 휴대용 시계밴드,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2. 제91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91류의 대세계 교역은 640,113천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와의 교역실적은 수출의 경우 94천달러 수입은 34천달러이며 60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91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88,378	627,599	-539,222	99,704	739,817	-640,113
對싱가포르	2,333	279	2,038	3,676	225	3,451
對호 주	164	77	75	108	124	-16
對캐 나 다	12	39	-41	94	34	60
對뉴질랜드	20	1	11	14	4	10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91류의 수출상위 품목은 9102112000(손목시계 : 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9102121000(손목시계 : 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광전자식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며 수출실적은 각각 42천달러, 13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91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9102199090	2,094	9101110000	24	9102112000	42	9102212000	11
2	9102119010	451	9101290000	23	9102121000	13	9102121000	2
3	9101210000	236	9101191000	9	9111909000	11	9101199000	1
4	9101290000	177	9102119090	8	9101110000	9	9101110000	0
5	9101110000	143	9102121000	8	9102212000	9	9101191000	0
6	9102999000	132	9102199090	8	9101191000	5	9101290000	0
7	9102292000	67	9102191000	7	9105290000	2	9101990000	0
8	9102212000	67	9102112000	6	9102119090	1	9102119010	0
9	9104002000	63	9102119010	6	9105210000	1	9102119090	0
10	9107009000	61	9105210000	2	9106100000	1	9102191000	0

3. 제9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101~91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제9018호부터 제91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8호부터 제9114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108~9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111.10 ~911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11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11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1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11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11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113~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101~9102.11 9102.19~9107	CC	CTH	CTH(ex.9108~9114) or (From 9108~9114+ MC 55 of 9108~9114)	CTH
9102.12	CC	CTH	CTH(ex.9108~9114) or (From 9108~9114+ MC 55 of 9108~9114)	CTSH or RVC 30/40
9108~9109	CTH + RVC 55	CTH	CTH	CTH
9110	CTH + RVC 55	CTH or RVC 40	CTH	CTH
9111.1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111.90 + MC 55 of 9111.90)	CTSH
9111.20~9111.8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111.90+ MC 55 of 9111.90)	CTSH
9111.90 9112.90~9113.90	CTH	CTH or RVC 40	CTH	CTH
9112.2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112.90+ MC 55 of 9112.90)	CTH
9114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1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1류에 속하는 다수의 물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원재료의 부가가치기준의 유형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택한 품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제9011.90호의 시계 배터리를 수입하여 제9011.10호의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경우 무브먼트의 원산지결정기준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수입한 배터리가 무브먼트의 공장도가격의 55% 넘지 않는 경우에 무브먼트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4개국은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시계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체로 세번변경기준 단일의 기준을 선택하였고, 호주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거나 특정 원재료의 비원산지재료로서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하는 보다 세부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택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9101호~제9102호의 시계에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제9108호~9110호까지의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을 택하여 가장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손목시계)

품명	손목시계 : 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세번	9102.11.2000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8호부터 제91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8호부터 제9114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시계의 핵심적인 주요 원재료는 시계줄과 전면 유리, 그리고 시계의 무브먼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공정순서에 맞게 조립하면 시계가 완성된다.

< 시계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시계케이스	9112.20	플라스틱제의 케이스
유 리	7015.90	클록의 전면을 보호하는 유리
시계무브먼트	9109.10	시계의 작동을 담당하는 반제품의 무브먼트

제9102호의 시계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호 생산시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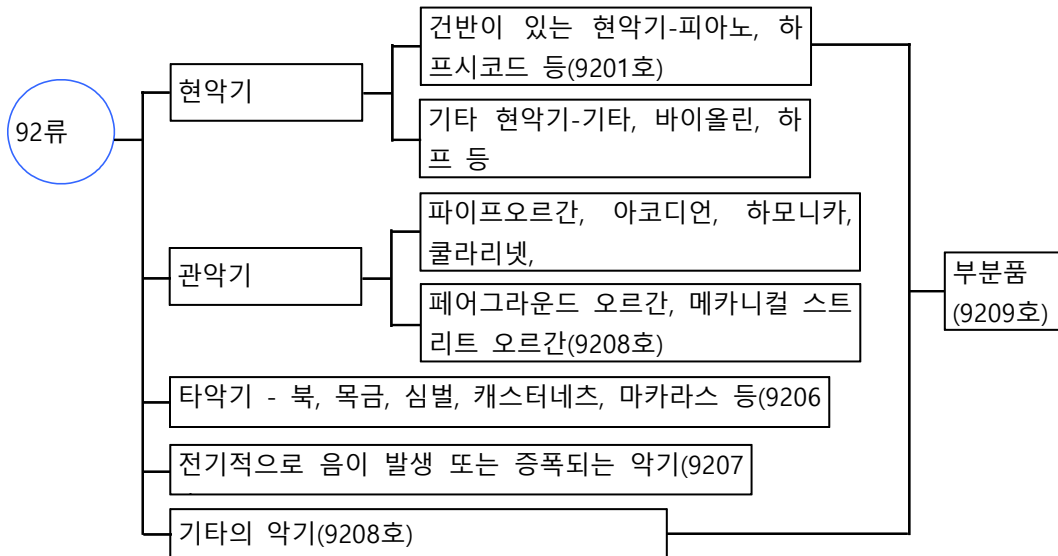
제91류 시계의 품목분류에 따르면 제9101호와 제9102호에는 시계가 분류되고 그 외 제9103호에서부터 제9114호까지는 시계에 부속되는 재료들이 분류된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을 풀이해보면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되, 제 9108호~제911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들 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약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다면 최소허용기준에 의한 보완을 가능할 것이다.

다름으로 제9101호부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부품을 이용하여 시계를 생산한 경우에 이들 재료를 수입하였더라도 이들 재료비의 가격비중이 시계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2. 제92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92류의 '14년 대세계 교역은 64,503천달러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같은해 캐나다와의 교역은 수출의 경우 1,546천달러 수입은 832천달러로 714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92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世 계	138,329	201,107	-62,778	134,324	198,827	-64,503
對싱가포르	868	11	849	498	52	446
對호 주	1,521	70	1,431	1,045	36	1,009
對캐 나 다	2,142	971	1,156	1,546	832	714
對뉴질랜드	228	6	211	277	8	269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제92류의 캐나다 수출상위품목은 9207901000이며 수출실적은 574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92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9209920000	153	9207901000	481	9207901000	574	9202901000	66
2	9209301000	84	9207103000	105	9209940000	434	9207103000	62
3	9202901000	58	9201200000	91	9209920000	144	9201109000	58
4	9207101000	55	9202901000	84	9201109000	111	9207901000	50
5	9207901000	34	9209940000	75	9202901000	59	9209920000	22
6	9209940000	30	9207101000	69	9205901040	57	9207101000	13
7	9201109000	29	9206002000	57	9201200000	54	9209940000	6
8	9206002000	20	9205901010	18	9206002000	35	9201101000	0
9	9209999000	19	9209920000	16	9207101000	29	9202101000	0
10	9205901010	5	9205901040	10	9207103000	20	9202102000	0

3. 제92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201~92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2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20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20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201~9206 9208	CC	CTH	CTH(ex.9209) or (From 9209+ MC 55 of 9209)	CTH
9207	CC	CTH or RVC 40	CTH(ex.9209) or (From 9209+ MC 55 of 9209)	CTH
9209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2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2류에 속하는 모든 악기는 한-캐나다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악기부분품(제9029호)를 수입하여 각종 악기(제9201호~제9208호)를 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부분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조한 악기의 원산지 판단은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악기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아야 악기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악기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는 악기부분품이 비원산지재료로서 사용되어 악기를 생산할 경우에 비원산지재료의 사용비중을 제한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나 호주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악기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악기부분품(제9209호)를 수입하여 악기를 만드는 경우 동일 류에 속하는 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명	전기기타(Electronic guitar)
세번	9207.90.1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2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20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20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현의 진동을 픽업에서 전기신호로 바꾸어 앰프(Amplifier)로 소리를 내는 기타로 제9207호에는 전기적으로 음을 내는 또는 증폭을 하는 악기 즉, 어떠한 악기가 그

악기에 부착된 진동 장치로 약한 음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전기식 또는 전자식 구성 요소가 없이는 보통 들을 수 있는 연주가 불가능한 악기가 분류된다.

기타의 주요 원재료는 스왐프 애쉬, 오방골, 브리지 및 테일피스 등이다.

< 전기기타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스왐프 애쉬	4407.29	전자기타의 몸통으로 보통 나무로 만들어지며, 속이 비어있는가에 따라 Solid, Hollow, Semi-hollow로 구분
오방골	4407.29	오방골은 열대 서쪽 아프리카 원산지인 목재로 전자기타의 넥(Neck)부분으로 몸통과 헤드를 연결하여 현(String)이 걸리고 현의 장력을 버티는 역할
브리지 및 테일피스	9209.94	현의 뒷 부분에 현을 고정시키는 부분으로 암의 업다운이 자유로움
머신헤드	9209.94	넥의 머리부분으로 현을 감아 고정시키는 역할
픽 업	9209.94	현의 울림을 채음하여 앰프 등에 소리를 전달해주는 집음기

한-캐나다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일정비율 이하 투입을 규정한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HS 제9207호가 아닌 아닌 비원산지물품으로부터 HS 제9207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주요 원재료의 4단위 기준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4단위 기준에서 동일한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동 제품의 경우 동일 세번이 없으므로 원재료들은 비원산지물품이 사용되어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9209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브리지, 머신헤드, 픽업 등은 원산지재료일 경우에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모든 원재료를 비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209호로 분류되는 원재료의 전체 가격이 완제품인 전기기타 공장도가격의 55% 이내일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19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제93류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s) · 피스톨(pistols)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2	리볼버(revolvers)와 피스톨(pistols)(제9303호나 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3	그 밖의 화기(firearms)와 폭약으로 점화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s) · 총구장전화기 ·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s)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 공포탄용 피스톨(pistols)과 리볼버(revolvers) · 캡티브볼트형의 무통도살기(captive-bolt humane killers) · 줄발사총(line-throwing guns)]
9304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 가스총 · 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6	폭탄 · 유탄 · 어뢰 · 지뢰 · 미사일.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 그 밖의 총포탄 ·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하는 와드(wads)를 포함한다]
9307	검류 · 창.이와 유사한 무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집

2. 제93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제93류의 '14년 기준 대세계 교역은 166,137천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14년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은 753천달러, 수입은 56천달러이며 697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HS 제93류의 수출입

(단위 : 천불, %)

구분	2013			2014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對세계	390,208	296,257	93,951	450,852	284,715	166,137
對싱가포르	730	0	727	4,089	588	3,501
對호주	601	161	436	258	225	33
對캐나다	1,249	377	866	753	56	697
對뉴질랜드	1,946	6	1,939	2,535	0	2,535

나. 주요 수출물품

캐나다로의 제93류의 수출상위품목은 9306309000(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 기타), 9305101020(리볼버나 피스톨의 프레임과 총몸)로 각각 685천달러, 23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HS 제93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9306309000	3,691	9306309000	239	9306309000	685	9306309000	2,531
2	9305911030	224	9304001000	16	9305101020	23	9305109050	4
3	9305919000	125	9307000000	3	9305101080	13	9305101060	0
4	9306290000	49	9303900000	0	9304001000	10	9305101090	0
5	9301200000	0	9305101030	0	9307000000	10	9305209010	0
6	9304009000	0	9305101050	0	9305101030	6	9305990000	0
7	9306210000	0	9305209010	0	9305101050	3	9306900000	0
8	9307000000	0	9305209020	0	9305209010	2	9307000000	0
9	-	-	9305919000	0	9305209090	1	-	-

3. 제93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301~93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3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30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305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305~9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301~9304	CC	CTH or RVC 40	CTH(ex.9305) or (From 9305+ MC 55 of 9305)	CTH or RVC30/40
9305.10~9305.20 9306~9307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305.91~9305.99	CTH	CTH or RVC 40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3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3류에 속하는 모든 무기는 한-캐나다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기부분품(제9305호)를 수입하여 각종 무기(제9301호~제9304호)를 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부분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조한 무기의 원산지 판단은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무기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아야 무기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무기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우선 무기의 원산지 판단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가장 엄격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고, 그 외국가들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9305호의 무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경우 싱가포르를 FTA에서는 류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경우에 호주, 뉴질랜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쉽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캐나다의 경우 제9305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제한을 두고 만약 동 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수준이하의 비중요건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완화된 수준이고, 다음으로 캐나다, 싱가포르의 순서로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권총해머)

품명	권총해머(Pistol Hammer)
세번	9305.1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 예시	

권총의 해머는 권총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앞으로 움직이는 가동부분이다. ‘노리쇠’라고도 하나 이는 잘못 쓰이는 표현이다. 해머가 공이를 치면 공이가 뇌관(총탄에서 가장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 화약부분. 다른 화약을 폭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을 치고 화약이 폭발하여 탄환이 발사된다.

권총의 해머부분은 주로 크롬-몰리브덴 강판을 성형 및 가공하여 제조한다.

< 권총해머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크롬-몰리브덴 강판	7211.29	해머의 몸체를 이루는 크롬-몰리브덴 소재의 강판
합금강의 봉	7228.50	해머의 충격을 받아내는 공이의 재료

권총해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예시에 제시된 크롬 강판 및 합금강의 봉 모두 수입하여 권총해머를 생산하는 경우 4단위 세번변동이 발생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20부 잡품(제94류~제96류)

제20부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ress supports)·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s)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과 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4	매트리스서포트(matress supports), 침구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매트리스·이불·깃털이불·쿠션·푸프(pouffes)·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 셀룰러 고무나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s)·스포트라이트(spotlights)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s)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6	조립식건축물

2. 제94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94류의 대세계 교역은 200,534천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수출은 22,967천달러, 수입은 2,462천달러이며, 20,505천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HS 제94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2,402,748	2,210,547	192,200	2,384,145	2,584,679	-200,534
對싱가포르	19,299	2,551	16,717	34,775	3,753	31,022
對호 주	26,917	6,558	20,335	23,938	7,282	16,656
對캐 나 다	22,037	1,924	20,085	22,967	2,462	20,505
對뉴질랜드	2,761	605	2,136	4,392	781	3,611

나. 주요 수출물품

‘14년 기준 캐나다의 제94류 수출상위품목은 9401902000(의자의 부분품 : 금속으로 만든 것), 9403900000(그 밖의 가구의 부분품)이며, 각각 11,897천달러, 2,314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94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9406009090	19,917	9401909000	9,352	9401902000	11,897	9406009020	1,991
2	9405409000	4,424	9405409000	5,971	9403900000	2,314	9405409000	835
3	9403209000	2,062	9405403000	2,655	9405609000	1,656	9401309000	490
4	9401309000	1,387	9405103000	739	9405999000	1,291	9405609000	240
5	9404290000	935	9403609090	660	9405409000	1,279	9403609090	155
6	9404900000	880	9401309000	553	9403209000	1,135	9405109000	132
7	9401809000	527	9405609000	546	9405929000	922	9405103000	104
8	9403609090	486	9405109000	521	9401909000	642	9401303000	82
9	9403890000	448	9406009090	463	9405101000	510	9404900000	73
10	9406009020	310	9403890000	313	9401309000	399	9403301000	44

3. 제94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401.10 ~9401.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403.10 ~9403.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405.10 ~940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405.91 ~94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401.10~9401.8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401.90 + MC 55 of 9401.90)	CTSH
9401.90 9405.91~9405.99	CTH	CTH or RVC 40	CTH	CTH
9402 9403.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403.10~9403.8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403.90 + MC 55 of 9403.90)	CTSH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404 9406	CTH	CTH	CTH	CTH or RVC30/40
9405.10~9405.60	CTH	CTH or RVC 40	CTHor(From 9405.91~9405.99 +MC55of 9405.91~9405.99)	CTSH or RVC 30/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4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4류에 속하는 모든 가구 등은 한-캐나다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호에 속하는 부분품(제9401.90호)을 수입하여 의자(제9401.10호~제9401.80호)를 제작할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의자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의자외에 기타가구(제9403.10호~제9403.89호), 램프 및 조명기구(제9405.10호~제9405.60호)도 동일하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가구 및 조명기구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우선 제94류의 원산지 판단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가장 엄격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택하고 있고, 그 외국가들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9405.91호~9405.99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경우 싱가포르 FTA에서는 호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경우에 뉴질랜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6단위 세번변경의 발생으로 쉽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비원산지재료 비중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부가가치기준에 의해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완화된 수준이고, 다음으로 캐나다 및 호주, 싱가포르의 순서로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LED 조명)

품명	LED 평판조명(LED Panel Lighting)
세번	9405.40.900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LED평판조명(LED Panel Lighting)은 LED Panel을 이용하여 주위를 밝히는 조명기기이다. LED는 p-n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으로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릴 때 단파장광 (monochromatic light)이 방출되는 현상인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이며, 본 물품은 이러한 LED빛을 이용하여 주위를 밝히는 조명기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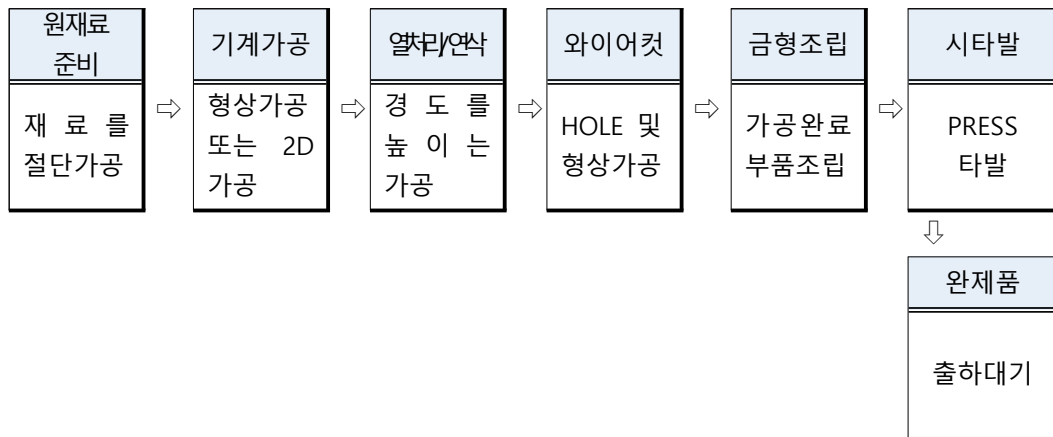
LED 평판조명은 기존의 형광등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자연광에 가까워 눈부심이 덜하고 눈에 잔상이 남지 않아 피로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LED 평판조명의 주요 원재료는 LED 모듈과 디퓨저 플레이트 등으로 다음과 같다.

< LED 평판조명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샤시(바닥)	9405.92	LED모니터 조립 시 함께 조립되는 부품으로 모니터의 액정과 Backlight Unit 후면 전체를 보호하는 부분품
LED모듈	9013.80	발광소자(LED)의 Color별 휘도와 각도 조절 장치
GLP(Light Guide Plate)	9002.90	백라이트 유니트(BLU)의 휘도와 균일한 조명기능을 구현하는 부품
디퓨저 플레이트	9001.90	폴리에스테르 상층부에 5내지 10 μ m 크기의 확산 역할
리플렉터	9001.90	전면은 PET재질로 된 발표성 백색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면은 TiO ₂ PET에 접착시키기 위해 Primer층을 사용한 구조

< LED 평판조명 생산공정 >



LED 조명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다. 위에서 제시된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볼 때 제시된 원재료는 모두 수입해서 조명을 생산하는 경우 샤시(제9405.92호)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샤시를 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만약 샤시의 재료비 비중이 조명의 상품가격에서 10% 아래로 미미한 경우라면 최소허용기준에 의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샤시가 비원산지재료이고,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 한다면 부가가치 기준에 의해 원산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샤시의 가격이 조명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제95류 완구·게임용구와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퍼즐
9504	비디오게임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나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 풀(paddling pools)용품
9507	낚시대·낚시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 순회서커스용품과 순회 동물원용품, 순회극장용품

※ 2007년도에 제9501호·제9502호는 삭제

2. 제95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95류의 대세계 교역은 1,198,796천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실적은 수출은 5,397천달러, 수입은 3,015천달러로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HS 제95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412,924	1,401,965	-989,042	398,762	1,597,558	-1,198,796
對싱가포르	6,335	543	5,764	7,343	225	7,118
對호 주	7,741	11,015	-3,325	8,215	3,973	4,242
對캐 나 다	4,036	6,760	-2,759	5,397	3,015	2,382
對뉴질랜드	1,365	122	1,213	1,648	162	1,486

나. 주요 수출물품

제95류의 캐나다로의 상위 수출물품은 9506990000,9506320000(골프공)로 각각 1,301천달러, 1,171천달러를 해당국가로 수출하였다.

HS 제95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9507901000	1,220	9506320000	1,537	9506990000	1,301	9507901000	394
2	9506990000	804	9506910000	1,529	9506320000	1,171	9506990000	273
3	9507200000	668	9506990000	1,385	9507300000	569	9507909000	229
4	9504902000	653	9503003700	534	9507102000	516	9507200000	207
5	9503003300	643	9507901000	420	9503003700	473	9506399000	105
6	9503003919	553	9506399000	404	9506290000	435	9504300000	104
7	9504300000	491	9503003300	302	9506399000	349	9507300000	71
8	9507300000	309	9507300000	277	9507200000	145	9506290000	59
9	9506910000	271	9507200000	265	9503003919	63	9506320000	58
10	9504903000	259	9503003919	260	9503003300	55	9503003700	53

3. 제95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5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504~9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506.11 ~95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506.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506.3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506.3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506.32 ~9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507~9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503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 or (From 9503 + MC 55 of 9503)	CTH or RVC30/40
9504.20 9504.40	CTH	CTH	CTH	CTH or RVC30/40
9504.30 9504.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504.50	CTH	CTH or RVC 40	CTH	HS 2007—2012 변경으로 PSR 중첩
9505	CTH	CTSH	CTH	CTH
9506.11 ~9506.29 9506.32 ~9506.32~9508	CTH	CTH	CTH	CTH
9506.31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506.39 + MC 55 of 9506.39)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5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5류에 속하는 모든 완구 및 운동용구 등은 한-캐나다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호에 속하는 부분품(제9503.29호)을 수입하여 완구(제9503호)를 제작할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완구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완구 외에 골프채(제9506.31호)의 경우도 동일하다.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완구 및 운동요구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우선 제95류의 원산지 판단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을 택하고 있고, 그 외국가들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9506.39호의 골프채 부분품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조립하여 골프채(제9506.31호)를 제조하는 경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FTA에서는 호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경우에 캐나다와 호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더라도 부가가치기준에 부합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품 명	크레인 스위블(Crane Swivel)
세 번	9507.90.9000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물품예시	

크레인 스위블이란 고기가 물었을 때 낚시 줄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 줄 사이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낚시 용구이다.

낚시 줄 사이의 연결부에 삽입하여 자유롭게 회전함으로써 낚시 줄의 꼬임을 막고 낚시 줄의 교체를 편리하게 해준다.

스위블의 주요 원재료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와이어 및 스틸 튜브, 황동 소재의 와이어 및 튜브, 쉬트 등이다.

< 크레인 스위블의 주요 원재료 >

품 명	HS	설 명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	7223.00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와이어
황동 와이어	7408.21	동과 아연의 합금(황동)으로 된 와이어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	7306.40	철강재질의 관
황동튜브	7411.21	동과 아연의 합금(황동) 재질의 관
황동쉬트	7409.21	동과 아연의 합금(황동)의 취트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되는 모든 비원산지원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스위블의 주요 원재료인 스테인레스 와이어 등을 수입하여 체약 당사국에서 크레인 스위블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다

제96류 잡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명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y) · 뼈 · 귀갑(龜甲) · 뿔 · 가지진 뿔 · 산호 · 자개 ·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2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 · 스테아린(stearin) · 천연검.천연수지나 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s)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젤라틴의 제품
9603	비 ·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²⁰⁾ · 자루걸레(mops)와 깃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squeegees)[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s)는 제외한다]
9604	수동식 체와 수동식 어레미(riddles)
9605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용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6	단추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s) · 스냅파스너(snap-fasteners)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s) · 단추의 몰드(moulds)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블랭크(blanks)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s)와 그 부분품
9608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ped)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 철필형 만년필(stylograph pens)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s)이나 슬라이딩 펜슬(sliding pencils), 펜 홀더 · 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caps)과 클립(clips)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 · 크레용 · 연필심 · 파스텔 · 도화용 목탄 ·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1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9611	날짜 도장(日附印)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 스탬프(numbering stamps)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s)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組版)용 스틱과 조판(組版)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폴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9613	흡연용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4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 · 시가렛홀더와 이들의 부분품
9615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s)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머리핀 · 컬링핀(curling pins) · 컬링그립(curling grips) · 헤어컬러(hair-curlers)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와 이들의 마운트(mounts)와 두부(頭部, heads), 화장품류나 화장용품의 분첩(powder-puffs)과 패드(pads)
9617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²¹⁾)
9618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9619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이와 유사한 제품(재료를 불문한다)

2. 제96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기준 제96류의 대세계 교역은 138,883천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은 3,552천달러, 수입은 2,265천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제96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801,391	597,696	203,694	795,231	656,348	138,883
對싱가포르	3,254	7,893	-4,668	4,051	8,525	-4,474
對호 주	14,919	203	14,685	15,223	253	14,970
對개 나 다	3,897	4,159	-299	3,552	2,265	1,287
對뉴질랜드	1,298	11	1,264	858	5	853

20) 모터를 갖춘 청소기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21)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7020호에 분류한다.

나. 주요 수출물품

캐나다로의 제96류의 수출상위 품목은 9612109000(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 : 기타), 9608200000(팁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이며, 각각 540천달러, 540천달러를 수출하였다.

HS 제96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9612109000	865	9619001090	10,434	9612109000	540	9602009090	385
2	9619001090	588	9608100000	942	9608200000	540	9612109000	88
3	9608200000	462	9612102000	599	9616100000	337	9602009010	76
4	9612102000	392	9602009090	550	9619001090	299	9609901000	62
5	9608100000	237	9602001000	325	9616200000	227	9602001000	47
6	9602009010	192	9616100000	264	9606100000	215	9619001090	37
7	9616200000	177	9603900000	216	9609902000	199	9616100000	29
8	9603210000	142	9612109000	209	9609901000	171	9608200000	26
9	9603300000	142	9609102000	203	9602009090	165	9609103000	21
10	9615909000	101	9603300000	177	9608100000	147	9610009000	11

3. 제96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601~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06.21 ~9606.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6.3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6.3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9607.11 ~9607.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08.10 ~9608.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8.10호부터 제9608.40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8.10호부터 제9608.40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8.60 ~96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09~9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1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세트물품. 다만, 제961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13.10 ~9613.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14~9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601 9603.21~9604 9606.10 9606.30	CTH	CTH	CTH	CTH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607.20 9609.20~9610 9612 9614 9615.90~9618				
9602 9615.11~9615.19	CTH	CTH or RVC 40	CTH	CTH
9603.10	CTH (ex.14)	CTH	CTH	CTH
9605	CC	CTH	CC or (From 96 + MC 20 of 96)	CTH
9606.21~9606.2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606.30+ MC 55 of 9606.30)	CTH
9607.11	CTH	CTSH	CTH or (From 9606.30+ MC 55 of 9606.30)	CTH or RVC30/40
9607.19	CTH	CTSH	CTH or (From 9607.20+ MC 55 of 9607.20)	CTH or RVC30/40
9608.10~9608.20 9608.40	CTH	CTSH	CTH or (From 9608.60~9608.99+ MC 55 of 9608.60~9608.99)	CTSH or RVC 30/40
9608.3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9608.60~9608.99+ MC 55 of 9608.60~9608.99)	CTSH or RVC 30/40
9608.5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608.10~9608.40 + MC 20 of 9608.10~9608.40)	CTH or RVC30/40
9608.6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608.91~9608.99	CTH	CTH	CTH	CTH or RVC30/40
9609.10	CTH	CTH	CTH	CTSH
9611	CTH	CTH	CTH or (From 9611 + MC 20 of 9611)	CTH
9613.10~9613.80	CC	CTH or RVC 40	CTH or (From 9613.90+ MC 55 of 9613.90)	CTSH
9613.90	CC	CTH	CTH	CTH
9619	CTH	CC	CTH	CC / CTH / CC or RVC 40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6류는 2단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해설) 제96류에 속하는 잡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호에 속하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제작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원산지재료 비중을 제한하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 적용토록 하는 유형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담배라이터(제9613호)의 부분품(제9613.90호)을 수입하여 라이터를 제조하는 경우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이 4단위 세번이 라이터와 동일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할 수 없다. 그러나 수입한 라이터 부분품의 가격이 라이터의 공장도가격의 5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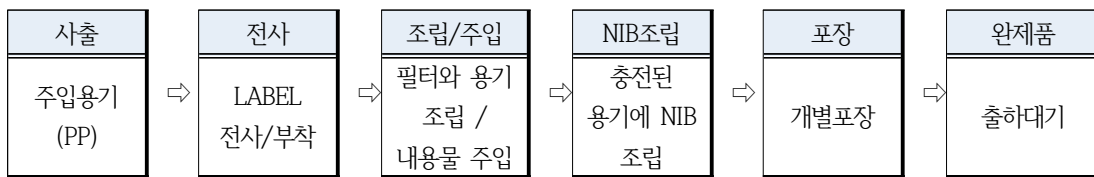
(4개국 비교분석) 영연방 국가들은 잡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대체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그 외에 싱가포르는 일부품목들에 대하여 엄격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택하고 있다.

4. 대표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마커)

품명	마커
세번	9608.20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물품 예시	

마커는 펠트(felt) 천을 사용한 펜의 일종으로 디자인 작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용구이다. 크기나 색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러프스케치는 물론 완성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전 단계에 활용된다.

용기의 원자재인 PP를 이용하여 몸통, 캡 등을 사출하며 여기에 상품라벨을 전사한다. 용기 몸체에 필터를 조립하고 내용물을 주입한 후 잉크가 충전된 용기에 NIB를 조립한 후 제품을 지정된 사양으로 개별 또는 묶음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된다.



품 명	HS	설 명
촉	9608.10	마커의 주요 원재료
잉크	3215.90	
폴리프로필렌	3902.10	
전사필름	4816.90	
포장카드	4823.90	

한-캐나다 FTA는 마커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또는 제9608.60호~99호까지의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될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원재료를 예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만약 위재료가 모두 수입되어 역내에서 마커가 생산되었다면 촉(제9608.10호)이 마커와 4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촉의 가격이 마커의 가격에서 10%이내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비록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최소허용기준에 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제97류 예술품·수집과 골동품

1. 품목분류 체계

품목번호	품 명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9704	우표나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과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97류의 교역동향 및 대표 교역품목

가. 수출입 동향

‘14년 제97류의 대세계 교역은 28,960천달러 무역수지 적자기조를 기록하고 있다. ‘14년 기준 캐나다로의 수출은 17천달러, 수입은 549천달러이며 무역수지는 532천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HS 제97류의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 계	173,547	144,174	29,373	112,977	141,937	-28,960
對싱가포르	2,237	675	1,558	1,972	235	1,737
對호 주	246	293	-53	339	93	246
對캐나다	100	138	-42	17	549	-532
對뉴질랜드	13	9	1	20	77	-57

나. 주요 수출물품

제97류의 캐나다로의 수출상위품목은 9701103000(파스텔), 9702002000(인쇄화)이며 각각 13천달러, 4천달러를 캐나다로 수출하였다.

HS 제97류의 영연방 4개국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천불)

순번	對싱가포르		對호주		對캐나다		對뉴질랜드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HS 코드	금액
1	9701101000	1,174	9701101000	164	9701103000	13	9703001000	20
2	9703001000	517	9703001000	132	9702002000	4	9701101000	0
3	9701900000	211	9701900000	23	9701101000	0	9701900000	0
4	9702003000	56	9702002000	20	9701102000	0	9703002000	0
5	9701102000	7	9701102000	0	9701900000	0	9704001000	0
6	9701103000	7	9701103000	0	9703001000	0	9705000000	0

3. 제97류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가.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제97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영연방 4개국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7	CTH	CTH	CTH	CTH

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구성분석) 제97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해설) 제97류에 속하는 골동품 및 예술품은 한-캐나다 FTA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택하고 있으므로 상품과 동일한 호에 속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4개국 비교분석) 제97류의 물품에 대하여 영연방 4개국 모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일 기준을 택하고 있다.

Ⅲ. 비교우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비교우위 품목의 FTA체결국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규정의 지위가 상대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우리나라가 협상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캐나다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기에 유망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상대국이 맺은 FTA 중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적으로 FTA가 체결된 국가들 상호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수출유망품목은 상대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시장개방도, FTA 관세를 차등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상호간 공통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EFTA, 페루, 콜롬비아, 칠레 5개 국가로 이들 국가의 협정문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초자료로 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캐나다가 체결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출처]

NAFTA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nafta-alena/ann-401-09.aspx?lang=eng
EFTA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eu-ue/efta-annc-1.aspx?lang=eng#fnb1
페루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eru-perou/annex301-annexe301.aspx?lang=eng
콜롬비아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olombia-colombie/annex301-annexe301.aspx?lang=eng
칠레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hile-chili/roo-ro.aspx?lang=eng

1. 캐나다 주력 수출 품목

- 우리나라 對뉴질랜드 수출 주력 품목은 뉴질랜드의 대세계 수입규모, 한국의 점유율, 관세율 차이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14개 품목을 선정하였다.²²⁾

[한-캐나다 FTA 수출유망품목 현황]

연번	HS	품명
1	1212.21	식용의 해초류와 그밖의 조류
2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3	4202.3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	6402.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6	7305.31	철강제품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7	7409.4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9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10	8421.39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기타
11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12	8508.11	진공청소기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13	9029.1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14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22)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제83호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참조

2. 한-캐나다 FTA 주요 수출 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 제1212.21호

- (한-캐나다) 동 물품의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캐나다 기체결 협정) 캐나다가 기체결협정의 결정기준도 모두 2단위 세번변경기준
- (결정기준 비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차이점이 없음

HS code : 1212.21	
품명 : 식용의 해초류와 그밖의 조류	
한-캐나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NA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3902.30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다만 사용된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총 중량중 원산지폴리머가 50%이상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재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캐나다 기체결 협정) 캐나다-콜롬비아 FTA 및 캐나다-페루 FTA원재료 제한 규정(원산지 폴리머 60%이상 포함)을 두고 있으며, 기타 협정은 조합기준을 채택(4단위 변경+부가가치)하고 있음.
- (결정기준 비교)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 기체결 협정의 원산지기준 엄격성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 조합기준을 가지고 있는 FTA 역시 부가가치 비율이 낮지 않아 원재료 제한 규정과 다소 낮은 엄격성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HS code : 3902.30	
품명 : 프로필렌 공중합체	
한-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해당 물품의 폴리머 전체 중량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3901~3914호의 비원산지 polymer가 제품의 총 polymer 중량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BD60 또는 NC50

□ 제4202.32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캐나다 기체결 협정) 나프타 및 캐나다-칠레 FTA는 2단위 세번변경+제외세번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타 협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
- (결정기준 비교) 캐나다 기체결협정의 경우 4단위 변경기준 채택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제외세번 규정이 있는 협정이 있음. 이중 2단위 세번변경+제외세번을 규정하는 협정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한-캐나다 FTA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보다 와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HS code : 4202.32	
품명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한-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NA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 또는 5903.10.aa, 5903.20.aa, 5903.90.aa, 5906.99.aa or 5907.00.aa를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 또는 5903.10.aa, 5903.20.aa, 5903.90.aa, 5906.99.aa or 5907.00.aa를 제외한다)

□ 제5907.00호

- (한-캐나다 FTA) 2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캐나다 기체결 협정) 나프타, 캐나다-EFTA, 캐나다-칠레 FTA는 2단위 세번변경+제외세번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타 협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
- (결정기준 비교) 한-캐나다 FTA 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제외세번 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엄격성을 가지고 있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보다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기존 캐나다 기체결협정 중 중간 단계의 엄격성을 가진 기준이라 평가됨

HS code : 5907.00	
품명 :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한-캐나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NA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의 것,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의 것,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의 것,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E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의 것,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의 것,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의 것,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 또는 5903.10.aa, 5903.20.aa, 5903.90.aa, 5906.99.aa or 5907.00.aa를 제외한다)

□ 제6402.20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외세번 or 제외세번에서 변경시 부가가치기준(MC50%) 충족을 규정하고 있음(선택기준)
- (캐나다 기체결 협정) 캐나다 기체결 협정은 4단위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과 한-캐나다 FTA처럼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외세번 or 제외세번에서 변경시 부가가치기준(MC50%) 충족을 규정하는 협정이 있다.
-

- (결정기준 비교) 캐나다 기체결 협정의 4단위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보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외세번 or 제외세번에서 변경시 부가가치기준(MC50%)충족 기준이 완화된 결정기준이라 할 수 있음. 제외세번으로부터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이라는 완화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S code : 6402.20	
품명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한-캐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것은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64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640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소호 제6406.10호의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순원가법 55%이상인 것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6406은 제외한다) or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6406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406.10은 제외한다)+6406.10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6406은 제외한다) or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6406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406.10은 제외한다)+6406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6406은 제외한다) or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6406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406.10은 제외한다)+6406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6506.10호는 제외한다)+ NC55

□ 제7305.31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캐나다 기체결 협정) 캐나다 기체결 협정은 4단위변경기준 채택하고 있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는 협정이 있음
- (결정기준 비교) 캐나다 기협정 채택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한-캐나다 FTA는 보다 완화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할 수 있음

HS code : 7305.31	
품명 : 철강제품[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한-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NA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409.40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캐나다 기체결 협정) 4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결정기준 비교) 한-캐나다 FTA와 캐나다 기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함

HS code : 7409.40	
품명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한-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NA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8413.70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
기치기준 충족 규정
- (캐나다 기체결 협정) 나프타 및 캐나다-칠레, 캐나다-EFTA FTA 4단위 세번변경
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MC50% 충족 규정. 캐나다-페루 및
캐나다-콜롬비아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결정기준 비교)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 기체결 협정의 결적기준 중 보다 엄격
하다 할 수 있는 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기

치기준 충족 채택하고 있으나 그 수준(부가가치 비율)이 캐나다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 비율보다 엄격하다고는 할 수 없다.

HS code : 8413.70	
품명 : 그 밖의 원심펌프	
한-캐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3.91호 또는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3.91호 또는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소호 제8413.91호부터 제8413.92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8413.91~8413.92호로부터 변경된 것)+8413.91~8413.92의 비원산지 재료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CTSH
캐나다-콜롬비아	CTSH
캐나다-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소호 제8413.11호부터 제8413.8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35%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2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제8419.40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부가가치기준 충족 규정
- (캐나다 기체결 협정) 나프타 및 캐나다-칠레, 캐나다-EFTA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 규정. 캐나다-페루 및 캐나다-콜롬비아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결정기준 비교)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 기체결 협정의 결정기준 중 보다 엄격하다 할 수 있는 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 채택하고 있으나 그 수준(부가가치 비율)이 캐나다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 비율의 중간정보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캐나다 기체결 협정 중 나프타 및 캐나다-EFTA FTA 협정의 부가가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캐나다-칠레 FTA는 부가가치 비율은 낮다.

HS code : 8419.40	
품명 : 증류기나 정류기	
한-캐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소호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8419.90호로부터 변경된 것)+8419.90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CTSH
캐나다-콜롬비아	CTSH
캐나다-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소호 제8419.89호부터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35%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2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제8421.39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치기준 충족 규정
- (캐나다 기체결 협정) 나프타 및 캐나다-칠레, 캐나다-EFTA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 규정. 캐나다-페루 및 캐나다-콜롬비아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결정기준 비교)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 기체결 협정의 결정기준 중 보다 엄격하다 할 수 있는 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치기준 충족 채택하고 있으나 그 수준(부가가치 비율)이 캐나다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 비율의 중간정보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캐나다 기체결 협정 중 나프타 및 캐나다-EFTA FTA 협정의 부가가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캐나다-칠레 FTA는 부가가치 비율은 낮음

HS code : 8421.39	
품명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기타	
한-캐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소호 제8421.91호부터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8421.91~8421.99호로부터 변경된 것)+8421.91~8421.99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CTSH
캐나다-콜롬비아	CTSH
캐나다-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소호 제8421.91호부터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35%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2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제8481.30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치기준 충족 규정
- (캐나다 기체결 협정) 나프타 및 캐나다-칠레, 캐나다-EFTA, 캐나다-페루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 규정. 캐나다-콜롬비아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채택
- (결정기준 비교)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 기체결 협정의 결정기준 중 보다 엄격하다 할 수 있는 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치기준 충족 채택하고 있으나 그 수준(부가가치 비율)이 캐나다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 비율의 중간정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기체결 협정 중 나프타 및 캐나다-EFTA, 캐나다-페루 FTA의 부가가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캐나다-칠레 FTA는 부가가치 비율은 낮다.

HS code : 8481.30	
품명 : 체크(논리턴)밸브	
한-캐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소호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8481.90호로부터 변경된 것)+8481.90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8481.90호로부터 변경된 것)+8481.90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콜롬비아	CTS
캐나다-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소호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35%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25%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제8508.11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 가치기준 충족 규정
- (캐나다 기체결 협정) 캐나다-칠레, 캐나다-EFTA, 캐나다-페루, 캐나다-콜롬비아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 규정. 나프타는 4단위 세번변경+제외세번 or 제외세번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규정하고 있다.
- (결정기준 비교) 한-캐나다 FTA 및 캐나다 기체결 FTA 모두 동일한 수준의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다만 부가가치 비율이 캐나다 기체결 FTA가 다소 높은편이다.

HS code : 8508.11	
품명 : 진공청소기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한-캐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8.7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8.7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1호, 소호 제8508.19호, 소호 제8508.70호의 하우징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제8501호, 소호 제8508.19호, 제8508.70호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8508.70호로부터 변경된 것)+8508.70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8508.70호로부터 변경된 것)+8508.70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거래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8508.70호로부터 변경된 것)+8508.70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거래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칠레	해당 세번의 원산지 결정기준 누락

□ 제9029.10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치기준 충족 규정
- (캐나다 기체결 협정) 캐나다-EFTA, 캐나다-페루, 캐나다-콜롬비아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 규정. 나프타는 4단위 세번변경 or 6단위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충족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칠레 FTA는 6단위 세번변경을 채택하고 있다.
- (결정기준 비교) 캐나다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완화된 결정기준을 보이는 협정은 캐나다-칠레 FTA이나, 기타 협정들은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HS code : 9029.10	
품명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한-캐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9029.90호로부터 변경된 것)+9029.90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9029.90호로부터 변경된 것)+9029.90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9029.90호로부터 변경된 것)+9029.90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칠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9405.60호

- (한-캐나다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 규정
- (캐나다 기체결 협정) 캐나다-EFTA, 캐나다-페루, 캐나다-콜롬비아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 규정. 나프타 및 캐나다-칠레 FTA는 2단위 세번변경 or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규정하고 있음.
- (결정기준 비교) 캐나다의 기체결 FTA는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동일 특정소호에서의 생산시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동일 4단위 특정소호의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 하거나 다소 완화된 수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HS code : 9405.60	
품명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한-캐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NA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다른 소호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캐나다-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9405.91~9405.99호로부터 변경된 것)+9405.91~9405.99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9405.91~9405.99호로부터 변경된 것)+9405.91~9405.99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9405.91~9405.99호로부터 변경된 것)+9405.91~9405.99호의 비원산지재료가 거래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캐나다-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다른 소호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2단위 변경 여부는 상관 없다), 다만 공제법 60% 이상이거나 순원가법 50%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한-캐나다 FTA 주요 수출 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시사점

□ 주력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 정도

- 주력 수출품목의 한-캐나다 FTA와 캐나다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 비교 결과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은 비교대상 협정들(캐나다 기체결 협정)과 동일하거나 다소 완화된 결정기준을 채택하였으며, 강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원산지결정기준 형태

- 비교분석 과정에서 한-캐나다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주로 나타났던 선택기준 형태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or 동일 4단위 특정 소호에서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충족이며, 캐나다다 기체결 FTA에서 역시 동일한 형태(2단위내지는 4단위 세번변경 or 특정소호 생산시 부가가치기준 적용)의 기준이 주를 이룬다.
- 동 원산지결정기준 형태는 약어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CTSH(특정소호에서 변경)+RVC라 표현할 수 있음. 이때 특정소호에서 변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동 특정소호는 품목분류 확인 결과 완제품(원산지판정 제품)과 동일한 소호에 속하는 부분품이나 부품의 세번임.
- 즉 4단위 변경만을 채택하게 되면, 역외산 동일호의 부품을 10%이상(최소허용수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허용 수준 및 부분품의 역외산 사용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이는 추세라 판단된다.

IV. 수출유망품목 한-캐나다 FTA 활용가이드

한-캐나다 FTA

1. 개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인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대부분의 캐나다 품목은 2017년 또는 2019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한-캐나다 FTA는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및 부품 위주의 소수 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보다 다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교역 비중이 높은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인종별 인구 구조, 캐나다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 유통시장, 소비자 성향 등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캐나다의 대(對) 한국 수출입 동향

캐나다의 대(對) 한국 무역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3.2억 미국달러로, 캐나다의 대(對) 한국 수출은 약 37.6억 미국달러, 캐나다의 수입은 약 65.6억 미국달러를 기록하였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캐나다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2013년 37.2억 미국달러에서 2014년 28.0억 미국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대(對) 한국 수출입 동향(2010~2014)

(단위 : US 달러)

연도	수출	수입
2010	3,603,394,195	5,970,679,093
2011	5,148,677,200	6,674,642,446
2012	3,717,990,343	6,377,843,074
2013	3,399,443,840	7,125,578,189
2014	3,763,414,571	6,560,294,361

출처 : US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한국의 대(對) 캐나다 교역 동향

한국의 대(對) 캐나다 무역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3.6억 미국달러로,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은 약 49.2억 미국달러, 한국의 수입은 약 54.4억 미국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이 캐나다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전체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입 동향(2010~2014)

(단위 : 억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교역	수지	점유율(순위)*
2010	41.0	43.5	84.5	-2.5	1.5(7위)
2011	49.3	66.1	115.4	-16.8	1.5(7위)
2012	48.3	52.5	100.8	-4.2	1.4(7위)
2013	52.0	47.2	99.2	4.9	1.6(7위)
2014	49.2	54.4	103.6	-5.3	1.4(7위)

주 :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net)

2. 원산지 증명 가이드

1) 원산지증명서 서식

KRT²³⁾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작성이 필수이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이전 한국이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²⁴⁾ 적용국가였을 당시 사용했던 Form 1-Certificate of Origin 또는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지만,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된다(단, 그 유효기간을 해당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

2)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1회 혹은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동안 사용될 수 있다. 참고로 1000달러 미만인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불필요하다. 단, 발효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그 서명일로부터 2년이다.

3)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 두 종류가 있다. 기관발급방식의 경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인장이나 서명 등을 받는 방법이고, 자율발급방식의 경우 계약당사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23) KRT(Korea Tariff)란,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특혜 관세율을 말함

24)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특혜제도이며, 이러한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한해 품목별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함. 『한 - 캐나다 FTA 발효, 그런데 관세는 왜 늘어났나?』, Globalwindow 참조

직접 발급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한다. 한-캐나다 FTA의 경우 양국 모두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였다.

수출자와 상품의 생산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다음 중 하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가능		
①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②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4) 원산지 결정기준

기존의 일반특혜관세(GPT)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GPT 대상국가의 100% 영내생산, 부가가치 60% 법칙)였으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²⁵⁾.

일반특혜관세(GPT) 원산지 결정기준(2015년 1월 1일 이전)		
P	Wholly(100%) produced in the beneficiary	완전생산
F	at least 60% of the ex-factory price was produced in the GPT beneficiary country	부가가치기준
G	at least 60% of the ex-factory price was cumulatively produced in more than one GPT beneficiary country or Canada	부가가치기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기준(2015년 1월 1일 이후)		
A	협정 제3.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장, 제3.1조 나호, 부속서3-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부속서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25) 2015년 1월 1일 이전과 한-캐나다 FTA발효(2015년 1월 1일) 이후를 구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별지 제6호의13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From: ____/____/____ YYYY MM DD To: ____/____/____ YYYY MM DD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출처 : 관세청

주 : 원산지 증명에 대한 근거로 A, B, C, D 중 택일해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제7란에 기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 “A”) 양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아래 상품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7란에 “A”로 기입한다.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2조

분류	설명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무생물 천연자원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상품
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그 영역에서 전적으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초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 내수, 그리고 영해의 외측 한계선 내에서 수행된 수렵, 밋 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해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사	바초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함.
아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부에 따라 그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자	우주에서 취득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하고, 비당사국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해야 함.
차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회수된 부분품. 다만, 그 중고품은 그러한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하며 이로부터 회수된 부분품은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함.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출처 : 한-캐나다 FTA 협정문 제3장 제3.2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 “B”) 최종 상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의거해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경우, B로 기입한다. 예를 들어 최종 상품 F에 사용된 원재료가 X, Y, Z인 경우, 원재료 X, Y, Z는 아래 1목, 2목, 3목에 의거해 원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1목 : 원재료가 앞서 언급된 제3.2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로 간주

-2목 : 원재료가 제3.3조에 의거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산지 재료로 간주됨. 즉, 제3.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료’를 사용해, 오직 원산지 재료로만 최종 상품이 만들어졌을 경우는 B를, ‘최종 상품’이 제3.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는 C를 기입

-3목 : 최종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재료’가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의거해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최종상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1조 및 제3.3조

목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1조 가호 1목·2목·3목
1	제3.2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2	제3.3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우
3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항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3조
1	부속서 3-가의 상품에 대해 규정된 요건이 전적으로 충족되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아래의 C항목 참조)
2	부속서 3-가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가호 : 그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나호 : 그 상품과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출처 : 한-캐나다 FTA 협정문 제3장 제3.1조 및 제3.3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 “C”) 상품이 부속서3-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²⁶⁾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26) 부속서3-가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에 따라 특정 호(HS Code 4자리) 또는 특정 소호(HS Code 6자리)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Product Specific Rules, PSR)을 제시하는데, 이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생산을 나타냄. 크게 ① 단순한 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 “D”) 만약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이유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와 최종상품이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됐기 때문이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TV) 또는 공장도 가격(Ex-Works Price)의 5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

-제외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의 상품은 제외

-제8701호부터 제8708호까지(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상품은 거래가격/공장도 가격, 또는 순원가(Net Cost)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할 수 있음

3. 원산지 검증 가이드

1) 원산지 검증방식

원산지 검증방식으로는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수출국 세관에 요청해 수출국 관세행정기관이 검증을 주도하는 간접검증방식, 또는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방식이 있다.

한-캐나다 FTA는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캐나다 관세행정기관이 국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양국의 관세행정기관(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관세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상대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상대로 서면 문의 또는 기록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상품 생산설비 시찰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검증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방문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하게 된다.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방문수행의사를 전달하는 곳은 ①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②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③요청 시 방문을 제안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당사국 대사관이다.

이렇게 상대국의 관세행정기관에서 검증방문에 대한 요청이 오면 요청을 받은 곳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서면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방문검증에 동행할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회에 한해 최대 60일까지 방문검증 연기가 가능하며, 수입국은 이러한 연기를 이유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30일 이내에 방문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관세가 배제된다.

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과 ② 최고 비원산지 비율(Percentage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을 동반한 세번변경기준으로 나뉨

2)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명된 날로부터 5년간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해당 상품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보관하는 서류는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이다.

FTA특례법상 보관 서류

분류	설명
수출자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서 ·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출처 :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3) 원산지 검증에 대한 벌칙

원산지 검증 시 위반에 대한 조치로 각 당사국은 자국 법 및 규정에 의거해 형사, 민사 또는 행정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할 수 있다. 캐나다 관세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행정 제재 시스템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AMPS)에 따라 최대 2만5000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타 한-캐나다 FTA 활용 관련 유의사항²⁷⁾

1) 협정 적용의 영역(제1.9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고 정의한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공·내수 및 영해, 국제법과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의미한다.

2) 특혜관세의 신청절차(제4.2조)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특혜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하다.

3) 특혜관세대우 거부(제4.7조)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국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가. 상품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4)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제4.10조)

한-캐나다 FTA 협정문 제4.7조에 따라 한-캐나다 FTA에서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며, 사전심사 요청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이다. 이 효력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7)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참고

FTA 특례법상 신청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신청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결과를주관부서로통보(만료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 하다고 판단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한·미 FTA의 경우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 후 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20일
	사전심사 변경	신청인 주관부서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

출처 : 한-캐나다 FTA 운영 관세행정 주요내용, 관세청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 상위 20개 품목(HS 10단위 기준, 무세품목 제외) 대 부분에 대한 관세가 2017년 철폐 예정이다. 수출 상위품목인 승용차에 부과되던 6.1%의 관세는 2015.1.1.일 4.1%, 2016.1.1.일 2%로 인하되고, 2017.1.1일 완전 철폐되어 캐나다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고무타이어(7%), 냉장고(8%)에 대한 관세가 각각 5년, 3년 내에 균등 철폐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발효 시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FTA 발효를 통해 수출 품목이 보다 다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여 캐나다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캐나다의 인구 구성, 캐나다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 유통시장,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 뉴 질 렌 드



부

록



부록 1. 한-캐나다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별 HS code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01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류
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24, 0207.25, 0207.26, 0207.27, 0207.41, 0207.42, 0207.43, 0207.44, 0207.45, 0207.51, 0207.52, 0207.53, 0207.54, 0207.55, 0207.60, 0208, 0209.10, 0210.11, 0210.12, 0210.19, 0210.20, 0210.91, 0210.92, 0210.93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207.11, 0207.12, 0207.13, 0207.14, 0209.9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닭의 것: 다른 류(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210.99
0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301, 0302, 0303, 0304, 030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훈제한 것: 제0306.11호부터 제0308.90호까지의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훈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306, 0307, 0308
0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407, 0408, 0409, 0410
05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501, 0502, 0505, 0506, 0508, 0510, 0511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504
	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및 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507
06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601, 0602, 0604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603
07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류
08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8류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0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1.11, 0901.12, 0901.90, 0902, 0903, 0905, 0906.11, 0906.19, 0907, 0908, 0909, 0910
	2	제0901.21호 및 제0901.22호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1.21, 0901.22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904.11, 0904.12
	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10.80호 및 제2103.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904.21, 0904.22
	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6.20
1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0류
11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101, 1102, 1103, 1104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105, 1106, 1107, 1108, 1109
1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2류
1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3류
1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4류
15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11, 1515.19, 1515.90, 1516.20, 1517, 1518, 1520, 1521, 1522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515.21, 1515.29, 1515.30, 1515.5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물개 및 물개 제품으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516.10
16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601, 1602, 1603, 1604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306호부터 제0308호 까지에 해당하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605
17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701, 1702, 170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704
18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801, 1802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803, 1804, 1805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806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19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 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901.10 ,1901.9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버터지방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혼합물과 가루반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 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901.20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902 ,1903
	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904, 1905
2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009.11, 2009.12, 2009.19, 2009.21, 2009.29, 2009.31, 2009.39
	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09.41, 2009.49, 2009.50, 2009.61, 2009.69, 2009.71, 2009.79, 2009.81, 2009.89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크랜베리 혼합주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09.90
21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2, 2103.10, 2103.20, 2103.30, 2104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고추장(hot pepper paste): 다른 류에 해당하는	2103.9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재료(제0709.60호, 제0904.21호 및 제0904.2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된장(bean past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105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106
2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2.10,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20, 2208.40, 2208.50, 2208.60, 2208.70, 2208.90, 220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를 함유한 음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2.90
	4	제2208.3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203호부터 제2208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알코올 용량이 해당 물품의 알코올 전체 용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208.30
2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09.1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사료용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한 것 2.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09.90
2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4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402, 2403
2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5류
2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6류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8, 2709, 2712, 2713.11, 2713.12, 2713.90, 2714, 2715, 271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707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707.10, 2707.20, 2707.30, 2707.40, 2707.50, 2707.91
27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페놀: 제2709.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3. 기타: 제2709.99호에 해당하는 페놀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707.99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화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 3. 직접 혼합의 결과로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용량이 해당 물품 용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710
	5	제2711.11부터 제2711.13까지의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용량	2711.11 2711.12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이 해당 물품 용량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711.13
	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711.14 2711.19
	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711.21
	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12호부터 제2711.2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711.29
	9	제2713.2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용량이 해당 물품 용량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713.20
28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01, 2802, 2803, 2804.70, 2804.80, 2804.90,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5.20, 2815.30, 2816,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2, 285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04.10, 2804.21, 2804.29, 2804.30, 2804.40, 2804.50, 2804.61, 2804.69, 2814, 2815.11, 2815.12, 2817, 2818
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9류
30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001, 3002, 3006.10, 3006.20, 3006.30, 3006.40, 3006.50, 3006.60, 3006.7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3003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003호의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003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 및 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004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005
	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006.91
	6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006.92
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31류
32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201, 3202, 3204, 3206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203, 3205,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3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3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1.11, 3401.19, 3401.20, 3404, 3405, 3406, 3407, 3402.1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401.30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2.12, 3402.13, 3402.19, 3402.90, 3403
	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4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402.20
35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501, 3502.20, 3502.9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502.11, 3502.19, 3503, 3504, 3505, 3506, 3507
3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36류
3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7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702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703, 3704, 3705, 3706, 3707
3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01, 3802, 3803, 3804, 3807, 3808, 3810,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1, 3822, 3824, 3826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05, 3806, 3809, 3811, 3823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05.31호의 것은	382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905.3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3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8류부터 제37류까지, 제40류 및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825
3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해당 물품의 폴리머 전체 중량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901, 3902, 3903, 3904, 3905, 3906, 3907, 3908, 3909, 3910, 3911, 3912, 3913, 3914, 3915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01, 4002, 4003, 4004, 4005,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400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0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4006
41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1, 4102, 410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4.11, 4104.19, 4105.10, 4106.21, 4106.31, 4106.91, 4107, 4112, 4113, 4114, 4115
	3	제4104.11호 또는 제4104.1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4.41, 4104.49
	4	제4105.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5.30
	5	제4106.2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22
	6	제4106.31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32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7	1. 유연처리한 원피[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크러스트 원피: 제4106.40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한 원피[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4106.40
	8	제4106.9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6.92
4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2류
4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3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302, 4303, 4304
4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4류
4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5류
4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6류
4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701, 4702, 4705, 4706, 4707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703, 4704
4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8류
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9류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001, 5002, 500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004, 5005, 5006
5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5007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101, 5102, 5103, 5104, 5105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106, 5107, 5108, 5109, 5110
5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5111, 5112, 511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201, 5202, 5203
52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204, 5205, 5206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207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5208, 5209, 5210, 5211, 5212
5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301, 5302, 5303, 5305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306, 5307, 5308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5309, 5310, 5311
5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401, 5402, 5403, 5404, 5405, 540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5407, 5408
55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508, 5509, 5510, 551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5512, 5513, 5514, 5515, 5516
5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601, 5602, 5603, 5604, 5605, 5606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608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부터 제5406호까지 및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607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부터 제5406호까지 및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609
57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57류
58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58류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901, 5902, 5903, 5904, 5905, 5906, 5907, 5908, 5909, 5911
59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 제5308호, 제5310호, 제5311호, 제54류 및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910
6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생지(greige)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생지가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60류
6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봉제 또는 기타의 결합 공정이 요구되지 않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진 것	제61류
6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제62류
6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 제5311호, 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3호까지, 제5903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301, 6302, 6303, 6304, 6305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6306, 6307
	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직물 또는 사(絲)가 별도로 분류될 경우 그 직물 또는 사(絲)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6308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체약당사국에서 최종 수집되고 선적을 위하여 포장된 것	6309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념마(신품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체약당사국에서 최종 수집되고 선적을 위하여 포장된 것	6310
64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64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640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6401, 6402, 6403, 6404, 6405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406
6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5류
66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6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66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66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6601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602, 6603
6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670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깃털 또는 솜털 제품	67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702, 6703, 6704
6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8류
6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9류
7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001, 7002, 7003, 7004, 7005, 7006, 7007, 7008, 7009.91, 7009.92, 7010, 7011, 7013, 7014, 7015, 7016, 7017, 7018, 702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009.10, 7019.11, 7019.12, 7019.19, 7019.31, 7019.32, 7019.39, 7019.40, 7019.52, 7019.59, 7019.90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019.52호 및 제7019.5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019.51
7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01, 7102, 7103, 7104, 7105, 7108, 711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06, 7107, 7109, 7111, 7112, 7113, 7114, 7115, 7116, 7117, 7118
7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2류
7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1, 7302, 7303, 7304.11, 7304.19, 7304.22, 7304.23, 7304.24, 7304.29, 7304.31, 7304.39, 7304.49, 7304.59, 7304.90, 7305, 7306, 7308, 7309, 7310, 7311, 7312, 7313, 7314, 7315.19, 7316, 7317, 7318, 7319, 7320, 7315.90, 7321.90, 7322, 7323, 7324.90, 7325, 7326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4.41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4.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03호부터 제73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03호부터 제7306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03호부터 제7306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07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15.1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15.1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15.11, 7315.12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1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1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15.20, 7315.81, 7315.82, 7315.89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21.11, 7321.12, 7321.19, 7321.81, 7321.82, 7321.89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2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2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324.10, 7324.21, 7324.29
7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401, 7402, 7403, 7404, 7405, 7406, 7407, 7408, 7409, 7410, 7411, 7415, 7418, 741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41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41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412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40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40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413
7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501, 7502, 7503, 7504, 7505.11, 7505.12, 7507, 7508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505.21 7505.2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5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두께 0.15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7506
7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601, 7602, 7604, 7605, 7606, 7607, 7608, 7610, 7611, 7612, 7613, 7615, 7616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603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60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60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609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60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605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7614
7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801, 780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7804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804.1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7804.11호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봉, 프로파일(profile), 선(線), 관(管) 및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엘보(elbow), 슬리브(sleeve)]: 제780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806
7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901, 7902, 7903
	2	제7904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904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90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7905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관(管) 및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엘보(elbow), 슬리브(sleeve)]: 제7907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7907
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001, 8002
	2	제80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003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박(箔)(인쇄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덧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가루와 플레이크(flake), 관(管) 및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엘보(elbow), 슬리브(sleeve)]: 제8007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8007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8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81류
8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01, 8202.10, 8202.20, 8202.39, 8202.40, 8202.91, 8202.99, 8203, 8204, 8205.10, 8205.20, 8205.30, 8205.40, 8205.51, 8205.59, 8205.60, 8205.70, 8207.19, 8207.20, 8207.30, 8207.40, 8207.50, 8207.60, 8207.70, 8207.80, 8207.90, 8208, 8209, 8210, 8211.94, 8211.95, 8212, 8213, 8215.91, 8215.99, 8214.10, 8214.9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2.3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3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02.3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5.90호 또는 제8205.10호부터 제8205.70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5.90호 또는 제8205.10호부터 제8205.70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05.9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06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07.19호 또는 제820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8207.13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7.19호 또는 제820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14호 및 제821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11.91호부터 제8211.93호까지, 제8214호 또는 제821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11.91호부터 제8211.93호까지, 제8214호 또는 제8215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11.10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11.94호 또는 제8211.9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11.94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11.91, 8211.92, 8211.93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14.2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세트물품.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14.20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211호, 제8215.91호 또는 제8215.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11호, 제8215.91호 또는 제8215.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215.10, 8215.20
8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8301.10, 8301.20, 8301.30, 8301.40, 8301.5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301.6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301.6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01.60, 8301.70, 8302, 8303, 8304, 8305.90, 8306, 8307, 8308.90, 8309, 8310, 8311.9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30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30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305.10, 8305.2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30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30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308.10, 8308.2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31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31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311.10, 8311.20, 8311.30
8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1.10, 8401.20, 8401.30, 8432.10, 8432.21, 8432.29, 8432.30, 8432.40, 8432.80, 8433.11, 8433.19, 8433.20, 8433.30, 8433.40, 8433.51, 8433.52, 8433.53, 8433.59, 8433.60, 8434.10, 8434.20, 8470, 8471, 8474.10, 8474.20, 8474.31, 8474.32, 8474.39, 8474.8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1.40, 8402.90, 8403.90, 8404.90, 8405.90, 8406.90, 8410.90, 8409, 8411.91, 8411.99, 8412.90, 8413.91,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8413.92, 8414.90, 8415.90, 8416.90, 8417.90, 8418.91, 8418.99, 8419.90, 8420.91, 8420.99, 8421.91, 8421.99, 8422.90, 8423.90, 8424.90, 8425, 8426, 8428, 8429, 8430, 8431, 8432.90, 8433.90, 8434.90, 8435.90, 8436.91, 8436.99, 8437.90, 8438.90, 8439.91, 8439.99, 8440.90, 8441.90, 8442.40, 8442.50, 8443.91, 8443.99, 8448.20, 8448.31, 8448.32, 8448.33, 8448.39, 8448.42, 8448.49, 8448.51, 8448.59, 8449, 8450.90, 8451.90, 8452.90, 8453.90, 8454.90, 8455.30, 8455.90, 8466, 8467.91, 8467.92, 8467.99, 8468.90, 8469, 8473, 8474.90, 8475.90, 8476.90, 8477.90, 8478.90, 8479.90, 8480, 8481.90, 8482.91, 8482.99, 8483.90, 8484.10, 8484.20, 8486.90, 8487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2.11, 8402.12, 8402.19, 8402.2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3.1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4.10, 8404.2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5.10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6.10, 8406.81, 8406.82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07, 8408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0.11, 8410.12, 8410.13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1.91호 또는 제8411.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1.91호 또는 제8411.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1.11, 8411.12, 8411.21, 8411.22, 8411.81, 8411.82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12.10, 8412.21, 8412.29, 8412.31, 8412.39, 8412.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다만, 제841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3.91호 또는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3.91호 또는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3.11, 8413.19, 8413.20, 8413.30, 8413.40, 8413.50, 8413.60, 8413.70, 8413.81, 8413.82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4.10, 8414.20, 8414.30, 8414.40, 8414.51, 8414.59, 8414.60, 8414.80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5.10, 8415.20, 8415.81, 8415.82, 8415.83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6.10, 8416.20, 8416.30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7.10, 8417.20, 8417.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8.91호 또는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8.91호 또는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8.10, 8418.21, 8418.29, 8418.30, 8418.40, 8418.50, 8418.61, 8418.69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19.11, 8419.19, 8419.20, 8419.31, 8419.32, 8419.39, 8419.40, 8419.50, 8419.60, 8419.81, 8419.89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0.91호 또는 제8420.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0.91호 또는 제8420.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0.10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1.9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1.9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1.11, 8421.12, 8421.19
	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1.21, 8421.22, 8421.23, 8421.29, 8421.31, 8421.39
	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22.11 8422.19, 8422.20, 8422.30, 8422.4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다만,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3.10, 8423.20, 8423.30, 8423.81, 8423.82, 8423.89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2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2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4.10, 8424.20, 8424.30, 8424.81, 8424.89
	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27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5.10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6.91호 또는 제8436.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6.91호 또는 제8436.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6.10, 8436.21, 8436.29, 8436.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7.10, 8437.80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8.10, 8438.20, 8438.30, 8438.40, 8438.50, 8438.60, 8438.80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39.91호 또는 제8439.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39.91호 또는 제8439.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39.10, 8439.20, 8439.30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0.10
	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1.10, 8441.20, 8441.30, 8441.40, 8441.80
	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2.40호 또는 제8442.50호에 해당하는 재료	8442.3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2.40호 또는 제8442.5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3.91호 또는 제8443.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3.91호 또는 제8443.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3.11, 8443.12, 8443.13, 8443.14, 8443.15, 8443.16, 8443.17, 8443.19, 8443.31, 8443.32, 8443.39
	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4, 8445, 8446, 8447
	3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48.20호부터 제8448.5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48.20호부터 제8448.5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48.11, 8448.19
	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0.11, 8450.12, 8450.19, 8450.20
	3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1.10, 8451.21, 8451.29, 8451.30, 8451.40, 8451.50, 8451.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2.10, 8452.21, 8452.29, 8452.30
	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3.10, 8453.20, 8453.80
	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4.10, 8454.20, 8454.30
	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5.30호 또는 제845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5.30호 또는 제845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5.10, 8455.21, 8455.22
	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56,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59호 및 제8466호	8457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59호 또는 제8466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59호 또는 제846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4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6.9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6.9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4
4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66.9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6.9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6.9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5
4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7.91호부터 제8467.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7.91호부터 제8467.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7.11, 8467.19, 8467.21, 8467.22, 8467.29, 8467.81, 8467.89
4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6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6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68.10, 8468.20, 8468.80
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8472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7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5.10, 8475.21, 8475.29
	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6.21, 8476.29, 8476.81, 8476.89
	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7.10, 8477.20, 8477.30, 8477.40, 8477.51, 8477.59, 8477.80
	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8.10
	5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7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7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79.10, 8479.20, 8479.30, 8479.40, 8479.50, 8479.60, 8479.71, 8479.79, 8479.81, 8479.82, 8479.89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5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1.10, 8481.20, 8481.30, 8481.40, 8481.80
	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2.91호 또는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2.91호 또는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2.10, 8482.20, 8482.30, 8482.40, 8482.50, 8482.80
	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3.10, 8483.30, 8483.40, 8483.50, 8483.60
	5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2호 또는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2호 또는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3.20
	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484.90
	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8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	8486.10, 8486.20, 8486.30, 8486.4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06호, 제8411호, 제8501호 및 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06호, 제8411호, 제8501호 또는 제8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406호, 제8411호, 제8501호 또는 제85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2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03, 8504.90, 8505.90, 8506.90, 8507.90, 8508.70, 8509.90, 8510.90, 8511.90, 8512.90, 8513.90, 8514.90, 8515.90, 8516.90, 8518.90, 8522, 8523, 8528, 8529, 8530.90, 8531.90, 8532.90, 8534, 8538, 8539.90, 8540.91, 8540.99, 8543.90, 8544.11, 8544.19, 8544.20, 8544.30, 8544.42, 8544.49, 8544.60, 8545, 8546, 8547, 8548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4.10, 8504.21, 8504.22, 8504.23, 8504.31, 8504.32, 8504.33, 8504.34
	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04.40, 8504.50, 8516.10, 8516.21, 8516.29, 8516.31, 8516.32, 8516.33,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8516.40, 8516.50, 8516.60, 8516.71, 8516.72, 8516.79, 8516.80, 8517, 8521, 8526, 8527, 8532.10, 8532.21, 8532.22, 8532.23, 8532.24, 8532.25, 8532.29, 8532.30, 8533.10, 8533.21, 8533.29, 8533.31, 8533.39, 8533.40, 8533.90, 8541, 8542, 8543.70, 8544.70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5.11, 8505.19, 8505.20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6.10, 8506.30, 8506.40, 8506.50, 8506.60, 8506.80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7.10, 8507.20, 8507.30, 8507.40, 8507.50, 8507.60, 8507.80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8.7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8.7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08.11, 8508.19, 8508.60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0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	8509.40, 8509.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0.10, 8510.20, 8510.30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1.10, 8511.20, 8511.30, 8511.40 8511.50, 8511.80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2.10 8512.20 8512.30 8512.40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3.10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4.10 8514.20 8514.30 8514.40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515.11 8515.19 8515.21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2. 제851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5.29 8515.31 8515.39 8515.80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8.10 8518.21 8518.22 8518.29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10호, 제8518.21호부터 제8518.29호까지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세트물품. 다만, 제8518.10호, 제8518.21호부터 제8518.29호까지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제8518.10호, 제8518.21호부터 제8518.29호까지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10호, 제8518.21호부터 제8518.29호까지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8.30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8.40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18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1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8.5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2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2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19
	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25.8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8525.80호의 자이로스테블라이즈드 카메라(gyrostabilized camera)	8525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30.10 8530.80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31.10 8531.20 8531.80
	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8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35 8536 8537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	8539.10 8539.21 8539.22 8539.29 8539.31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39.32 8539.39 8539.41 8539.49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40.91호 또는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40.91호 또는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40.71 8540.79 8540.81 8540.89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4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4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543.10 8543.20 8543.30
8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601, 8602, 8607, 8608, 860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6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607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607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603, 8604, 8605, 8606
8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 2.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이상인 것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8707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07호의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07호의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08호의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08호의 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08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0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0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09.11, 8709.19
	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709.90, 8710, 8714.99, 8715, 8716.90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71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14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14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11, 8712, 8713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14.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14.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714.10, 8714.20, 8714.91, 8714.92, 8714.93, 8714.94, 8714.95, 8714.96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8716.10, 8716.20, 8716.31, 8716.39, 8716.40, 8716.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8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801, 8802, 880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804, 8805
8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89류
9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01, 9003.90, 9005.90, 9006.91, 9006.99, 9007.91, 9007.92, 9008.90, 9010.90, 9011.90, 9012.90, 9013.90, 9014.90, 9015.90, 9016, 9017.90, 9022.90, 9023, 9024.90, 9025.90, 9026.90, 9027.90, 9028.90, 9029.90, 9030.90, 9031.90, 9032.90, 903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3.11 9003.19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4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05.10 9005.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2.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6.91호 또는 제9006.9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6.91호 또는 제9006.9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6.10 9006.30 9006.40 9006.51 9006.52 9006.53 9006.59 9006.61 9006.69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7.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제9007.10호의 자이로스태블라이즈드 카메라 (gyrostabilized camera) 3. 제9007.9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7.9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7.10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7.92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7.92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7.20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0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0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08.50
	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0.10, 9011.10, 9011.20, 9011.80, 9012.10, 9018, 9019, 9020, 9021, 9022.12, 9022.19, 9022.21, 9026.10, 9026.20, 9026.80, 9027.20, 9027.3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9027.50, 9027.80, 9030.10, 9030.20, 9030.31, 9030.32, 9030.33, 9030.39, 9030.40, 9030.82, 9030.84, 9030.89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0.50 9010.60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3.10 9013.20 9013.80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4.10 9014.20 9014.80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5.10 9015.20 9015.30 9015.40 9015.80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17.10 9017.20 9017.30 9017.80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22.13 9022.14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2.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2.29 9022.30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4.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4.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4.10 9024.80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5.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5.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5.11 9025.19 9025.80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7.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7.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7.10
	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8.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8.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8.10 9028.20 9028.3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29.10 9029.20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3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3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31.10 9031.20 9031.41 9031.49 9031.80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3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3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032.10 9032.20 9032.81 9032.89
9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108호부터 제911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018호부터 제91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018호부터 제9114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108, 9109, 9110, 9111.90, 9112.90, 9113, 9114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11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11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111.10 9111.20 9111.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11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11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112.20
92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2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20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20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201, 9202, 9205, 9206, 9207, 9208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209
9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93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305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305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301, 9302, 9303, 9304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305, 9306, 9307
94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401.10, 9401.20, 9401.30, 9401.40, 9401.51, 9401.59, 9401.61, 9401.69, 9401.71, 9401.79, 9401.8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401.90, 9402, 9403.90, 9404, 9405.91, 9405.92, 9405.99, 9406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403.10, 9403.20, 9403.30, 9403.40, 9403.50, 9403.60, 9403.70, 9403.81, 9403.89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405.10, 9405.20, 9405.30, 9405.40, 9405.50, 9405.6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503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5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503
95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504, 9505, 9506.11, 9506.12, 9506.19, 9506.21, 9506.29, 9506.32, 9506.39, 9506.40, 9506.51, 9506.59, 9506.61, 9506.62, 9506.69, 9506.70, 9506.91, 9506.99, 9507, 9508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506.3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506.3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506.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01, 9602, 9603, 9604, 9606.10, 9606.30, 9607.20, 9608.60, 9608.91, 9608.99, 9609, 9610, 9612, 9613.90, 9614, 9615, 9616, 9617, 9618, 9619
9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5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9606.21, 9606.22, 9606.29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6.3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6.3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7.11, 9607.19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8.60호부터 제96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8.10, 9608.20, 9608.30, 9608.40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08.10호부터 제9608.40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08.10호부터 제9608.40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08.50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11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세트물품. 다만, 제961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611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	9613.10, 9613.20, 9613.80

류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
		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97류

부록 2. 한-뉴질랜드 FTA 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별 HS code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01	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류
0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류
03	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1, 0302, 0303, 0307.11, 0307.21, 0307.31, 0307.41, 0307.51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304, 0305, 0307.71, 0307.81, 0307.91, 0308.11, 0308.2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훈제한 것: 제0306.11호부터 제0308.90호까지의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훈제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1, 0306.12, 0306.14, 0306.15, 0306.16, 0306.17, 0306.19, 0306.21, 0306.22, 0306.24, 0306.25, 0306.26, 0306.27, 0307.19, 0307.29, 0307.39, 0307.49, 0307.59, 0307.6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훈제한 것: 제0306.11호부터 제0308.90호까지의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훈제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306.29, 0307.79, 0307.89, 0307.99, 0308.19, 0308.29, 0308.30, 0308.90
0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류
05	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0501, 0502, 0507, 0508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 및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504, 0506, 0511.99
	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505, 0510, 0511.10, 0511.91
06	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6류
07	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3, 0714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710, 0711, 0712
08	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3.10, 0813.20, 0813.30, 0813.40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811, 0812, 0813.50, 0814
0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1.11, 0901.12, 0901.90, 0902, 0903, 0904.11, 0904.12, 0905, 0906, 0907, 0908, 0909, 0910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0901.21, 0901.22
	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9.60호 및 제0710.8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0904.21, 0904.22
10	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0류
11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제10류는 제외한다)	1101, 1102, 1103, 1104, 1107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105
	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및 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106
	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7류 및 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108, 1109
12	1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9, 1211, 1212, 1213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208, 1210, 1214
1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301, 1302.11, 1302.12, 1302.13, 1302.20, 1302.31, 1302.32, 1302.39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1302.19
1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4류
1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5류
16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6류
1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701.12, 1701.13, 1701.14, 1702, 1703, 1704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701.91, 1701.99
18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801, 1802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803, 1804, 1805, 1806.10, 1806.20, 1806.32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806.31, 1806.90
1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901.10, 1902, 1905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제1006호 및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	1901.20, 1901.90
	3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903, 1904.10, 1904.20, 1904.30
	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제1006호는 제외한다)	1904.90
2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08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9
2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1, 2102, 2105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103.10, 2103.20, 2103.30, 2104, 2106.1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103.9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106.90
2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1, 2202.1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202.90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01, 2303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02,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4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402, 2403
2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5류
2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6류
2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8, 2709,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707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71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	2710
2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01, 2802, 2803, 2804, 2805, 2807, 2808, 2810, 2814, 2817, 2822, 2823, 2825.90, 2845, 2846, 2847, 2848, 2850, 2852, 2853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806, 2809, 2811, 2812, 2813,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4, 2825.90,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9
29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901, 2902, 2903.11, 2903.12, 2903.13, 2903.14, 2903.15, 2903.19, 2903.21, 2903.22, 2903.23, 2903.29, 2903.31, 2903.39, 2903.71, 2903.72, 2903.73, 2903.74, 2903.75, 2903.76, 2903.78, 2903.79,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2903.81, 2903.82, 2903.89, 2903.91, 2903.92, 2903.99, 2904, 2905, 2906, 2907, 2909, 2910, 2912, 2914.11, 2914.12, 2914.13, 2914.19, 2914.22, 2914.23, 2914.31, 2914.39, 2914.40, 2914.50, 2914.61, 2914.69, 2914.70, 2915, 2916.11, 2916.12, 2916.13, 2916.14, 2916.15, 2916.16, 2916.19, 2916.20, 2916.31, 2916.32, 2916.34, 2917, 2918,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9, 2930, 2932.11, 2932.12, 2932.13, 2932.19, 2932.91, 2932.92, 2932.93, 2932.94, 2932.95, 2932.99, 2933, 2934, 2936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908, 2911, 2913, 2919, 2927, 2928, 2931, 2935,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03.77, 2914.29, 2916.39, 2932.20
3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3001, 3002.20, 3002.3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3002.1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3002.90
	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003, 3005, 3006
	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004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3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101, 3105.9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3102, 3103, 3104, 3105.10, 3105.20, 3105.30, 3105.40, 3105.51, 3105.59, 3105.60
32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3201, 3202, 3203, 3204, 3206, 3207, 3208, 3209, 3212, 3214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3205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210, 3211, 3213, 3215
33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3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1, 3402, 3403, 3404, 3406, 3407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405
35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501, 3502, 3505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503, 3504, 3506, 3507
3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36류
3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701.10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701.20, 3701.30, 3701.91, 3701.99, 3702.31, 3702.32, 3702.39, 3702.41, 3702.42, 3702.43, 3702.44, 3702.52, 3702.53, 3702.53, 3702.54, 3702.55, 3702.56, 3702.96, 3702.97, 3702.98, 3703, 3704, 3705, 3706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3702.10
	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707
38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01, 3806, 3823, 3824, 3826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802, 3803, 3804, 3805, 3807,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3808
3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39류
4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0류
4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1, 4102, 4103, 4104.11, 4104.19, 4105.10, 4106.21, 4106.31, 4106.91, 4107, 4112, 4113, 4114, 4115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104.41, 4105.30, 4106.22, 4106.32, 4106.92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104.4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4104.49
	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젖은 상태에서 건조된 상태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4106.40
4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2류
4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3류
4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4류
4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5류
4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6류
4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7류
4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4813, 4814,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4816
4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49류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5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001, 5002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003, 5004, 5005, 5007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및 제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006
51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101, 5102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10, 5111, 5112, 5113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109
5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201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202, 5203, 5204, 5205, 5206, 5208, 5209, 5210, 5211, 5212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 및 제52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207
53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301, 5302, 530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54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401, 5402, 5403, 5404, 5405, 5406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407, 5408
55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501, 5502, 5503, 5504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2, 5513, 5514, 5515, 5516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9호 및 제55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511
56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601, 5602, 5604, 5605, 5606, 5607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603, 5608, 5609
57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701, 5702, 5703, 5705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602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704
58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810, 5811
59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59류
60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0류
61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1류
6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2류
63	1	2단위 세번변경기준(표백되거나 염색되지 않은 직물로부터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 6302, 6303, 6304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305, 6306, 6307, 6308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309, 6310
6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401, 6402, 6403, 6404, 640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6406
65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6501, 6502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504, 6505, 6506, 6507
6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6류
6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7류
6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68류
6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901, 6902, 6903, 6904, 6905, 6906, 6907, 6909, 6910, 6911, 6912, 6913, 6914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6908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7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0류
7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01, 7104.10, 7104.20, 7105, 7106, 7107, 7111, 7112, 7113, 7114, 7115, 7116, 7117, 7118
	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02, 7103.10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03.91, 7103.99, 7104.90, 7108, 7109, 7110
7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201, 7202, 7203, 7204,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6, 7217, 7218,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214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3호 및 제721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215.10
	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3호 및 제721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215.50
	5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3호 및 제721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215.90
	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219, 7220
73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01, 7302,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7312, 7313, 7314, 7315, 7316, 7317, 7318, 731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320, 7321.90, 7321.11, 7322.19, 7322.90
	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321.11, 7321.12, 7321.19, 7321.81, 7321.82, 7321.89
7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401, 7402, 7403, 7404, 7405, 7406, 7407, 7409, 7411, 7413, 7415, 7418, 7419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408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410
	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1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412
75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5류
7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601, 7602, 7603, 7604, 7606, 7607, 7608, 7610, 7611, 7612, 7613, 7614, 7615, 7616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605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609
78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8류
79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9류
80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80류
8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101, 8102, 8103, 8104, 8105, 8106, 8107, 8108, 8109, 8110, 8112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113
82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201, 8203, 8204, 8205, 8206, 8208, 8209, 8211, 8212, 8213, 8214, 821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202, 8207, 8210
8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301.10, 8301.30, 8301.40, 8301.50, 8301.60, 8301.70, 8308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01.20, 8305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302, 8303, 8304, 8306, 8307, 8309, 8310, 8311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84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1.10, 8401.20, 8401.30, 8402.11, 8402.12, 8402.19, 8402.20, 8403.10, 8404.10, 8404.20, 8405.10, 8406.10, 8411.11, 8411.12, 8411.21, 8411.22, 8411.81, 8411.82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1.40, 841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02.90, 8403.90, 8404.90, 8405.90, 8406.90, 8407, 8408, 8409, 8411.91, 8411.99, 8412.90, 8413.91, 8413.92, 8414.90, 8415.90, 8416.90, 8417.90, 8418.91, 8418.99, 8419.90, 8420.99, 8421.91, 8421.99, 8422.90, 8423.90, 8424.90, 8425, 8426, 8427, 8428, 8429, 8430, 8431, 8432.90, 8433.90, 8434.90, 8435.90, 8436.91, 8436.99, 8437.90, 8438.90, 8439.91, 8439.99, 8440.90, 8441.90, 8442.40, 8443.91, 8443.99, 8444, 8445, 8446, 8447, 8448, 8449, 8450.90, 8451.90, 8452.90, 8453.90, 8454.90, 8455.90, 8456, 8457,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8464, 8465, 8466, 8467.91, 8467.92, 8467.99, 8468.90, 8469, 8470, 8471, 8472, 8473, 8474.90, 8475.90, 8476.90, 8477.90, 8478.90, 8479.90, 8480, 8481.90, 8482.91, 8482.99, 8486.90, 8487.9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06.81, 8406.82, 8412.10, 8412.21, 8412.29, 8412.31, 8412.39, 8412.80, 8413.11, 8413.19, 8413.20, 8413.30, 8413.40, 8413.50, 8413.60, 8413.70, 8413.81, 8413.82, 8414.10, 8414.20, 8414.30,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8414.40, 8414.51, 8414.59, 8414.60, 8414.80, 8415.10, 8415.20, 8415.81, 8415.82, 8415.83, 8416.10, 8416.20, 8416.30, 8417.10, 8417.20, 8417.80, 8418.10, 8418.21, 8418.29, 8418.30, 8418.40, 8418.50, 8418.61, 8418.69, 8419.11, 8419.19, 8419.20, 8419.31, 8419.32, 8419.39, 8419.40, 8419.50, 8419.60, 8419.81, 8419.89, 8420.10, 8420.91, 8421.11, 8421.12, 8421.19, 8421.21, 8421.22, 8421.23, 8421.29, 8421.31, 8421.39, 8422.11, 8422.19, 8422.20, 8422.30, 8422.40, 8423.10, 8423.20, 8423.30, 8423.81, 8423.82, 8423.89, 8424.10, 8424.20, 8424.30, 8424.81, 8424.89, 8432.10, 8432.21, 8432.29, 8432.30, 8432.40, 8432.80, 8433.11, 8433.19, 8433.20, 8433.30, 8433.40, 8433.51, 8433.52, 8433.53, 8433.59, 8433.60, 8434.10, 8434.20, 8435.10, 8436.10, 8436.21, 8436.29, 8436.80, 8437.10, 8437.80, 8438.10, 8438.20, 8438.30, 8438.40, 8438.50, 8438.60, 8438.80, 8439.10, 8439.20, 8439.30, 8440.10, 8441.10, 8441.20, 8441.30, 8441.40, 8441.80, 8442.30, 8442.50, 8443.11, 8443.12, 8443.13, 8443.14, 8443.15, 8443.16, 8443.17, 8443.19, 8443.31, 8443.32, 8443.39, 8450.11, 8450.12, 8450.19, 8450.20,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8451.10, 8451.21, 8451.29, 8451.30, 8451.40, 8451.50, 8451.80, 8452.10, 8452.21, 8452.29, 8452.30, 8453.10, 8453.20, 8453.80, 8454.10, 8454.20, 8454.30, 8455.10, 8455.21, 8455.22, 8455.30, 8467.11, 8467.19, 8467.21, 8467.22, 8467.29, 8467.81, 8467.89, 8468.10, 8468.20, 8468.80, 8474.10, 8474.20, 8474.31, 8474.32, 8474.39, 8474.80, 8475.10, 8475.21, 8475.29, 8476.21, 8476.29, 8476.81, 8476.89, 8477.10, 8477.20, 8477.30, 8477.40, 8477.51, 8477.59, 8477.80, 8478.10, 8479.10, 8479.20, 8479.30, 8479.40, 8479.50, 8479.60, 8479.71, 8479.79, 8479.81, 8479.82, 8479.89, 8481.10, 8481.20, 8481.30, 8481.40, 8481.80, 8482.10, 8482.20, 8482.30, 8482.40, 8482.50, 8482.80, 8483, 8484, 8486.10, 8486.20, 8486.30, 8486.40, 8487.10
85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01, 8502, 8503, 8504.90, 8505.90, 8506.90, 8507.90, 8508.70, 8509.90, 8510.90, 8511.90, 8512.90, 8513.90, 8514.90, 8515.90, 8516.90, 8517.70, 8518.90, 8519, 8521, 8522, 8523, 8525, 8526, 8527, 8528, 8529, 8530.90, 8531.90, 8532.90, 8533.90, 8534, 8537, 8538, 8539.90, 8540.91, 8540.99, 8541.90, 8542.90, 8543.90, 8544, 8545, 8546, 8547, 8548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04.10, 8504.21, 8504.22, 8504.23, 8504.31, 8504.32, 8504.33, 8504.34, 8504.40, 8504.50, 8505.11, 8505.19, 8505.20, 8506.10, 8506.30, 8506.40, 8506.50, 8506.60, 8506.80, 8507.10, 8507.20, 8507.30, 8507.40, 8507.50, 8507.60, 8507.80, 8508.11, 8508.19, 8508.60, 8509.40, 8509.80, 8510.10, 8510.20, 8510.30, 8511.10, 8511.20, 8511.30, 8511.40, 8511.50, 8511.80, 8512.10, 8512.20, 8512.30, 8512.40, 8513.10, 8514.10, 8514.20, 8514.30, 8514.40, 8515.11, 8515.19, 8515.21, 8515.29, 8515.31, 8515.39, 8515.80, 8516.10, 8516.21, 8516.29, 8516.31, 8516.32, 8516.33, 8516.40, 8516.50, 8516.50, 8516.60, 8516.71, 8516.72, 8516.79, 8516.80, 8517.11, 8517.12, 8517.18, 8517.61, 8517.62, 8517.69, 8518.10, 8518.21, 8518.22, 8518.29, 8518.30, 8518.40, 8518.50, 8530.10, 8530.80, 8531.10, 8531.20, 8531.80, 8532.10, 8532.21, 8532.22, 8532.23, 8532.24, 8532.25, 8532.29, 8532.30, 8533.10, 8533.21, 8533.29, 8533.31, 8533.39, 8533.40, 8535, 8536, 8539.10, 8539.21, 8539.22, 8539.29, 8539.31, 8539.32, 8539.39, 8539.41, 8539.49,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40.71, 8540.79, 8540.81, 8540.89,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8541.10, 8541.21, 8541.29, 8541.30, 8541.40, 8541.50, 8541.60, 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3.10, 8543.20, 8543.30, 8543.70
8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601, 8602, 8603, 8604, 8605, 8607, 860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608
8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0, 8711, 8712, 8713, 8714, 8715, 8716.9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9, 8716.10, 8716.20, 8716.31, 8716.39, 8716.40, 8716.80
88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8류
89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9류
9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001, 9003, 9004, 9005.90, 9006.91, 9006.99, 9007.91, 9007.92, 9008.90, 9010.90, 9011.90, 9012.90, 9013.90, 9014.90, 9016.00, 9018, 9019, 9020, 9021, 9023, 9024.90, 9025.90, 9026.90, 9029.90, 9030.90, 9031.90, 9032.90, 9033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02, 9005.10, 9005.80, 9006.10, 9006.30, 9006.40, 9006.51,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9006.52, 9006.53, 9006.59, 9006.61, 9006.69, 9007.20, 9010.10, 9010.50, 9010.60, 9011.10, 9011.20, 9011.80, 9012.10, 9013.10, 9013.20, 9013.80, 9014.10, 9014.20, 9014.80, 9014.10, 9014.20, 9014.80, 9015.10, 9015.20, 9015.30, 9015.40, 9015.80, 9017.10, 9017.20, 9017.30, 9017.80, 9025.11, 9025.19, 9025.80, 9027.10, 9027.20, 9027.30, 9027.50, 9027.80, 9028.10, 9028.20, 9028.30, 9029.10, 9029.20, 9030.10, 9030.20, 9030.31, 9030.32, 9030.33, 9030.39, 9030.40, 9030.82, 9030.84, 9030.89, 9031.10, 9030.20, 9030.31, 9030.32, 9030.33, 9030.39, 9030.40, 9030.82, 9030.84, 9030.89, 9031.10, 9031.20, 9031.41, 9031.49, 9032.10, 9032.20, 9032.81, 9032.8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007.10, 9008.50, 9022, 9024.10, 9024.80, 9026.10, 9026.20, 9026.80, 9027.90, 9031.80
	4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015.90, 9017.90, 9028.90
91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101, 9102.11, 9102.19, 9102.21, 9102.29, 9102.91, 9102.99,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 9111.90, 9112, 9113, 9114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102.12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111.10, 911.20, 9111.80
92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92류
9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301, 9302, 9303, 9304, 9305.10, 9305.20, 9306, 9307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305.91, 9305.99
94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401.10, 9401.20, 9401.30, 9401.40, 9401.51, 9401.59, 9401.61, 9401.69, 9401.71, 9401.79, 9401.80, 9403.10, 9403.20, 9403.30, 9403.40, 9403.50, 9403.60, 9403.70, 9403.81, 9403.89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401.90, 9405.91, 9405.92, 9405.9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402.10, 9402.90, 9403.90, 9404, 9406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405.10, 9405.20, 9405.30, 9405.40, 9405.50, 9405.60
95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503, 9504.20, 9504.30, 9504.40, 9504.9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504.50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505, 9506, 9507, 9508
96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01, 9602, 9603, 9604, 9605, 9606, 9607.20, 9609.20, 9609.90,

HS 2단위	유 형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9610, 9611, 9612, 9613.90, 9614, 9615, 9616, 9617, 9618, 961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607.11, 9607.19, 9608.50, 9608.60, 9608.91, 9608.9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9608.10, 9608.20, 9608.30, 9608.40
	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9609.10, 9613.10, 9613.20, 9613.80
97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97류

부록 3. 영연방 4개국 류별 PSR 비교현황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1	01	CC	WO	CC	WO
02	0201~0206.90 0207.24~0209.10 0210.11~0210.93	CC(ex.01)	CC(ex.01)	CC	CC(ex.01)
	0207.11~0207.14 0209.90	CC(ex.01)	CC(ex.01)	CC(ex.0105)	CC(ex.01)
	0210.99	CC(ex.01)	CC(ex.01)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닭 의 것 : C(ex.0105) -기타:CC	CC(ex.01)
03	0301.11~0301.19	CC or 양식+초기사료 를 먹인것	WO	CC	WO
	0301.91~0303	CC	WO	CC	WO
	0304~0305	CC	CC	CC	CC
	0306.11~0306.17 0306.21~0306.24 0306.26~0306.27 0307.19 0307.29 0307.39 0307.49 0307.59~0307.60	CC	WO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훈제한 것 :From0306.11~ 0308.90 -기타:CC	WO / CC
	0306.19 0306.25	CC	CC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훈제한 것: From0306.11~ 0308.90 -기타:CC	WO / CC
	0306.29 0307.79 0307.99 0308.19 0308.29	CC	CC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훈제한 것: From0306.11~ 0308.90 -기타:CC	CC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307.11 0307.21 0307.31 0307.41 0307.51	CC	WO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혼제한 것: From0306.11~ 0308.90 -기타:CC	WO
	0307.71 0307.91 0308.30~0308.90	CC	WO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혼제한 것: From0306.11~ 0308.90 -기타:CC	CC
	0307.81 0308.11 0308.21	CC	WO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C
04	0401	CC (ex.1806.90, 1901, 2106.90)	WO	CC (ex.1901.90, 2106.90)	CC
	0402~0406	CC (ex.1806.90, 1901, 2106.90)	CC (ex.1901.90)	CC (ex.1901.90, 2106.90)	CC
	0407~0408	CC	WO	CC	CC
	0409	CC	CC (ex.1901.90)	CC	CC
	0410	CC	CC	CC	CC
05	0501~0502 0508	CC (ex.01, 03)	WO	CC	WO
	0504	CC (ex.01, 03)	CC (ex.01, 02)	CC (ex.01)	CC (ex.01, 02)
	0505 0510~0511.91	CC (ex.01, 03)	CC	CC	CC
	0506 0511.66	CC (ex.01, 03)	CC (ex.01, 02)	CC	CC (ex.01, 02)
	0507	CC (ex.01, 03)	WO	CC (ex.01, 03)	WO
06	0601~0602	CC	WO	CC	WO
	0603	CC (ex.1211, 1212, 1214)	WO	CC (ex.1211.20)	WO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0604	CC (ex.1211, 1212, 1214)	WO	CC	WO
07	0701~0709 0713	CC (ex.1105, 1106, 2001~2006)	WO	CC	WO
	0710~0712	CC (ex.1105, 1106, 2001~2006)	CC	CC	CC
	0714	CC (ex.2008)	WO	CC	WO
08	0801~0810 0813.10~0813.40	CC	WO	CC	WO
	0811~0812	CC	CC	CC	CC
	0813.50~0814	CC (ex.1106.30, 2001, 2006, 2008)	CC	CC	CC
09	0901	CC	WO	CC	CC
	0901.12 0901.90~0903 0905~0906.19	CC	CC	CC	CC
	0901.21~0901.22	RVC 55	CTSH	CTSH or From 0901.21,0901.22	CTSH
	0904.11~0904.12	CC (ex.2103.90)	CC	CTSH (ex.2103.90)	CC
	0904.21~0904.22	CC (ex.0710.80, 2103.90)	CC (ex.0709.60, 0710.80)	CC (ex.0710.80, 2103.90)	CC (ex.0709.60, 0710.80)
	0906.20	CC	CC	CTSH	CC
	0907~0910.30	CC	WO	CC	CC
	0910.91~0910.99	CC	CC	CC	CC
10	10	CC	WO	CC	WO
11	1101~1104	CC (ex.10)	CC (ex.10)	CC (ex.1006)	CC (ex.10)
	1105	CC (ex.0701)	CC (ex.07)	CC	CC (ex.07)
	1106	CC (ex.0713, 0714, 08)	CC (ex.07, 08)	CC	CC (ex.07, 08)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107	CC+RVC 45	CC (ex.10)	CC	CC (ex.10)
	1108~1109	CC+RVC 45	CC (ex.07, 10)	CC	CC (ex.07, 10)
12	1201~1202.41 1203~1207 1209 1212~1213	CC	WO	CC	WO
	1202.42	CC	CC	CC	WO
	1208 1210 1214	CC	CC	CC	CC
	1211	CC (ex.2106.90)	WO	CC	WO
13	1301~1302.13 1302.20~1302.39	CC	CC	CC	CC
	1302.19	CC	CC (ex.1211.20)	CC	CC (ex.1211.20)
14	14	CC	CC	CC	CC
15	1501~1510 1512~1515.19 1515.90 1516.20 1521~1522	CC+RVC 45	CC	CC	CTH
	1511	RVC 55	CC	CC	CTH
	1515.21~1515.50	CC+RVC 45	CC	CC (ex.12)	CTH
	1516.10	CC (ex.01, 02, 03, 05)	CC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1517~1520	CC+RVC 45	CTH	CC	CTH
16	1601~1602	CC	CC (ex.01, 02)	CC	CC
	1603	CC+RVC 45	CC (ex.01, 02)	CC	CC
	1604	CC+RVC 45	CC	CC	CC
	1605	CC+RVC 45	CC	CC (ex.0306~0308)	CC
17	1701.12~1701.14	CC	CC	CC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701.91~1701.99	CC	CC	CC	CC
	1702.11~1702.60 1703	CC	CTH	CC	CTH
	1702.90	CC	CTH (ex.0409)	CC	CTH
	1704	CTH+RVC 45	CTH	CTH	CTH
18	1801~1802	CC	CTH	CC	CC
	1803~1805	CTH	CTH	CTH	CTH
	1806.10~1806.20	CTH+RVC 45	CTH	CTSH	CTH
	1806.31 1806.90	CTH+RVC 45	CTSH	CTSH	CTSH
	1806.32	CTH+RVC 45	CTSH	CTSH	CTH
19	1901.10	CC (ex.0401~0404, 10, 11)	CTH (ex.04)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우유고형분포 함:CC(ex.0401~ 0406,1006,1102 ~1104) -기 타 : CC(ex.1006,1102 ~1104)	CTH
	1901.20	CC (ex.0401~0404, 10, 11)	CC (ex.04, 1006, 1102~1104)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ex.1106, 1102~1104)
	1901.90	CC (ex.0401~0404, 10, 11)	CC (ex.04, 1106, 1102~1104)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우유고형분포 함:CC(ex.0401~ 0406,1006,1102 ~1104) -기타: CC(ex.1006,110 2~1104)	CTH (ex.1106, 1102~1104)
	1902.11~1902.19	CTH+RVC 45	CTH	CTH	CTH
	1902.20~1902.40	CTH+RVC 45	CTSH	CTH	CTH
	1903	CTH+RVC 45	CTH	CTH	CC
	1904.10~1904.30	CTH+RVC 45	CTH	CC	CC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904.90	CTH+RVC 45	CC (ex.1006)	CC	CTH (ex.1006)
	1905	CTH+RVC 45	CTH	CC	CTH
20	2001~2007	CTH+RVC 45	CTH	CTH	CC
	2008	CTH+RVC 45	CTH	CTH	CTH
	2009.11~2009.39	CTH+RVC 45	CTH or RVC 40	CC (ex.0805)	CC or RVC40
	2009.41~2009.89	CTH+RVC 45	CTH or RVC 40	CC	CC or RVC40
	2009.90	RVC 55	CTH or RVC 4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C or RVC40
21	2101.11~2101.12	RVC 55	CTH	CC	CTH
	2101.20~2101.30	CTH+RVC 45	CTH	CC	CTH
	2102	CTH	CTH	CTH	CTH
	2103.10~2103.30	CTH+RVC 45	CTH	CTH	CTSH
	2103	CTH+RVC 45	CTS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or RVC35
	2104	CTH+RVC 45	CTSH	CTH	CTSH
	2105	CC+RVC 45	CTH	CTH(ex.0401~0 406, 1901.90*)	CTH
	2106.10	CTH+RVC 45	CTS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2106.90	CTH+RVC 45	CTSH (ex.1211.20, 1302.1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ex.1211. 20,1302.19) or RVC 40
22	2201	CC	CTH	CC	CC
	2202.10	CTH+RVC 45	CTH	CTH	CC
	2202.90	CTH+RVC 45	CTH (ex.1211.20, 1302.1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ex.1211.20, 1302.19)
	2203~2208.20 2208.40~2209	CTH	CTH	CTH	CTH
	2208.30	CTH	CTH	From 2208.30 +VNM 10 of 2203~2208	CTH
23	2301 2303	CC	CTH	CC	CC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302 2304~2308	CC	CTH	CC	CTH
	2309.10	RVC 55	CTH	CTH	CTH
	2309.90	RVC 55	CT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24	2401	CC	CC	CC	CC
	2402	CTH (ex.2403)	CTH	CTH	CTH
	2403	CTH	CTH	CTH	CTH
25	2501~2516 2518~2521 2524~2530	CTH	CTH	CTH	CTH
	2517	CTH(ex.2515, 2516)	CTH	CTH	CTH
	2522~2523	CTH (ex.2521)	CTH	CTH	CTH
26	26	CTH	CTH	CTH	CTH
27	2701~2706 2708~2709 2712~2713.12 2713.90~2716	CTH	CTH	CTH	CTH
	2707.10~2707.91	CTH	CTH or (CTSH+화학반응)	CTH or (From 2701.xx + 화학반응)	CTH or (CTSH + 화학반응)
	2707.99	CTH	CTH or (CTSH+화학반응)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CTSH + 화학반응)
	2710	CTH	CTH or (From 2710 + 화학반응)	CTH or 화학반응 or 직접혼합(비원 산지재료 용량이 물품 용량의 25%초과하지 않을 것)	CTH or (From 2710 +화학반응 등)
	2711.11	CTH	CTSH (ex.2711.21)	From 2711.11~2711. 13 +VNM 49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711.12~2711.13	CTH	CTSH (ex.2711.29)	From 2711.11~2711. 13 +VNM 49	CTH
	2711.14~2711.19	CTH	CTSH (ex.2711.29)	CTSH (ex.2711.29)	CTH
	2711.21	CTH	CTSH (ex.2711.11)	CTSH (ex.2711.11)	CTH
	2711.29	CTH	CTSH (ex.2711.12~27 11.21)	CTSH (ex.2711.12~27 11.21)	CTH
	2713.20	CTH	CTH	From 2713.20 +VNM 49	CTH
28	2801~2803 2804.70~2805 2807~2808 2810 2822~2823 2825.90 2845~2848 2850~2852.10 2853	CTH	CTH	CTSH	CTH
	2804.10~2804.69 2814 2817	CTH	CTH	CTH	CTH
	2806 2809 2811~2813 2815.20~2816 2819~2821 2825.10~2825.80 2826~2842.10 2843~2844 2849	CTH	CTSH	CTSH	CTSH
	2815.11	CTH	CTSH (ex.2815.12)	CTH	CTSH
	2815.12	CTH	CTSH (ex.2815.11)	CTH	CTS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818	CTH	CTSH	CTH	CTSH
	2824	CTH	CTH	CTSH	CTSH
	2842.9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SH	CTSH
	2852.90	CTH	CTSH or RVC 40	CTSH	HS 2007--2012변경 으로 PSR 중첩
29	2901~2902.30 2902.44~2902.50 2903.11~2903.14 2903.19 2903.22~2903.76 2903.78~2905.11 2905.17~2905.29 2905.32 2905.41~2907 2909~2910 2912 2914~2915.24 2915.33~2915.90 2916.15~2918 2920~2926 2929~2930 2932.11~2932.19 2932.91~2934	CTH	CTSH	CTSH	CTSH
	2902.41~2902.43	CTH (ex.2701)	CTSH	CTSH	CTSH
	2902.60~2902.70 2903.15 2903.21 2905.12~2905.16 2905.31 2916.11~2916.14	CTH(ex.2901) or (CTH + RVC 50)	CTSH	CTSH	CTSH
	2902.90	CTSH or RVC45	CTSH	CTSH	CTSH
	2903.77 2932.20	CTH	CTSH or RVC 40	CTSH	CTSH
	2905.39	CTH(ex.2912) or (CTH+RVC 50)	CTSH	CTSH	CTS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908 2911 2913 2919 2927~2928 2931 2935 2937.12 2937.21~2938 2939.19~2942	CTH	CTH	CTSH	CTH
	2915.2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SH	CTSH
	2915.31~2915.32	CC or (CTH + RVC 50)	CTSH	CTSH	CTSH
	2936.21~2936.28	CTH	CTH	CTSH	CTSH
	2936.29~2936.90	CTH	CTH or RVC 40	CTSH	CTSH
	2937.11 2937.19	CTH(ex.2933, 2934)or (CTH+RVC 50)	CTH	CTSH	CTH
	2939.11	CTH(ex.1211.40)	CTH	CTSH	CTH
30	3001 3002.20~3002.30	CTH	CTH	CTSH (ex.3006.92)	CTH or RVC 40
	3002.10	CTH	CTH	CTSH (ex.3006.92)	HS 2007--2012년 경으로 PSR 중첩
	3002.90	CTH	CTSH or RVC 40	CTSH (ex.3006.92)	CTSH / CTH or RVC 40
	3003	CTH	CTH	CTH(ex.3006.92) or (From 3003+ MC40 of 3003)	CTH
	3004	CTH (ex.3003)	CTH (ex.3003)	CTH (ex.3003, 3006.92)	CTH (ex.3003)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005~3006.70	CTH	CTH	CTSH (ex.3006.92)	CTH
	3006.91	CTH	CTH	CTH	CTH
	3006.92	CC	CTH	CC	CTH
31	3101	CTH	CTH	CTH	CTH
	3102~3104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 40
	3105.10~3105.60	CTH (ex.3102~3104)	CTH or RVC 40	CTH	CTH or RVC 40
	3105.90	CTH (ex.3102~3104)	CTH or RVC 40	CTH	CTH
32	3201~3202 3204.11~3204.17 3204.20~3204.90 3206.20~3206.50	CT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40
	3203 3207 3212	CTH	CTSH or RVC 40	CTH	CTSH or RVC40
	3204.19	CTH	CTSH (ex.3204.11~320 4.17) or RVC 40	CTSH	CTSH or RVC40
	3205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 40
	3206.11	CTH	CTSH (ex.3206.19) or RVC 40	CTSH	CTSH or RVC40
	3206.19	CTH	CTSH (ex.3206.11) or RVC 40	CTSH	CTSH or RVC40
	3208~3209	CTH + RVC 50	CTSH or RVC 40	CTH	CTSH or RVC40
	3210	CTH + RVC 50	CTH	CTH	CTH
	3211 3213 3215.90	CTH	CTH	CTH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214	CTH(ex.3824.50)	CTSH or RVC 40	CTH	CTSH or RVC40
	3215.11~3215.19	CTH	CTH or RVC 40	CTH	CTH
33	3301	CTH	CTSH	CTSH	CTSH
	3302~3306.10 3306.90~3307	CTH	CTH	CTH	CTH
	3306.20	CTH	CTH (ex.54) or RVC 40	CTH	CTH
34	3401.11~3401.20 3402.11 3406~3407	CTH	CTH	CTH	CTH
	3401.30	CTH (ex.3402.90)	CTH	CTH (ex.3402.90)	CTH
	3402.12~3402.19 3402.90~3403	CTH	CTH	CTSH	CTH
	3402.20	CTH	CTH	CTSH (ex.3402.90)	CTH
	3404	CTH	CTH or RVC 40	CTH	CTH
	3405	CTH	CTSH	CTH	CTSH
35	3501 3502.20~3502.90	CTH	CTSH	CTSH	CTSH
	3502.11~3502.19	CTH	CTSH	CTH	CTSH
	3503~3504 3506.99~3507	CTH	CTH	CTH	CTH
	3505	CTH (ex.1108)	CTSH	CTH	CTSH
	3506.10	CTH (ex.3501, 3503, 3505)	CTH (ex.3503, 3501.90)	CTH	CTH
	3506.90	CTH + RVC 55	CTH	CTH	CTH
36	3601~3605 3606.90	CTH	CTH	CTH	CTH
	3606.10	CTH (ex.2711~2711.19)	CTH	CTH	CTH
37	3701.10	CTH (ex.3702)	CTH (ex.3702, 3703)	CTH (ex.3702)	CTH (ex.3702)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701.20~3701.99	CTH (ex.3702)	CTH (ex.3702, 3703)	CTH (ex.3702)	CTH
	3702.10	CTH (ex.3701)	CTH (ex.3701, 3703)	CTH (ex.3701)	CTH (ex.3701)
	3702.31~3702.98	CTH (ex.3701)	CTH (ex.3701, 3703)	CTH (ex.3701)	CTH
	3703	CTH	CTH (ex.3701, 3702)	CTH	CTH
	3704	CTH	CTH	CTH	CTH
	3705	CTH (ex.3706)	CTH	CTH	CTH
	3706	CTH (ex.3705)	CTH	CTH	CTH
	3707	CTH	CTSH	CTH	CTSH
38	3801	CTH	CTSH	CTH	CTSH
	3802~3804 3807 3810 3812~3813 3815~3816 3818~3819 3822	CTH	CTH	CTH	CTH
	3805 3809.91~3809.93 3811	CTH	CTH	CTSH	CTH
	3806 3823	CTH	CTSH	CTSH	CTSH
	3808.50	CTH	(CTSH +유효성분 중량의 50%이상이 원산지물품) or RVC40	CTH	CTH or RVC 40
	3808.91~3808.99	CTH	CTSH +유효성분 중량의 50%이상이 원산지물품	CTH	CTH or RVC 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3809.10	CTH (ex.3505)	CTH	CTSH	CTH
	3814	CTH + RVC 55	CTH	CTH	CTH
	3817	CTH	CTH or RVC 40	CTH	CTH
	3820	CTH + RVC 55	CTH	CTH(ex.2905.31) or (From 2905.31 + MC 55 of 2905.31)	CTH
	3821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CTH	CTH
	3824	CTH	CTSH	CTH	CTSH
	3825.10~3825.69	CC(ex.28~38, 40~90)	CTH	CC(ex.28~37, 40~90)	CTH
	3825.90	CC (ex.28~38)	CTH	CC (ex.28~37, 40, 90)	CTH
	3826	CTH(ex.3824)	CTSH	CTH	CTSH
39	3901~3913	CTH	CTH	CTH + MW 40 of 3901~3915	CTH
	3914~3915	CTH+RVC 45	CTH	CTH + MW 40 of 3901~3915	CTH
	3916~3918 3920~3921	CTH+RVC 45	CTSH	CTH	CTH
	3919	CTH+RVC 45	CTH	CTH	CTH
	3922~3926	CTH	CTH	CTH	CTH
40	4001	CC	CTSH	CTH	CTH
	4002.11~4002.70	CTH (ex.29)	CTSH	CTH	CTH
	4002.80~4002.99	CTH (ex.29)	CTH or RVC 40	CTH	CTH
	4003~4005 4007~4012.19 4013~4017	CTH	CTH	CTH	CTH
	4006	CTH	CTH	CTH(ex.4001) or (From 4001 + MC 65 of 4001)	CTH
	4012	CTH (ex.4011)	CTH	CTH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1	4101~4103	CC(ex.01)	CC	CC	CTH
	4104.11~4104.19 4105.10 4106.21 4106.31 4106.91 4107~4113	CTH	CTH	CTH	CTH
	4104.41	CTH	CTSH	CTH or From 4104.11,4104.19	CTSH
	4104.49	CTH	CTSH (ex.4104.41)	CTH or From 4104.11,4104.19	CTSH (ex.4104.41)
	4105.30	CTH	CTSH	CTH or From 4105.10	CTSH
	4106.22	CTH	CTSH	CTH or From 4106.21	CTSH
	4106.32	CTH	CTSH	CTH or From 4106.31	CTSH
	4106.40	CTH	CT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SP
	4106.92	CTH	CTSH	CTH or From 4106.91	CTSH
	4114~4115	CTH	CTSH	CTH	CTH
42	4201~4203 4206	CTH	CTH	CTH	CTH
	4205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CTH	CTH
43	4301	CTH (ex.01)	CTH	CC	CTH
	4302~4304	CTH	CTH	CTH	CTH
44	4401~4403 4409~4413 4415~4421	CTH	CTH	CTH	CTH
	4404~4408	CTH (ex.4401, 4403)	CTH	CTH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414	CTH(ex.4409)	CTH	CTH	CTH
45	4501 4504	CTH	CTH	CTH	CTH
	4502	CTH(ex.4501)	CTH	CTH	CTH
	4503	CTH(ex.4502)	CTH	CTH	CTH
46	46	CTH	CTH	CTH	CTH
47	4701~4702 4705~4707	CTH	CTH	CTH	CTH
	4703.11~4703.19 4704.11~4704.19	CTH	CTH	CTSH	CTH
	4703.21~4703.29 4704.21~4704.29	CTH	CTSH	CTSH	CTH
48	4801~4808.10 4808.90~4810 4811.41~4811.49 4812~4814 4817~4822 4823.40	CTH	CTH	CTH	CTH
	4808.40	CTH	CTH (ex.4804)	CTH	CTH
	4811.10 4811.51~4811.9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CTH	CTH
	4816	CTH(ex.4809)	CTH (ex.4809)	CTH	CTH (ex.4809)
	4823.20	CTH	CTH (ex.4805.40)	CTH	CTH
	4823.61~4823.70	CTH	CTSH	CTH	CTH
	4823.9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H	CTH
49	49	CTH	CTH	CTH	CTH
50	5001~5002	CC	CC	CC	CC
	5003	CC	CTH	CC	CTH
	5004~5005	CTH(ex.5006)	CTH	CTH	CTH
	5006	CTH (ex.5004~5005)	CTH	CTH	CTH (ex.5004, 5005)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007	CTH	CTH or (From 직물 + 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TH
51	5101~5102	CC	CC	CC	CC
	5103 5105.29~5105.40	CC	CC	CC	CTH
	5104~5105.21	CC	CTH	CC	CTH
	5106~5108	CTH (ex.5109)	CTH	CTH	CTH
	5109	CTH (ex.5106~5108)	CTH	CTH	CTH (ex.5106~5108)
	5110	CTH	CTH	CTH	CTH
	5111~5113	CTH	CTH or (From 직물 +SP(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TH
52	5201	CC	CC	CC	CC
	5202	CC	CTH	CC	CTH
	5203	CC	CC	CC	CTH
	5204~5206	CC	CTH	CTH	CTH
	5207	CC	CTH	CTH (ex.5204~5206)	CTH (ex.5205, 5206)
	5208~5212	CTH	CTH or (From 직물 +SP(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TH
53	5301~5305	CC	CTH	CC	CC
	5306~5308	CTH	CTH	CTH	CTH
	5309~5311	CTH	CTH or (From 직물 +SP)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TH
54	5401~5406	CC	CC	CTH	CC
	5407~5408	CTH	CTH or (From 직물 +SP(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5	5501~5504	CTH	CC	CC	CC
	5505	CTH	CTH	CC	CTH
	5506~5507	CTH	CC	CC	CTH
	5508~5510	CTH	CTH	CTH	CTH
	5511	CTH	CTH	CTH	CTH (ex.5509, 5510)
	5512~5516	CTH	CTH or (From 직물 +SP(염색/날염)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TH
56	5601~5602 5604~5606	CTH	CC	CTH	CC
	5603	CTH	CTH or (From 직물 +SP)	CTH	CTH
	5607	CTH	CC	CTH (ex.5205~5207, 5401, 5402, 5404~5406, 5508~5511)	CC
	5608	CTH	CTH	CTH	CTH
	5609	CTH	CTH	CTH (ex.5106~5110, 5204~5207, 5401, 5402, 5404~5406, 5509~5511)	CTH
57	5701~5703 5705	CTH	CC	CC	CC
	5704	CTH	CC (ex.5602)	CC	CC (ex.5602)
58	5801~5802 5809	CTH	CTH or (From 직물 +SP)	CC	CC
	5803~5808	CTH	CC	CC	CC
	5810~5811	CTH	CTH	CC	CTH
59	5901~5909 5911	CTH	CC	CC	CC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910	CTH	CC	CTH (ex.5106~5113, 5204~5212, 5307, 5308, 5310, 5311, 54, 5509~5516)	CC
60	6001 6004~6006	CTH	CTH or (From 직물 +SP)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C
	6002	CTH (ex.6006)	CTH or (From 직물 +SP)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C
	6003	CTH (ex.6005~6006)	CTH or (From 직물 +SP)	CTH or (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	CC
61	6101~6114	CC + 재단/편성 + 봉제/기타결합 공정	CC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C
	6115~6117	CC(ex.60) + SP	CC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C
62	6201~6212	CC + 재단 + 봉제/기타결합 공정	CC	CC + SP(재단+봉제/ 기타결합공정)	CC
	6213~6217	CC (ex.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 5906~5907) + SP	CC	CC + SP	CC
63	6301~6302	CC(ex.5007, 5111~5113,	CC+SP(From 직물+염색/날	CC (ex.5111~5113,	CC(From 생지+염색/날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 5906~5907, 60) + SP	염+마무리공정)	5208~5212, 5310, 5311, 5407, 5408, 5512~5516, 5801~5803, 5903, 6001~6006)	염+마무리공정) or RVC40
	6303~6304	CC + 재단/편성 + 봉제/기타결합 공정	CC+SP(From 직물+염색/날 염+마무리공정)	CC (ex.5111~5113, 5208~5212, 5310, 5311, 5407, 5408, 5512~5516, 5801~5803, 5903, 6001~6006)	CC(From 생지+염색/날 염+마무리공정) or RVC40
	6305	CC(ex.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 5906~5907, 60) + SP	CC	CC (ex.5111~5113, 5208~5212, 5310, 5311, 5407, 5408, 5512~5516, 5801~5803, 5903, 6001~6006)	CC or RVC40
	6306 6307.20	CC + 재단/편성 + 봉제/기타결합 공정	CC	CC + SP(재단/편성+ 봉제/기타 결합공정)	CC or RVC40
	6307.10 6307.90	CC(ex.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CC+SP(From 직물+마무리공 정)	CC + SP(재단/편성+ 봉제/기타 결합공정)	CC or RVC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903, 5906~5907, 60) + SP			
	6307.90	CC(ex.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1~5802, 5903, 5906~5907, 60) + SP	CC +(From 직물 + 마무리공정)	CC + SP(재단/편성+ 봉제/기타 결합공정)	CC or RVC40
	6308	CC + 재단/편성 + 봉제/기타결합 공정	CC	CC + (직물 또는 사(絲)가 별도로 분류될 경우 그 직물 또는 사(絲)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	CC or RVC40
	6309	CC (ex.61, 62)	CTH	CTH or 체약국 수집+선적포장	CTH
	6310	CC	CTH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64	6401~6405	CTH	CTH	CTH(ex.6406) or (From 6406 + MC 55 of 6406)	CTH
	6406	CTH	CTH	CTH	CC or RVC 30/40
65	6501~6502	CTH	CTH	CTH	CC or RVC 30/40
	6504	CTH (ex.6502)	CTH	CTH	CTH
	6505~6507	CTH	CTH	CTH	CTH
66	6601	CTH (ex.6603)	CTH	CTH(ex.6603) or (From 6603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MC 55 of 6603)	
	6602	CTH (ex.6603)	CTH	CTH	CTH
	6603	CTH	CC	CTH	CTH
67	6701	CTH	CTH	CTH or From 6701(깃털 또는 솜털 제품)	CTH
	6702~6704	CTH	CTH	CTH	CTH
68	6801~6811 6813~6815	CTH	CTH	CTH	CTH
	6812	CTH	CTSH	CTH	CTH
69	6901~6907 6909~6914	CC	CC	CTH	CTH
	6908	CC	CC or RVC 40	CTH	CC or RVC 30/40
70	7001~7005 7010~7018	CTH	CTH	CTH	CTH
	7006	CTH (ex.7003~7005)	CTH	CTH	CTH
	7007~7008 7009.91~7009.92	CTH (ex.7003~7006)	CTH	CTH	CTH
	7009.10	CTH (ex.7003~7006)	CTSH	CTSH	CTH
	7019.11~7019.40 7019.52~7019.90	CTH	CTH	CTSH	CTH
	7019.51	CTH	CTH	CTSH (ex.7019.52, 7019.59)	CTH
	702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CTH	CTH
71	7101	CC	CC	CTSH	CTH
	7102~7103.10	CC	CC	CTSH	CC
	7103.91~7103.99	CC	CC	CTSH	CTSH
	7104.10~7104.20	CC	CTH	CTSH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105				
	7104.90	CC	CTH	CTSH	CTSH
	7106~7107 7111	CC	CC	CTH	CTH
	7108 7110	CC	CC	CTSH	CTSH
	7109	CC	CC	CTH	CTSH
	7112	CC	CTH	CTH	CTH
	7113~7118	CTH	CTH	CTH	CTH
72	7201~7202.19 7202.29~7202.49 7202.60~7202.70 7202.91~7206 7208 7213 7216 7218 7221~7229	CTH	CTH	CTH	CTH
	7202.21 7202.50 7202.80	CTH	CC	CTH	CTH
	7207	CTH	CTH (ex.7206)	CTH	CTH
	7209	CTH	CTH (ex.7208, 7211)	CTH	CTH
	7210	CTH	CTH (ex.7208, 7209, 7211)	CTH	CTH
	7211	CTH	CTH (ex.7208, 7209)	CTH	CTH
	7212	CTH	CTH (ex.7208~7211)	CTH	CTH
	7214	CTH	CTH (ex.7213)	CTH	CTH (ex.7213)
	7215.10	CTH	CTH (ex.7213, 7214)	CTH	CTH (ex.7213, 7215)
	7215.50	CTH	CTH (ex.7213, 7214)	CTH	CTH (ex.7213, 7216)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215.90	CTH	CTH (ex.7213, 7214)	CTH	CTH (ex.7213, 7217)
	7217	CTH	CTH (ex.7213~7215)	CTH	CTH
	7219~7220	CTH	CTSH	CTH	CTSH
73	7301~7304.39 7304.49 7304.59~7306 7308~7314 7315.19 7315.90 7317~7319 7323 7324.90~7326	CTH	CTH	CTH	CTH
	7304.41 7304.51	CTH	CTH	CTSH	CTH
	7307	CTH	CC or RVC 40	CTH(ex.7303~7306) or (From 7303~7306+ MC 55 of 7303~7306)	CTH
	7315.11~7315.12	CTH	CTH or (From 7315.19 + RVC 40)	CTH or (From 7315.19+ MC 55 of 7315.19)	CTH
	7315.20~7315.89	CTH	CTH or (From 7315.90 + RVC 40)	CTH or (From 7315.90+ MC 55 of 7315.90)	CTH
	7316	CTH (ex.7003~7005)	CTH	CTH	CTH
	7320 7321.90~7322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7321.11~7321.89	CTH	CTSH	CTH or (From 7321.90+ MC 55 of 7321.90)	CTSH
	7324.10~7324.2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7324.90+ MC 55 of 7324.90)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4	7401~7407 7411 7415~7418	CTH	CTH	CTH	CTH
	7408	CTH(ex.7407) or (CTH+RVC 50)	CTH (ex.7407)	CTH	CTH (ex.7407)
	7409	CTH(ex.7407) or (CTH+RVC 50)	CTH	CTH	CTH
	7410	CTH (ex.7409)	CTH (ex.7409)	CTH	CTH (ex.7409)
	7412	CTH	CTH (ex.7411)	CTH(ex.7411) or (7411From + MC 55 of 7411)	CTH (ex.7411)
	7413	CTH	CTH	CTH(ex.7408) or (From 7408+ MC 55 of 7408)	CTH
	7419.10~7419.91	CTH	CTSH	CTH	CTH
	7419.9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H	CTH
75	7501~7505.12 7507~7508	CTH	CTH	CTH	CTH
	7505.21~7505.22	CTH	CTH	CTSH	CTH
	7506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7506(두께 0.15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CTH
76	7601~7602 7604 7606~7608 7610~7613 7615	CTH	CTH	CTH	CTH
	7603	CTH	CTH	CTSH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7605	CTH	CTH (ex.7604)	CTH	CTH (ex.7604)
	7609	CTH	CTH (ex.7608)	CTH(ex.7608) or (From 7608+ MC 55 of 7608)	CTH (ex.7608)
	7614	CTH	CTH	CTH(ex.7605) or (From 7605+ MC 55 of 7605)	CTH
	7616	CTH	CTSH	CTH	CTH
78	7801~7802	CTH	CTH	CTH	CTH
	7804	CTH	CTH	CTSH or From 7804.11(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箔))	CTH
	7806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79	7901~7903	CTH	CTH	CTH	CTH
	7904	CTH	CTH	CTH or From 7904	CTH
	7905	CTH	CTH	CTH or From7905(뒷면 을 덧대지 않은 박(箔))	CTH
	7907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80	8001~8002	CTH	CTH	CTH	CTH
	8003	CTH	CTH	CTH or From 8003	CTH
	8007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81	8101~8105 8107~8110 8112	CTH	CTSH	CTSH	CTSH
	8106 8111	CTH	CTH or RVC 40	CTSH	CTS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113	CTH	CTH or RVC 40	CTSH	CTH
82	8201 8203~8205.70 8208~8209 8211.94~8211.95 8213~8214.10 8214.90 8215.91~8215.99	CC	CC	CTH	CC
	8202.10~8202.20 8202.39~8202.99 8207.19~8207.90 8210	CC	CC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202.31	CC	CC or RVC 40	CTH or (From8202.39+ MC 55 of 8202.39)	CTH or RVC30/40
	8205.90	CC	CC	CTH or (From 8205.90,8205.10~8205.70 + MC 35 of 8205.90,8205.10~8205.70)	CC
	8206	CC	CC	CTH(ex.8202~8205) or (From 8202~8205+ MC 35 of 8202~8205)	CC
	8207.13	CC	CC or RVC 40	CTH(ex.8209) or {From (8207.19 or 8209)+ MC 55 of (8207.19 or 8209)}	CTH or RVC30/40
	8211.10	CC	CC	CTH(ex.8214,8515) or (From 8211.91~8211.93,8214,8215+	CC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MC 55 of 8211.91~8211.93,8214,8215)	
	8211.91~8211.93	CC	CC or RVC 40	CTH or (From 8211.91,8211.95 + MC 55 of 8211.94,8211.95)	CC
	8212	CC	CC or RVC 40	CTH	CC
	8214.20	CC	CC	CTH or (From 8214.20 + MC 35)	CC
	8215.10~8215.20	CC	CC	CTH(ex.8211) or (From 8211,8215.91,8515.99+ MC 35 of 8211,8215.91,8515.99)	CC
83	8301.10 8301.30~8301.50	CTH	CC or RVC 40	CTH or (From 8301.60+ MC 55 of 8301.60)	CTH or RVC30/40
	8301.20	CTH	CC or RVC 40	CTH or (From 8301.60+ MC 55 of 8301.60)	CTSH
	8301.60~8301.70	CTH	CC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302~8304 8306~8307 8309~8310 8311.90	CTH	CTH	CTH	CTH
	8305.10~8305.2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8305.90+ MC 25 of 8305.90)	CTSH
	8305.90	CTH	CTH or RVC 40	CTH	CTS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308.10~8308.20	CTH	CTSH	CTH or (From 8308.90+ MC 25 of 8308.90)	CTH or RVC30/40
	8308.90	CTH	CTSH	CTH	CTH or RVC30/40
	8311.10~8311.30	CTH	CTH	CTH or (From 8311.90+ MC 55 of 8311.90)	CTH
84	8401.10~8401.30	RVC 50	CTSH	CTSH	CTSH
	8401.40	CTH	CTH	CTH	CTH
	8402.11	CTH or (CTSH + RVC 45)	CTSH (ex.8402.12)	CTH or (From 8402.90+ MC 55 of 8402.90)	CTSH
	8402.12	CTH or (CTSH + RVC 45)	CTSH (ex.8402.11)	CTH or (From 8402.90+ MC 55 of 8402.90)	CTSH
	8402.19~8402.20	CTH or (CTSH + RVC 45)	CTSH	CTH or (From 8402.90+ MC 55 of 8402.90)	CTSH
	8402.90 8403.90	CTH or (CTSH + RVC 45)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03.10	CTH or (CTSH + RVC 45)	CTSH	CTH or (From 8403.90+ MC 55 of 8403.90)	CTSH
	8404.10~8404.2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8404.90+ MC 55 of 8404.90)	CTSH
	8404.90, 8405.90, 8406.90, 8409.10, 8413.91~8413.92, 8414.90, 8415.90, 8416.90, 8417.90, 8418.91~8418.99, 8419.90, 8420.99, 8421.91~8421.99, 8422.90, 8423.90, 8424.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28~8431, 8432.90, 8433.90, 8434.90, 8435.90, 8436.91~8436.99, 8437.90, 8438.90, 8439.91~8439.99, 8440.90, 8441.90, 8442.40, 8448.20~8449, 8450.90, 8451.90, 8454.90, 8455.90, 8466, 8467.91~8467.99, 8474.90, 8475.90, 8476.90, 8477.90, 8478.90, 8480, 8481.90, 8482.91~8482.99				
	8405.1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8405.90+ MC 55 of 8405.90)	CTSH
	8406.10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8406.90+ MC 55 of 8406.90	CTSH
	8406.81	CTSH + RVC50	CTSH (ex.8406.82)	CTH or (From 8406.90+ MC 55 of 8406.90	CTSH or RVC 30/40
	8406.82	CTSH + RVC50	CTSH (ex.8406.81)	CTH or (From 8406.90+ MC 55 of 8406.90	CTSH or RVC 30/40
	8407.29~8408.90	RVC 50	CTH or RVC 40	CTH(ex.8409) or (From 8409+ MC 55 of 8409)	CTH or RVC30/40
	8409.91~8409.99 8411.91~8411.99 8473 8479.90 8487.9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10.11	CTH	CTH (ex.7411)	CTH(ex.7411) or (7411From + MC 55 of 7411)	CTH (ex.7411)
	8410.12	CTSH	CTSH (ex.8410.11, 8410.13) or RVC 40	CTH or (From 8410.90+ MC 55 of 8410.90)	CTH
	8410.13	CTSH	CTSH (ex.8410.11, 8410.12) or RVC 40	CTH or (From 8410.90+ MC 55 of 8410.90)	CTH
	8410.90	CTH	CTH or RVC 40	CTH	CTH
	8411.118411.22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12)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 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8411.12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11)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 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8411.2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22)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 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8411.8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82)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 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8411.82	CTH or (CTSH + RVC50)	CTSH (ex.8411.81) or RVC 40	CTH or (From 8411.91,8411.9 9 + MC 55 of 8411.91, 8411.99)	CTS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12.10~8412.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2.90 + MC 55 of 8412.90)	CTSH or RVC 30/40
	8412.9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13.11~8413.82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3.91, 8413.92 + MC 55 of 8413.91, 8413.92)	CTSH or RVC 30/40
	8414.10~8414.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8414.90 + MC 55 of 8414.90)	CTSH or RVC 30/40
	8415.10~8415.83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5.90+ MC 55 of 8415.90)	CTSH or RVC 30/40
	8416.10~8410.3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6.90+ MC 55 of 8416.90)	CTSH or RVC 30/40
	8417.10~8417.8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7.90+ MC 55 of 8417.90)	CTSH or RVC 30/40
	8418.10~8418.6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8.91, 8418.99 + MC 55 of 8418.91, 8418.99)	CTSH or RVC 30/40
	8419.11~8419.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19.90 + MC 55 of 8419.90)	CTSH or RVC 30/40
	8420.1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0.91, 8420.99 + MC 55 of 8420.91, 8420.99)	CTSH or RVC 30/40
	8420.91	CTH	CTH or RVC	CTH	CTSH or RVC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42.50		40		30/40
	8421.11~8421.1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1.91+ MC 55 of 8421.91)	CTSH or RVC 30/40
	8421.21~8421.3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1.99+ MC 55 of 8421.99)	CTSH or RVC 30/40
	8422.11~8422.4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2.90+ MC 55 of 8422.90)	CTSH or RVC 30/40
	8423.10~8423.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3.90+ MC 55 of 8423.90)	CTSH or RVC 30/40
	8424.10~8424.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24.90+ MC 55 of 8424.90)	CTSH or RVC 30/40
	8425~8426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27	CTH(ex.8431) or (CTH+RVC 50)	CTH or RVC 40	CTH(ex.8431) or (From 8431+ MC 55 of 8431)	CTH or RVC30/40
	8432.10~8432.80 8433.11~8433.60 8434.10~8434.20 8474.10~8474.80	CTS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435.1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50.90+ MC 55 of 8435.90)	CTSH or RVC 30/40
	8436.10~8436.8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6.91, 8436.99 + MC 55 of 8436.91, 8436.99)	CTSH or RVC 30/40
	8437.10~8437.80	CTH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7.90+ MC 55 of 8437.90)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38.10~8438.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8.90+ MC 55 of 8438.90)	CTSH or RVC 30/40
	8439.10~8439.3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39.91, 8439.99 + MC 55 of 8439.91, 8439.99)	CTSH or RVC 30/40
	8440.1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0.90+ MC 55 of 8440.90)	CTSH or RVC 30/40
	8441.10~8441.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1.90+ MC 55 of 8441.90)	CTSH or RVC 30/40
	8442.30	CTH or From 8442.30 + rvc 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2.40, 8442.50 + MC 55 of 8442.40, 8442.50)	CTSH or RVC 30/40
	8443.11~8443.1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3.91, 8443.99 + MC 55 of 8443.91, 8443.99)	CTSH or RVC 30/40
	8443.31~8443.3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3.91, 8443.99 + MC 55 of 8443.91, 8443.99)	CTSH or RVC 30/40
	8443.91~8443.9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444~8447	CTH+RVC 45	CTH or RVC 40	CTH or (From 8448+ MC 55 of 8448)	CTH or RVC30/40
	8448.11~8448.19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48.20~8448.59 + MC 55	CTH or RVC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of 8448.20~8448.59)	
	8450.11~8450.2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0.90+ MC 55 of 8450.90)	CTSH or RVC 30/40
	8451.10~8451.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1.90+ MC 55 of 8451.90)	CTSH or RVC 30/40
	8452.10	CTH or (CTSH + RVC50)	CTSH (ex.8452.21, 8452.29) RVC 40	CTH or (From 8452.90+ MC 55 of 8452.90)	CTSH or RVC 30/40
	8452.2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52.10, 8452.29) or RVC 40	CTH or (From 8452.90+ MC 55 of 8452.90)	CTSH or RVC 30/40
	8452.29	CTH or (CTSH + RVC50)	CTSH (ex.8452.10, 8452.21) or RVC 40	CTH or (From 8452.90+ MC 55 of 8452.90)	CTSH or RVC 30/40
	8452.3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2.90+ MC 55 of 8452.90)	CTSH or RVC 30/40
	8452.90	CTH	CTSH or RVC 40	CTH	HS 2007--2012년 경으로 PSR 중첩
	8453.10~8453.8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3.90+ MC 55 of 8453.90)	CTSH or RVC 30/40
	8454.10~8454.3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54.90+ MC 55 of 8454.90)	CTSH or RVC 30/40
	8455.10~8455.22	CTH or (CTSH + RVC45)	CTH or RVC 40	CTH or (From 8455.30, 8455.90 + MC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5 of 8455.30, 8455.90)	
	8455.30	CTH or (CTSH + RVC45)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8456.10~8456.30 8458~8463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466) or (From 8466+ MC 55 of 8466)	CTH or RVC30/40
	8456.90	CTH+RVC 45	CTH or RVC 40	CTH(ex.8466) or (From 8466+ MC 55 of 8466)	HS 2007--2012년 경으로 PSR 중첩
	8457.10~8457.3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459,84 66) or (From 8459,8466 + MC 55 of 8459,8466)	CTH or RVC30/40
	8464	CTH(ex.8466.91) or (CTH+RVC 50)	CTH or RVC 40	CTH(ex.8466.91) or (From 8466.91+ MC 55 of 8466.91)	CTH or RVC30/40
	8465+G505C483:G5 C483:G517	CTH(ex.8466.92) or (CTH+RVC 50)	CTH or RVC 40	CTH(ex.8466.92) or (From 8466.92+ MC 55 of 8466.92)	CTH or RVC30/40
	8467.11~8467.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67.91~8467. 99 + MC 55 of 8467.91~8467. 99)	CTSH or RVC 30/40
	8468.10~8468.8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68.90+ MC 55 of 8468.90)	CTSH or RVC 30/40
	8469.00	CTH(ex.8473) or (CTH+RVC 45)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70.10~8470.50 8471.60~8471.90	CTS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470.90~8471.5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472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473) or (From 8473+ MC 55 of 8473)	CTH or RVC30/40
	8475.10~8475.2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5.90+ MC 55 of 8475.90)	CTSH or RVC 30/40
	8476.2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76.29~84 76.89) or RVC 40	CTH or (From 8476.90+ MC 55 of 8476.90)	CTSH or RVC 30/40
	8476.29	CTH or (CTSH + RVC50)	CTSH (ex.8476.21, 8476.81, 8476.89) or RVC 40	CTH or (From 8476.90+ MC 55 of 8476.90)	CTSH or RVC 30/40
	8476.81	CTH or (CTSH + RVC50)	CTSH (ex.8476.21, 8476.29, 8476.89) or RVC 40	CTH or (From 8476.90+ MC 55 of 8476.90)	CTSH or RVC 30/40
	8476.89	CTH or (CTSH + RVC50)	CTSH (ex.8476.21~84 76.81) or RVC 40	CTH or (From 8476.90+ MC 55 of 8476.90)	CTSH or RVC 30/40
	8477.10~8477.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7.90+ MC 55 of 8477.90)	CTSH or RVC 30/40
	8478.1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8.90+ MC 55 of 8478.90)	CTSH or RVC 30/40
	8479.1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9.90+ MC 55 of 8479.90)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479.20~8479.60 8479.81~8479.82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9.90+ MC 55 of 8479.90)	CTSH or RVC 30/40
	8479.71~8479.79	CTSH(ex.8479.8 9) + RVC 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9.90+ MC 55 of 8479.90)	CTSH or RVC 30/40
	8479.89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79.90+ MC 55 of 8479.90)	CTSH or RVC 30/40
	8481.10 8481.30~8481.8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481.90+ MC 55 of 8481.90)	CTSH or RVC 30/40
	8481.20	CTH or (CTSH + RVC45)	CTH or RVC 40	CTH or (From 8481.90+ MC 55 of 8481.90)	CTSH or RVC 30/40
	8482.10~8482.8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2.91, 8482.99 + MC 55 of 8482.91, 8482.99)	CTSH or RVC 30/40
	8483.10 8483.30~8483.60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483.90+ MC 55 of 8483.90)	CTSH or RVC 30/40
	8483.20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ex.8482) or (From 8482,8483.90+ MC 55 of 8482,8483.90)	CTSH or RVC 30/40
	8483.90	CTH+RVC 45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8484.10~8484.20 8487.10	CTH	CTS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8484.90	CTH	CTSH or RVC 40	CTSH +MC 55	CTSH or RVC 30/40
	8486.10	(CTH or From 8486.10) or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6.90+ MC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CTSH + RVC 45)		55 of 8486.90)	
	8486.20	(CTH or From 8486.20)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6.90+ MC 55 of 8486.90)	CTSH or RVC 30/40
	8486.30	(CTH or From 8486.30)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6.90+ MC 55 of 8486.90)	CTSH or RVC 30/40
	8486.40	(CTH or From 8486.40) or (CTSH + RVC 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486.90+ MC 55 of 8486.90)	CTSH or RVC 30/40
	8486.90	CTH or From 8486.90	CTS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	8501.10~8501.63	CTH(ex.8503) or (CTH + RVC50)	CTH or RVC 40	CTH(ex.8503) or (From 8503+ MC 55 of 8503)	CTH or RVC30/40
	8501.64	CTH(ex.8503) or (CTH + RVC45)	CTH or RVC 40	CTH(ex.8503) or (From 8503+ MC 55 of 8503)	CTH or RVC30/40
	8502	CTH(ex.8503) or (CTH + RVC50)	CTH or RVC 40	CTH(ex.8406,8411,8501,8503) or (From 8406,8411,8501,8503 + MC 55 of 8406,8411,8501,8503)	CTH or RVC30/40
	8503, 8504.90, 8507.90, 8509.90, 8510.90, 8513.90, 8514.90, 8516.90, 8518.90,8522.10~8522.90, 8529.1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30.90, 8531.90, 8532.90, 8534, 8538, 8539.90, 8545.11~8547.90				
	8504.10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21~85 04.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21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 8504.22~8504. 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22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 8504.21, 8504.23~8504. 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23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 04.22, 8504.31~8504. 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31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32~85 04.34)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32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 04.31, 8504.33~8504. 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33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 04.32, 8504.34~8504. 50) or RVC 40	CTH or (From 8504.90+ MC 55 of 8504.90)	CTSH or RVC 30/40
	8504.34	CTH or (CTSH + RVC50)	CTSH(ex.8504.1 0~8504.33 or	CTH or (From 8504.90+ MC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04.40~8504.50) or RVC 40	55 of 8504.90)	
	8504.40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04.34, 8504.50)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04.50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4.10~8504.40)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05.11~8505.2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5.90+ MC 55 of 8505.90)	CTSH or RVC 30/40
	8505.90 8508.70 8529.9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06.1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6.90+ MC 55 of 8506.90)	CTSH or RVC 30/40
	8506.30~8506.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6.90+ MC 55 of 8506.90)	CTSH or RVC 30/40
	8506.90	CTH or RVC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07.10~8507.4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7.90+ MC 55 of 8507.90)	CTSH or RVC 30/40
	8507.50~8507.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7.90+ MC 55 of 8507.90)	CTSH or RVC 30/40
	8508.11	CTH or (CTSH + RVC50)	CTSH (ex.8508.19) or RVC 40	CTH or (From 8508.70+ MC 55 of 8508.70)	CTSH or RVC 30/40
	8508.1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ex.8508.11) or RVC 40	CTH or (From 8508.70+ MC 55 of 8508.70)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08.60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8.70+ MC 55 of 8508.70)	CTSH or RVC 30/40
	8509.4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9.90+ MC 55 of 8509.90)	CTSH or RVC 30/40
	8509.8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09.90+ MC 55 of 8509.90)	CTSH or RVC 30/40
	8510.10~8510.3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0.90+ MC 55 of 8510.90)	CTSH or RVC 30/40
	8511.10~8511.50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1.90+ MC 55 of 8511.90)	CTSH or RVC 30/40
	8511.8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1.90+ MC 55 of 8511.90)	CTSH or RVC 30/40
	8511.90 8512.90 8528.49 8528.59 8528.69~8528.73 8544.11~8544.6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12.10	CTSH + RVC50	CTSH (ex.8512.20, 8512.30) or RVC 40	CTH or (From 8512.90+ MC 55 of 8512.90)	CTSH or RVC 30/40
	8512.20	CTSH + RVC50	CTSH (ex.8512.10, 8512.30) or RVC 40	CTH or (From 8512.90+ MC 55 of 8512.90)	CTSH or RVC 30/40
	8512.30	CTSH + RVC50	CTSH (ex.8512.10, 8512.20) or RVC 40	CTH or (From 8512.90+ MC 55 of 8512.90)	CTSH or RVC 30/40
	8512.40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2.90+ MC 55 of 8512.90)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13.1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3.90+ MC 55 of 8513.90)	CTSH or RVC 30/40
	8514.10~8514.30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4.90+ MC 55 of 8514.90)	CTSH or RVC 30/40
	8514.4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4.90+ MC 55 of 8514.90)	CTSH or RVC 30/40
	8515.11~8515.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15.90+ MC 55 of 8515.90)	CTSH or RVC 30/40
	8515.9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16.10~8516.29 8516.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6.31~8516.79	CTH or {CTSH(ex.8516.80)+RVC 50}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7.11	CT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7.12	CTH + RVC 50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7.18~8517.70 8541.10~8541.60	CTS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17.70 8533.90	CTS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18.10~8518.29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8 + MC 55 of 8518)	CTSH or RVC 30/40
	8518.3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Set Product from 8518.10, 8518.21~8518.29, 8518.90 + MC35 of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18.10, 8518.21~8518.29, 8518.90) or (From 8518.10, 8518.21~8518.29, 8518.90 + MC35 of 8518.10, 8518.21~8518.29, 8518.90)	
	8518.4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8.90 + MC 55 of 8518.90)	CTSH or RVC 30/40
	8518.5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518 + MC 35 of 8518)	CTSH or RVC 30/40
	8519.20~8519.5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522) or (From 8522+ MC 55 of 8522)	CTH or RVC30/40
	8519.81~8519.8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ex.8522) or (From 8522+ MC 55 of 8522)	CTH or RVC30/40
	8521.10~8521.9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23.21~8523.29 8523.51~8523.80 8543.90 8548.9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23.41	CTH or From 8523.49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23.49	CTH or From 8523.41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25.50~8525.60	CTH + RVC 50	CTSH (ex.8517) or RVC 40	CTSH or From 8525.80(자이로스태블라	CTH or RVC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즈드 카메라(gyrosta bilized camera)	
	8525.8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SH or From8525.80(자이로스태블라 이즈드 카메라(gyrosta bilized camera)	CTH or RVC30/40
	8526	CTH+RVC 45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27	CTH + RVC 55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28.41 8528.51 8528.61	CTS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30.10~8530.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30.90+ MC 55 of 8530.90)	CTSH or RVC 30/40
	8531.10~8531.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31.90+ MC 55 of 8531.90)	CTSH or RVC 30/40
	8532.10~8532.30 8533.10~8533.40 8542.31~8542.39	CTSH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35~8536.69 8536.90	CTH(ex.8539) or (CTH + RVC50)	CTH or RVC 40	CTH(ex.8538) or (From 8538+ MC 55 of 8538)	CTSH or RVC 30/40
	8536.7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ex.8538) or (From 8538+ MC 55 of 8538)	CTSH or RVC 30/40
	8537	CTH(ex.8539) or (CTH + RVC50)	CTH or RVC 40	CTH(ex.8538) or (From 8538+ MC 55 of 8538)	CTH or RVC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539.10~8539.21 8539.31~8539.4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39.90+ MC 55 of 8539.90)	CTSH or RVC 30/40
	8539.22	CTH or (CTSH + RVC50)	CTSH (ex.8539.29) or RVC 40	CTH or (From 8539.90+ MC 55 of 8539.90)	CTSH or RVC 30/40
	8539.29	CTH or (CTSH + RVC50)	CTSH (ex.8539.22) or RVC 40	CTH or (From 8539.90+ MC 55 of 8539.90)	CTSH or RVC 30/40
	8540.11~8540.12	CTH or (CTSH + RVC45)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40.91, 8540.99 + MC 55 of 8540.91, 8540.99)	CTSH or RVC 30/40
	8540.20~8540.89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40.91, 8540.99 + MC 55 of 8540.91, 8540.99)	CTSH or RVC 30/40
	8540.91~8540.99	CTH	CTS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541.90 8542.90	CTSH	CTS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43.10~8543.3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8543.90+ MC 55 of 8543.90)	CTSH or RVC 30/40
	8543.7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8544.70	CT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548.10	CTH	CTH	CTH	CTH or RVC30/40
86	8601~8602 8607.11~8607.12	CTH	CTH	CTH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603~8606	CTH	CTH	CTH(ex.8607) or (From 8607+ MC 55 of 8607)	CTH
	8607.19~8607.99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8608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609	CTH	CTH or RVC 40	CTH	CTH
87	8701~8702 8704	CTH + RVC 55	CTH + RVC 40	MC 55(VNM)/NC65 or MC35(VOM)	CTH or RVC30/40
	8703	CTH + RVC 55	CTH +(RVC 30/40)	MC 55(VNM)/NC65 or MC35(VOM)	CTH or RVC30/40
	8705~8706	CTH + RVC 55	BU 30 or BD 40	MC 55(VNM)/NC65 or MC35(VOM)	CTH or RVC30/40
	8707	CTH + RVC 55	BU 30 or BD 40	CTH or (From 8707 + MC 55/NC 65 of 8707)	CTH or RVC30/40
	8708.10~8708.94	CTH + RVC 50	CTSH or RVC 40	CTSH or (From 8708 + MC 55/ NC 65 of 8708)	CTH or RVC30/40
	8708.95~8708.99	CTH + RVC 55	CTSH or RVC 40	CTSH or (From 8708 + MC 55/ NC 65 of 8708)	CTH or RVC30/40
	8709.11~8709.1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8709.90+ MC 55 of 8709.90)	CTSH or RVC 30/40
	8709.90	CTH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8710.00 8714.99~8715.00 8716.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711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ex.8714) or (From 8714+ MC 55 of 8714)	CTH or RVC30/40
	8712	CTH + RVC 50	CTH	CTH(ex.8714) or (From 8714+ MC 55 of 8714)	CTH or RVC30/40
	8713	CTH	CTH or RVC 40	CTH(ex.8714) or (From 8714+ MC 55 of 8714)	CTH or RVC30/40
	8714.10~8714.96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8714.99+ MC 55 of 8714.99)	CTH or RVC30/40
	8716.10~8716.8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8716.90+ MC 55 of 8716.90)	CTSH or RVC 30/40
88	8801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802~8803	CTS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8804~8805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89	8901~8902 8904~8905	CC	CC or RVC 40	CC	CTH or RVC30/40
	8903 8906	CC	CTH	CC	CTH or RVC30/40
	8907~8908	CTH	CTH	CC	CTH or RVC30/40
90	9001, 9005.90, 9006.91~9006.99, 9007.91~9007.92,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010.90, 9011.90, 9012.90, 9013.90, 9014.90, 9016, 9023.00, 9024.90, 9026.90, 9029.90, 9030.90, 9032.90~9033				
	9002	CTH(ex.9001) or (CTH + RVC50)	CTSH	CTH(ex.9001) or (From 9001+ MC 55 of 9001)	CTSH
	9003.11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9003.90+ MC 55 of 9003.90)	CTH or RVC30/40
	9003.1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003.90+ MC 55 of 9003.90)	CTH or RVC30/40
	9003.90	CTH	CTH	CTH	CTH or RVC30/40
	9004	CC or (CTH + RVC 50)	CC or RVC 40	CC or (From 90 + MC 55 of 90)	CTH or RVC30/40
	9005.10~9005.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05.90+ MC 55 of 9005.90)	CTSH
	9006.10~9006.51 9006.61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06.91, 제9006.99 + MC 55 of 9006.91, 제9006.99)	CTSH
	9006.52~9006.59 9006.6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H or (From 9006.91, 제9006.99 + MC 55 of 9006.91, 제9006.99)	CTS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007.1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07.10(자이로 스태블라이즈드 카메라(gyrosta bilized camera) or From 9007.91+ MC 55 of 9007.91	CTSH
	9007.2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07.92+ MC 55 of 9007.92)	CTSH
	9008.5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08.90+ MC 55 of 9008.90)	CTSH
	9008.90	CT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9010.10 9012.10 9030.31~9030.39 9030.84~9030.89	CTH or (CTSH + RVC50)	CTSH	CTSH	CTSH
	9010.50~9010.6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0.90+ MC 55 of 9010.90)	CTSH
	9011.10~9011.80	CTH or (CTSH + RVC45)	CTSH	CTSH	CTSH
	9013.10~9013.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3.90+ MC 55 of 9013.90)	CTSH
	9014.10~9014.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4.90+ MC 55 of 9014.90)	CTSH
	9015.10~9015.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5.90+ MC 55 of 9015.90)	CTSH
	9015.90 9017.90 9028.90	CTH	CTH or RVC 40	CTH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017.10~9017.2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17.90+ MC 55 of 9017.90)	CTSH
	9017.30~9017.8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9017.90+ MC 55 of 9017.90)	CTSH
	9018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9019.10~9019.20 9021.10~9021.90	CTS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9020.00	CTH	CTH or RVC 40	CTSH	CTH or RVC30/40
	9022.12 9022.19~9022.21	CTH or (CTSH + RVC50)	CTSH	CTSH	CTSH or RVC 30/40
	9022.13~9022.14 9022.29~9022.3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2.90+ MC 55 of 9022.90)	CTSH or RVC 30/40
	9022.90 9027.90	CTH	CTH or RVC 40	CTH	CTSH or RVC 30/40
	9024.10~9024.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4.90+ MC 55 of 9024.90)	CTSH or RVC 30/40
	9025.11~9025.8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5.90+ MC 55 of 9025.90)	CTSH
	9026.10~9026.80	CTSH	CTH or RVC 40	CTSH	CTSH or RVC 30/40
	9027.1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7.90+ MC 55 of 9027.90)	CTSH
	9027.20~9027.50 9030.10 9030.40~9030.82	CTSH	CTSH	CTSH	CTSH
	9027.80 9030.20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CTSH	CTS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028.10~9028.30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28.90+ MC 55 of 9028.90)	CTSH
	9029.10~9029.20	CTH or (CTSH + RVC50)	CTH or RVC 40	CTH or (From 9029.90+ MC 55 of 9029.90)	CTSH
	9031.10~9031.20	#N/A	#N/A	#N/A	#N/A
	9031.41	CTSH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31.90+ MC 55 of 9031.90)	CTSH
	9031.49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31.90+ MC 55 of 9031.90)	CTSH
	9031.80	CTH or (CTSH + RVC50)	CTSH or RVC 40	CTH or (From 9031.90+ MC 55 of 9031.90)	CTSH or RVC 30/40
	9031.90	CTH + RVC 50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032.10 9032.81~9032.89	CTH or (CTSH + RVC50)	CTSH	CTH or (From 9032.90+ MC 55 of 9032.90)	CTSH
	9032.20	CTH or (CTSH + RVC45)	CTSH	CTH or (From 9032.90+ MC 55 of 9032.90)	CTSH
91	9101~9102.11 9102.19~9107	CC	CTH	CTH(ex.9108~9114) or (From 9108~9114+ MC 55 of 9108~9114)	CTH
	9102.12	CC	CTH	CTH(ex.9108~9114) or (From 9108~9114+ MC 55 of 9108~9114)	CTSH or RVC 30/40
	9108~9109	CTH + RVC 55	CTH	CTH	CTH
	9110	CTH + RVC 55	CTH or RVC 40	CTH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111.1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111.90 + MC 55 of 9111.90)	CTSH
	9111.20~9111.8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011.90+ MC 55 of 9011.90)	CTSH
	9111.90 9112.90~9113.90	CTH	CTH or RVC 40	CTH	CTH
	9112.2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112.90+ MC 55 of 9112.90)	CTH
	9114	CTH	CTH	CTH	CTH
92	9201~9206 9208	CC	CTH	CTH(ex.9209) or (From 9209+ MC 55 of 9209)	CTH
	9207	CC	CTH or RVC 40	CTH(ex.9209) or (From 9209+ MC 55 of 9209)	CTH
	9209	CTH	CTH	CTH	CTH
93	9301~9304	CC	CTH or RVC 40	CTH(ex.9305) or (From 9305+ MC 55 of 9305)	CTH or RVC30/40
	9305.10~9305.20 9306~9307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305.91~9305.99	CTH	CTH or RVC 40	CTH	CTH
94	9401.10~9401.8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401.90 + MC 55 of 8401.90)	CTSH
	9401.90 9405.91~9405.99	CTH	CTH or RVC 40	CTH	CTH
	9402 9403.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403.10~9403.8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403.90 + MC 55 of 9403.90)	CTS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404 9406	CTH	CTH	CTH	CTH or RVC30/40
	9405.10~9405.6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405.91~9405.99 + MC 55 of 9405.91~9405.99)	CTSH or RVC 30/40
95	9503	동일세번 품목분리 PSR	CTH or RVC 40	CTH or (From 9503 + MC 55 of 9503)	CTH or RVC30/40
	9504.20 9504.40	CTH	CTH	CTH	CTH or RVC30/40
	9504.30 9504.9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504.50	CTH	CTH or RVC 40	CTH	HS 2007--2012변경 으로 PSR 중첩
	9505	CTH	CTSH	CTH	CTH
	9506.11~9506.29 9506.32~9506.32~9 508	CTH	CTH	CTH	CTH
	9506.31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506.39 + MC 55 of 9506.39)	CTH
96	9601 9603.21~9604 9606.10 9606.30 9607.20 9609.20~9610 9612 9614 9615.90~9618	CTH	CTH	CTH	CTH
	9602 9615.11~9615.19	CTH	CTH or RVC 40	CTH	CTH
	9603.10	CTH (ex.14)	CTH	CTH	CTH
	9605	CC	CTH	CC or (From	CTH

류	HS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6 + MC 20 of 96)	
	9606.21~9606.29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606.30+ MC 55 of 9606.30)	CTH
	9607.11	CTH	CTSH	CTH or (From 9606.30+ MC 55 of 9606.30)	CTH or RVC30/40
	9607.19	CTH	CTSH	CTH or (From 9607.20+ MC 55 of 9607.20)	CTH or RVC30/40
	9608.10~9608.20 9608.40	CTH	CTSH	CTH or (From 9608.60~9608.99+ MC 55 of 9608.60~9608.99)	CTSH or RVC 30/40
	9608.30	CTH	CTSH or RVC 40	CTH or (From 9608.60~9608.99+ MC 55 of 9608.60~9608.99)	CTSH or RVC 30/40
	9608.50	CTH	CTH or RVC 40	CTH or (From 9608.10~9608.40 + MC 20 of 9608.10~9608.40)	CTH or RVC30/40
	9608.60	CTH	CTH or RVC 40	CTH	CTH or RVC30/40
	9608.91~9608.99	CTH	CTH	CTH	CTH or RVC30/40
	9609.10	CTH	CTH	CTH	CTSH
	9611	CTH	CTH	CTH or (From 9611 + MC 20 of 9611)	CTH
	9613.10~9613.80	CC	CTH or RVC 40	CTH or (From 9613.90+ MC 55 of 9613.90)	CTSH
	9613.90	CC	CTH	CTH	CTH
	9619	CTH	CC	CTH	CC / CTH / CC or RVC 40
97	97	CTH	CTH	CTH	CTH